발 간 등 록 번 호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

제 출 일

제 출 기 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노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출 문

법제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 총 괄 기 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박노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 차

요약문 ..... **vii**

I.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1**

1. 제1원칙 2
2. 제2원칙 10
3. 제3원칙 12
4. 제4원칙 13
5. 제5원칙 14
6. 제6원칙 15
7. 제7원칙 16
8. 제8원칙 17
9. 면제 19

II. EU개인정보보호지침 개관 **20**

1. 의의 20
2. 구조 22
3. 주요 내용 22
   (1). 개인정보 22
   (2). 개인정보 처리의 조건 23
   (3). 민감한 개인정보 23
   (4). 공정한 수집 23
   (5). 정보주체의 권리 23
   (6). 보안 24
   (7). 책임 24
   (8). 외국에의 이전 24

(9). 정보보호당국 24
(10). 제29조 작업반 24
4.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 움직임 25

III.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29
1. 의의 29
2. 구조 30
3. 주요 내용 31

IV. 개인정보의 개념 32
1. 영국 정보보호법과 EU개인정보보호지침 33
2. 데이터의 개념 35
(1). 자동화 데이터 36
(2). 수작업 데이터 36
(3). 접근가능 기록 40
(4). 기타 공공당국 보유 정보 41
3. 개인정보의 개념 41
(1). 정보의 주체 42
(2). 개인과 데이터의 관련성 43
(3). 데이터로부터 식별가능성 45
(4). 개인정보의 익명화 47
(5). 의견이나 의도의 표현 48
4. 민감한 개인정보 49
5. 개인정보의 분류 51
(1). 정보의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51
(2). 정보의 내용에 따른 분류 51
(3).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류 54

(4). 정보의 식별가능성에 따른 분류 54
6. 개인정보의 확인 방법 55
(1). 식별가능성 55
(2). '관련되는'의 의미 57
(3) 명백히 특정 개인에 관한 데이터 57
(4). 개인에게 연결된 데이터 57
(5). 처리의 목적 58
(6). 전기적 중요성 60
(7). 정보가 개인에 집중하는가? 61
(8). 개인에 영향을 주는 처리 62

V. 정보주체의 권리와 구제절차 64
1. 정보주체의 권리 64
2. 개인정보보호당국에 대한 신고 64
(1).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 준수 전략 65
(2). 신고의 필요성 66
(3). 신고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66
(4). 신고의 절차 67
(5). 신고의 시점 68
3. 처리의 제한 69
4. 면제 및 경과기간 69
5. 집행 및 형사절차 69

VI.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 및 추진 체제 70
1. EU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제 70
(1). 법적 근거 70
(2). EDPS의 임무 70

2.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제 71
(1) 정보위원 71
(2). 집행 72
(3) 정보위원의 권한 72

VII. 개인정보의 국제적 보호 73
1. 국제기구 주도의 개인정보의 보호 73
(1). OECD 73
(2). 유럽평의회 75
2.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 76
(1). 계약 77
(2). 안전지대 79

VIII.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사점 83
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실태 83
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현황 84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체계 84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체계 86
3.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시사점 90

부록. 관련 규범의 국문 번역 91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2.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요 약 문

I.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개인정보보호원칙 (data protection principles: DPP)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핵심적 기준을 설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이 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관리자는 관련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모든 DPP를 준수해야 한다. 정보관리자는 정보보호법에 규정된 8개 DPP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2]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제6조에서 '데이터의 질' (data quality)에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는데,[3] 동 지침 제5조는 회원국들에게 개인정보의 처리가 적법한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영국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8년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DPA) 제4조 (Section 4)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 (DPP)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DPA의 제4조는 DPP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할 뿐이고, DPP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칙 (Schedule 1)에 규정되어 있다. 즉, 제1부칙의 제1장은 8개의 DPP를 규정하고, 제1부칙의 제2장 (Part II)은 DPP의 해석규정을 자세히 규정한다. 제2부칙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제1원칙의 목적에 관련된 조건을 규정하고, 제3부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제1원칙의 목적에 관련된 조건을 규정하며, 제4부칙은 개인정보의 EEA 역외 반출을 금지하는 제8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다.

영국은 제1부칙의 8개 DPP를 규정하면서,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6조의 의무에 더하여 동 지침의 제8조 (특정 조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제10조와 제11조 (데이터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데이터의 처리 의무), 제17조 (개인정보을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 및 제25조 (EU역외로의 개인정보의 이전)을 반영하였다.

집행

DPP는 정보주체인 개별적인 개인에관련된 개인정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 개인에 관하여 위반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정보관리자가 이들 8개 DPP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을 때

---

1) 영국에서 정보보호원칙은 일반적으로 'Principles'로 사용된다.
2) DPA, 제4조 제4항.
3) EU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에 따를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
(b) 특정되고, 명백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들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데이터의 추가적 처리는 회원국들이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면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선 아니된다;
(c) 개인정보가 수집되고/또는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목적에 관련하여 적절하고, 관련 있고 및 지나치지 않을 것;
(d)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정보로 유지될 것; 정보가 수집되거나 추가로 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교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
(e)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것 보다 더 이상 (길게???) 데이터주체의 신원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유지될 것. 회원국들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더 오랜 기간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항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관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4] DPP의 집행은 정보위원의 집행통고(enforcement notic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정보주체의 정보보호법상 인정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 손해나 고통을 초래할 것 같은 처리를 방지할 권리, 직접 마케팅을 방지할 권리,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 보상을 추구할 권리 등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정보주체는 정보관리자의 DPP의 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통한 배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보위원에게 동 위반의 문제를 제기한다.[5] 제6원칙이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일치하여 처리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보위원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정보위원은 정보주체의 평가의 요청에 대응하여 관련 정보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비공식적 자문을 준다.[6]

1. 제1원칙[7]

DPP의 제1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특히 다음의 경우에 처리되어선 아니 된다: (a) 제2부칙의 조건들 중의 적어도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b)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제3부칙의 조건들 중의 적어도 하나가 또한 충족되지 않는 경우."[8] 정보보호법의 제1부칙 제2부의 제1원칙에 대한 해석규정(interpretation provision)은 주로 제1원칙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보호법은 '공정하게'와 '적법하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통상적인 의미를 따라야 할 것이다.[9] 그럼에도 이들 두 개념의 관계가 흥미롭다. 우선, 공정성은 둘 이상 개인이나 기관들 사이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적법성은 국가가 개입하여 집행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개념이다.[10] 따라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11]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처리는 공정한 처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의 획득과 처리에 적용되는 제1원칙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0조, 제11조 및 제6조 제1(a)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보호법상 '처리' (processing)는 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하여 '정보나 데이터의 획득, 기록 또는 보유'나 '다음을 포함하여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운용이나 일련의 운용을 수행하는 것: (a) 정보나 데이터의 구성, 개작이나 변경, (b) 정보나 데이터의 검색, 참조나

4) DPA, 제13조.
5) Jay, supra note , p. 205-06.
6) Jay, supra note , p. 206.
7) 아래 제1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이메일주소와 팩스번호가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Consumer Protection (Contracts Concluded by Means of Distance Communication) Regulations 2000/42',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8) DPA, 제1부칙 제1부 제1항.
9) 'fair'는 'acceptable and appropriate in a particular situation'와 'treating everyone equally and according to the rules or law'로 정의되고, 'lawful'은 'allowed or recognized by law; legal'로 정의된다. 각각 http://www.oxfordadvancedlearnersdictionary.com/dictionary/fair_1 및 http://www.oxfordadvancedlearnersdictionary.com/dictionary/lawful 참조.
10) Jay, supra note , p. 216.
11) 예컨대, 사창가의 사장이 자신의 고객과 직원의 완전한 동의에 따라 고객의 명단과 그들의 선호하는 내용을 컴퓨터에 정리한 경우, 이러한 처리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도 불법적이다.

사용, (c) 전송, 유포나 달리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나 데이터의 공개, 또는 (d) 정보나 데이터의 정렬, 조합, 차단, 삭제 또는 폐기'를 의미한다.[12] 처리의 개념이 넓기 때문에, 제1원칙은 개인정보의 모든 취급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Campbell v. Mirror Group Newspapers사건[13]에서 항소법원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인쇄되어 발간될 시점까지 개인정보의 모든 취급을 포함한다고 하여 처리의 넓은 개념을 인정하였다.

제1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 의무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를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 둘째,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 셋째, 각각의 처리에 있어서 제2부칙의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의무; 넷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제3부칙의 하나 이상의 추가적 조건을 충족할 의무. 제2부칙의 조건들 중의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가 적법하지 않게 되므로, 제2부칙의 조건들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14]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 제2부칙의 조건들 중의 하나와 제3부칙의 조건들의 중의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동 처리는 적법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경우 제2부칙, 및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제2부칙과 제3부칙에 부합하여도 그 자체로 제1원칙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다. 동 처리가 동시에 공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의 법' (law of confidence)과 같은 영국의 다른 법에 위반하는 처리도 적법하지 않은 처리가 된다.[15]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lawfully) 처리되어야 하는데, '적법하게'의 의미는 특히 '정당한 처리' (legitimate processing)의 조건을 규정한 제2부칙과 제3부칙에 일치해야 할 것이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적법하게'가 모든 관련 법적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국내입법의 준수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28리사이틀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법하고 공정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면서, 제30리사이틀은 "적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는 추가적으로 ..."이라고 시작하면서 정보보호법의 제2부칙의 조건들 대부분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는 1981년 유럽평의회협약과 1984년 정보보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등록청 (Registrar)과 정보보호법정은 이미 '적법하게'를 넓게 해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법하게'를 정보보호를 규율하는 국내입법의 준수로 국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것이고, 이는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16] 더욱이 정보보호법의 제1부칙의 제1원칙은 개인정보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in particular) 제2부칙과 제3부칙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리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제2부칙과 제3부칙의 준수보다 더 많은 규범의 준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 따라서, 제1원칙의 적법성의 요건은 정보보호에 관한 규범 자체는 물론 다른 법규범의 고려를

12) 정보보호법, 제1조 제1항.
13) [2002] EWCA Civ 1373. 그러나, 추후 *Johnson v. Medical Defence Union*사건에서는 전산화기록에서 정보의 선택에 관하여 보다 좁은 개념이 인정되었다. [2007] EWCA Civ 262.
14) Carey, supra note , p. 47.
15) Carey, supra note , p. 48.
16) Jay, supra note , p. 207-08.
17) Jay, supra note , p. 208.

요구하고, 정보관리자는 정보보호의 맥락에서 다른 관련 법을 고려하여야 한다.[18]

따라서, 형법[19]이나 보통법[20] 등 법규정이나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의무[21]에 위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특히 다음의 네가지 법의 위반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에 반하는 것이다:[22] 첫째, 정보관리자와 정보주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밀성 (confidentiality)[23]; 둘째, 공공기관의 활동을 자신의 법적 권한 내의 활동으로 제한하는 법원칙[24]; 셋째, '정당한 기대' (legitimate expectation)의 원칙의 잠재적 효과[25]; 및 넷째,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8)에서 유럽평의회의 '인권과 기본자유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8조의 효과[26].

개인정보 처리의 공정성

'공정하게' (fairly)의 개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27] 1984년 정보보호법의 제1원칙에 대한 정보보호법정은 처리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고려사항은 정보주체의 이익이라고 밝혔다.[28] 정보위원은 정보주체의 이익이 '최우선적' (paramount)라고 언급하였다.[29] 그러나 정보법정은 개인정보 처리의 공정성은 개개의 사건에서 모든

18) 정보보호법정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는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관련법의 준수를 요구한다는 등록청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British Gas Ltd v. Data Protection Registrar*, March 1998 및 Jay, supra note , p. 209-10 참조.

19)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해킹이나 신원위조 (identity fraud) 등의 행위는 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관련 형법 등의 위반이 된다. Computer Misuse Act 1990, Fraud Act 2006,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Criminal Justice Act 1988, 정보보호법 제55조 참조.

20) '비밀성의 의무' (duty of confidentiality)는 정보주체와 정보의 사용자 사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동 의무는 적절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사용과 다른 자에게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Jay, supra note , p. 210.

21)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의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처리에 해당한다.

22) Jay, supra note , p. 209.

23) '신뢰의 의무' (obligation of confidence)가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정당화되지 않은 동 의무의 위반, 즉 개인정보의 악용 (misuse)은 제1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 처리가 될 것이다. *Naomi Campbell v. MGN Limited*, [2002] EWCA Civ 337 및 Jay, supra note , p. 213-14 참조.

24) 의회의 법에 따라 특정의 권한이 부여된 공공기관은 동 기관을 설치한 관련 법에 따른 활동 또는 이에 합리적으로 부수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즉, 공공기관은 권한 외의 (*ultra vires*) 활동을 할 수 없다.

25) '정당한 기대' (legitimate expectation)는 공정당국을 대신하여 주어진 명시적 약속이나 정기적 행위의 존재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공적당국의 이러한 약속이나 행위로부터 관련되는 시민 등이 일정한 혜택을 얻게될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적당국은 해당 약속이나 행위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 공적당국이 일정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획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관련되지 않은 기능이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Jay, supra note , p. 216.

26) 영국의 인권법 (Human Rights Act)에 따라 공적당국은 유럽평의회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일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개인과 가족 생활의 존중의 권리'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에 관한 것이다.

27) Registrar, *The Guidelines* 59 (3rd series, Nov. 1994), Jay, supra note , p. 218-19에서 재인용.

28) Infolink Ltd v. The Data Protection Registrar, June 1991, para. 61. 이 점에서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사용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이 최우선적이라는 정보위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예컨대, 정보법정은 공적기능의 목적으로 처리된 공무원의 개인정보에 있어서 정보주체인 해당 공무원의 이익이 중요하긴 하여도 최우선적이지 않다고 판정하였다.[30] 항소법원은 Johnson v. Medical Defence Union사건[31]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공정성의 판단에 있어 정보관리자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정보보호법정은 정보관리자가 정보를 획득할 때 정보주체에게 그가 의도한 '명백하지 않은' (non-obvious) 목적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한 처리가 아니라고 밝혔다.[32]

정보보호법의 제1부칙 제2부의 제1원칙에 대한 해석규정은 '공정하게' (fairly)에 관한 것이다.[33] 제1원칙에 관한 해석규정은 제2부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데, 동 해석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 중에서 공정한 획득에만 관련된다. 공정한 처리에 관한 해석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가 공정하게 처리되느냐의 결정에서 동 정보가 획득되는 방법, 특히 동 정보가 획득되는 자 (person)가 동 정보의 처리 목적에 관하여 기만 또는 오도되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34]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획득은 처리 행위이다.

둘째,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공정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a) 정보 (information)를 제공하라고 법 (enactment)에 따라 허가받은 자 (person), 또는 (b) 법이나 영국에 국제의무를 부과하는 문서 등에 따라 정보 (information)를 제공하라고 요구된 자 (person)로부터 획득된 정보 (information)으로 구성된 경우.[35] 따라서, 법률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공개가능성을 통지받지 않았어도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법률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명시된 정보' (specified information)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공정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정보주체에게서 획득된 데이터의 경우 정보관리자가 '가능한대로' 정보주체가 제3호에 '명시된 정보'를 가지거나, 제공받거나, 자신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였도록 보장하지 않는 경우; 및 (b) 그밖의 경우 정보관리자가 '가능한대로' '적절한 시간' 전에 또는 동 시간의 가능한 직후 정보주체가 제3호에 명시된 정보를 가지거나, 제공받거나, 또는 자신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였도록 보장하지 않는 경우.[36] 여기서 그 밖의 경우, 즉 정보주체에게서 데이터가 획득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정보관리자로부터의 해당 데이터의 구매나 이전 또는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가족과 같은 측근으로부터의 획득을 의미한다.[37] 이 해석규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

29) Legal Guidance, p. 31.
30) *The Corporate Officer of the House of Commons v. Information Commissioner*, Appeal EA 2006/0015 and 16.
31) [2007] EWCA Civ 262.
32) Innovations (Mail Order) Ltd v. DPR, September 1993, para. 30.
33) 정보보호법의 제1부칙 제2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정처리코드' (fair processing code)라고 불린다. 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Registrar, *The Data Protection Act 1998-An Introduction* 11 (October 1998).
34)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1(1)항.
35)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1(2)항. 단, 제1부칙 제2부 제2항을 조건으로 한다.
36)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2(1)항.
37) Jay, supra note , p. 221.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가 명시된 정보를 '가지거나, 제공받거나, 자신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였도록' (has, is provided with, or has made readily available to him) 보장하여야 한다.[38] '가진다' (has)는 것은 정보제공자가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든 정보의 획득단계가 아니라 어느 한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9] 또는, 이는 데이터가 제3자에게 이전될 구체적인 의도록 획득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40] 이 경우 제3자의 처리 목적을 알 수 있는 원래의 데이터 획득자는 정보주체에게 획득 시점에서 관련 명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신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였다' (has made readily available to him)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정보주체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명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정된 주소로 편지를 보내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41] 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웹사이트가 프라이버시선언 (Privacy Statements)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된 현실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42] 그러나, Innovations (Mail Order) v. Data Protection Registrar사건에서 정보보호법정은 제3자에게의 마케팅명부를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의 추후의 통보 발송이 수용될 수 있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항소인인 정보관리자는 주문의 확인이 발송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관련 통보를 보류하였는데, 동 법정은 성명의 판매를 거절 (opting out)하는 부담을 정보주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43]

'적절한 시간' (relevant time)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44]: (a) 정보관리자가 데이터를 처음으로 처리하는 시간, (b) 그 시간에 제3자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예정된 경우 (i) 데이터가 사실상 그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제3자에게 공개되었다면, 데이터가 처음으로 공개된 시간, (ii) 그 합리적 기간 내에 정보관리자가 데이터가 그 기간 내에 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한다면, 정보관리자가 그렇게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하는 시간, 또는 (iii) 그 밖의 다른 경우 그 합리적 기간의 끝. 위의 네 가지 경우에서, 앞의 두 가지 경우는 명백한 경우이므로 적절한 시간의 확인에 큰 문제가 없다. 셋째인 (b)(ii)의 경우는 정보관리자가 원래의 공개할 의도를 변경한 때 즉 자신의 생각을 변경한 때가 적절한 시간이 된다. 실제로 위의 둘째와 셋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넷째인 (b)(iii)의 경우는 필요없는 규정이다.[45]

여기서 '명시된 정보' (specified information)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46] (a) 정보관리자의 신원, (b) 대리인을 임명한 경우, 그 대리인의 신원[47], (c) 데이터가 처리되도록 의도

38) 명시된 정보는 정보주체가 동 정보에 기초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가 획득되거나 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Jay, supra note , p. 224.
39) Jay, supra note , p. 223.
40) Jay, supra note , p. 223.
41) Jay, supra note , p. 224.
42) Jay, supra note , p. 224.
43) Jay, supra note , p. 224. 아직 정보법정은 1998년 정보보호법에서의 이 규정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Id.
44)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2(2)항.
45) Jay, supra note , p. 221.
46)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2(3)항.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0조도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에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47) '임명된 대리인' (nominated representative)은 정보보호법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동 개념은 동 법에서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보를 규정한 제16조 제1(b)항에서도 발견된다.

된 목적(들), (d) 데이터가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 관하여 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추가적 정보. '필요한 추가적 정보' (any further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의 판단을 위하여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가 (a) 그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b) 처리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정보주체의 판단을 통하여 처리의 가능한 결과; (c) 개개의 공개가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수록 정보관리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48] 명시된 정보의 규정은 정보관리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투명성의 보장을 의미하고,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38리사이틀을 반영한 것이다. '여행객성명기록' (passenger name record: PNR) 데이터의 미국에 대한 이전에 있어 여행객에게의 정보 제공에 관한 의견에서 제29조 작업반은 미국 당국에 대한 동 데이터의 이전이 미국에의 입국에 대한 조건이더라도 여행객은 이러한 처리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9] 이 점에서 '공정처리코드'의 준수는 정당한 처리의 방법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과 중첩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정당한 처리에 완전하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 (informed consent)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0]

넷째, 장관이 명령으로 규정한 기술 (description)에 해당하는 일반적 식별자 (a general identifier)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동 정보가 동 기술의 일반적 식별자에 관련하여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여 처리되지 않으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51] 일반적 식별자는 식별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자나 코드와 같은 다음의 식별자이다: (a) 개인에 관련되고, (b)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사한 일련의 식별자들의 부분을 이루는 식별자.[52] 따라서, 일반적 식별자에 관한 장관의 명령을 통한 제2차적 입법이 예견된다.

면제

정보주체에게서 데이터가 획득되지 않은 경우에 정보관리자가 가능한대로 적절한 시간 전에 또는 동 시간의 가능한 직후 정보주체가 제3호에 명시된 정보를 가지거나, 제공받거나, 또는 자신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였도록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공정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53] 그러나, 이 해석규정은 장관이 규정한 추가적 조건과 함께 다음의 주된 조건들의 하나가 충족되면 적용되지 않는다.[54] 즉,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

48)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32.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0조도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추가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데이터의 수령인 또는 그의 범주,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의무적인지 또는 임의적인지, 및 응답을 거부한 경우의 가능한 결과, -정보주체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리와 수정의 권리의 존재." 동 지침의 제11조는 정보주체에게서 데이터가 획득되지 않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추가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관련 데이터의 범주, -수령인 또는 그의 범주, -정보주체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리와 수정의 권리의 존재."

49)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2/2007 on information to passengers about transfer of PNR data to US authorities" (Adopted on 15 February 2007).

50) Jay, supra note , p. 222-23.

51)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4(1)항. 아직 관련 명령은 채택되지 않았다. Jay, supra note , p. 229.

52)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4(2)항.

53)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2(1)(b)항.

54)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3(1)항.

에게 명시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주된 조건들' (primary conditions)은 (a) 해당 정보의 제공이 불균형한 노력을 수반하거나 (b)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정보관리자에 의한 기록 또는 정보관리자에 의한 데이터의 공개가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정보관리자의 법적 의무의 준수에 필요한 것이다.[55] '불균형한 노력' (disproportionate effort)은 정보보호법에 정의되지 않는다. 정보위원은 이의 판단은 각 사건에서의 사실의 문제로서 데이터의 성격은 물론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56] 또한, 이들 요소는 정부주체에 대한 손해효과와 비교되어야 한다.

장관이 정한 추가적 조건에는 'The Data Protection (Conditions Under Paragraph 3 of Part II of Schedule 1) Order 2000 (SI2000/185)'가 있다.

일반적 개인정보

DPA의 제1원칙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제2부칙과 제3부칙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공정하고 적법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한다.[57] 우선,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일반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2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다.[58] 둘째,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절차를 밟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59] 셋째, 계약이 부과한 의무가 아닌 정보주체가 종속되는 다른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60] 넷째,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61]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은 그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것이다.[62] 다섯째, 정의의 수행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법에 따라 자 (person)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왕, 각료 또는 정부부처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수행된 공적 성격의 다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63] 여섯째, 정보관리자 또는 데이터가 공개되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이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또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특별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64] 장관 (Secretary of State)은 명령으로 동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65]

민감한 개인정보

55)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3(2)항.
56) Legal Guidance, p. 34.
57) 제2부칙과 제3부칙의 조건은 궁극적으로 정보위원이나 법원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58) DPA, 제2부칙 제1항.
59) DPA, 제2부칙 제2항.
60) DPA, 제2부칙 제3항.
61) DPA, 제2부칙 제4항.
62)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1/.
63) DPA, 제2부칙 제5항.
64) DPA, 제2부칙 제6(1)항.
65) DPA, 제2부칙 제6(2)항.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3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정보주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하여야 한다.[66] 둘째, 고용에 관련하여 정보관리자에게 법이 부과하거나 부여한 권리나 의무의 행사나 수행의 목적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67] 장관은 명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의 적용을 명령으로 배제하거나, 명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령에 명시될 수 있는 추가적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68] 셋째, 정보주체에 의하여 또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동의가 주어질 수 없거나, 정보관리자가 합리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나 다른 자 (person)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주체에 의하거나 정보주체를 위한 동의가 불합리하게 보류된 경우, 다른 자 (person)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69] 핵심적 이익은 생사에 관련된 것이다.[70] 넷째, 수익 (profit)을 위하여 수립되거나 수행되지 않고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는 노동조합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나 연합의 정당한 활동의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행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행되며, 기관이나 연합의 구성원이거나 기관이나 연합의 목적에 관련되어 기관이나 연합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개인에게만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관련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개를 수반하지 않는다.[71] 다섯째, 개인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정보주체의 고의적인 조치의 결과로서 공개되었다.[72] 여섯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장래의 법적 절차 (소송)를 포함하여 법적 절차의 목적이나 이와 관련되어 필요하거나, 법적 자문을 얻을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법적 권리를 확립하거나, 행사거나, 방어할 목적으로 달리 필요하다.[73] 일곱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의의 실행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법에 따라 자 (person)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왕, 각료 또는 정부부처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74] 장관은 명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의 적용을 명령으로 배제하거나, 명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령에 명시될 수 있는 추가적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75] 여덟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의료 목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건강전문가 또는 건강전문가라면 부담하였을 동등한 비밀의 의무를 상황에서 부담하는 자 (person)가 수행한다.[76] 여기서 '의료 목적' (medical purposes)은 예방의학 (preventative medicine), 의학진단, 의학연구, 처치의 제공 및 건강관리서비스 (health care services)의 목적을 포함한다.[77]

민감한 개인정보는 다음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78] 정보주체의 민

66) DPA, 제3부칙 제1항.
67) DPA, 제3부칙 제2(1)항.
68) DPA, 제3부칙 제2(2)항.
69) DPA, 제3부칙 제3항.
70)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1/.
71) DPA, 제3부칙 제4항.
72) DPA, 제3부칙 제5항.
73) DPA, 제3부칙 제6항.
74) DPA, 제3부칙 제7(1)항.
75) DPA, 제3부칙 제7(2)항.
76) DPA, 제3부칙 제8(1)항.
77) DPA, 제3부칙 제8(2)항.

족 또는 인종적 기원; 정보주체의 정치적 의견; 정보주체의 종교적 믿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믿음; 정보주체가 1992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법'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1992)에서의 노동조합 구성원인 여부; 정보주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또는 조건; 정보주체의 성생활; 정보주체의 범죄의 실행 또는 동 혐의; 정보주체가 실행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된 범죄에 대한 절차, 이러한 절차의 처분 또는 이러한 절차에서 법원의 판결.

제1원칙의 조건을 규정한 제2부칙과 제3부칙을 검토할 때 제1원칙을 준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지속된 처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79]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정보관리자는 제2부칙과 제3부칙의 다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0]

제1원칙의 위반

정보관리자의 제1원칙의 위반으로 정보주체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보위원은 집행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공정하게 획득한 정보는 정보보호법의 제55조와 관련하여 다른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St. Merryn Meat v. Hawkins사건[81]에서 원고는 전화 도청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사기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동 전화가 집 전화가 아닌 회사 전화라고 들은 법원은 가처분결정 (freezing and search order)을 내렸고, 피고는 동 전화가 집 전화이고 원고가 이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1998년 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정보에 의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한 동 결정을 취소하였다.

2. 제2원칙

DPP의 제2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하나 이상의 명시되고 적법한 목적으로 얻어져야 하고, 이들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82] 제2원칙은 'finality principle'[83]을 통합하여, 개인정보가 획득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의 처리를 제한한다. 정보관리자는 제2원칙은 개인정보가 명시되고 적법한 목적으로 획득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개인정보가 이들 목적에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처리될 수 없다는 요건의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제1원칙과 제2원칙은 개인정보의 획득과 더 이상의 처리에 적용된다. 제2원칙의 첫째 요

78) DPA, 제2조.
79)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1/. 정보주체의 동의를 갱신하는 권고된 기간은 매 5년이라고 한다. Id.
80)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1/.
81) LTL 2/7/2000, Jay, supra note , p.230에서 재인용.
82)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1부 제2항.
83) Rosemary Jay, *Data Protection Law and Practice*, 205 (2007) (이하 'Jay'라고 함).

건은 정보관리자에게 데이터가 요구되는 목적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84] 제2원칙에 대한 해석규정인 정보보호법의 제1부칙 제2부 제5항은 개인정보가 획득되는 목적이 특히 다음과 같이 명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준 통지(notice)에서, 또는 (b) 정보관리자가 정보위원에게 준 통보 (notification)에서.[85] 따라서, 개인정보가 명시되고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획득되어야 한다는 제2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이미 부담하는 의무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86] 즉, 정보관리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 방법은 제1원칙의 공정한 처리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정보의원에 대한 통보의 방법은 정보관리자가 정보위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통보하여 이러한 목적이 공개될 수 있는 등록부에 게재되게 하는 요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87] 정보관리자가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두 번째 통보 방법은 소용되지 않게 된다.

제2원칙의 둘째 요건은 개인정보가 획득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처리가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정보관리자는 동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의도된 목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88] British Gas사건에서 정보보호등록관 (Data Protection Registrar; 현재의 정보위원)은 British Gas가 1984년 정보보호법의 제2원칙과 제3원칙 (현재 정보보호법의 제2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그 이유는 British Gas가 제3자의 채무추심과 추적의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공개하였기 때문이다.[89] 예컨대, 김정보씨가 K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K전력회사의 전기공급을 받게 되었고, 김정보씨가 K전력회사의 전력공급서비스에 등록하였얼 때 고객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K전력회사는 김정보씨에게 달리 정보보호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정보보호당국에 대한 통보에서 전력 및 전력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되는 모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K전력회사가 김정보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서비스를 통하여 판촉자료를 발송한 것은 제2원칙에 위반이 된다.[90]

제2원칙이 적용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정보관리자의 원래의 명시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라는 계약적 의무를 부과하라는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는 달리 정보주체에게서 새로운 목적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91] 제2원칙을 위반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종종 추가적으로 제1원칙의 불공정한 처리에 해당되게 되어 제1원칙과 제2원칙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92]

---

84) Carey, supra note , p. 48.
85) 이들 두 가지 방법으로 '특히 명시될 수 있다' (may in particular be specified)라고 규정한 점에서 이들 두 가지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도 허용될 것이다.
86) Carey, supra note p. 49.
87) 정보보호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제3부 참조.
88) Carey, supra note , p. 49.
89) Carey, supra note , p. 49.
90) Carey, supra note , p. 49 참조.
91) 따라서, 정보관리자인 회사나 대학교의 직원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정보보호당국에 대한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는 경우 동 기관의 정보보호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존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변경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담당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2/
92) Carey, supra note , p. 49.

3. 제3원칙

DPP의 제3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처리되는 목적에 관련하여 적절하고, 관련되며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93] 제3원칙에 따라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3원칙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의 '적절성', '관련성' 및 '과도성'의 요건 중에서 정보관리자는 적절성 보다는 관련성과 과도성의 요건을 위반하기 쉽다.[94] 따라서, 정보관리자는 개인에게서 요청되는 정보가 적절하고, 관련되며 과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의 모든 경우를 검토하여야 하고,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것으로 고려된 정보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95] 예컨대, 고용신청서, 고객정보, 학생등록부 및 온라인등록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96]

예컨대, K고용알선회사는 구직자에게 자신의 표준고객양식에 그의 자동차운전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자동차 운전과는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구직을 원하는 김정보씨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번호를 구직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K고용알선회사는 제3원칙을 위반하게 된다.[97]

정보보호법은 제3원칙에 대한 해석규정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거 1984년 정보보호법의 제4원칙에 대한 판례가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제3원칙의 해석에 유용할 것이다. 예컨대, Community Charge Registration Officers of Runnymede Borough Council, South Northamptonshire District Council and Harrow Borough Council v. Data Protection Registrar (DA/90/24/49/3)사건에서 당시 정보보호법정 (현재의 정보법정)은 일정한 상황에서 '약간의 추가적 정보' (some additional information)의 보유는 허용될 수 있지만 여론조사양식 (canvass form)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답변에서 얻어진 상당한 분량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는 것은 주민세 (poll tax)의 부과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다.[98] 또한, Community Charge Registration Officer of Rhondda Borough Council v. Data Protection Registrar (DA/9025/49/2)사건에서 해당 주민세 등록관은 생년월일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세양식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지속하여 생년월일을 요구하였다. 동 등록관은 해당 지역에 성과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

---

93)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1부 제3항.
94) Carey, supra note , p. 50.
95) 개인정보의 폐기 (destruction)는 '처리'에 해당하므로, DPP, 특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보호장치를 요구하는 제7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정보관리자에게 익명화 작업은 폐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Carey, supra note , p. 53. 모든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폐기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2001년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에 규정된 '통신데이터' (communications data)가 그 예가된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보다 긴 보유기간이 허용된다. Carey, supra note , p. 53.
96) 예컨대, 학생이 자신의 대학교에 등록할 때 현재 거주지 이외에 이전의 거주지들에 관한 정보를 요구받는 것은 정보관리자인 대학교의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또한, 대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학위 수여나 성적표 발급 등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3/.
97) Carey, supra note , p. 50 참조.
98) Carey, supra note , p. 50. 영국의 동 주민세 (인두세)는 일정 연령 이상의 주민 각각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1993년 폐지되었다. 인두세 징수 목적에 각 주민의 재산 상황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 이러한 필요에 의한다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일한 성명의 사람들에 대하여만 생년월일이 요구되면 된다고 주장되었다. 이에 당시 정보보호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해당 주민세 등록관이 주민세등록부를 정리하고 유지할 그의 의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의 양을 상당하게 초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즉,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범위는 과도하고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99]

4. 제4원칙

DPP의 제4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정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100] 제4원칙은 그 자체로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는 것은 '필요한 경우' (where necessary)로 한정된다.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동 처리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는 동 회의의 정확한 기록이면 최신으로 유지될 필요가 없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는 수시로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101]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정보보호법은 '정확한' (accurate)의 용어를 정의하지 않지만, '부정확한' (inaccurate)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데이터가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 틀리거나 오도하면' (incorrect or misleading as to any matter of fact) 정보보호법의 목적으로 동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다.[102]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개인에 관한 의견의 표현을 포함하는데[103], 개인정보가 정확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현' (expression of opinion)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의견이 표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4원칙은 위반되지 않게 된다.[104]

정보관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의무는 정보관리자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동 의무는 달리 위임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점에서 정보주체에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을 정보관리자에게 통지하라고 하는 것은 제4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105] 반대로, 제4원칙에 따라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106] 따라서,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정기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전력회사 등 정보관리자는 매년 자신이 보유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설명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게 하거나, 웹사이트

99) Carey, supra note , p. 51.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제3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자는 개인의 주소에 동일한 성명을 가진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 그 개인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년월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Id.
100)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1부 제4항.
101) Carey, supra note , p. 52.
102) 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항.
103) 정보보호법, 제1조 제1항.
104) Carey, supra note , p. 51.
105) Carey, supra note , p. 51.
106) Carey, supra note , p. 51.

에서 안전하게 고객의 정보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107]

다음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부정확한 정보가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나 제3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경우에 제4원칙이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 개인정보가 얻어지고 더 이상 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둘째, 정보주체가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자신의 의견을 통지하고, 동 개인정보가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이다.[108] 위 첫째 경우에 정보관리자가 '합리적인 조치' (reasonable steps)를 취한 여부는 개인정보가 얻어진 목적 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다.[109]

실제에 있어서 제4원칙의 준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110] 예컨대, 대학 등 정보관리자의 어느 한 부문에 통보된 개인정보의 오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보유한 다른 모든 부문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관리자는 새로운 정보나 수정된 정보가 내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의 개인정보의 특정 측면이 각 단과대학 차원에서 보유될지 아니면 중앙행정부서 차원에서 보유될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11]

역사적 또는 연구 목적으로 보유된 개인정보는 제4원칙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역사적 기록을 구성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다. 예컨대, 대학교의 경우 졸업생의 학사기록이 졸업 후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순수한 역사적 기록이 되지 않을 것이다.[112] 즉, 졸업생의 과거 학사기록의 대부분이 추천서나 교우관계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들 기록은 역사적이지 않고, 동 기록에 관하여 대학교는 정보관리자로서 제4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113] 따라서, 졸업생이나 퇴직한 직원은 그들을 위하여 추천서나 개인신원증명 (personal references)가 작성되기 전에 최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되고, 정기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요청하는 단순한 서식이 졸업생명부 등의 모두에게 회람되며, 역사적, 통계적 또는 연구 목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면서 활용되는 관련파일링시스템에 보유된 개인정보는 현재 또는 장래의 처리활동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114]

5. 제5원칙

DPP의 제5원칙은 다음과 같다: "여느 목적을 위하여 처리된 개인정보는 동 목적에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보유되어서는 아니된다."[115] 따라서, 개인정보를 동 정보가 처리되었거나 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제5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관련 목적에 더 이상 관련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보호

107) Carey, supra note , pp. 51-52.
108)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7항.
109) Carey, supra note , p. 52.
110)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4/.
111)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4/.
112)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4/.
113)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4/.
114)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4/.
115)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1부 제5항.

법은 제5원칙에 관한 해석규정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정보관리자의 제5원칙의 준수에 적절한 구체적인 시간이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정보관리자가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개인에게 관련 데이터를 이용가능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보유기간은 이렇게 명시된 기간보다 길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소송의 목적에서 관련 시효기간 (limitation period)과 비교하여 최소한 동등한 시간 동안 보유되어야 할 것이다.[116]

제5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정보관리자는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와 동 처리 목적을 검토하고, 각각의 처리 유형에 관련하여 관련 목적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얼마나 보유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117] 이와 관련하여 정보관리자는 관련된 개인정보의 범주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을 규정한 '데이터보유정책' (data retention policy)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관리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 이러한 보유기간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정보보호당국에 의한 조사에서 이러한 데이터보유기간의 설정에 고민하였음을 나타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118]

실제에 있어서 제5원칙의 유용성이 발견된다. 제5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에 있어서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가 폐기된다면, 더 이상의 DPP와의 준수 여부의 수고가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19] 이 점에서 정보관리자는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제6원칙

DPP의 제6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권리에 일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120] 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관하여 정보관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강화한다. 또한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의 접근의 요청에 대하여 엄격한 시한 (prescribed period) 내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6원칙은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의 이러한 권리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접근 요청은 정보관리자가 동 요청을 접수한 후 40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121]

정보보호법의 제1부칙의 해석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만 제6원칙이 위반된다.[122] 첫째, 자 (person)가 정보보호법 제7조의 정보주체의 접근의 권리를 위반하는 경우[123]; 둘째, 자 (person)가 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라는 정당화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동 요청의 접수 후 21일 내에 동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124]; 셋째, 자 (person)가 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를 중단하라는 요청에 따

116) 영국법상 사고기록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적어도 3년 동안, 취직에 실패한 사람의 면접기록은 적어도 3개월 동안 보유되어야 한다. Carey, supra note , p. 53.
117) Carey, supra note , p. 52.
118) Carey, supra note , p. 52.
119)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5/.
120)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1부 제6항.
121) 정보보호법, 제7조 제10항.
122) 동 해석규정은 'if, but only if'라고 규정하여, 다음에서 설명되는 네가지 경우에만 제6원칙이 위반됨을 알 수 있다.
123)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8(a)항.
124)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8(b)항.

르지 않는 경우[125]; 넷째, 자 (person)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련하여 그러한 의사결정을 방지하거나 동 결정을 재고하라는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정보주체에게 결정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랐음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곧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위에서의 요청의 접수 후 21일 내에 동 요청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정보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126]

7. 제7원칙

DPP의 제7원칙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기술적 및 기관적 조치가 개인정보의 허가받지 않거나 불법적인 처리에 대하여 및 개인정보의 우연적인 멸실이나 폐기 또는 손상에 대하여 취해져야 한다."[127] 제7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을 규율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규정한다.

제7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128] 정보관리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소재한 사무실이나 문서함 등이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예컨대, 일정한 시간 동안 사무실이 비워 있을 때 문을 잠거야 하고, 문서함이 사용되지 않을 때 잠거야 하며, 이들에 대한 열쇠는 그 내용인 개인정보를 암시하지 못하는 식별자로 표기되어야 한다.[129] 정보관리자인 대학교 등 기관의 직원은 개인정보가 소재한 사무실이나 문서함 등에 대한 열쇠를 개인정보보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말거나,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은 적절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파일은 정보관리자의 직원 등에 의하여 컴퓨터나 수작업 파일의 형식으로 정보관리자의 시설로부터 옮겨져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록한 수작업 파일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옮겨져야 한다. 모든 개인컴퓨터는 내장 드라이브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를 걸어야 하고, 이러한 암호는 Unisys 등 정보기술회사 등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한다.[130]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암호는 즉시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정보관리자의 직원은 일과 후의 집에서의 작업 등의 이유로도 개인정보를 디스크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131]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는 적절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통하여 이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보호법의 제7원칙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7조에 기초한다.[132] 정보보호법의 제

125)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8(c)항.
126)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8(d)항.
127)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1부 제7항.
128)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7/.
129) 예컨대, 대학교에서 학사기록을 보관한 사물함의 열쇠는 '학사기록' 대신에 '제1사물함'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130)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Unisys 등의 회사직원의 신원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131) 불가피한 경우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32) 동 지침의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들은 관리자가 특히 처리가 통신망에 대한 데이터의 전송을 수반하는 경우에 우연하거나 불법적 파괴나 우연한 소실, 변경, 허가받지 않은 공개 또는 접근, 및 처리의 모든 다른 불법적 형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적절한 기술적이고 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그 이행의 기술 상황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는 처리와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위험에 적절한 보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7원칙과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7조는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될 것을 보장한다. 다만 두 규정의 차이가 발견된다. 즉,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성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위험 (risk)에 적절한 안전수준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데, 정보보호법의 제7원칙은 허가받지 않거나 불법적인 처리 등에서 결과할 수 있는 위해 (harm)에 적절한 안전수준의 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33]

제7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134] 실제에 있어서 특정 회사나 조직이 개인정보의 처리자인지 또는 관리자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135] 그럼에도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정보처리자는 다른 자를 위하여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정보관리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자는 이러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또한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개인정보의 처리운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 (degree of autonomy)이다.

정보관리자가 정보처리자를 선택할 때 정보관리자는,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처리를 규율하는 기술적 및 기관적 안전조치에 관하여 충분한 보장' (sufficient guarantees in respect of th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security measures governing the processing to be carried out)을 제공하는 정보처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36] 즉, 정보관리자는 이러한 정보처리자를 선정함으로써 제7원칙을 준수하게 된다.[137]

8. 제8원칙

DPP의 제8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유럽경제지역의 역외국가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는 유럽경제지역 밖의 국가나 영토로 이전되어서는 아니 된다."[138] 제8원칙의 개인정

133)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9항. 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술발전의 상황과 조치의 이행 비용을 고려하여, 조치는 다음에 적절한 안전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제7원칙에 언급된 허가받지 않거나 불법적인 처리 또는 우연적 멸실, 폐기 또는 손상으로 결과할 수 있는 위해; 및 (b)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성격."

134) 정보관리자는 '(혼자 또는 연대하거나 다른 자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관리자의 직원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정보보호법, 제1조 제1항. 여기서 '자' (person)는 개인 (individual)과 구별되는 법인 (legal person)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자는 항상 정보관리자와 구별되는 법적 실체가 되는데, 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자인 기업들의 그룹의 일부인 기업이 될 수 있다. Carey, supra note , p. 208.

135) 실제로 둘 이상의 정보관리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예컨대, 두 기업이 공동마케팅의 목적으로 고객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각 기업은 동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정보관리자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처럼 일정한 목적으로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개인정보가 이전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Carey, supra note , p. 212.

136)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11(a)항. 동 규정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7조 제2항을 반영한 것이다.

137)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11(a)항.

138)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1부 제8항.

보 반출금지는 원칙적으로 EU의 개인정보를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밖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및 리히텐시타인과 27개 EU회원국들 사이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전은 자유롭게 인정되는데, 이 경우 다른 7개의 DPP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인정보 반출금지의 논리는 EU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들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이들 국가에서 개별적인 정보주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EA 역외 국가들이 EU개인정보보호지침이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들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은 가능하다. '적절한 보호 수준'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은 다음을 고려하여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적절함을 의미한다:[139] (a) 개인정보의 성격, (b) 개인정보에 포함된 정보의 원산지 국가나 영토, (c) 개인정보의 최종 목적지 국가나 영토, (d)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의도된 목적과 기간, (e) 해당 국가나 영토에서 시행 중인 법, (f) 해당 국가나 영토의 국제의무, (g) 해당 국가에서 집행력 있는 관련 행동규범이나 다른 규범, 및 (h) 해당 국가나 영토에서 개인정보에 관하여 취해진 안전조치.

제8원칙은 EU 역내의 서버들 사이에서 통과하여 EU역외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발송될 수 있는 이메일에 적용되지 않는다.[140]

그러나, 세계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반출금지에 대한 다양한 예외가 인정된다. 정보보호법의 제4부칙은 제8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동의를 준 경우이다.[141] 둘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이다: (a)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b) 정보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절차를 밟기 위하여.[142] 셋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이다: (a)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체결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이 되는 정보관리자와 정보주체가 아닌 자 (person)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또는 (b)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143] 넷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상당한 공적 이익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이다. 장관은 명령으로 다음을 명시할 수 있다: (a) 이전이 상당한 공적 이익의 이유로 필요하다는 위의 목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상황과 (b) 법으로 요구되지 않는 이전이 상당한 공적 이익의 이유로 필요하다는 위의 목적으로 취해지지 말아야 하는 상황.[144] 다섯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다음의 경우에 필요하다: (a) 장래의 법적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목적이나 연관되거나, (b) 법적 자문을 얻을 목적이거나, (c) 달리 법적 권리를 확립하거나, 행사하거나 또는 방어할 목적인 경우.[145] 여섯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146] 일곱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공적으로 등록된 개인정보의 일부이고 그 등록이 검사되는 조건이 이전 후 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는 자 (person)에 의하여

139) 정보보호법, 제1부칙 제2부 제13항.
140) http://www.dur.ac.uk/data.protection/dp_principles/principle8/.
141)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1항.
142)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2항.
143)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3항.
144)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4항.
145)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5항.
146)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6항.

준수되는 경우이다.[147] 여덟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정보위원이 승인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148] 아홉째,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보위원이 허가한 경우이다.[149]

9. 면제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DPP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면제가 허용된다. 일부 면제는 특정의 개별적 DPP에 관련되고, 또다른 일부 면제는 하나 이상의 DPP의 특정 측면에 관련된다. 다음의 두 경우에 정보관리자는 모든 DPP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처리; 및 가사 목적으로 처리.

147)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7항.
148)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8항.
149) 정보보호법, 제4부칙 제9항.

II. EU개인정보보호지침 개관[150)]

1. 의의

1995년 10월 정보보호지침[151)]이 채택되기 전에도 EU회원국들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관련 국내법규범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 국가의 사정과 전통에 따라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제한하였고, EU의 공동시장 (common market)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전되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들 정보보호당국의 등록 또는 허가가 요구되었고, 각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EU차원의 통일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결국 정보보호지침이 채택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권리는 EU의 기본권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고[152)], 리스본조약으로 개정된 'EU기능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제16조는 EU법의 모든 활동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153)] 2005년으로 채택된지 10년이 된 정보보호지침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보보호지침은 EU에 소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행된 활동에 적용된다.

정보정보보호지침의 주된 목적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가공에 있어 해당 개인을 보호하며, 둘째, EU내에서 각 회원국 국내법의 조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154)] EU의 정보보호지침은 일종의 골격규범으로서 각 회원국은 자신의 국내법제도를 통하여 동 지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EU회원국들에서 개인정보의 동일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목적을 1998년 10월 24일까지 이행하여야 하였다.[155)]

흥미로운 점은 각 회원국이 정보보호지침을 국내법상 이행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각 회원국별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156)] 따라서 EU의 기업은 자신이 소재한 또는 자신의

---

150) 본고의 대상인 정보보호지침 이외에 통신상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지침 (Directive 97/66/EC)가 채택되어 있다: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동 지침에 따라 EU회원국들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통신의 청취, 도청, 저장 또는 어떤 종류의 간섭 등은 불법이다.

151)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995 O.J. (L281) 0031-0050. 정보보호지침은 1995년 12월 13일 발효하였다.

152) 동 헌장 제8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153) 동 조약 제16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cerning them."

154) 정보보호지침 제1조.

155) 정보보호지침의 EU회원국에서의 이행 상황은 부록 참조.

156) EU법상 지침 (directive)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입법형식이다. 각 회원국은 지침이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목적을 자신의 국내실정에 맞는 형식과 수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직원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EU의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EU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범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1995년 10월 채택되었다. EU법상 EU회원국은 지침 (directive)을 동 지침에서 규정된 일자 내에 국내법제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지침이 EU회원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들 회원국의 입법조치는 해당 지침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27개 EU회원국들은 물론 아이스랜드, 리히텐시타인 및 노르웨이의 EU회원국이 아닌 3개 역외국가들도 채택한 것이 흥미롭다. 사실상 영국의 지배를 받는 건지섬 (Guernsey)과 저지섬 (Jersey)으로 구성된 채널제도 (Channel Islands) 및 맨섬 (Isle of Man)에 대하여 동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1998년 10월 24일까지 이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오직 스웨덴만 동 이행일자를 준수하였다. 동 지침의 이행일자는 2001년 10월 24일로 연기되었도, 영국은 2000년 3월 1일 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DPA)에 따라 동 지침을 이행하였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다음의 두 가지 주된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골격입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157] 첫째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되는 조건, 데이터주체의 권리 및 데이터의 품질 기준을 규정한다. 둘째 목적은 EU회원국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의 조화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모든 회원국들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동일한 수준을 확립하여 EU역내에서 회원국들의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이전을 촉진한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동 지침은 온라인이거나 오프라인 및 자동적이거나 수작업이 필요한 여부를 불문한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에 적용된다.[158] 예컨대 소비자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소비자의 이름 순서대로 정리한 카드파일도 정보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정보보호지침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다. 즉, 동 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사용된 기술적 수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들어나지 않는' (invisible) 수집도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들어나는' (visible) 방법으로 수집되는 경우에, 자신의 정보를 이전하는 개인은 이러한 이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은 관련 위험에 대하여 적절하게 통보받았어야 한다.

예컨대, 고용주나 기업의 직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정보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정보보호지침은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가족적 활동에서 사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159] 즉, 가족관계나 친우관계를 정리한 전자적 개인일기는 정보보호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정보보호지침은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의

157) Peter Carey, *Data Protection: A Practical Guide to UK and EU Law* 6 (2009).
158) 정보보호지침 제3.1조.
159) 정보보호지침 제3.2조.

관할권 밖의 영역인 공공의 안보, 국방 또는 형사법의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정보보호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160] 또한, 정보보호지침의 보호를 받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이들 두 자유 또는 기본권은 똑같이 중요하며, 이들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EU에서는 회원국들이 이들 두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각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에서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도 한다.[161]

2. 구조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크게 전문에 해당하는 72개 리사이틀 (recital)과 34개 조문의 본문으로 구성된다. 72개 리사이틀은 동 지침이 채택된 배경과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본문의 개별적 조문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162] 본문은 7개 장 (chapter)과 최종규정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서 제1조에서 동 지침의 목적, 제2조에서 정의, 제3조에서 동 지침의 적용범위, 제4조에서 적용가능한 국내법을 규정한다. 제2장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일반규칙으로서, 9개 절 (section)으로 구성된다. 제6조로 구성된 제1절은 데이터의 질에 관한 원칙, 제7조로 구성된 제2절은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하게 하는 기준, 제8조와 제9조로 구성된 제3절은 처리의 특별한 범주, 제10조와 제11조로 구성된 제4절은 정보주체에 주어져야 하는 정보, 제12조로 구성된 제5절은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리, 제13조로 구성된 제6절은 면제와 제한, 제14조와 제15조로 구성된 제7절은 정보주체의 반대할 권리, 제16조와 제17조로 구성된 제8절은 개인정보 처리의 비밀성과 보안, 제18조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로 구성된 제9절은 통지를 규정한다. 제3장은 사법구제, 책임 및 제재로서,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가 각각 이를 규정한다. 제4장은 개인정보의 제3국에 대한 이전으로서, 제25조에서 원칙, 제26조에서 예외를 규정한다. 제27조로 구성된 제5장은 행동규범을 규정한다. 제6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작업반과 감독당국으로서, 제28조에서 감독당국, 제29조와 제30조에서 작업반을 규정한다. 제31조로 구성된 제7장은 공동체 이행조치를 규정한다.

3.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 수단 (automatic means)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고, 개인을 참조하여 구성되는 파일링시스템에 보유된 수작업 데이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동 지침은 EU조약의 Titles V와 VI, 공공안전, 국방, 국가안보 (개인정보의 처리가 회원국의 안보에 관련되는 경우 회원국의 경제복지를 포함), 및 형

160) 정보보호지침 제3.2조.
161) 정보보호지침 제9조.
162) EU에서 채택된 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문들로 구성된 본문의 앞에 해당 법의 채택 이유 등을 설명한 리사이틀을 규정한다. 'Whereas ...'로 시작하는 리사이틀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고, EU의 초국가적 공동체 성격에서 요구된 것으로 이해된다. T. Klimas & J. Vaiciukaite, "The Law of Recitals in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15 ILSA Journal of Int'l & Comparative Law 1 (2008) 참조.

사법 분야의 회원국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지침은 가사활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개인정보 처리의 조건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6조는 개인정보가 처리될 때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이들 원칙은 1984년 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적용범위는 더 크다.[163] 제7조는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많은 조건을 규정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만 처리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첫째,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둘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셋째,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넷째, 공공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다섯째, 정보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과 자유가 이러한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감한 개인정보

사람의 일정한 민족 또는 인종적 기원, 정치적 의견, 종교적 또는 철학적 믿음, 노동조합 회원자격, 건강 또는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는 데이터의 특별범주 및 법의 위반과 유죄 판결에 관한 데이터는 일정한 엄격한 조건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8조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를 요구한다. 단, 회원국 법이 민감한 정보의 처리의 금지가 동의를 주는 정보주체에 의하여 해제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정한 수집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0조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나 제3자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정보관리자의 신원,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 및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규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

EU개인정보보호지침이 규정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2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합리적인 간격으로 제약 없이 및 지나친 지연이나 비용 없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완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교정, 삭제 또는 차단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경우 처리를 중단시킬 수 있고, 또한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데이터의 자동적 처리에만 의존하고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결정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동 결정이 결과가 정보주체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계약에 연계되지 않아야 하고, 법으로 허가되지 않아야

163) Carey, supra note , p. 7.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보안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7조는 개인정보가 우연하거나 불법적 파괴네 우연적 손실로부터 보호되도록 데이터의 안전이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데이터는 허가받지 않은 수정, 공개 또는 접근 및 다른 모든 형식의 불법적 처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 수준은 개인정보의 처리로 야기되는 위험과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적절하여야 하고, 기술 수준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책임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23조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처리운용이나 동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보관리자에게 배상책임를 규정한다.

(8). 외국에의 이전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25조는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가 의도된 개인정보가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164] 역외로 이전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제3국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주거나 이전이 계약의 이행이나 공공이익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9). 정보보호당국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28조는 각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동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의 적용을 감독할 감독당국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감독당국에 통지되고 등록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 통지요건의 면제 또는 단순화가 인정된다. 수작업의 처리에 대한 감독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0). 제29조 작업반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29조는 소위 '제29조 작업반' (Article 29 Working Party)의

164) 유럽자유무역지역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을 구성하는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및 리히텐시타인이 유럽연합의 내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1993년 3월 17일 채택되고 1994년 1월 1일 발효한 EEA협정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에 따라 EEA가 수립되었다. EFTA의 또 다른 구성국인 스위스는 EU와 별도의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http://www.efta.int/eea/eea-agreement.aspx 참조. EU개인정보보호지침이 개인정보의 EU역외가 아닌 EEA역외로의 이전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EEA의 EFTA 3개 국가들에서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이 적용되어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치를 규정한다. 동 작업반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는 독립된 기관이다.[165] 동 작업반은 EU회원국들의 정보보호당국의 대표와 유럽정보보호감독관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로 구성된다. 동 작업반은 EU의 프라이버시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 권고를 한다. 동 작업반의 의견 등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동 작업반의 구성원 등을 고려할 때 실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예컨대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연구에 있어서 정보법정 (Information Tribunal)의 판례와 정보위원 (Information Commissioner)의 지침 (guidance)는 물론 제29조 작업반의 권고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4.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 움직임[166]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4일 1995년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2011년에 동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지침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최소한의 필요에 따르도록 개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둘째,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개인정보의 원활한 자유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일시장 (single market) 차원이 제고된다. 셋째, 개인의 개인정보가 경찰과 형사정의 분야에서도 보호되도록 이들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이 개선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6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트래픽데이터 (traffic data)를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2006년 데이터보유지침 (Data Retention Directive)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EU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의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하여 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한다. 다섯째, 정보보호당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조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된다.

유럽위원회는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을 위하여 2009년 5월 고위급회의 (high-level conference)를 개최하고, 2009년 말까지 공공협의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중에는 특정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수행하였고, 2010년 1월 '정보보호의 날' (Data Protection Day)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인 Viviane Reding은 자신의 전직 정보사회위원 (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er)의 지위에서 EU의 정보프라이버시규범의 개선을 천명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후 2011년 1월 15일까지 이해당사자들 및 일반인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럽위원회는 2011년에 새로운 '일반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 (general data protection legal framework)를 위한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

165) 제29조 작업반에 관하여 http://ec.europa.eu/justice/policies/privacy/workinggroup/index_en.htm 참조.

166) 아래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sets out strategy to strengthen EU data protection rules" (IP/10/1462, 4 November 201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0/1462&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fr 참조.

=======

흥미로운 점은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이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EU에 소재한 정보가 제3국에 이전되기 위하여 해당 제3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달리 고용주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현재 EU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에 대하여 '안전지대' (Safe Harbor) 등의 장치 등을 통하여 이들 제3국이 EU에 유사한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EU에 소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면서 EU의 정보보호지침 및 각 회원국 국내 법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이 개인정보를 EU에서 제3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보보호지침은 개인의 정보 보호 즉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규제적인 접근을 규정한다. 여기서 개인정보 (personal data)는 '확인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련된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이다.[167]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이란 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특정적인 요소나 그 개인의 신분번호 (identification number)를 참조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168] 따라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또는 사진과 같이 개인에 관한 어떤 정보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채택된 회원국의 관련 법규범은 기업의 직원은 물론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도 적용된다.

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한다. 정보의 처리는 단순한 전달 (transmission)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69] 예컨대, 개인정보를 복사하거나 파일에 기재하는 것도 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종이나 소수민족적 기원, 노조가입, 정치나 종교적 믿음, 또는 건강이나 성생활과 같은 민감한 정보 (sensitive data)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처리될 수 없다.[170] 예컨대, 해당 개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정보처리에 동의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처치를 위한 혈액형 검사와 같이 개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정인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EU회원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즉 정보통제자 (data controller)의 올바른 정보관리를 요구한다. 정보통제자는 정보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동당국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171] 정보처리자 (data processor)는 정보통제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당국과 기관을 의미한다.[172] 예컨대, 환자의 질환 등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점에서 의사는 물론 직원 및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정보통제자 또는 정보처리자가 된다. 정보통제자는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에서의 정보처리에 관한 법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처리된 정보가 다

167) 정보보호지침 제2(a)조.
168) 정보보호지침 제2(a)조.
169) 정보보호지침 제2(b)조.
170) 정보보호지침 제8.1조.
171) 정보보호지침 제2(d)조.
172) 정보보호지침 제2(e)조.

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개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73] 정보통제자가 EU밖의 제3국에 설립된 경우에도 컴퓨터 기기 등 개인정보의 처리 장치가 EU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 회원국 관련 법규범이 적용된다.[174]

정보통제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마다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제자는 해당 개인 즉 정보의 주체 (data subject)에게 자신의 신분, 정보 처리의 목적, 정보의 수령자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해당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통보하여야 한다.[175] 이렇게 정보의 주체는 정보통제자에게서 위의 통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정보의 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통제자에게도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176] 그러나 과학 또는 통계의 목적으로 처리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의 주체가 가지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177]

또한, 정보의 주체는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보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정보의 출처에 관한 입수가능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에 정보의 주체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178] 이런 경우 정보의 주체는 정보통제자로 하여금 이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본 제3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79] 또한, 은행 대부의 허가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의 자동적 처리 (automated data processing)에 근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수집된 정보에 대한 타당성을 토론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채택하여야 한다.[180]

또한,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범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감독기관 (superviosry authority) 즉, 독립적인 정보보호당국 (data protection authority: DPA)을 설치하여야 한다.[181]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정보통제자, 즉 기업은 동 정보의 처리 전에 정보보호당국에 등록 또는 통고하여야 한다.[182] 동 기업은 정보보호당국에게 정보처리의 목적, 정보가 처리되는 개인의 범주 및 동 정보의 종류, 동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수령자 (recipients)의 범주, 제3국에 대한 제안된 정보의 이전, 및 안전장치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183] 물론 기업은 해당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등록 또는 통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184]

정보의 주체가 정보의 보호에 있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에 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침해자로 보이는 자를 접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촉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정보의 주체는 정보보호당국을 접촉할 수 있다.

173) 정보보호지침 제4.1(a)조.
174) 정보보호지침 제4.1(c)조.
175) 정보보호지침 제10조.
176) 정보보호지침 제12조.
177) 정보보호지침 제13.2조.
178) 정보보호지침 제12(b)조.
179) 정보보호지침 제12(c)조.
180) 정보보호지침 제15조.
181) 정보보호지침 제28조.
182) 정보보호지침 제18조.
183) 정보보호지침 제19조.
184) 정보보호지침 제18조.

정보보호당국은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이 제기한 이의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정보의 처리를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정보보호당국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범의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명령하고 추가적인 정보 처리를 금지할 수 있다. 정보보호당국이 정보의 주체에 대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주지 못하면, 법원에 정보보호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하여 정보의 주체는 정보보호의 침해를 제거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위반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이의를 들을 수 있다.[185] EU차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감독자가 임명되어 있다.[186] 유럽위원회는 EC조약상 공동체법이 회원국들에서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보보호지침을 포함한 공동체법을 적시에 올바르게 이행할 책임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 유럽위원회는 공동체법을 위반한 회원국을 EC사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분쟁에 유럽위원회는 개입할 수 없다.

185) 회원국의 정보보호 위반에 관하여 다음의 주소로 유럽위원회에 연락하면 된다.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or the attention of the Secretary-General), Rue de la Loi 200, B-1049 Brussels. 또는 http://europa.eu.int/comm/sg/lexcomm으로 유럽위원회 인터넷을 방문할 수도 있다.

186) Mr Peter HUSTINX and Mr Joaquin BAYO DELGADO가 5년 임기로 각각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와 Assistant Supervisor로 임명되어 있다. 이들의 주소는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Rue Wiertz, 60, B - 1047 Bruxelles/Brussel이고, 웹사이트는 http://www.edps.eu.int이다.

III.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1. 의의

영국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980년 OECD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채택하고, 1981년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가 관련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범이 채택되면서, 영국도 관련 입법을 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은 1981년 유럽평의회협약을 반영하여 1984년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84)을 채택하고, 1995년 채택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반영하여 1998년 정보보호법을 다시 채택하였다.[187] 1998년 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2000)이 2000년 채택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율하여 영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기본법이 된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1998년 정보보호법이 채택되고,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2000년 정보자유법이 채택되었다. 전자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1999년 '통신(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규정' (Tele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1999)이 채택되었지만, 2003년 채택된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규정'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에 의하여 대체되었다.[188] 또한 2000년 '전자통신(합법적 사업관행) (통신차단)규정' (Telecommunications (Lawful Business Practice)(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Regulations)도 관련된다.[189] 1974년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 1974) 및 이를 개정한 2006년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 2006)은 신용정보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90] 1997년 경찰법 (Police Act 1997)은 형사기록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91] 의료정보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1988년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의 법'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과 1990년 '건강기록에 대한 접근의 법'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이 채택되었다.[192] 생존하는 환자의 건강기록에

187) 1994년 정보보호법과 비교할 때 1998년 정보보호법의 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4년 정보보호법은 컴퓨터에 보유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1998년 정보보호법은 수작업에 의하여 기록된 정보도 포함한다. 둘째, 1984년 정보보호법은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1998년 정보보호법은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1984년 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공개의 결과로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였는데, 1998년 정보보호법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188) 2003년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규정'은 2002년 EU가 채택한 'EU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동 규정의 내용은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3/2426/contents/made 참조.

189) 동 규정의 내용은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0/2699/contents/made 참조.

190) 2006년 소비자신용법의 내용은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14/contents 참조.

191) 1997년 경찰법의 내용은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50/contents 참조.

192) 이들 두 법의 소개는 http://www.dh.gov.uk/en/Managingyourorganisation/Informationpolicy/Patientconfidentialityandcaldicottguardians/DH_4084411 참조.

대한 접근은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망한 사람의 건강기록에 대한 접근은 1990년 '건강기록에 대한 접근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구조

1998년 정보보호법은 6개의 장 (Part), 75개 조문 (Section) 및 16개 부칙 (Schedu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문 (Preliminary)으로서 제1조, 제2조와 제3조에서 동 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정보보호원칙, 제5조에서 동 법의 적용범위, 제6조에서 정보위원과 정보법정을 규정한다. 제2장은 정보주체와 기타인의 권리를 규정하는데, 제7조와 제8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 제9조에서 정부관리자가 신용조회기관인 경우의 제7조의 적용, 제9A조에서 공공당국이 보유한 구성되지 않은 개인정보, 제10조에서 손해 등을 초래할 것 같은 처리를 방지할 권리, 제11조에서 직접마케팅 목적의 처리를 방지할 권리, 제12조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리, 제12A조에서 적용면제 수작업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제13조에서 요건 미준수에 대한 배상, 제14조에서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교정, 차단, 삭제 및 폐기, 제15조에서 제2장 규정에 대한 법원 관할을 규정한다. 제3장은 정보관리자의 통지를 규정하는데, 제16조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17조에서 등록하지 않은 처리의 금지, 제18조에서 정보관리자의 통지, 제19조에서 통지의 등록, 제20조에서 변경 내용의 통지 의무, 제21조에서 정보관리자의 위반, 제22조에서 정보위원의 예비평가, 제23조에서 정보보호감독자의 임명 규정 권한, 제24조에서 일정한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할 일정한 정보관리자의 의무, 제25조에서 통지규정에 관련한 정보위원의 기능, 제26조에서 수수료 규정을 규정한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에 규정된 원칙과 규정의 면제를 규정하는데 제28조에서 국가안보, 제29조에서 범죄와 조세, 제30조에서 건강, 교육 및 사회복지, 제31조에서 규제적 활동, 제32조에서 언론, 문학 및 예술, 제33조에서 연구, 역사 및 통계, 제33A조에서 공공당국이 보유한 수작업 데이터, 제34조에서 법에 따라 공중에게 이용가능한 정보, 제35조에서 소송 등에 연계되거나 법이 요구한 공개, 제35A조에서 의회 특권, 제36조에서 가사 목적, 제37조에서 기타 면제, 38조에서 명령에 의한 추가적 면제의 권한, 제39조에서 과도적 면제를 규정한다. 제5장은 집행을 규정하는데, 제40조에서 정보위원의 집행 통지, 제41조에서 집행 통지의 취소, 제42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동 법의 준수 여부의 평가 요청, 제43조에서 정보 요청의 통지, 제44조에서 특별한 정보 요청의 통지, 제45조에서 정보위원의 특별 목적의 결정, 제46조에서 특별 목적의 처리의 경우 집행에 대한 제한, 제47조에서 통지의 미준수, 제48조에서 상소의 권리, 제49조에서 상소의 결정, 제50조에서 출입 및 조사의 권한을 규정한다. 제6장은 기타 및 일반 규정을 규정하는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에서 정보위원의 기능, 제55조에서 개인정보의 불법 입수 등, 제56조와 제57조에서 정보주체의 접근권에 따라 입수된 기록, 제58조와 제59조에서 정보위원과 정보법정에 제공된 정보, 제60조와 제61조에서 위반에 관련된 일반 규정, 제63조부터 제75조까지 일반 규정을 규정한다.

제1부칙은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관련하여 정보보호원칙, 제2부칙과 제3부칙은 제4조 제3항에 관련하여 제1정보보호원칙의 관련 조건, 제4부칙은 제4조 제3항에 관련하여 제8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5부칙은 제6조 제7항에 관련하여 정보위원와 정보법정, 제6부칙은 제28조 제12항과 제48조 제5항에 관련하여 상소 절차, 제7부칙은 제37조

에 관련하여 기타 면제, 제8부칙은 제39조에 관련하여 과도적 경감, 제9부칙은 제50조에 관련하여 출입 및 조사의 권한, 제10부칙은 제53조 제6항에 관련하여 제53조의 지원에 관련된 추가적 규정, 제11부칙은 제68조 제1(b)호에 관련하여 교육기록, 제12부칙은 제68조 제1(c)호에 관련하여 접근가능한 공공기록, 제13부칙은 제72조에 관련하여 2007년 10월 24일 전에 발효하는 동 법의 수정, 제14부칙은 제73조에 관련하여 과도적 규정과 유보, 제15부칙은 제7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소하고 결과적 개정, 제16부칙은 제74조 제2항과 관련하여 폐기 및 무효를 규정한다.

3. 주요 내용

IV. 개인정보의 개념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의 생활화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국내 및 국제적 공간을 극복하고, 기업과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전자거래 등을 통한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끊임없이 침해의 위협을 받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집, 축적 및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인터넷의 활용으로 기업과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 목적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축적 및 이용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써 정보화사회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상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기업 등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축적 및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탈취나 변조로 인하여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화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2008년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게 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게 되는 동 법률안 제2조는 개인정보 (제1호)와 개인정보파일 (제4호)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1980년 OECD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personal data)를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련된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의하였고,[193]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 (personal data)를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관련된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라고 정의하고 있다.[194] 일응 법률안의 개인정보의 개념은 OECD나 EU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OECD의 영향을 받은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동 지침을 이행하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개념은 한국의 개인정보의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95]

---

193) 1980년 OECD가이드라인, 부속서 1항.

194)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2(a)조.

195) 마침 법률안의 개인정보 등의 개념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EU와 영국의 관련 규정을 법률안과 비교한 것인데, 그 분석에 있어 개념의 혼동이 보인다. 동 시도는 '개인정보'를 'personal information', '기록'을 'data', '개인기록'을 'personal record'와 'personal data'로 부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p.70 (2008). [이하 '개인정보법입법평가'라 함].그런데, OECD, EU 및 영국의 관련 규정의 기본개념인 '개인정보'는 'personal data'로 부르고, 영국의 경우 'data'의 하부구조로 'inform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서구의 'personal data'를 '개인정보'로 부르면서, 영국의 경우 그 하부구조인 'information'은 '정보'와 달리 '자료'라 부르기로 한다. 이들 개념의 명칭은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 용어의 올바른 이해는 관련 주제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 관련 법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개인정보'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때, 다른 관련 개념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영국의 1998년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DPA)에 규정된 개인정보와 데이터 (data)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운영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영국 정보보호법과 EU개인정보보호지침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DPA)은 동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personal data)의 정의에 포함되는 정보에게 적용된다. DPA는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의 이행에 따라 채택되었다.[196] 또한, EU의 리스본조약 (Lisbon Treaty)의 발효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EU의 '기본권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의 제8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97]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 및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것이다.[198] '개인정보' (personal data)는 동 지침의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 (정보주체)에 관련된 정보".[199] 개인정보의 핵심은 정보가 신원이 확인되거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개인에 관련되느냐 여부이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 수단 (automatic means)에 의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수단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파일링시스템[200]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하도록 의도된 경우에 동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된다.[201] 이렇게 하여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가 신원의 확인이 가능한 개인에게 관련되는지 고려하고, 또한 동 지침의 범주 내에서 정보를 불러오는 자동화 수단 및 파일링시스템 내에서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두 가지 유형을 기술한다.[202]

개인정보는 영국 DPA[203] Section 1(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생존하는 개인에 관

196) OJ L281, p. 31 (23 November 1995).
197)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198) EU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조. 동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 States shall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natural persons, and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privacy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99)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200) EU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c)호의 정의 참조.
201) EU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
202)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Data Protection Technical Guidance: Determining what is personal data* p. 3 (21.08.07) [이하 'ICO Technical Guidance'라 함].
203) DPA는 chapter, part, section, subsection, paragraph의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별도로 schedule을 두고 있다. schedule은 chapter에 준하여 이해하면 될 것이고, section은 일반적인 '조'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련되는 데이터'.[204] 영국 DPA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있어서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정의보다 확대하여 '개인에 관한 의견의 표현과 개인에 관하여 정보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의도의 표시'를 포함한다.[205]

영국 DPA의 개인정보의 정의는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지를 반복하지만, 그 정의에 있어 동 지침의 순서와 반대가 되고 있다.[206] 즉, DPA는 문제의 정보 (information)가 '데이터' (data)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처리의 성격이 자동화 수단에 의한 처리인지 파일링시스템을 위한 수작업처리인지를 먼저 고려하고, 동 데이터가 식별가능한 개인에게 관련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인지를 고려한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과 영국 DPA는 정보의 두 가지 공통범주에 적용된다. 첫째 범주는 자동화 수단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처리되거나 처리되도록 의도된 정보이다. 즉, 전자적 형식의 정보이다. 둘째 범주는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하도록 의도된 자동화되지 않은 수단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이다. 즉, 파일링시스템의 수작업에 의한 정보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의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207] 즉, 처리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범위에 해당하고 정보가 영국 DPA 목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지와 문제의 정보가 식별가능한 개인에게 관련되는지이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가 결정된다.

DPA는 정보가 식별가능한 개인에게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정보의 수작업 처리의 두 가지 유형을 추가적으로 규정한다.[208] 이들 처리의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DPA의 데이터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접근가능기록' (accessible record)[209]의 일부로서 정보의 처리이고, 둘째는 공공당국 (public authority)이 보유한 기록된 정보의 처리이다. 두 번째 유형은 'e'유형의 데이터라 불린다.[210] 결국 영국 DPA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데이터에 관련된다:[211] 첫째, 전자적 데이터 (electronic data), 둘째, 관련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데이터, 셋째, 위의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관계없이 접근가능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데이터, 및 넷째, 위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관계없이 공적당국이 기록한 데이터이다. 정보가 'e'유형 데이터이고 위의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DPA의 적용은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

영국 DPA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개념을 영국 DPA에 따라 분석한다. DPA의 개인정보 (personal data)는 먼저 데이터 (data)가 되어야 하고, 데이터는 정보 (information)가 되어야 한다.

---

204)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data which relate to a living individual.'
205)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expression of opinion about the individual and any indication of the intentions of the data controller or an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individual.'
206)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3.
207)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4.
208)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4.
209) 접근가능기록은 DPA Section 1(1)(d) 및 Section 68 참조.
210) DPA section 1(1)(e).
211)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5.

2. 데이터의 개념

영국 DPA의 적용을 받는 '데이터' (data)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212)]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a)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지시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장비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정보],

(b) 이러한 장비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기록된 [정보],

(c) 관련파일링시스템의 일부로서 또는 관련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도로 기록된 [정보],

(d) (a), (b) 또는 (c)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Section 68에서 정의된 접근가능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 또는

(e) 공공당국이 보유한 기록된 정보이면서 (a)호에서 (d)호까지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보][213)]

영국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 (personal data)가 되기 위하여 먼저 '데이터' (data)가 되어야 하고, DPA의 데이터는 위에서 규정된 정의에 해당하는 '정보' (information)에 국한된다. 그런데, 영국 DPA에서 '정보' (information)의 개념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214)] 마침 OECD는 'information'과 'data'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즉, '데이터' (data)는 '인간 또는 자동화 수단에 의한 통신, 해석 또는 처리에 적합한 공식화된 방식으로 사실, 개념 또는 지시의 표현' (a representation of facts, concepts or instructions in a formalised manner suitable for communication, interpretation or processing by human beings or by automatic means)으로 정의되었다. '정보' (information)는 'data'에 적용되는 관례의 수단으로 동 데이터에 부여되는 의미' (the meaning assigned to data by means of conventions applied to that data)로 정의되었다.[215)] 위 OECD가이드라인이 'data'와 'information'을

212) DPA Section 1(1).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data" means information which –
(a) is being processed by means of equipment operating automatically in response to instructions given for that purpose,
(b) is recorded with the intention that it should be processed by means of such equipment,
(c) is recorded as part of a relevant filing system or with the intention that it should form part of a relevant filing system, or
(d) does not fall within paragraph (a), (b) or (c) but forms part of an accessible record as defined by section 68; or
(e) is recorded information held by a public authority and does not fall within any of paragraphs (a) to (d)."

214) 철학 분야에서는 'information'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에서 'data'와 'information'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Information is data that has been processed into a form that is meaningful to the recipient" (Davis and Olson, 1985); "Data is the raw material that is processed and refined to generate information." (Silver and Silver, 1989); 또는 "Information equals data plus meaning" (Checkland and Scholes, 1990), LUCIANO FLORIDI, "IS SEMANTIC INFORMATION MEANINGFUL DATA?," LXX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353 (2005). 따라서 적어도 철학 분야에서는 'information'이 'data' 보다 더 정치한 또는 의미를 통하여 더 발전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해는 아래 OECD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정의와 유사하다.

구별하여 정의를 내렸지만, 그럼에도 동 가이드라인에서 이들 두 용어는 하나의 용어 ('data and information')처럼 함께 사용되었다.

DPA에 규정된 데이터는 민간부문과 정부 등 공공당국이 보유한 정보로 구분된다. 위의 규정에서 (d)호와 (e)호의 정보는 공공당국에만 적용된다. 또한 데이터는 컴퓨터 등과 같은 장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처리[216]되는 자동화 데이터와 관련파일링시스템에 해당하는 정보인 '수작업 데이터' (manual data)로 구분된다. 영국 DPA에서 특정된 수작업 데이터가 개인정보의 일부로서 보호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자동화 데이터

자동화 데이터 (computerized data)는 (a) 처리되는 목적으로 주어진 지시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장비 (자동화 장비)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정보와 (b) 이러한 자동화 장비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기록된 정보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들 두 정보의 차이는 처리의 현재성 여부이다. 즉, (a)의 자동화 데이터는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CCTV, 자동개찰기 등 자동화 장비를 통하여 현재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217] (b)의 자동화 데이터는 정보관리자가 후일에 처리할 의도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CD나 문서이미지시스템에 보관한 것을 가리킨다. 즉, 해당 정보의 처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이다. 그런데, 정보를 자동화 장비로 처리할 의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밖의 국가나 영역으로 정보를 이전한 후에 처리할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218]

(2). 수작업 데이터[219]

---

215) 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1992), http://www.oecd.org/document/19/0,2340,en_2649_34255_1815059_119820_1_1_1,00.html (2008.12.25. 검색). 그러나, 위 OECD가이드라인을 대체한 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Towards a Culture of Security (2002)는 위와 같은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216) 자료나 정보에 관련하여 '처리' (processing)는 자료나 정보의 획득 (obtaining), 기록 (recording)이나 보유 (holding), 또는 자료나 정보에 대한 작업 (operation)이나 작업집단의 수행을 가리킨다. DPA Section 1(1). '획득'이나 '기록'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의 획득이나 기록을 포함한다. DPA Section 1(2). 자료나 정보의 처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자료나 정보의 구성 (organization), 개작 (adaptation) 또는 수정 (alteration), (b) 자료나 정보의 검색 (retrieval), 참조 (consultation) 또는 사용 (use)[1], (c) 전송 (transmission), 유포 (dissemination) 또는 달리 입수하게 하여 자료나 정보의 공개 (disclosure) 또는 (d) 자료나 정보의 정렬 (alignment), 결합 (combination), 봉쇄 (blocking), 삭제 (erasure) 또는 파기 (destruction). '사용'이나 '공개' (disclosing)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에 포함된 자료의 사용이나 공개를 포함한다. DPA 1(2). CD에 소장된 자료를 출력한 경우에 출력된 자료의 사용이나 공개는 자료나 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DPA의 적용을 받는 자료나 정보의 처리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사실상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한 작업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217) 예컨대, 녹화된 비디오이미지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 DPA는 거의 전적으로 문자정보 (textual information)에 적용되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녹음정보 (recorded information)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예컨대, 자동화전화서비스 (automated telephone service)를 이용하여 일련의 단어나 숫자를 말함으로써 통화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녹음된 말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것이다. Ian Lloyd, I*nformation Technology Law* 40 (2008) [이하 'Lloyd'라 함].

218) DPA Section 1(3).

모든 정보관리자 (data controller)[220]는 자신이 정보관리자가 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원칙 (Data Protection Principle: DPP)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221] 이러한 개인정보에 일부 수작업 데이터도 포함된다.[222] 따라서 정보관리자는 자신의 모든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즉 수작업 정보에 대한 DPA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 (non-automated information)는 문서파일, rollerdex, 자동화되지 않은 마이크로피시 (microfiche)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수작업 데이터는 '관련파일링시스템의 일부로서 또는 관련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도로 기록된 정보'를 의미한다. '관련파일링시스템' (relevant filing system: RFS)는 '정보가 그 목적으로 주어진 지시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장비를 통하여 처리되지 않더라도, 정보집단 (set of information)이 개인을 참조하거나 개인에 관련된 기준을 참조하여 특정 개인에 관련된 특정 정보가 즉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된 정도까지 개인에 관련된 정보의 집단'이라고 정의된다.[223] 따라서, RFS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수작업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RFS는 하나의 파일만으로 구성되어도 인정될 수 있다. 즉, 한 가지 주제의 하나의 파일이 둘 이상의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색인화 또는 세분화하여 정리한다면 RFS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가진 하나의 파일만 있을 경우에는 RFS가 될 수 없다.[224] 예컨대, 회사 직원인 김갑돌이 상을 받게 되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자 '포상'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김갑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225] 이 경우 한 개인에만 관련되는 정보를 기록하고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RFS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인

---

219) 유럽에서 개인정보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독일은 정보의 개념이 포괄적이지만, 영국은 수작업 문서의 범위를 제한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모든 정보가 자동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국의 접근방법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Dr. Pounder, DP Intensive Cousre 대답 (2008년 12월 4일).

220) 정보관리자는 '(혼자 또는 연대하거나 다른 자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DPA Section 1(1). '연대하여' (jointly)는 정보 처리의 목적을 정하는 관리자와 그 방식을 정하는 관리자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동으로' (in common with)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정보관리자들을 가리킨다. 정보관리자의 의미는 Subsection 4의 제한을 받는다. 기관은 물론 개인도 정보관리자가 된다. 예컨대, 이메일을 보내는 일반인도 자신이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관리자가 된다. 정보관리자는 DPA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정보처리자 (data processor)는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정보관리자의 직원이 아니면서 정보관리자를 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자 (person)를 말한다. DPA Section 1(1). 정보처리자는 정보 처리의 목적이나 방식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 정보관리자의 직원은 정보관리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 정보처리자는 DPA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21) 정보관리자의 DPP의 준수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면제될 수 있다.

222) 정보관리자의 수작업 데이터에 대한 DPA 규정의 준수 의무는 제1차 과도기간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3일까지)과 제2차 과도기간 (2001년 10월 24일부터 6년 동안)에 걸쳐 유예되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에 의한 정보 처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대장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 즉 수기정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 참조. 그러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정정, 삭제, 보완청구 등의 권리를 수기정보에 대하여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기정보를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담을 고려한다면, 영국 DPA에서와 같이 '관련파일링시스템' (relevant filing system: RFS)에 대하여 보호를 하는 것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3) DPA Section 1(1).

224) ICO RFS Note, supra note , pp. 3-4.

225) ICO RFS Note, supra note , p. 4.

신갑순도 다른 상을 받게 되어 그에 관한 내용을 '포상'의 파일에 추가하였다. 이 경우에도 동 파일이 색인화나 세분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RFS가 아니다. 둘 이상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지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일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직원들도 최근에 상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포상' 파일의 내용이 많아져서 특정 개인에 관한 페이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색인화하면 이는 RFS가 된다. 그러나, '김갑돌, 포상'이라는 파일을 만들면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RFS가 되지 않는다. '신갑순, 포상'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 이들은 개인에 관한 포상 정보를 포함한 파일집단이 되기 때문에 RFS가 된다.

RFS의 정의가 실제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다투어질 것이다.[226] 그럼에도 RFS에 해당하는 수작업 정보로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인사파일이라고 한다.[227]

수작업 정보가 RFS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임시보조원 시험' (temp test)이 제시된다.[228] 즉, 임시보조원이 전체 업무나 문서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개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임시보조원은 특정 파일링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동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나 매뉴얼이 필요할 정도의 적절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업무 내용이나 관행에 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 임시보조원 시험을 적용할 수 없고, 동 시스템은 RFS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회사 직원인 김갑돌이 자신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휴가기간 내역을 요청한다고 가정하자. 회사에 인사파일의 collection이 있다. 첫째, '휴가'라고 명명된 파일에 '가나다' 순으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임시보조원은 김갑돌의 휴가 기록을 'ㄱ' 칸막이 뒤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일은 RFS가 된다. 둘째, '김갑돌'이라고 명명된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이 '병가', '휴가', '연금'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임시보조원은 김갑돌의 휴가 기록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파일은 RFS가 된다. 셋째, 직원들의 휴가 기록만을 포함한 시스템에서 '김갑돌'이라고 명명된 파일에 일자대로 표준양식에 따라 휴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임시보조원은 김갑돌의 휴가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을 것이다. 이러한 파일은 RFS가 된다. 넷째, '김갑돌'이라고 명명된 파일이 있지만, 내용이 분할되지 않거나, 문서들이 임의로 파일에 포함되거나, 주제에 관련 없이 시간 별로 정리되어 있다면, 임시보조원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파일의 내용을 급히 넘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파일은 RFS가 아니다. 다섯째, '김갑돌'이라고 명명된 파일이 있고, '서신', '평가', '기타'와 같이 분명하지 않게 그 내용이 하부 칸막이를 통하여 정리되어 있으면, 회사 내의 파일링시스템의 관행 등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직원만이 '기타'의 칸막이 뒤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 것이다. 그러나 임시보조원은 파일의 구조나 관련 매뉴얼에서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기 위하여 파일의 내용을 급히 넘겨 보아야 할 것이다. 임시보조원은 그 직장에 특정적인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파일은 RFS가 아니다.

---

226) 정보위원 (Information Commissioner)이 RFS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 Information Commissioner, *Data Protection Act 1998: Legal Guidance* 9 (200?) [이하 'ICO Legal Guidance'라 함].

227)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9.

228) 아래 내용은 ICO RFS Note, supra note , pp. 1-2 참조.

RFS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해당 시스템이 접근을 용이하게 의도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229] 파일이 '구성되지 않은 정보' (unstructured information)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된 경우에 그 파일은 RFS가 아닐 것이다. 반대로, 파일이 고객이나 직원 등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된 경우에 그 파일에 특별하게 정리되지 않은 다른 정보가 있더라도 RFS에 해당할 것이다.[230] 예컨대, 고급 양장점이 고객들에 대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231] 이들 파일은 특정 고객에 관하여 연락처, 치수, 담당 디자이너, 선호하는 색깔, 선호하는 스타일 등으로 색인화되거나 세분화된 공통의 구분을 가지고 있다. 일부 파일에는 '서신' 이나 '기타' 등의 일반적인 이름으로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이들 파일의 목적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각의 고객에 관한 특정 정보에 쉽게 접근하려는 것이다. 파일의 공통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 이 파일의 모든 정보는 RFS를 구성한다. 그런데, 각각의 고객에 관련되는 다른 파일이 있다. 이 파일에는 연락처와 옷의 인도 일자 등 제한된 공통 구분만이 있고, 나머지 구분된 정보는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신, 주문, 반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파일의 파일링시스템은 고객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거래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RFS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작업 데이터가 RFS의 정의에 해당하기 위하여 정보집단, 정보집단의 구성 및 구체적 정보에 대한 즉시 접근성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232] 따라서 정보관리자는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개인에 관한 정보집단 (a set of information)이 존재해야 한다. '집단'은 공통의 주제나 요소를 가진 정보집단과 같이 분명한 식별자 (identifier)를 참조하여 사물을 집단화한 것을 가리킨다.[233] 예컨대, 소비자나 직원에 관한 정보의 집단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 관한 정보집단이 반드시 파일에서 함께 집단화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접두코드 (prefix code)를 통하여 또는 파일에서 식별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화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파일캐비넷의 동일한 서랍이나 동일한 파일캐비넷에서 함께 집단화될 필요도 없다. 정보가 기관에 의하여 중앙에서 유지될 필요도 없다. 정보집단은 다른 부서, 분소 또는 재택근무자와 같이 기관 내의 다른 장소에 분산될 수 있다.

둘째, 정보집단은 개인을 참조하거나 개인에 관련된 기준을 참조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전자의 예는 개인 성명의 가나다 등 알파벳 순이나 생년월일로 구성하는 것이고, 후자의 예는 봉급번호나 보험번호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집단은 특정 개인에 관한 특정 정보가 즉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성은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34] DPA는 '즉시 접근 가능한' (readily accessible)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즉시 접근 가능한'

229) ICO RFS Note, supra note , p. 2.
230) ICO RFS Note, supra note , p. 3.
231) ICO RFS Note, supra note , p. 3.
232) *Durant*사건이 RFS의 적용범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 정보에 대한 즉시 접근을 강조하여 RFS의 적용범위가 한층 제한되었다. Dr. Pounder, DP Intensive Cousre 대답 (2008년 12월 4일).
233)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9.
234)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9.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에 관련된 기준을 참조한 수작업 정보의 집단(들)이 정보관리자 기관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하여 동 기관 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면 DPA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235] 이를테면, 봉급, 병가, 휴가, 비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색깔이나 일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보관리자의 수작업 파일은 RFS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하도록 의도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구성될 것이다. 정보관리자가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정보와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용이성'이지 정보가 파일 또는 파일링시스템이냐는 아닐 것이다.[236] 즉, 파일은 RFS와 같은 뜻은 아니다. 카드 색인이나 기록과 같이 분명하게 잘 구성된 파일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작업 정보는 DPA의 적용을 받게 된다.[237]

수작업 정보가 DPA의 RFS인 정보로서 DPA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정보관리자는 합리적 판단을 통하여 그 정보가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보관리자는 정보가 D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관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238] 권리 침해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 정보관리자는 DPA의 준수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특정 사건에서 정보위원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법원은 RFS의 광의의 해석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239]

(3). 접근가능 기록

자동화 장비로 처리 중인 정보, 자동화 장비로 처리되도록 의도되어 기록된 정보 또는 RFS의 일부로서 기록된 정보가 아니지만, Section 68에 정의된 접근가능기록은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정보가 된다. 접근가능기록 (accessible record)은 건강기록, 교육기록 또는 Schedule 12에 정의된 접근가능 공공기록을 말한다.

건강기록 (health record)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조건에 관련되는 자료로 구성되고, 그 개인의 처치 (care)와 관련하여 건강전문직에 의하거나 건강전문직을 위하여 작성된 기록을 의미한다.[240] 건강기록이 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 그 개인의 치료 등 처치, 및 의사 등 건강전문직의 작성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건강전문직 (health professional)은 등록된 의사 (medical practitioner), 치과의사, 안경사, 간호사나 산파, 정골사, 척추교정사 등을 의미한다.[241] 건강서비스기관 (health service body)이 고용한 음악치료사는 건강전문직에 포함되지만, 침술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235)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9.
236)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p. 9-10.
237)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0. 파일의 정보가 시간 순서로 정리되었지만, 색인이나 하부 분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 RFS의 수작업 정보가 아니다. ICO, *Data Protection Technical Guidance Note: Frequently Ased Questions and Answers about relevant filing systems* 1 (21.08.07). [이하 'ICO RFS Note'라 함]
238)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0.
239)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0.
240) DPA Section 68(2).
241) DPA Section 69.

교육기록 (educational record)은 Schedule 11에 정의되어 있고, 잉글랜드/웨일즈와 스코트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별되어 있다. 교육기록은 대체로 학생에 관련되고 선생이 또는 선생을 위하여 처리된 정보의 기록을 가리킨다. 선생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선생이 처리한 정보는 교육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근가능 공공기록 (accessible public record)은 Schedule 12에 정의되어 있고, 잉글랜드/웨일즈와 스코트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별되어 있다. 접근가능 공공기록은 주택 및 사회보장서비스기록으로서 관련 당국의 지원을 받는 임차인을 위하여 보유한 정보와 사회보장서비스의 기능을 위하여 보유한 정보를 가리킨다. DPA의 적용을 받는 정보로서 접근가능 공공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4). 기타 공공당국 보유 정보

자동화 장비로 처리 중인 정보, 자동화 장비로 처리되도록 의도되어 기록된 정보, RFS의 일부로서 기록된 정보 또는 접근가능 공공기록은 아니지만, '공공당국이 보유한 기록된 정보' (recorded information held by a public authority)는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를 구성한다. 기타 공공당국이 보유한 정보는 자동화 정보가 아니면서, RFS와 같이 잘 정리된 수작업 정보가 아니면서, 건강, 교육 및 주택/사회보장 이외의 공공당국이 보유한 기록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도 상관이 없다.

공공당국 (public authority)은 2000년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나 2002년 스코트랜드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Scotland) Act)에서 정의된 공공당국을 의미한다.[242] 2000년 정보자유법 Section 7이 동 법의 Parts I-V를, 2002년 스코트랜드정보자유법 Section 7(1)이 동 법을 공공당국이 보유한 특정 정보에 대한 적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기타 공공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243]

3.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는 DPA Section 1(1)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다음으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련되는 데이터:
> 그들 데이터, 또는
> 그들 데이터와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것 같은 다른 정보,
> 그리고 개인에 관한 의견의 표현과 개인에 관하여 정보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의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데이터].[244]

---

242) DPA Section 1(1). 각각 2000년 정보자유법 Section 2(2) 및 2002년 스코트랜드정보자유법 Section 3(2), (4) 및 (5) 참조.
243) DPA Section 1(6).
244)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data which relate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
(a) from those data, or
(b) from those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and includes any expression of opinion about the individual and any indication of the

개인이 자신에 관련되는 특정 데이터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다.[245] 개인정보의 이러한 정의는 아주 넓은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데이터, 정보관리자 및 정보주체[246]의 개념들의 문맥에서 해석될 것이다.[247]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대우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더욱 그러하다.

(1). 정보의 주체

개인정보가 되기 위하여 데이터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주체가 죽은 경우에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망한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그의 가족 등 다른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유전적인 혈우병 (haemophilia)에 걸린 엄마의 아들은 동 병에 걸리게 마련이다. 이 경우 그 엄마의 혈우병에 관한 조건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그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아들의 병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248] 이 경우 사망한 개인에 관련된 정보의 문제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제도에 의하여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데이터는 보호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EU의 '전자적 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은 법인에게도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249]

---

intentions of the data controller or an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individual."

245)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0. 참고로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 (personal data)를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관련된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라 정의하고, '식별가능한 자' (an identifiable person)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식별 번호 또는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신원에 특정적인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식별될 수 있는 자'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라고 정의한다. 동 지침 2(a)조. 한국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동 법 제2조 제2호.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동 법 제2조 제6호.

246) 정보주체 (data subject)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정보주체도 살아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247) 개인정보의 정의는 정보관리자의 DPP 중에서도 제1원칙의 준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Id.

248) Lloyd, supra note , p. 40.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질환을 말한다, http://cafe.naver.com/isaesa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4 (2008.12.29. 검색).

249)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OJ L201/37 (2002.7.31).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은 반드시 영국 국적을 가진 자에 국한되지 않는다.[250]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에 관련된 정보도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받는다.

영국의 정보위원회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정보주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251] 자원봉사자, 대리인, 임시직을 포함한 직원 (staff including volunteers, agents, temporary and casual workers); 고객과 의뢰인 (customers and clients); 공급자 (suppliers); 회원 또는 지지자 (members or supporters); 고소인, 통신자, 문의자 (complainants, correspondents and enquirers); 정보주체의 친척, 후견인, 동료 (relatives, guardians and associates of the data subject); 자문, 고문 및 기타 전문가 (advisers, consultants and other professional experts); 환자; 학생; 및 법 위반자 및 그 혐의자 (offenders and suspected offenders).

(2). 개인과 데이터의 관련성

개인정보가 되기 위하여 데이터는 개인에 '관련되어야' (relate to) 한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영국 DPA는 '관련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데이터가 개인에 관련되는 여부는 사실의 문제로서 사안마다 결정된다고 한다.[252] 정보관리자가 데이터와 개인 사이의 연계 (connection)의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될 것이다.[253]

영국의 정보위원은 영국의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이 *Durant v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사건에서 이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좁게 개인정보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254] 동 사건은 1998년 DPA에 따라 정보주체가 요청한 정보 중에서 일부는 제3자에게 관련된 것으로 고려되어서 편집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만 제공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데이터가 Durant에게 관련된 것이냐의 판단이었다.[255] Durant 측은 관련성 (relate to)을 광의로 해석하여 개인의 성명을 참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나올 수 있는 '어떤 데이터' (any data)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항소인의 이의제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설명한 문서가 그의 이름이 문언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영어사전에 수록된 관련성 (relate to)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개인과 대체로 직접 연결됨을 의미하는' (implying … a more or less direct connection with an individual) 의미에서 보다 제한적인 개념을 주장하였다. 결국, 항소법원은 보다 제한적인 해석을 지지하였는데,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목적은 동 데이터의 처리가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지 그의 이름이 기록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동 정보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3자에 대한 소송 등

250)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6.
251)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Notification Handbook: A Complete Guide to Notification* 15 (2007).
252)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1.
253)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1.
254)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Data Protection Technical Guidance: Determining what is personal data p. 1 (21.08.07) [이하 'ICO Technical Guidance'라 함].
255) [2003] EWCA Civ 1746.

에서 자신을 도울 문서의 발견 (discovery)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유의 과도하게 제한적인 견해라고 비판을 받는다.[256] 데이터의 처리와 잘못된 정보의 교정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점에서 데이터의 처리를 정당화하는 EU개인정보보호지침과 영국 DPA의 요건은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정보주체가 알게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다.[257]

한편, EU의 제29조작업반 (Article 29 Working Party)은 RFID칩기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과 데이터의 관련성을 밝혔다. 즉, 데이터가 개인의 신원, 특징 또는 행동을 가리키거나 (refer to) 또는 그러한 정보가 그 사람이 다루어지거나 평가되는 방식을 결정하거나 그에 영향을 주는데 사용된다면 동 데이터는 그 개인에 관련된다는 것이다.[258] 제29조작업반의 의견이 데이터가 특정 개인에 관련되는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고 한다.[259] 이들 세 요소는 내용 (content), 목적 (purpose) 및 결과 (result)이다. 데이터가 특정 개인에게 관련되는지의 확인에 이들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하나의 요소만 필요하다고 한다. 예컨대, 의료기록이나 인사기록과 같이 정보가 개인에 관한 것이면 내용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가 개인이 대우를 받는 방식의 결정에 사용되도록 의도되는 경우에 목적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다. 예컨대,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접속된 웹사이트를 고용주가 기록한 경우에 그 목적은 회사의 인터넷사용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기 위함이다. 원래의 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의 사용이 개인의 권리에 사소한 영향을 줄 것 같으면 결과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로서 개인정보는 대체로 생물측정데이터 (biometric data)를 의미하게 된다. 생물측정데이터는 대체로 사람의 신체적 신원 (physical identity)에 관련된 생리적 특징 (physiological characteristic)과 행동의 특징 (behavioural characteristic)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260] 생리적 특징은 지문, 얼굴 및 홍채 인식을 포함한다. 행동의 특징은 자신의 성명을 서명하는 방법, 속도나 정확성에 있어서 개인의 컴퓨터 자판의 사용 방식도 포함할 것이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설치된 제29조작업반 (Article 29 Working Party)은 양육권에 관한 재판에서 본인인 어린이가 제출한 자신의 가족에 관한 그림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61] 그 그림이 어린이의 심경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느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 등 자신에 관련된 정보와 그의 부모의 행태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한 개인에게만 관련될 필요는 없다. 동일한 데이터의 집단은 둘 이상의 개인에게 관련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그들 각각에 관한 개인정보가 된다.[262] 예컨대, 주택의 공동거주자들, 은행의 공동계좌 개설자들 또는 동일한 전화나 이메일주소를 사용하는 개인들 각각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인정된다.

---

256) Lloyd, supra note , p. 45.
257) Lloyd, supra note , p. 45.
258)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on data protection issues related to RFID technology* 8 (10107/05/EN, WP 105).
259) Lloyd, supra note , p. 46 참조.
260) Lloyd, supra note , p. 40-41.
261)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4/2007 on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8 (01248/07/EN, WP136),
262)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1.

정보가 사생활이 아닌 사업상 개인에게 관련될 수 있다. 1인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정보는 그 사업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263] 조합 (partnership)을 구성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 조합원에게 관련된다면 개인정보가 된다.

영국 DPA에서 개인정보가 되기 위하여 데이터가 개인에 관련되어야 한다고 정의되지만, 유한책임회사 (a limited company)나 다른 법적 주체에 관한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관련된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다.[264] 예컨대, 특정 개인이 관리하는 부서의 성과는 그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265] 그러나, 법인에게만 관련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되지 않는다.

(3). 데이터로부터 식별가능성

영국 DPA에 따르면, 개인은 데이터, 또는 동 데이터와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것 같은 다른 정보로부터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266] 그런데,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식별가능한 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신원증명번호나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신원에 특정적인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식별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한다.[267] 또한 동 지침은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자 또는 해당 사람을 식별하려는 다른 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은 모든 수단' (all the means likely reasonably to be used 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person to identify the said person)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268] 영국 DPA는 식별가능성을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것 같은 정보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반면에,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누구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때에 적용됨으로서 그 적용에 제한이 없다.

영국 DPA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식별가능성에 관한 규정의 차이는 2006년 AOL사건에서 드러났다. AOL은 가입자들의 검색요청에 관련된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들의 성명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검색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 예컨대 식별번호 4417749가 부여된 사용자가 사람에 관련된 의료조건, 'Arnold'와 같은 특정 성을 가진 사람들, 미국의 특정 지역의 주택판매와 같은 일련의 주제에 대한 검색을 하였다. 이러한 검색 정보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검색자들 중에서 Thelma Arnold라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269] 이 사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270] 이 사건에서 영국 DPA에 따르면, AOL이 정리한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AOL이 사용자들의 식별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것이다. AOL이 제3자가

263)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1.
264)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1.
265)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1.
266) DPA Section 1(1).
267) EU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a)호.
268) EU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 제26호.
269) http://www.iht.com/articles/2006/08/09/business/aol.php (2008.12.29 검색).
270) Lloyd, supra note , p. 47.

사용자들의 식별을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해당 데이터의 공개와 해독이 영국이나 유럽경제지역 (EEA)에서 수행되었다면 개인을 식별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정보관리자가 될 것이고 영국 DPA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의 신원은 그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서 확인된다. 그러나, 개인의 신원이 확인되기 위하여 반드시 특정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알 필요는 없다.[271] 즉, 정보주체를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자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과 다르게 대우를 받는 경우이다. 예컨대, CCTV카메라에 포착된 개인의 이미지는 그의 구별되는 형상을 처리함으로써 포착된 이미지로부터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272] 이 경우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에서 포착된 이미지를 사진, 신체적 묘사나 실제 인물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CCTV의 특정장면이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이메일주소는 분명하게 특정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의 이메일주소가 'parknohyoung@korea.ac.kr'인 경우, 동 이메일주소는 박노형 교수에 관한 개인정보이다.

개인의 식별은 데이터와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것 같은'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다른 정보로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되기 위하여 정보관리자가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여야 한다.[273] 이러한 확신은 정보관리자의 데이터의 처리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274] 예컨대, 특정 웹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추적기술을 사용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하였다고 가정하자.[275] 이 경우 그 정보를 나중에 성명과 주소에 연결할 수 있다고 의도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그러나, 특정 웹 사용자에 관하여 축적된 정보를 성명과 주소나 이메일주소에 연결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즉, 구축된 프로파일 (profile)에 기초하여 특정 웹 사용자에 대하여 광고하거나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의도가 있는 경우에 그 웹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도 그러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그를 다른 사람과 구별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 그의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서, CCTV에 포착된 이미지가 개인을 구별할 수 없지만, 그 개인의 실제 신원은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게 될 것 같은 다른 정보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276]

정보관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가 데이터와 함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보유' (possession)의 의미는 넓다. 즉, 정보관리자가 해당 정보를 '실제적으로 통제' (physical control)하거나 통제할 것 같으면 되는 것이다.[277]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처리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자.[278] 동 계약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제3자와 정보관리자로부터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를 입수하게 된다. 정보관리자는 정보

271)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1.
272)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2.
273)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2.
274) 이 문제는 정보의 익명화와 관련된다.
275)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2.
276)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2.
277)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3.
278)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3.

처리의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지만, 실제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의 모두 또는 일부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도 정보관리자는 이들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관리자가 처리되는 해당 데이터를 실제로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보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개인정보의 익명화

개인정보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익명화'(anonymisation)는 처리 중인 정보에서 모든 개인적 식별자(personal identifier)를 제거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면서 정보관리자는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처리에 관하여 DPA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여전히 가진다.

정보의 익명화는 실제로는 쉽지 않지만, 정보주체에 관련된 정보가 수행 중인 특정 처리에 필요하지 않다면 처리 중인 개인정보로부터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279] 문제는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면서 즉, 익명화된 정보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인적 식별자를 제거하면서 원래의 데이터집단을 보유하는 사실이다. 정보관리자가 보유하는 원래의 데이터집단이 개인적 식별자가 제거된 익명화된 데이터와 연결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식별자가 제거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는 정보관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고, 동 데이터는 익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280] 정보관리자가 원래의 데이터집단과 개인적 식별자가 제거된 데이터를 연결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익명화는 인정될 수 없다.

모든 개인적 식별자가 제거된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공개된 사람의 수중에서 개인정보가 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것 같으냐에 달려 있다.[281] 예컨대, 의료보험공단의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보험번호에 연결된 임상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된다. 그 사람은 해당 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282]

정보처리자는 동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재구성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및 기관적 조치'(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283] 예컨대, 통계청이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가정하자.[284] 익명화된 데이터 샘플이 공개된 경우 특정 지역의 정보와의 결합은 동 정보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독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disclosures of information)는 특정 개인이 구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분명한 식별자를 제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279)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3.
280)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3.
281)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4.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의 공개는 DPA에서 정보의 처리에 해당된다.
282)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4.
283)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4.
284)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4.

처리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일지를 기록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285]

모든 개인적 식별자가 제거된 정보만을 포함한 원래의 데이터집단을 파괴하고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그 정보를 보유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정보관리자는 그 보존된 데이터에 관하여 정보관리자가 되지 않는다.[286] 즉, 데이터로부터 모든 개인적 식별자가 제거되어 정보관리자가 더 이상 개인을 가려내어 다르게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정보관리자는 그 데이터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견해를 정당화하라고 요구될 수 있다.[287]

정보주체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때, 정보관리자는 그 정보주체가 자신에 특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88] 이 경우 정보관리자가 모든 개인적 식별자를 제거한 후에 자신이 보유한 정보로부터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정보관리자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다른 개인에 관련되는 데이터와 구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정보주체에 관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된다. 그러나, 정보관리자가 자신이 보유하게 될 정보 (정보주체가 제공할 정보)가 다른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되도록 할 것 같다고 믿지 않으면, 정보관리자가 보유한 다른 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로 개인정보가 되지는 않는다. 만일 정보주체가 접근을 요구하는 데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경우에, 동 데이터가 익명화되어서 정보관리자가 그 요구를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그 정보의 위치 확인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정보관리자는 그 접근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289]

(5). 의견이나 의도의 표현

DPA의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의견의 표현' (expression of opinion)과 개인에 관하여 정보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의도의 표시' (indication of the intentions)를 포함한다. 따라서, 예컨대 직원을 평가하는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물론 그 의견을 기초하여 승진을 제의할지 등의 의도를 공개하게 된다.

원래 영국의 1984년 DPA에서 '의견의 진술' (statements of opinion)은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되고 '의도의 진술' (statements of intention)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1998년 DPA에서 두 개념이 모두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1984년 DPA에 대하여 당시 영국정부는 의도의 진술이 정보주체가 아니라 정보의 보유자에게 개인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두 개념의 구별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290]

---

285)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4.
286)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3.
287)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4.
288)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4.
289) ICO Legal Guidance, supra note , p. 15.
290) Ian J. Lloyd, *information technology law* 40 (2008) 참조.

3. 민감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중에서 특별하게 민감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의 범위는 1984년 DPA의 채택에 있어서 큰 논란의 대상이었다. 예컨대, 성명과 주소는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되지 않을 것인데, 테러집단이 정계거물 등에 관한 성명과 주소를 보유하는 경우에 민감한 정보가 된다고 주장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데이터 그 자체보다 그 데이터가 보유되고 사용되는 정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91]

영국의 1984년 DPA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규정하였지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한다.[292] 1998년 DPA는 1984년 DPA의 정의보다 더 확대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93]

> '민감한 개인정보'는 [다음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
> (a) 정보주체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태생,
> (b) 그의 정치적 의견,
> (c) 그의 종교적 믿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믿음,
> (d) 노조의 가입 여부 (1992년 '노조 및 노사관계법'의 의미에서)
> (e) 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조건,
> (f) 그의 성생활,
> (g) 그에 의한 법위반의 수행 또는 그 혐의,
> (h) 그가 수행한 법위반 또는 그 혐의에 대한 소추, 그 소추의 처분 또는 그 소추에서 법원의 판결.

정보관리자는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294] 영국 DPA가 규정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거의 유사하다.[295] 흥미롭게도 일반인들은 재무데이터 (financial data)를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고려하는데, 영국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 영국 정보위원회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태도가 확인되었다.[296]

---

291) Lloyd, supra note , p. 41.
292) Lloyd, supra note , p. 42.
293) DPA Section 2.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 'sensitive personal data' means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as to -
(a) the racial or ethnic origin of the data subject,
(b) his political opinions,
(c) his religious beliefs or other beliefs of a similar nature,
(d) whether he is a member of a trade un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ed) Act 1992),
(e) his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condition,
(f) his sexual life,
(g) the commission or alleged commission by him of any offence, or
(h) any proceedings for any offence committed or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him, the disposal of such proceedings or the sentence of any court in such proceedings."
294) DPA Schedule 3 참조.
295) 다만,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철학적 믿음' (philosophical beliefs)을 영국 DPA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믿음'으로 대체하였다.

데이터	백분율
재무데이터 (financial data)	88
건강정보 (health information)	72
사적 연락처 (personal contact details)	68
성생활 정보 (sexual life information)	67
생물측정 정보 (biometric information)	63
유전자 정보 (genetic information)	63
범죄 기록 (criminal records)	58
클릭동향 데이터 (clickstream data)	43
정치적 의견 (political opinion)	42
교육 자격 (educational qualifications)	42
인종 또는 민족적 태생에 관한 데이터 (data concerning race or ethnic origin)	41
고용 경력 (employment history)	41
정당/정치단체의 가입 (membership of political party/organisation)	38
종교적 또는 철학적 믿음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37
노조 가입 (trade-union membership)	33

민감한 개인정보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Bodil Lindqvist* 사건에서 EU사법법원은 스웨덴 법원의 요청으로 예비적 결정 (preliminary ruling)을 주도록 요청되었다.[297] 동 사건에서 전도사인 Lindqvist는 자신과 다른 동료들의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준비하였고, 그 정보 중에 성명이 밝혀진 사람이 자신의 발을 다치게 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Lindqvist는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건강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었다. EU사법법원은 발 부상에 관한 언급이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동 법원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는 광의로 해석되어 신체적 및 정신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의 건강에 관한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에 관한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병이나 부상의 언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육상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의 언급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내용보다 해당 정보의 사용 정황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298]

296)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Report on Annual Track 2006* 15 (2006), <http://www.ico.gov.uk/upload/documents/library/corporate/research_and_reports/2006_annual_tracking_report_individuals_final.pdf> (2008.12.29 검색).
297) Case 101/01, [2004] QB 1014.
298) Llyod, supra note , p. 43.

5. 개인정보의 분류

개인정보는 관리주체, 성격, 내용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299] 개인정보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법적 성격 등이 다르게 된다. 아래에서 검토되듯이, 개인정보의 분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수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관리주체에 따라 법제도를 수립하고,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 그 보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정보의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정보의 관리주체에 따라 개인정보는 공공개인정보와 민간개인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 공공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 따라 또 다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에 있어서 공공개인정보는 수집을 포함한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민간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 등 처리되는 정보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공공개인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민간개인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개인정보를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게 하고자 한다.[300]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채택되어 있다. 이외에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어 있다.

(2). 정보의 내용에 따른 분류

정보는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영국 정보위원회와 Weible은 개인정보를 14개 종류로 분류하였고, 한국 총무처는 5개 종류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8개 종류로 분류하였다.

영국 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301]

분 류	예 시
인적 사항 (personal details)	성명, 주소, 연락처, 연령, 성별, 생일, 신체적 특징, 국가보험번호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식별번호 등
가족, 생활 및 사회 환경 (family, lifestyle, and social circumstances)	혼인, 동거 및 결혼경력, 가족과 세대원의 정보, 취미, 주거, 여행, 레저활동, 자선 또는 사회단체의 가입 등
교육과 훈련 사항	성적, 자격, 기술, 직업훈련기록, 전문성, 학생기록부 등

299) 개인정보의 다양한 분류에 대하여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0면 이하 (2008);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3) 헌법학연구 22면 이하 (2001); 및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11(3) 정보화정책 62-67면 (2004) 참조.
300) 권헌영, supra note , p. 63.

(education and training details)	
고용 사항 (employment details)	고용과 경력, 취업과 퇴직 정보, 근태기록, 보건 및 안전기록, 업적평가기록, 훈련기록, 사회보장기록 등
재정 사항 (financial details)	소득, 수입, 자산, 투자, 지출, 신용평가, 부채, 수익, 받은 증여, 보험 정보, 연금정보 등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goods or services provided)	제공받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정보, 허가, 합의, 계약 등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정치적 의견
	종교 또는 유사한 성격의 믿음
	노조가입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또는 상태
	성생활
	법령 위반 (위반 혐의 포함)
	형사소추, 결과 및 판결

Weible의 개인정보 분류[302)]

종류	예 시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가족정보	부모의 성명과 직업, 배우자의 성명과 직업, 부양가족의 성명, 가족의 출생지,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교육 및 훈련정보	학생기록부, 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전문면허증, 서클활동, 상벌사항 등
병역정보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소유토지, 소유상점 및 건물 등
동산정보	자동차, 보유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유가증권, 수집품 등
소득정보	연봉,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
기타 수익정보	보험가입현황, 보험수익자, 회사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등
신용정보	대출상황, 저당권설정여부, 신용카드 연체 및 미납 등

301)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Data protection Notification Handbook: A complete guide to notification* 17-18 (2010).
302) Weible, R.J., *Privacy and Data* (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i State Univ, 1993), 권헌영,

고용정보	고용형태, 고용주, 회사 주소, 직무수행과 훈련기록, 상벌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기록,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	본인 및 가족병력, 정신질환 등 의료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등
조직정보	노조, 종교단체, 정당, 클럽 가입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량, 음주량, 취미,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기록 등

한국 총무처의 개인정보 분류[303)]

분류	예 시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심신의 상태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사회경력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및 단체 등
경제관계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생활·가정·신분관계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304)]

분류		예시
속성정보		성명,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혈액형, 신장, 체중, 사진, 지문, 장애, 기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성을 규정하는 정보
활동정보	가족, 출신 및 생활환경	결혼, 이혼경력, 가족관계, 습관, 주거, 여행, 레저활동, 자선단체 가입 등
	학력 및 교육	학력, 출신학교, 성적, 학교생활, 기능, 자격 등
	고용 및 경력	취업, 사업경력, 구직·채용, 인사, 근태, 근무평정기록 등
	재산·신용·납세	수입, 임금, 투자, 지출, 채무, 보험, 재산, 연금, 보조금, 납세사실 등
	사회보장 및 행정서비스	정부로부터의 급부, 급여, 면허·특허·인가, 행정계약 등
	기타	기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민감정보		인종·민족, 국적, 정치적 성향, 종교, 노조·사회단체활동, 보건·의료, 성생활, 행정처분사실, 전과·수형기록, 병역사항, 기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supra note , p. 64에서 재인용.

303) 총무처 능률국, 『개인정보보호제도』, 1998, 16면, 권헌영, supra note , p. 65에서 재인용.

3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관리현황조사계획, 4면 (2004.1.9,), 권헌영, supra note , p.66에서 재인용.

(3).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류

정보의 민감성 또는 위험성에 따라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305] 민감한 정보의 예에는 개인의 신용, 의료진료,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다.[306]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307] 인격적 정보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재산적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308] 신용불량기록은 재산적 정보로서 민감한 정보로 분류될 것이다. 이들 민감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에 관하여 그렇지 않은 정보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관리주체에 따른 공공개인정보도 해당 개인정보의 민감성 또는 위험성에 따라 또 다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범죄와 수사 등 사법행정, 국방행정, 국세행정, 교육행정 및 보건복지행정 등이 해당 개인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적인 공공개인정보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309] 마찬가지로, 민간개인정보도 해당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또 다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용, 의료, 고용, 통신 및 온라인거래 등에 관한 정보는 다른 일반적인 민간개인정보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310] 이렇게 민감한 성격의 민간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채택되어 있다.

(4). 정보의 식별가능성에 따른 분류

개인의 동일성의 식별가능성에 따라 개인정보는 기본정보, 색인정보, 부가정보 및 민감한 정보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311] 기본정보는 특정인의 동일성이 직접 식별가능한 정보로서 개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다. 색인정보는 기본정보와 결합되는 정보로서 색인정보의 활용에 따라 특정인의 동일성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이다. 이에는 지문[312]과 홍채 등이 있다. 부가정보는 기본정보의 가치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추가되는 정보로서 개인의 신용등급, 금융자산, 재산규모, 납세액, 신용카드번

---

305)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5등급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소 인위적인 분류로 생각된다.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3) 헌법학연구 25면 (2001).

306)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관련 지역에 따라 그 민감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아랍권 국가에서 유태인인 사실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07) 헌재 2005.5.26.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확인등 (기각), 4나(2).

308) 권헌영, supra note , p. 64.

309) 권헌영, supra note , p. 63.

310) 권헌영, supra note , p. 63.

311) 아래의 내용은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3) 헌법학연구 22-23면 (2001) 참조.

312) 헌법재판소는 지문정보가 '만인부동 (萬人不同), 종생불변 (終生不變)'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문정보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첫째, 지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아서 그 자체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된 중립적인 정보'이다. 둘째, 지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달리 일반인이 쉽게 정보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지문정보는 지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 내용이 왜곡될 염려가 없는 객관적 정보이다. 헌재 2005.5.26.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확인등 (기각), 4나(2).

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의 정치·경제·사회적 행위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기본정보와 결합된 부가정보는 개인정보의 등급에 따라 정보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민감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 심각한 인격주체성을 침해하는 정보이다. 이에는 사상과 양심에 관한 정보, 성적 취향, DNA정보, 정신질환이나 특이한 유전질환의 진료정보 등이 포함된다.

6. 개인정보의 확인 방법

아래에서 영국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를 그 구성요소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DPA상 개인정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식별가능성 (identifiability), 둘째, '관련되는' (relates to), 셋째, '명백히 (특정 개인)에 관한 데이터' (data obviously about a particular individual), 넷째, '개인에 연결된 정보' (data linked to an individual), 다섯째, 처리의 목적, 여섯째, 전기적 중요성 (biographical significance), 일곱째, 정보의 개인에 대한 집중성, 여덟째,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처리이다.

(1). 식별가능성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첫 번째 질문은 "생존하는 개인이 데이터 또는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것 같은 데이터와 다른 정보로부터 식별될 수 있느냐?" (Can a living individual be identified from the data, or, from the data and other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or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이다.[313] 이 질문의 답이 긍정적이면 다음의 질문을 고려하고, 부정적이면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즉, 개인이 한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구별이 된다면, 그 개인은 식별된다. 많은 경우에 다른 정보와 함께 개인의 성명은 개인을 식별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성명은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잠재적 식별자가 실제로 개인을 식별하느냐는 정황 (context)에 달려 있다.[314] 예컨대, '김철수'의 성명 그 자체는 항상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 같은 성명의 개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명이 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일반적으로 한 개인을 식별하는데 충분할 것이다.[315] 만일 아버지와 아들의 성명이 '김철수'이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면, 성명과 직장명만으로는 그 중의 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개인의 성명을 모른다고 그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316] 즉, 주변의 이웃 사람들의 성명을 모르더라도 'A아파트 73동 1505호에 살고 있고, 치와와를 데리고 있고, 자동차 미니를 타고 다니는 키가 큰 노년의 남자'와 같이 그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의 묘사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317] 즉, 사고의 잠재적 증인

313)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5.
314)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6.
315) 같은 의견으로 *Bodil Lindqvist v Aklagarkammaren I Jonkoping* - Case Commissioner - 101/01에서의 Tizzano법률관 (Advocate General)의 의견 24항 (2002년 9월 19일 제시) 참조.
316)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6.

을 식별하려고 할 때 그 묘사가 경찰 또는 이웃감시제도 (neighbourhood watch scheme)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이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성명을 알지 못하고 또한 찾으려고 의도하지도 않은 개인을 식별하게 할 수 있다.[318] 즉, 시내에 설치된 첨단 CCTV의 운영자가 전에는 알지 못한 개인을 신체적 특징에 근거하여 구별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은 식별되는 것이다. CCTV 운영자가 신체적 특징의 사용 등 어떤 방법으로도 골라낸 특정 개인을 추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남녀의 성, 나이, 학년 또는 봉급에 대한 데이터의 결합으로 그 성명이나 직책을 몰라도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있다.[319]

성명과 다른 식별자가 삭제된 정보를 보유한 경우와 같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느냐가 곧바로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느냐는 '(정보)관리자 또는 그 자를 식별하는 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같은 모든 수단' (all the means likely reasonably to be used 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person to identify the said person)에 달려 있다.[320] 따라서 정보주체가 식별되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데이터를 재구성할 아주 작은 가정적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321]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는 문제가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322]

따라서, 우선,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수단이 바로 이용 가능한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부 (public register)나 리버스명부 (reverse directory)를 검색하여 주소나 전화번호로부터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자료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 같다면, 주소와 전화번호의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23]

식별가능성을 고려할 때 거리의 보통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수단은 물론 특정 이유를 가지고 개인을 식별하고자 결심한 사람이 사용할 것 같은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324] 이 같은 후자의 부류에 탐사보도기자, 마음을 돌린 배우자, 스토커나 산업스파이가 있다.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서 사용될 것 같은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325]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보안의 발전 또는 특정 기록의 공개적 입수가능성의 변화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검토하여야 한다.[326]

보유한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및 법적 조치를 부과하는 사람은 동 데이터를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327]

---

317)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6.
318)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6.
319)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6.
320) EU개인정보보호지침 전문 (Recital) 제26항.
321)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322)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323)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324)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325)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326)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2). '관련되는'의 의미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두번째 질문은 "데이터가 사적 또는 가족 생활, 사업 또는 직업에서 식별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련되느냐'?" (Does the data 'relate to' the identifiable living individual, whether in personal or family life, business or profession?)이다.[328] 이 질문의 답이 긍정적이면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가 되고, 부정적이면 DPA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관련되는' (relate to) 것은 종종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관련되는'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을 식별하는 데이터는 동 데이터에 연관된 성명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즉, 해당 개인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거나 기록하도록 데이터가 처리되거나, 정보의 처리가 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329]

(3) 명백히 특정 개인에 관한 데이터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세번째 질문은 "데이터가 명백히 특정 개인에 관하느냐?" (Is the data 'obviously about' a particular individual?)이다.[330] 그 답이 긍정적이면 DPA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가 되고, 부정적이면 다음의 네 번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기록, 범죄기록, 직장에서의 근무기록이나 스포츠 활동 기록 등이 특정 개인에 '명백히 관한' (obviously about) 정보이다. 데이터가 개인에 관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동 정보의 내용이다.

해당 정보가 명백히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활동에 관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되는 기록이 있다.[331] 개인의 은행계좌통지서 (bank statement)나 세목별 전화비용청구서 등의 데이터는 계좌를 가지거나 전화서비스 계약을 한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데이터가 명백히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다음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332] 첫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 기록하고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거나, 또는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가의 고려이다. 또는, 처리의 부수적 결과로서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거나 기록할 수 있는가, 또는 동 처리가 식별가능한 개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고려이다.

(4). 개인에게 연결된 데이터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네 번째 질문은 "데이터가 개인에게 연결되어서 동 개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느냐?" (Is the data 'linked to' an individual so that it provides particular information about that individual?)이다.[333] 이 질문

327)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328)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7.
329)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p. 7-8.
330)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8.
331)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8.
332)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8.

의 답이 긍정적이면 DPA상의 개인정보가 되고, 부정적이면 다음의 다섯 번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가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특정한 경우에 개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인에게 연결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334] 특정 직업의 봉급에 관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 직업의 구인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직업에 대한 후임을 정하면서 한 명의 성명이 확인된 개인이 지원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봉급의 내용이 성명에 연결되는 경우에 직업에 대한 봉급의 정보는 해당 직업의 직원에 '관련되는' (relating to)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335]

(5). 처리의 목적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다섯 번째 질문은 "데이터가 식별가능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inform하도록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야 하느냐?" (Is the data used, or is it to be used, to inform or influence actions or decisions affecting an identifiable individual?)이다.[336] 이 질문의 답이 긍정적이면 DPA상의 개인정보가 되고, 부정적이면 다음의 여섯 번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1). 결정에 영향을 줌

데이터가 개인에 연결되고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관련되는' (relate to) 데이터의 예가 많이 있다. 예컨대, 개인의 전화나 전기계정에 관한 데이터는 동 개인에게 얼마가 청구될지를 분명히 결정한다. 이 경우 정황이 중요하다. 주택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a house)는 종종 소유주나 거주자에게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 동 주택에 관한 데이터는 동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된다. 그러나, 주택에 관한 데이터 (data about a house)는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가 되지 못한다. 즉, 특정 주택의 시장가격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지역의 주택 가격의 흐름을 확인하는 통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수집자는 거주자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 주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방이 3개 달린 주택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동 주택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337] 즉, 주택에 관한 데이터가 특정 개인에게 연결되어 주소와 같은 개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개인의 성명에 연결하지도 않고 개별적인 거주자가 지불하여야 할 청구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전기소비량과 같이 개인에 관한 심리와 결정에 사용되는 경우에 동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된다.

위의 예에서 주택에 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동 데이터의 처리 목적이 주소와 같이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거나 전기사용료와 같이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38] 예컨대, 개인에 관한 심리나

333)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9.
334)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9.
335)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9.
336)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9.
337)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0.

결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주택의 불법적 수선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339] 동 데이터는 개별적인 주택소유자를 고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처리된다. 불법적 수선에 대한 데이터는 주택의 주소에 관련하여 처리될 수 있지만, 동 데이터는 주택을 수선한 개인에게 분명히 관계된다. 동 데이터가 동 개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서, 특정 주택의 가치가 지방세의 납부액을 결정하거나 이혼 수속에서 개인의 자산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340] 이 경우 동 주택의 가치라는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주택에 관한 데이터는 해당 개인에게 분명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회사는 수돗물이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자 성명을 기록할 수 없지만, 동 주택의 주소를 주목하여 모든 청구서를 '거주자' (the occupier)에게 발송할 수 있다.[341] 특정 주소의 수돗물 소비에 관한 데이터는 해당 거주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동 데이터가 해당 개인에게 얼마나 청구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 수돗물의 소비에 관한 데이터에서 성명이 연계되지 않지만, 동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동 데이터가 거주자에게 청구될 금액을 결정하고, 거주자가 성명이 밝혀지지 않고서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식별되고, 따라서 다른 개인들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 수돗물 회사는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주의 성명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른 목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처리하는 다른 기관

동일한 데이터가 한 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되면서 다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342] 예컨대, 새해 맞이 보신각 타종의 행사장에서 참가 군중들의 거의 동일한 두 장의 사진이 사진사 갑과 을에 의해 찍혀서 컴퓨터에 전자적 형식으로 저장된다고 가정하자. 사진사 갑은 사진작가로서 동 군중 사진을 자신의 사진집에 추가하려고 한다. 사진사 을은 경찰인데, 잠재적인 불량배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참가 군중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사진작가인 사진사 갑이 찍은 전자적 이미지의 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의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인 사진사 을이 찍은 사진은 사고가 발생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식별하려는 개인의 행동을 기록할 목적으로 찍혔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하나의 데이터가 한 정보관리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다른 정보관리자에게 전달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인이 시내 중심가의 상점을 판촉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하자.[343] 이 사진은 상점의 주소나 중개인의 컴퓨터에 있는 고객의 성명을 참조하여 디지털형식으로 저장되고,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프린트하기 위하여만 사용된다. 그런데, 이 사진은 찍을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보행자들의 이미지를 포함한다. 부동산중개인은 우연히 사진에 포착된 이미지의 보행인들에 관한 무엇인가

338)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0.
339)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0.
340)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0.
341)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0.
342)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1.
343)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1.

를 알기 위하여 상점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진을 처리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은 개인을 식별하도록 사진을 전자적으로 확대하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사진은 보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진이 이들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자 처리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처리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예에서의 보행자의 이미지에 포함된 데이터는 특정한 경우에 다른 정보관리자에게 보행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344] 즉, 부동산중개인이 사진을 찍은 시점에서 같은 거리의 은행에 강도가 침입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에 경찰은 이 시간의 이 거리에서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경찰은 상점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재적 증인이나 혐의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진확대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사진을 처리할 것이다. 이 경우 사진은 개별적 보행자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자 처리되는 것이고, 경찰에게는 그런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가 부동산중개인인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되지 않지만, 경찰인 다른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처리의 목적과 개인에 대한 처리의 잠재적 영향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345]

(6). 전기적 중요성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여섯 번째 질문은 “데이터가 개인에 관련하여 전기적 중요성을 가지느냐” (Does the data have any biographical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individual?)이다.[346] 이 질문의 답이 긍정적이면 DPA상의 개인정보가 되고, 부정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의 일곱 번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가 개인정보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기적 중요성’ (biographical significance)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347] 많은 경우에 데이터의 내용에서 해당 데이터가 '명백히 개인에 관한' (obviously about an individual) 것이어서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또는 데이터가 개인의 활동에 관한 것이고 그 개인이 대우받는 방법에 영향을 주거나 결정하는 목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동 데이터가 개인에게 분명하게 ‘연결되어서’ (linked to)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명백하게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그에게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전기적 중요성’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

전기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데이터가 해당 개인에 대한 개인적 암시가 없는 사안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우발적 관련을 기록하는 것을 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348]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줄 것 같은가의 문제이다. 데이터가 특정 시간의 개인의 위치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에 대한 개인적 암시를 가질 것이다. 예컨대, 개인이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회의록은 특정 시간의 개인의 위치를 기록한 점에서 개인에 대한 전기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이 경우에 개인이 회의

344)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2.
345)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2.
346)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2.
347)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2.
348)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3.

에 참석한 사실이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회의록의 내용이 참석 데이터 이외에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느냐는 회의록의 초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349]

(7). 정보가 개인에 집중하는가?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일곱 번째 질문은 "데이터가 다른 자나 물건, 거래 또는 사건 대신에 그 중심적 주제로서 개인에 집중하느냐?" (Does the data focus or concentrate on the individual as its central theme rather than on some other person, or some object, transaction or event?)이다.[350] 이 질문의 답이 긍정적이면 DPA상의 개인정보가 될 것 같고, 부정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의 여덟 번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적 중요성의 요소와 같이 데이터가 개인정보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집중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351] 많은 경우에 데이터는 명백하게 개인에 관한 것이거나 개인의 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에게 분명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된다. 정보가 명백하게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그에게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데이터의 개인에 대한 집중 문제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352]

1). 회의록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 참석자들 또는 회의에서 행동이나 조건이 검토된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되는지의 결정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 경우에 회의록의 개인에 대한 집중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353] 데이터가 명백하게 개인에 관한 것이거나 분명하게 개인에 연결되어서 회의 기록의 일부가 개인정보가 될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개인의 특정 직책에 대한 적격성을 논의하면서 그의 자격, 성품, 근무성적 등이 고려된다면, 이러한 논의의 기록은 해당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354] 그런데, 후보자의 적격성이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들의 하나에 불과하다면, 회의록 전체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회의에서 특정 직책에 대한 세 명의 후보자가 검토될 때 특정 개인에 집중하는 정보만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회의록은 세 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이외에 회의에서 논의된 신입직원의 자격요건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물론 회의 전체가 특정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관련 회의록은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의 조건이나 행동에 관한 사실은 물론 해당 개인에 관한 제3자의 의견과 그에 관한 사람들의 의도의 표시도 포함할 것이다.[355] 이같은 의견이나 의도의 표현은 개인정보

349)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3.
350)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3.
351)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3.
352)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3.
353)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4.
354)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4.
355)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4.

가 된다.[356]

특정 직원의 행동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가정하자.[357] 동 회의에서 논의된 그의 행동에 관한 사실의 진술, 그에 관한 의견, 그에 대한 징계조치의 제안 등 모든 내용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이 회의의 회의록은 관련 정보가 해당 개인의 행동, 조건 등에 분명하게 연결되어서 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된다. 한편,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에 관한 발언이 회의록에 기재된 경우에 동 발언이 발언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인지는 발언자의 지위에 달려 있다.[358] 즉, 발언자가 개인적 의견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주와 같은 회사나 다른 개인을 위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회의에 직원의 지위에서 참석한 개인이 회사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된 경우에 이러한 의견은 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되지 않는다. 그가 표명한 의견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직원이 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된 경우에는 회의에서의 대표에 관한 정보는 그의 행동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359] 즉, 회사나 조직의 직원이나 전문적 대표자 등이 대리인으로서 표명한 의견은 그 대리인인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의 발언이 그의 개인적 의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2). 사물 등에 관한 정보

정보의 개인에 대한 집중 문제를 고려할 때 정보가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기록하도록 또는 사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처리되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보가 반도체 제조 기계와 같은 기기의 작동에 관하여 기록될 수 있다.[360] 이 경우에 정보가 기계의 효율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기록된다면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정보가 이 기계를 운전하는 직원의 생산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기록된다면 이 기계의 작동에 관한 정보는 이를 운전하는 직원인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된다.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등 자료가 개인에게 연결되느냐는 위의 반도체 기계와 같이 사물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이냐의 결정에 중요 요소가 된다. 또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동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8). 개인에 영향을 주는 처리

DPA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여덟 번째 질문은 “데이터가 사적, 가정적, 사업 또는 전문적 지위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잠재성을 가지느냐?” (Does the data impact or have the potential to impact on an individual, whether in a personal, family, business or professional capacity?)이다.[361] 이 질문의 답이

356) DPA section 1(1) - 'personal data'.
357)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4.
358)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5.
359)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5.
360)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5.
361)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6.

긍정적이면 DPA상의 개인정보가 되고, 부정적이면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보관리자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런 목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면 그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362] 예컨대, 택시 회사가 차량추적장치를 사용하여 택시의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통제센터가 특정 시점에서의 회사의 모든 택시의 위치를 알아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고객에게 보낼 수 있다. 이 데이터의 의도는 개별 택시기사의 위치를 택시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택시들의 위치를 알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개별 택시기사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도록 의도되지는 않아도 택시회사의 통제센타 직원은 어느 기사가 어느 택시를 어느 특정 시간에 운전하고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알 것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고도 택시기사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택시기사의 부인이 동 기사와 접촉하고자 통제센터에 그의 위치를 알도록 택시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도록 부탁할 수 있을 것인데, 택시의 위치정보는 택시기사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사실상 데이터가 가끔 개인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도록 처리된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정보관리자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의 처리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줄 것같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363] 위의 예에서, 택시회사의 통제센터가 택시기사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 정보를 사용한다면, 동 데이터의 처리 목적이 정보관리자의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택시의 위치정보는 개별적인 택시기사들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사물에 관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반도체 제작기계 운전자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 기계에 관한 데이터가 사용되듯이, 개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사물에 관한 데이터가 개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처리되지 않지만 택시의 위치정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될 것 같다. 데이터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데이터의 처리가 개인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지, 그가 대우받는 방식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의도가 있을 필요는 없다.[364]

특정 데이터가 개인정보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모범관행 (good practice)로서 해당 정보를 주의하여 대우하고, 특히 동 정보를 안전하게 보유하고 처분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365]

362)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6.
363)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6.
364)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7.
365) ICO Technical Guidance, supra note , p. 17.

V. 정보주체의 권리와 구제절차

1. 정보주체의 권리

2. 개인정보보호당국에 대한 신고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의 개인정보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단일의 또는 여러 관련된 목적을 위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적인 처리작업 또는 일련의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동 지침 28조에 언급된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366] 회원국은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국내 규정의 내부적 적용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책임을 맡는 개인정보보호담당 (personal data protection official)이 임명되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위 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367]

개인정보관리자의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notification)는 동 신고를 접수한 감독당국이 수행하는 사전점검 (prior checks)과 구별된다.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20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분명한 위험을 야기할 것 같은 처리작업을 결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이전에 동 처리작업이 검토되는 것을 점검하여야 한다. 즉,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이후 개인정보가 처리되기 전에 동 감독당국의 사전점검이 수행된다. 사전점검이 요구되는 처리의 유형은 회원국이 결정하고, 회원국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368] 예컨대, 독일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동화된 개별적 결정을 사용하는 처리에 사전점검이 요구된다. 이 경우 민간부문에 관하여 감독당국 대신에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담당이 사전점검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369], '최소한' (at least) 다음의 정보가 신고되어야 한다:[370] 개인정보관리자 및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개인정보주체의 범주와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의 기술;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수신자;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안된 이전; 개인정보처리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17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적

366) 개인정보보호지침 18(1)조.
367) 개인정보보호지침 18(2)조.
368) European Commission, Analysis and impact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95/46/EC in Member States 28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lawreport/consultation/technical-annex_en.pdf>.
369) 제29조 작업반은 EU 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고제도의 단순화 개발에 착수하였다. Article 29 Working Party, Article 29 Working Party report on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 the best use of exceptions and simpl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data protection officers in the European Union 21 (10211/05/EN, WP 106, 18 Jan. 2005)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wpdocs/2005/wp106_en.pdf>.
370) 개인정보보호지침 19(1)조.

정성의 예비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기술.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신고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규정한 점에서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정보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관리자는 회원국의 법에 따라 이러한 신고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371] 회원국은 개인정보보호의 감독당국에 신고된 개인정보의 처리 작업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372]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373]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첫째 경우는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작업의 범주에 대하여 회원국이 동 처리의 목적, 처리되는 개인정보 또는 그 범주, 개인정보주체의 범주,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수신자 또는 그 범주 및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이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둘째 경우는 개인정보관리자가 자신을 규율하는 국내법을 준수하여 다음의 책임을 맡는 개인정보보호담당을 임명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가 처리작업에 의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음을 보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의 책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국내규정의 내부적 적용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이다. 둘째, 개인정보관리자가 수행하는 처리작업의 기록을 유지하는 책임인데, 동 지침 21(2)조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 준수 전략

기업이 수행할 많은 개인정보처리 활동은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법적 요건에 대한 준수를 전제로 한다. 기업의 감독당국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의 신고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374] 즉, 기업의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 불이행은 동 기업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EU의 많은 회원국들은 이러한 신고의 불이행을 형사범으로 간주하여 벌금 등을 부과한다.[375] 예컨대,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위원 (Commissioner)은 2003년 1월 기업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 4,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376] 2004년 2월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은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개인정보보호위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두 법무법인을 소추하였음을 밝혔다.[377] 프랑스 최고법원 (Cour de Cassation)은 2004년 자동화된 관리체계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랑스 감독당국 (CNIL)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직원을 면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378]

---

371) 개인정보보호지침 19(2)조.
372) 개인정보보호지침 21(2)조.
373) 개인정보보호지침 18(2)조.
374) Kuner, para. 5.42.
375) C Girot, "Directive 95/46/EC" in *Concise European IT Law* 80 (2006), Kuner, para. 5.42에서 재인용.
376) Kuner, para. 5.42.
377) Kuner, para. 5.42.
378) Cour de Cassation, Judgment of 6 April 2004, Arret 944 rec. 01-45.227; Kuner para. 5.42에서 재인용. 이 사건에서 한 직원은 회사 규정에 반하여 회사 밖에서 뱃지의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면직되었는데, 그가 면직된 후에 CNIL에 뱃지의 사용이 신고되었다. 법원은 CNIL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에 관련된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의 면직은 타당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적절하게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법적인 제재 이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신뢰도 훼손하게 된다. 반대로,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는 기업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감독당국에 신고함으로써 기업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목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379] 따라서,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EU의 29조 작업반 (Article 29 Working Party)은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에 관련된 과도하게 관료적인 요건은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당국에도 지나친 부담이 됨으로써 신고의 근본적 이유를 훼손한다고 지적하였다.[380]

(2). 신고의 필요성

EU의 많은 회원국들은 일정한 경우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신고의 면제를 허용한다. 모든 기업이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일상적인 임무에 대하여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세무당국 등에 대한 급여 관리에 관련된 직원의 개인정보의 일상적인 처리에 대하여 신고가 면제된다.[381]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신고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잘못 이해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개인정보보호담당 (data protection officer)이 임명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신고하는 것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임명이 동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필요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382] 개인정보보호담당은 자신의 임무로서 이들 정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담당의 주요 책임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처리의 내부기록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록은 개인정보처리의 신고를 위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정보의 목록과 흡사하다.[383]

(3). 신고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379) Kuner, para. 5.44.
380) Article 29 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Notification (XV/5027/97-EN Final, WP 8, 3 Dec. 1997)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wpdocs/1997/wp8_en.pdf>). 이태리에서 감독당국에 대한 86쪽 분량의 신고서가 요구되고, 신고는 전자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Kuner, para. 5.41.
381) 영국의 경우 The Data Protection (Notification and Notification Fees) Regulations 2000, Statutory Instruments 2000 No. 188, Regulation 3.2: Staff administration exemption; Kuner para. 5.46 참조.
382) Kuner, para. 5.47.
383) Kuner, para. 5.47.

개인정보가 신고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고에 대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결정되면, 기업은 신고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384] 이를 위하여 기업은 신고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의 개인정보처리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업은 수집되는 정보의 유형, 정보 처리의 목적, 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체계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의 정보용지 (information shee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385]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신고되는 경우에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의 처리가 신고되어야 한다.[386]

EU에서 신고의 형식이 회원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고에서 요구되는 내용의 상세함이나 특정성의 수준이 서로 다르게 된다.[387] 또한, 각각의 DB 또는 개인정보처리체계에 대한 별개의 신고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회원국마다 입장이 다르다. 즉, 룩셈부르크와 스페인 등은 각각의 DB마다 별개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지만, 핀란드와 포르투갈 등은 단일의 절차로서 개인정보관리자가 다양한 DB를 함께 신고할 수 있게 한다.[388] 후자의 경우에 보다 적은 수의 신고가 요구되어 보다 용이하고 비용도 감소된다.

EU에서는 EEA 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신고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즉, 프랑스와 스페인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역외의 국가명을 밝히고, 역외의 계열 기업에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389] 따라서 단순하게 'EEA 역외로의 이전' (transferred outside the EEA) 또는 '계열 내의 기업으로의 이전' (for transfers within the corporate group)과 같이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390]

(4). 신고의 절차

개인정보처리의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업의 조직에 따라 법규정 준수담당부서 (compliance department), 법무담당부서, 외부 변호사 또는 IT담당부서가 신고를 담당할 수 있다.[391] 다만, 기업의 자회사나 지사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의 신고는 본부부서에서 조정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다.[392] 즉, 기업이 자신의 관련 구성조직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수준을 조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준수가 중앙에서 조정될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고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현지의 지사 등에 맡기게 되면 각 지사 별로 준수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의 지사 등이 서로 다르게 신고를 하게 되면 하나의 DB가 자칫 여러 국가들에서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 이같이 신고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가 중앙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현지 지사 등의 직원 또는

384) Kuner, para. 5.48.
385) Kuner para. 5.48.
386) Kuner, para. 5.48.
387) Kuner, para. 5.48.
388) Kuner, para. 5.51.
389) Kuner, para. 5.52.
390) Kuner, para. 5.52.
391) Kuner, para. 5.53.
392) Kuner, para. 5.53.

현지 변호사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들이 현지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여러 국가들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는 현지 지사 또는 계열사 등의 직원이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기업 본부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기업 내의 법무담당부서가 이러한 조정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개인정보처리의 신고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393] 동 부서는 기업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절차의 개관을 작성하고, 이러한 개관을 현지의 지사 등에게 배부한다.[394] 이와 함께 동 부서는 감독당국에 제출될 신고서와 자료를 현지 지사 등에게 배부한다.[395] EU에서 특정 회원국이 신고의 면제를 허용한다고 판단되면, 현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396]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해도 될 것이다.[397]

다국적기업 등 여러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에 특정 국가의 현지 변호사 또는 현지 지사 등이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한다.[398] 신고서의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에 따른 법적 효과를 야기하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현지에서 작성된 신고서는 기업의 본부 담당부서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5). 신고의 시점

여러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에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모든 신고서가 준비된 후에 동시에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399] 신고 내용의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서의 제출은 관련 다른 문서의 제출과 조정될 필요가 있다.[400] EU의 경우 특히 EEA 역외로의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표준계약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에 관하여 그러하다. 즉, 개인정보가 EEA 역외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동 정보를 이전하는 기업이 모든 현지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401] 이러한 법적 요건에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도 포함된다. 또한 많은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역외로 이전되기 전에 동 조항이 제출될 것을 요구한다.[402] 따라서, 기업은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표준조항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표준계약조항의 제출은 신고 제출의 한 형식이다.[403] 많은 신고서가 기업의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신고서에 표준조항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게 된다.[404] 기업은 신고서와 함께 동

393) Kuner, para. 5.54.
394) Kuner, para. 5.54.
395) Kuner, para. 5.55.
396) Kuner, para. 5.55.
397) Kuner, para. 5.55.
398) Kuner, para. 5.56.
399) Kuner, para. 5.56.
400) Kuner, para. 5.58.
401) Kuner, para. 5.58.
402) Kuner, para. 5.58.
403) Kuner, para. 5.59.
404) Kuner, para. 5.59.

조항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신고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당국이 표준조항의 제출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405] 기업이 EEA 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처리의 제한

4. 면제 및 경과기간

5. 집행 및 형사절차

405) Kuner, para. 5.59.

VI.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 및 추진 체제

1. EU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제

(1). 법적 근거

EU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감독체제는 'Regulation (EC) No 45/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0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406] (이하 '2001 정보보호규칙'이라 함)에 기초한다. EC창설조약들에 따라 설치된 기관들, 즉 '공동체기관들'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407]은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자신들 사이는 물론 EU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하는 EU회원국들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수령자들에게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408]

EU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체제는 2001 개인정보규칙으로 설치되는 독립된 감독당국인 '유럽정보보호감독관'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을 중심으로 운영된다.[409] EDPS는 EU기관들 (institutions and bodies)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의 존중을 감독하는 독립된 기관이다.[410] 2009년 1월 Peter Hustinx와 Giovanni Buttarelli가 각각 EDPS의 감독관과 부감독관으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411]

(2). EDPS의 임무[412]

EDPS는 EU이사회,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등 EU기관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EDPS는 EU회원국들의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EDPS는 EU회원국 내에서 회원국 정부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지 않는다.

EDPS의 첫째 임무는 감독 (supervision)이다.[413] 이를 위하여 첫째, EDPS는 EU기관들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감독한다.[414] 이러한 감독에 있어서 EDPS는 EU의 각 기관에 임명된 정보보호담당 (data protection officer)들과 협력한다.[415] 둘째, EDPS는 EU기관

406) OJ 2001, L 8/1.
407) 리스본조약으로 유럽공동체체제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EU)체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이하 'EU기관'이라 부른다.
408) 2001 정보보호규칙, 제1조 제1항.
409) 2001 정보보호규칙, 제1조 제2항.
410) 2001 정보보호규칙, 제44조.
411) 이들은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으로 임명되었다. Hustinx는 EDPS로 재임하고 있는데, 1991년부터 네덜란드의 정보보호청 청장으로 근무하였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문기관인 제29조 작업반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4 (2009) (이하 'EDPS 2009'라 함).
412) EDPS에 관하여 2001 정보보호규칙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 참조.
413) EDPS 2009, supra note , p. 5.
414) 2001 정보보호규칙, 제46(c)조.
415) 2001 정보보호규칙, 제24조 제1항.

이 처리한 데이터의 정보주체인 개인이 제기한 청원을 듣고 조사한다.[416] 이들 개인은 EU 기관의 직원들을 포함한다.[417] 셋째, EDPS는 직권이나 청원의 제기에 의하여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418]

EDPS의 둘째 임무는 자문 (advice)이다.[419] 이를 위하여 첫째, EDPS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EU기관에게 자문을 준다.[420] 이러한 자문의 과정에서 EDPS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되는 EU입법안에 의견을 준다. EDPS는 첫 임기 중에 경찰과 사법 분야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골격결정 등 주요한 입법안에 의견을 주었다.[421] 둘째, EDPS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감시한다.[422] 셋째, EDPS는 EU사법법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한다.[423] EDPS의 결정은 EU사법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

EDPS의 셋째 임무는 협력 (cooperation)이다.[424] 이를 위하여 첫째, EDPS는 EU역내의 일관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EU회원국의 정보보호당국과 협력한다.[425] 특히 EDPS는 EU회원국들의 정보보호당국 대표들과 제29조 작업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EDPS는 EU회원국들의 정보보호당국에 대하여 상위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426] 둘째, EDPS는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 설치된 감독기관과 협력한다. 이들 데이터베이스에는 망명을 신청한 자와 불법이민자의 디지털지문을 보유한 Eurodac[427] 등이 있다.

2.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제

(1) 정보위원

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위원 (Information Commissioner)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첫째, 정보위원은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좋은 관행' (good practice)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정보위원은 정보보호에 대한 자문과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

416) 2001 정보보호규칙, 제46(a)조.
417) 2001 정보보호규칙, 제33조.
418) 2001 정보보호규칙, 제46(b)조.
419) EDPS 2009, supra note , p. 5.
420) 2001 정보보호규칙, 제46(d)조.
421) EDPS 2009, supra note , p. 6. 2011년 1월 EDPS는 'Opinion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on th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gions -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을 제출하였다.
422) 2001 정보보호규칙, 제46(e)조.
423) 2001 정보보호규칙, 제47(1)(i)조.
424) EDPS 2009, supra note , p. 6.
425) 2001 정보보호규칙, 제46(f)(i)조.
426) EDPS 2009, supra note , p. 6.
427) Eurodac은 다음의 EU이사회의 규칙으로 설치되었다: 'Council Regulation 2725/2000 of 11 December 2000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Eurodac' for the comparison of fingerprints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Dublin Convention' (OJ L 316, 15.12.2000, p. 1). Eurodac에 관하여 http://www.edps.europa.eu/EDPSWEB/edps/Supervision/Eurodac 참조.

보위원은 정보처리활동에 관하여 자신에게 통지하도록 요구된 기관들의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정보보호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집행

개인이 정보보호법의 위반의 결과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경우 정보위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위원은 정보보호법이 위반될 것 같은 여부를 결정한다.

(3) 정보위원의 권한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명시된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통고' (information notices)를 발부한다. 정보위원은 정보보호법의 위반에 대하여 해당 정보관리자가 동 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된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행통고' (enforcement notices)와 '즉시중단명령' (stop now orders)을 발부하여야 한다. 정보위원은 정보보호법상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한다. 정보위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관리자가 '좋은 관행'을 따르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정보위원은 의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보고한다. 정보위원은 2010년 4월 6일부로 벌금 (monetary penalties)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로써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최대 5십만파운드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28)]

428) 이를 위하여 정보위원은 가이던스를 작성하였고, 법무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의 승인을 받았다.

VII. 개인정보의 국제적 보호

1. 국제기구 주도의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는 1970년대 말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429] 예컨대, 1970년 당시 서독의 Hessen주가 데이터보호법 (Datenschutzgesetz)을 제정한 이후, 1973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74년 미국이 공공부문의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인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을 제정하고, 1977년 독일과 1978년 프랑스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마다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부문과 기업의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거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여 규율하거나, 실제의 각 분야 별로 개별적인 법을 채택하여 규율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은 세 번째 유형의 접근을 하고 있고,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첫 번째 유형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 상품과 서비스 등 국제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가 국가간에 교환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국가들 마다 서로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범의 불일치와 이에 따른 국제경제의 원활한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OECD, 유럽평의회 등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OECD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980년 9월 국가들 사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보호및개인정보의초국경유동에관한가이드라인'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이하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라 함)[430]을 채택하였다. 이사회의 권고 형식으로 채택된 1980년 OECD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명목으로 개인정보의 국가간 자유로운 유동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고,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등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즉, 당시 OECD 회원국들의 절반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인권의 위반을 방지하고자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국내법의 차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경간 유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도되었다.[431]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처리되는 수단을 이유로 또는 성질이나 사용되는 정황을 이유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위험을 야기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된다.[432]

---

429) David Banisar and Simon Davies, "Global Trends in Privacy Protection: An International Survey of Privacy, Data Protection, and Surveillance Laws and Developments," 18 J.MarshallJ.Computer&Info.L. 1 (1999) 참조.

430) http://www.oecd.org/document/18/0,3343,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2008년 12월 14일 검색).

431)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전문 둘째 단.

432) 1980년 OECD가이드라인, 2항.

1980년 OECD가이드라인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의 8개 원칙은 이후에 채택된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델이 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의 8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에 제한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인식 또는 동의를 얻어 획득되어야 한다.[433] 둘째, 정보품질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으로서 개인정보는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동 목적의 필요한 정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434] 셋째, 목적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동 정보의 수집 시점보다 늦지 않게 명시되어야 하고, 수집 후의 사용은 수집목적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하는 다른 목적의 실현에 제한되며, 목적의 변경의 경우마다 명시되어야 한다.[435] 넷째, 사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으로서 개인정보는 목적명확화의 원칙에 따라 특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이용 가능 또는 달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436]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의 근거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 다섯째, 보안조치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으로서 개인정보는 정보의 분실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 훼손, 사용, 변조 또는 공개 등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보안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437] 여섯째, 공개성의 원칙 (Openness Principle)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공개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438] 개인정보의 존재와 성질, 개인정보 사용의 주된 목적, 및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일반적인 주거지를 확정하는데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개인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으로서 개인은 다음의 네 가지 권리를 가진다:[439] 첫째, 정보관리자로부터 또는 달리 정보관리자가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권리; 둘째, 합리적 시간 내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합리적 수단으로 및 개인이 즉시 알 수 있는 형식으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 셋째, 위 두 경우의 권리가 거부된 경우에 이유를 받고 그러한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넷째, 자신에 관련되는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 제기가 성공적인 경우에 그 정보를 삭제, 정정, 완결 또는 수정하게 할 권리. 여덟째, 책임의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으로서 정보관리자는 위의 일곱 가지 원칙을 실시하는 조치를 준수함에 책임이 있다.[440]

또한, OECD는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세계적네트워크의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s)을 채택하였다.[441] 동 선언을 통하여 OECD회원국 각료들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이 온라인을 포함하여 어떤 매개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국제적 총의와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대표함을 확인하였다.

---

433) 1980년 OECD가이드라인, 7항.
434) 1980년 OECD가이드라인, 8항.
435) 1980년 OECD가이드라인, 9항.
436) 1980년 OECD가이드라인, 10항.
437) 1980년 OECD가이드라인, 11항.
438) 1980년 OECD가이드라인, 12항.
439) 1980년 OECD가이드라인, 13항.
440) 1980년 OECD가이드라인, 14항.
441) DSTI/ICCP/REG(98)10/FINAL.

(2). 유럽평의회

종종 유럽연합 (European Union) 또는 유럽연합의 EU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U)와 혼동되고 있는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도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 47개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유럽평의회는 1981년 1월 '개인정보의자동화처리에관한개인의보호를위한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이하 CE개인정보보호협약'이라 함)을 채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442]

CE개인정보보호협약이 채택된 배경으로 1968년 유럽평의회의 의회 (Parliamentary Assembly)가 각료위원회 (Committee of Ministers)에게 유럽인권협약이 현대기술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범위를 고려하도록 요청한 경우로 거슬러 올라 간다. 동 의회는 유럽인권협약과 UN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한 사실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후 각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이 자신에 관하여 저장된 자료, 그 기록된 목적, 및 동 자료의 각각의 공개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를 포함한 원칙들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443] 동 결의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444] 그럼에도 동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채택되지는 않았는데, 점차 회원국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을 채택하게 되고, 이들 법의 적용이 '자료의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of information) 또는 '국경간 정보의 유동' (transborder data flows)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정보의 국경간 유동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회원국들의 개인정보보호법들의 주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평의회는 위의 협약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1985년 10월 1일 발효한 CE개인정보보호협약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첫 조약이며, 2008년 12월 18일 현재 40개 회원국들에 대하여 발효 중이다.[445] 동 협약의 당사국들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모든 개인의 기본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동 협약에 규정된 원칙을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협약에 '프라이버시'의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의 이유로 동 협약의 많은 규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진정한 우려보다는 컴퓨터기술의 규제를 통한 상업적 편의와 경제적 보호주의의 고려에 따라 채택된 것이라 비판도 제기된다.[446]

CE개인정보보호협약은 1950년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의 8조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 동 조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 및 가정 생활, 자신의 집 및 통신의 존중에 대한 권리'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를 가진다고 규정한다.[447] 흥미로운 점은 유럽인권협약 10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

442) ETS 108. 동 원문은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08.htm 참조.
443) Resolution (73)22.
444) Lloyd, supra note , p. 23-24.
445) 동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제3국도 채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직 그러한 제3국은 없다. 한편,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Convention on Cybercrime)은 미국이 비준하였고, 캐나다, 코스타리카, 일본, 멕시코 및 남아공이 서명하였다.
446) Text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elegram, quoted in Transnational Data Report, vol. 1, no. 7 (1978), p. 22, Lloyd, supra note , p. 25에서 재인용.
447)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하고 있는데, 동 조문의 '자료를 수령할 자유' (freedom to receive information)는 '자료를 추구할 자유' (freedom to seek information)으로 이해된다.[448] 이들 두 개 조문이 유럽인권협약의 구성에 있어서 보완적임에도, 실제에 있어서 이들 중의 한 권리의 행사로 다른 권리의 행사가 제한받는다고 한다.[449] 즉,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개인이 개인정보 및 동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반면, 다른 개인은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Campbell v. Mirror Group Newspapers* 사건[450]과 *Douglas v. Hello* 사건[451]에서 세계적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야기의 공표를 두고서 신문사 등과 빚어진 마찰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들 사건에서 영국의 상원 (House of Lords)은 3:2로 이들 연예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교환의 증가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 특히 개인정보의 이러한 교환에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to Convention 108 regarding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ransborder data flows)를 채택하였다.[452] 동 추가의정서는 위 협약의 당사국들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효과적인 보호의 요소가 되는 완전히 독립된 감독당국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포럼의 창설을 위하여 유럽평의회와 유럽공동체의 협력을 위하여 유럽공동체가 위 협약 (ETS 108)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1999년 6월 '협약수정'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 No. 108) allowing the European Communities to accede)을 채택하였다.[453]

2.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

정보보호지침은 EU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처리 또는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동시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인사자료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이전을 적절한 정보보호를 제공하는 제3국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문제는 정보보호지침이나 회원국 국내법이 제3국에서의 정보보호의 '적절성' (adequacy)을 정의하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의 특정 사생활보호체제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지 여부와 정보가 계속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448)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Background to Data Protection", http://www.coe.int/t/e/legal_affairs/legal_co-operation/data_protection/background/11Background.asp#TopOfPage.

449) "Background to Data Protection", http://www.coe.int/t/e/legal_affairs/legal_co-operation/data_protection/background/11Background.asp#TopOfPage.

450) [2004] UKHL 22 on appeal from [2002] EWCA Civ 1373 and [2002] EWHC 499 (QB).

451) [2007] UKHL 21 on appeal from [2005] EWCA Civ 106 and [2005] EWCA Civ 595, [2005] EWCA Civ 861.

452) ETS 181, 동 원문은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81.htm 참조.

453) 동 원문은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08-1.htm 참조.

그럼에도 정보보호지침은 적절하게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454] 이러한 예외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적법하게 하는 요건과 유사하다. 첫째, 정보의 주체인 직원이 명백한 동의를 준 경우이고, 둘째, 직원과의 계약 수행에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이 필요한 경우이고, 셋째, 정보통제자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시 계약: ad hoc contracts)또는 유럽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적 계약조항을 포함하는 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델계약: model contracts)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있어 이러한 예외의 허용은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접근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EU가 미국에게 정보보호의 적절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결국 1998년 미국 정부와 유럽위원회는 EU에 소재한 개인정보의 미국에 대한 이전의 대안적 근거를 협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 'safe harbor privacy accord'가 합의되었다. 안전지대 (safe harbor)는 위에서의 예외에 추가하여 미국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의 제3국에 대한 이전이 해당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계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EU의 정보통제자와 제3국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EU에 사무실을 둔 미국 기업은 미국에 있는 제3자 기업으로 하여금 EU에 소재한 직원에게 건강 또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직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EU에서 미국에 있는 제3자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1). 계약

1). 임시계약

임시계약 (ad hoc contracts)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체결된 계약이며, EU의 정보 수출자와 EU밖에 있는 제3국의 정보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정보보호당국은 이러한 임시계약을 승인한다. 고용관계에서 이러한 계약은 EU에 소재한 기업과 미국에 소재한 관계사 사이에 체결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계약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정보보호지침에 일치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많은 경우에 개인정보가 수출되는 회원국의 관련법에도 일치할 것을 규정한다.

임시계약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개인정보를 EU에서 제3국으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정보보호지침이 EU회원국들 사이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범을 통일하는 것인데, 회원국들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범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EU에서 제3국으로 이전할 법적 근거로서 임시계약을 사용할 때 기업은 개인정보의 이전이 관련 회원국의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시계약이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임시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에 상당한 지체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임시계약에 관한 정보보호당국의 승인은 최소한 한두 달 경과할 수도 있다.[455] 수집된 개인

454) 정보보호지침 제26조.

정보의 처리에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당국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모델계약

유럽위원회는 2001년 6월 EU 내의 정보통제자에게서 제3국의 다른 정보통제자에게의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모델계약 (model contract)을 채택하였다.[456] 2001년 9월 3일 발효한 동 결정으로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형식으로서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모델계약이 개인정보의 실질적이고 간편한 이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모델계약의 단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모델계약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입자는 다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출 회원국 국내법을 준수하거나, 둘째, 모델계약에 부속된 강제적 원칙 (Mandatory Principles)[457]을 준수하거나, 셋째, 유럽위원회의 적절성 결정, 예컨대 안전지대 (safe harbor)를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의 선택은 유럽위원회의 동 결정이 적용되는 관할권 내에 기업이 소재하고 동 기업이 모델계약에 부속된 다른 강제적 사생활 원칙 (mandatory privacy principles)[458]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선택이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459] 예컨대, EU회원국의 한 기업이 개인정보의 수출 회원국 국내법을 준수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기업의 직원들이 여러 회원국들에 소재한다면, 그 기업은 이들 여러 회원국들의 관련 국내법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기업이 두 번째 방법, 즉 강제적 원칙을 준수하기로 한다면, 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된 목적 및 다른 양립할 수 있는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적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그 수집된 목적만을 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세 번째 방법, 즉 유럽위원회의 적절성 결정을 준수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적절성 결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업은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된 목적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두 번째 및 세 번째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일단 EU에서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면 동 정보가 EU에 소재한 경우보다 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된다.

모델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요건으로 한다.[460] 첫째, 정보의 주체인 본인은 모델계약의

---

455) An Overview for Employers, *supra* note 30, p.8

456) Commission Decision 2001/497/EC of 15 June 2001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tothirdcountries,underDirective95/46/EC,O.J.(L181/19)of4.7.2001 *available at* http://europa.eu.int/comm/internal_ market/en/dataprot/news/1539en.pdf. 유럽위원회는 개인정보의 통제자에게서 제3국의 개인정보 처리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필요한 표준계약규정을 채택하였다.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processors established in third countries, under Directive 95/46/EC, *available at http://europa.eu.int/eur-lex/pri/en/oj/dat/2002/l_006/* l_00620020110en00520062.pdf 참조.

457) Commission Decision 2001/497/EC of 15June2001,at Appendix 2.

458) *Id.* , at Appendix 3.

459) An Overview for Employers, *supra* note 30, p.8.

460) *Id.*

제3당사자수혜자 (a third party beneficiary)가 된다. 둘째, 개인정보의 수출자와 수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에 연대하여 (jointly and severally) 배상할 책임을 진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입자는 개인정보 수출자 또는 수출자가 선정한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수입자는 위험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수입자는 관련법이 모델계약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준수를 방해하지 않음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보증하여야 한다. 여섯째, 모델계약의 준거법은 개인정보 수출자가 설립된 회원국 국내법이다. 일곱째, 모델계약의 당사자들은 관련 회원국 국내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 특히 제3국 기업의 경우 EU회원국 국내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모델계약을 통한 개인정보의 제3국에 대한 이전은 정보보호지침 제26조의 규정보다 더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안전지대[461)]

EU와 미국은 EU에 소재한 개인정보의 미국에 대한 이전에 관하여 안전지대 (safe habor)를 채택하였다. 자기통제적인 안전지대 (safe harbor)를 따르도록 자발적으로 결정한 미국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이 적절하다고 간주되고, EU에서 그러한 미국 기업으로의 개인정보는 계속 이전될 수 있다.

안전지대 (safe harbor)는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있어 다른 법적 근거가 제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안전지대 (safe harbor)의 적절성 결정에 구속되기 때문에 안전지대 (safe harbor)를 일반적으로 따르는 기업은 미국으로 이전되는 EU내의 모든 정보에 대한 하나의 사생활보호체제에 구속된다. 둘째, 안전지대 (safe harbor)는 EU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 승인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EU에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자동적으로 간편하게 한다. 셋째, 안전지대 (safe harbor)는 사생활보호에 대한 미국의 자율적 규제의 접근을 반영하여 EU의 정보보호지침의 엄격한 요건을 다소 완화한다. 이러한 이점은 위에서 검토된 다른 법적 근거에 비교할 때 미국 기업들이 안전지대 (safe harbor)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된다.

1). 안전지대의 일반적 요건

미국 기업이 안전지대 (safe harbor)를 따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안전지대 (safe harbor)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당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대한 이의를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기관' (government body which is empowered to investigate complaints and to obtain relief against unfair and deceptive practices)의 관할권의 지배를 받아야 함이다.[462)] 이러한 정부기관은 미국의 연방기관 또는 주정부기관이나 상관이 없지만, 해당 미국 기업의 자기통제적 정보보호

461) 아래 미국과 EU의 안전지대에 관한 내용은 Overview for Employers, *supra* note 30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462) Section 314 of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pret and Obstruct Terrorism (USA PATRIOT ACT) of 2001, Pub. L. No. 107-56 (2001) 참조.

장치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집행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금융당국이 안전지대 (safe harbor) 원칙의 집행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 금융기관은 안전지대 (safe harbor)에 참여할 수 없다.[463]

현재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으로서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464]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465]를 지정하였다.[466] 따라서 FTC나 DOT의 관할권의 지배를 받는 미국의 기업만이 안전지대 (safe harbor)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또한, 안전지대 (safe harbor)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 기업은 미국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C)에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DOC는 이렇게 자기인증을 한 기관의 목록을 유지하고 공개한다.

안전지대 (safe harbor)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은 유럽위원회와 미국 DOC가 함께 합의한 '안전지대프레임워크' (safe harbor framework)를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동 프레임워크는 안전지대 (safe harbor) 원칙, 15개의 질문회답 (FAQs) 및 안전지대 (safe harbor)가 적절하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성된다. 15개의 질문회답은 접근,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의료, 제약, 여행 및 회계관련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같이 안전지대 (safe harbor)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완하는 지침이 된다. 예컨대, 질문회답 9번은 기업의 인사자료 이전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지대 (safe harbor)는 소비자 및 직원의 정보에 모두 적용된다. 미국의 DOC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safe harbor 관련 문서가 게재되어 있다.[467]

FINAL SAFE HARBOR DOCUMENTS

I. U.S. DOCUMENTS - JULY 21, 2000

A. Cover letter from Acting Under Secretary Robert S. LaRussa to U.S. organizations - July 21, 2000

B.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 Annex

C.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1. Sensitive Data
2. Journalistic Exceptions
3. Secondary Liability
4. Investment Banking and Audits
5. The Role of Data Protection Authorities
6. Self-Certification
7. Verification
8. Access

463) An Overview for Employers, *supra* note 30, p.9.
464)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465) 49 U.S.C. S.41712.
466) Article 1(2)(b) of the Commission Decision of 26 July 2000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safe harbour privacy principles and rela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vailable at http://www.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dataprot/adequacy/dec2000520ec.pdf.
467) www.export.gov/safeharbor 참조.

9. Human Resources
10. Article17 contracts
11. Dispute Resolution and Enforcement
12. Choice-Timing of Opt-out
13. Travel Information
14.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oducts
15. Public Record and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D. Letter from U.S. Department of Commerce to Commission Services transmitting the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 and FAQs, etc.

E. Safe Harbor Enforcement Overview.

F. Department of Commerce Memorandum on Damages for Breaches of Privacy, Legal Authorizations and Mergers and Takeovers in U.S. Law.

G. Letter from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concerning its jurisdiction over consumer privacy issues.

H. Letter from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oncerning its authority in protecting the privacy of consumers with respect to information provided to airlines.

II. EUROPEAN COMMISSION DOCUMENTS - July28,2000

A. Letter from Commission Services transmitting the European Commission's Adequacy Finding.

B.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C(2000) 2441 finding the safe harbo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s .

C. Text on Non-Discrimination adopted by the Article 31 Committee on May 31, 2000.

D. Text on Non-Discrimination adopted by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on February 3, 2000.

안전지대 (safe harbor)는 많은 점에서 EU의 정보보호지침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동 지침보다 유연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보보호지침과 유사하게 안전지대 (safe harbor)의 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목적과 동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의 범주 및 동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직원의 개인정보가 원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기업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정보의 이전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은 또한 민감한 정보의 사용에 대하여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요구될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요건은 덜 제한적이며, 명시적이고 광범한 예외를 제공한다. 안전지대 (Safe harbor)는 정보보호지침에는 규정되지 않은 합리성 (reasonableness)을 기준으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제한한다. 즉, 접근의 권리는 접근을 제공하는 부담 또는 비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직원의 접근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안전지대 (safe harbor)는 정보통제자의 임명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을 요구하

지 않는다.

안전지대 (safe harbor)의 자기통제적 접근에 일치하여, 안전지대 (safe harbor)를 따르는 기업은 안전지대 (safe harbor)의 원칙을 준수하는지는 물론 직원들의 이의제기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은 안전지대 (safe harbor)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 검증 및 구제의 요건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은 안전지대 (safe harbor) 원칙을 포함하고 충족하는 민간부문의 사생활보호프로그램 (privacy seal program)을 준수할 수 있다.[468] 또는 기업은 EU회원국의 정보보호당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분쟁해결과 구제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2). 인사자료에 특별히 적용되는 안전지대 요건

인사자료는 안전지대 (safe harbor)의 일반적인 범위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인사자료에 특별한 추가적 요건이 있다. 예컨대, 고용자료에 관한 이의의 해소에 있어 기업은 EU 회원국 정보보호당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경우에는 EU에서 미국으로 직원에 대한 인사자료가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국의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469]

특히 안전지대 (safe harbor)의 질문회답 9번은 직원의 인사자료에 대한 주된 책임이 EU에 소재한 기업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안전지대프레임워크를 침해하여 개인정보를 잘못 처리한 장소가 미국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미국 기업이나 기관이라 하더라도, EU에 있는 기업이 주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EU에 소재한 직원들이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우려를 먼저 EU에 소재한 기업에게 제기하길 바랄 것이다.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는 EU에 있는 기업이 직원은 물론 EU의 관련 법규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지대 (safe harbor)는 정보보호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가지는 모델계약이나 보다 부담스러운 요건을 요구하는 임시계약보다 보다 합리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68) 이러한 사생활보호프로그램에 'TRUSTe EU Safe Harbor Privacy Seal program'과 'BBBOnLine Reliability and Privacy Seal Programs' 등이 있다.
http://www.export.gov/safeharbor/dataprivacy_links.html 참고.

469)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 July21, 2000, http://www.export.gov/safeharbor/SHPRINCIPLESFINAL.htm. 참고.

VIII.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실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실시한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470],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인터넷 이용 개인 936명은 피해의 주된 유형으로 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60.6%)을 지적하였다.[471] 그 다음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60.1%),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55%)가 지적되었다.[472] 그 다음에 주민번호 도용으로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지 않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35.1%), ID 및 비밀번호 도용으로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이 도난당한 경우 (35.1%)가 지적되었다.

2009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인터넷상담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36,167건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이나 신고가 접수되었다. 2008년에 접수된 39,811건보다는 줄었지만, 개인정보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접수된 상담이나 신고의 내용은 신용정보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침해 관련 건수가 23,893건 (67.9%)를 차지하고,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6,303건 (17.9%)를 차지하였다.

[표 8-1] 개인정보침해 건수

접 수 유 형	2008년		2009년		증감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1,129	2.84%	1,075	3.06%	-4.8%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관련	6	0.02%	15	0.04%	150.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7	0.22%	115	0.33%	32.2%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1,037	2.60%	1,171	3.33%	12.9%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 · 침해 등	125	0.31%	158	0.45%	26.4%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6	0.02%	6	0.02%	0.0%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9	0.02%	6	0.02%	-33.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관련	26	0.07%	10	0.03%	-61.5%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1,321	3.32%	819	2.33%	-38.0%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294	0.74%	294	0.84%	0.0%
동의철회 · 열람 또는 정정 요구 관련	949	2.38%	680	1.93%	-28.3%
동의철회, 열람 ·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503	1.26%	603	1.71%	19.9%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7	0.07%	19	0.05%	-29.6%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 침해 · 도용	10,148	25.49%	6,303	17.92%	-37.9%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24,144	60.65%	23,893	67.94%	-1.0%
합 계	39,811	100%	35,167	100%	-11.7%

출처: 2010년 국가정보보호백서 (2010년) 66쪽

470) 2010년 국가정보보호백서 65쪽 참조.
471) 2008년 9월 모 정유회사가 1,12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내부관리 소홀로 인하여 자회사 직원 등이 DB접근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표적 사례이다.
472) 2009년 8월 초고속인터넷회사가 텔레마케팅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각종 영업전화에 시달린 결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현황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별된 법체제이다.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보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민간부문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체계

공공기관이 수집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이 적용된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473]

[표 8-2]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보통신	공공	금융	의료	교육
소관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적용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시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개인정보 처리시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리하는 환자기록 및 비밀	교육기관이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 취급시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준용 사업자	지자체 및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	•신용정보집중 기관 •신용정보업자 •기타 신용정보 취급 사업자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모든 교육기관 및 종사자
수집	•민감정보 수집 제한 및 필요 최소정보 수집 •수집 목적 등 고지 및 사전동의 획득 후 수집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보유 및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시 목적명확 •합리적·공리적 수집 •신용정보 무관 정보 수집 금지	관련 조항 없음	교육적 목적 제한 및 제3자 제공 금지
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파일 이용 및 제공 제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시 동의 획득 의무 •상거래 관계 설정·유지 여부 판단 외 제공 금지	의료기록 누설 및 제3자 제공 금지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 자료 등을 동의없이 제3자 제공 금지 (초·중등)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가이드' (2011년) 18쪽

47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474] 첫째,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475]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476]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477]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

[표 8-3]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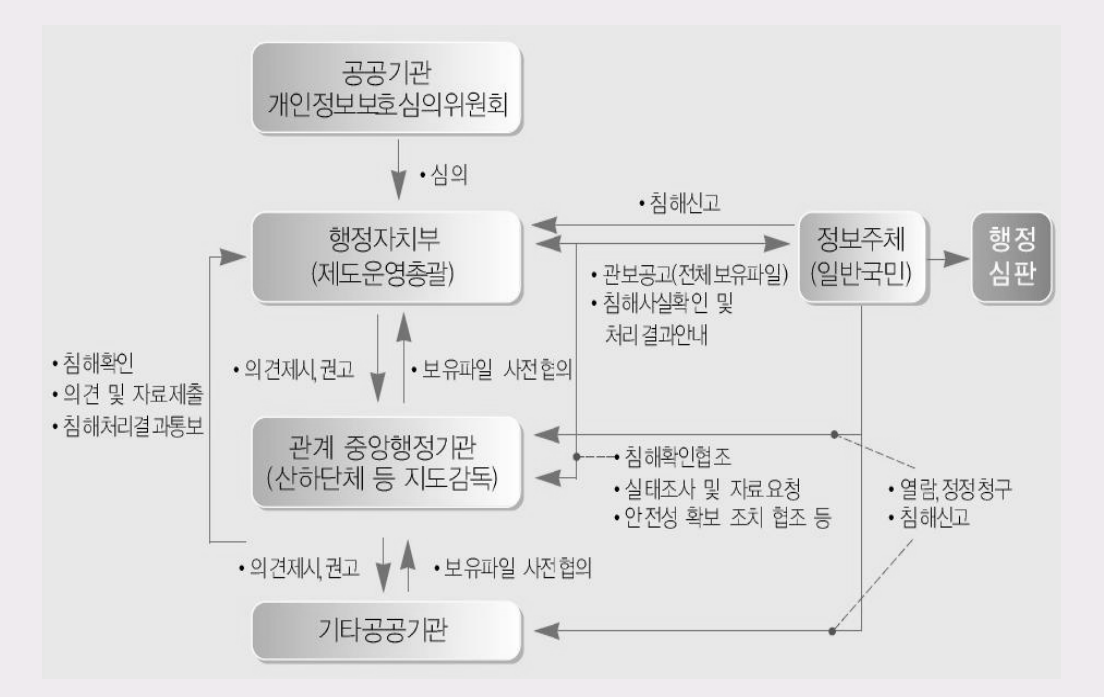

출처: 행정자치부, '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업무매뉴얼' (2008년) 31쪽

474)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475)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476)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1항.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77)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의2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478]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479]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480]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48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482]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483]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484] 동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485]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체계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이외에 정유사 등 오프라인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22개 업종에 동 법이 준용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고충 처리 및 피해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이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478)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제1항.
479)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열람은 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480)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48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48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48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2.
484)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485)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

[표 8-4]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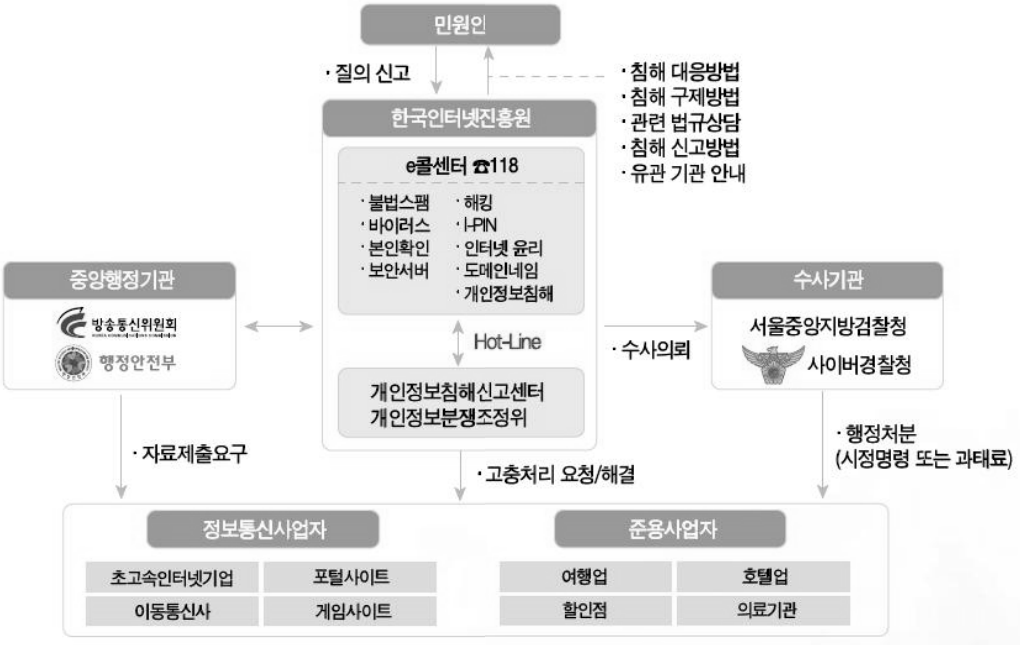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 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업무매뉴얼’ (2008년) 31쪽.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현황

위에서 간략히 거론한대로 현재 한국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크게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별하여 제정되어 있고, 이외에 개별적 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발견된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과 오프라인

[표 8-5]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안

구분	법안명	발의자	발의일시	경과
제17대 국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노회찬 의원 (민주노동당)	2004.11.22.	임기만료 폐기 (2008. 5. 29.)
	개인정보보호법안	정성호 의원 (열린우리당)	2005. 2. 1.	법안 철회 (2005.4.15.)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이은영 의원 (열린우리당)	2005. 2. 2.	법안 철회 (2005.4.15.)
	개인정보보호법안	이은영 의원 (열린우리당)	2005. 7. 11.	임기만료 폐기 (2008. 5. 29.)
	개인정보보호법안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	2005. 10. 17.	임기만료 폐기 (2008. 5. 29.)
제18대 국회	개인정보보호법안	이혜훈 의원 (한나라당)	2008. 8. 8.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
	개인정보보호법안	변재일 의원 (민주당)	2009. 10. 27.	
	개인정보 보호법안	정부안	2008. 11. 28.	

출처: 2010년 국가정보보호백서 (2010년) 71쪽.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기존의 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는 등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단일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하여 이혜훈 의원, 변재일 의원 및 정부의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표 8-6] 제18대 국회 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 비교

	정부안	이혜훈의원안	변재일의원안
추진 체계	● 국무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조~제10조) – 정책 심의 · 자문기능 수행 ※ 정책수립 · 집행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담당	● 국무총리소속 개인정보위원회 (제34조~제40조) – 정책 수립 · 집행기능 수행 ※ 조사, 시정명령 등 규제권 행사	●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0조~제46조) – 정책 수립 · 집행기능 수행 ※ 조사, 시정명령 등 규제권 행사
피해 구제	●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별도 설치	● 개인정보위원회 內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內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조정결정에 민사상 합의 효력 부여 (제44조)	●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제58조)	●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제62조)
	● 집단분쟁조정 미도입	● 집단분쟁조정 도입(제60조)	● 집단분쟁조정 도입(제64조)
	● 단체소송 미도입	● 단체소송 미도입	● 단체소송 도입(제67조~제73조)
처리 기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제17조) 기준 차등화 – 제공시 더욱 엄격히 보호 ※ 계약이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시 동의원칙 명시 – 예외 사유 규정(제8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기준 동일(제7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시 고지의무 부과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집 · 이용	● 공공부문은 법령상 소관사무 수행 등 예외 인정(§30)	●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처리
업무 위탁	● 업무위탁시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의무(제25조)	● 공개 또는 고지의무 없음 – 수탁자 관리 · 감독, 손해배상책임 등만 규정(제15조)	● 공개 또는 고지의무 없음 – 수탁자 관리 · 감독, 손해배상책임 등만 규정(제23조)
CCTV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기준 및 관리책임(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장치 설치 · 운영시 게시, 고지 등(제14조)	● 자동정보처리장치 설치 · 운영시 고지 등(제18조)
유출 통지	●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32조)	● 개인정보 누출 · 공개 · 도용(누출등) 통지 및 신고(제20조)	● 개인정보 누출 · 공개 · 도용(누출등) 통지 및 신고(제25조)
공공 기관	● 개인정보파일 등록(제30조) ● 개인정보영향평가(제31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제31조) ● 개인정보영향평가(제32조) ● 파일 연계 · 연동시 협의(제33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제13조) ● 개인정보영향평가(제36조) ● 파일 연계 · 연동시 협의(제14조)
기타	● 미도입	●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 등록(제7조) ● DB마케팅 사업 위원회 등록 제도 도입(제17조) ● 평가 · 인증기관 지정(제52조)	●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 등록(제33조) ● DB마케팅 사업 위원회 등록 제도 도입(제17조) ● 평가 · 인증기관 지정(제38조)

출처: 2010년 국가정보보호백서 (2010년) 72쪽

2011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일반원칙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들 3개 법안은 많은 공통적 규정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집단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 DB마케팅등록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동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ㆍ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안 제2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안 제7조.제8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이 설치된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이 마련된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한다. 넷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이 강화된다. (안 제24조)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다섯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안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안 제3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ㆍ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된다. 여섯째,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안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된다. (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ㆍ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이 규정된다. 여덟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안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아홉째, 단체소송이 도입된다. (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유사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

정보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은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된다. 열째, 개인정보 침해사실이 신고되어야 한다. (안 제62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시사점

부 록

관련 규범의 국문 번역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2.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95/46/EC)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100a thereof,

유럽공동체설립조약, 특히 제100a조를 고려하고,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1],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며,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189b of the Treaty[3],

조약 제189b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행동하며,

(1) Whereas the objectives of the Community, as laid down in the Treaty, as amended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include creating an ever closer union among the peoples of Europe, fostering closer relations between the States belonging to the Community, ensuring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by common action to eliminate the barriers which divide Europe, encouraging the constant improvement of the living conditions of its peoples, preserving and strengthening peace and liberty and promoting democracy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rights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Member States and in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 조약에서 제정되고 EU조약에서 개정된 공동체의 목적은 유럽인 사이의 보다 밀접한 연합을 창조하고, 공동체에 속한 국가들 사이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조장하며, 유럽을 분할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공동의 행위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보장하고, 유럽인의 생활조건의 계속적인 향상을 고무하며, 평화와 자유를 보존·강화하고 그리고 회원국들의 헌법과 법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이 인정한 기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1) OJ No C 277, 5. 11. 1990, p. 3 and OJ No C 311, 27. 11. 1992, p. 30.

2) OJ No C 159, 17. 6. 1991, p. 38.

3) Opin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11 March 1992 (OJ No C 94, 13. 4. 1992, p. 198), confirmed on 2 December 1993 (OJ No C 342, 20. 12. 1993, p. 30); Council common position of 20 February 1995 (OJ No C 93, 13. 4. 1995, p. 1) and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15 June 1995 (OJ No C 166, 3. 7. 1995).

(2) Whereas data-processing systems are designed to serve man; whereas they must, whatever the nationality or residence of natural persons, respect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and contribute to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trade expansion and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2) 데이터처리 시스템은 인간에 봉사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동 시스템은 자연인의 국적 혹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기본권과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진보, 무역 확대 및 개인의 복지에 기여하여야 하고;

(3) Whereas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an internal market in which, in accordance with Article 7a of the Treaty, the free movement of goods, persons, services and capital is ensured require not only that personal data should be able to flow freely from one Member State to another, but also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should be safeguarded;

(3) 조약 제7a조에 따라 상품,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부시장의 설립과 운영은 개인정보가 한 회원국으로부터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며;

(4) Whereas increasingly frequent recourse is being had in the Community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various spheres of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whereas the progress m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is making the processing and exchange of such data considerably easier;

(4)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의존이 점차 빈번해지고; 정보기술에서 이루어진 진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교환을 상당히 더 용이하게 하며;

(5) Whereas the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resulting from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7a of the Treaty will necessarily lead to a substantial increase i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between all those involved in a private or public capacity in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in the Member States; whereas the exchange of personal data between undertakings in different Member States is set to increase; whereas the national authorities in the various Member States are being called upon by virtue of Community law to collaborate and exchange personal data so as to be able to perform their duties or carry out tasks on behalf of an authority in another Member State within the context of the area without internal frontiers as constituted by the internal market;

(5) 조약 제7a조의 의미 내에서 내부시장의 설립과 운영에서 결과하는 경제적·사회적 통합은 반드시 회원국들에서 사적 또는 공적 지위에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 사이의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다른 회원국들의 기업들 사이의 개인정보의 교환은 증가하기 시작하며; 내부시장에 의하여 구성된 내부국경 없는 영역의 맥락 내에서, 다양한 회원국들의 국내 당국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원국의 당국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요청받고 있고;

(6) Wherea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he coordinated introduction of new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 the Community necessitate and facilitate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6) 더구나, 공동체에서 과학·기술적 협력의 증가와 새로운 통신망의 조정된 도입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필요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며;

(7) Whereas the difference in levels of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fforded in the Member States may prevent the transmission of such data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State to that of another Member State; whereas this difference may therefore constitute an obstacle to the pursuit of a number of economic activities at Community level, distort competition and impede authorities in the discharge of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Community law; whereas this difference in levels of protection is due to the existence of a wide variety of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7) 회원국들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수준의 차이는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전송을 방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공동체 차원에서 많은 경제활동의 수행에 장애가 되고, 경쟁을 왜곡하며 공동체법에 따라 당국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보호 수준에서 이러한 차이는 국내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의 넓은 다양성의 존재에 기인하고;

(8) Whereas, in order to remove the obstacles to flows of personal data,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such data must be equivalent in all Member States; whereas this objective is vital to the internal market but cannot be achieved by the Member States alone, especially in view of the scale of the divergences which currently exist between the relevant laws in the Member States and the need to coordin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so as to ensure that the cros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is regulated in a consistent manner that is in keeping with the objective of the internal market as provided for in Article 7a of the Treaty; whereas Community action to approximate those laws is therefore needed;

(8)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수준은 모든 회원국들에서 동등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적은 내부시장에 중요하지만 회원국들에서 관련 법 사이에 현재 존재하는 차이의 규모와 조약 제7a조에 규정된 내부시장의 목적과 조화되는 일관된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규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들 법을 조정할 필요의 관점에서 회원국들 단독으로 이룰 수 없고; 이들 법을 조화하는 공동체 행동이 필요하며;

(9) Whereas, given the equivalent protection resulting from the approximation of national laws, the Member States will no longer be able to inhibit the free movement between them of personal data on grounds relating to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nd in particular the right to privacy; whereas Member States will be left a margin for manoeuvre, which may, in the context of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also be exercised by the business and social partners; whereas Member States will therefore be able to specify in their national law the general conditions governing the lawfulness of data processing;

(9) 국내법의 조화 결과 동등한 보호가 주어지면, 회원국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련된 이유로 그들 사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 이상 금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회원국들은 행동의 여유를 갖게 되고, 지침의 이행 맥락에서 기업과 사회적 동반자들이 이 여유를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원국들은 그들의 국내법에서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을 규율하는 일반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원국들은 그들의 입법에 의하여 현재 규정된 보호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동의 여유의 한계 내에서 및 공동체법에 따라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whereas in doing so the Member States shall strive to improve the protection currently provided by their legislation; whereas, within the limits of this margin for manoeuvre and in accordance with Community law, disparities could ari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and this could have an effect on the movement of data within a Member State as well as within the Community;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동체 내에서 뿐 아니라 회원국 내에서 데이터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0) Whereas the object of the national law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which is recognized both i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ommunity law; whereas, for that reason, the approximation of those laws must not result in any lessening of the protection they afford but must, on the contrary, seek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in the Community;

(10)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국내법의 목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8조와 공동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과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의 조화는 이들이 제공하는 보호를 축소하지 말아야 하고, 공동체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1) Whereas the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which are contained in this Directive, give substance to and amplify those contained in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1) 본 지침에 포함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1981년 1월 28일 유럽평의회협약'에 포함된 것을 실체화하고 확장하고;

(12) Whereas the protection principles must apply to al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any person who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Community law; whereas there should be excluded the processing of data carried out by a natural person in the exercise of activities which are exclusively personal or domestic, such as correspondence and the holding of records of addresses;

(12) 보호원칙은 공동체법에 의하여 활동이 규율되는 사람에 의한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에 적용되어야 하고; 서신왕래와 주소의 기록 보유와 같이 주로 개인적이거나 가사에 관한 행동의 수행에서 자연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데이터의 처리는 배제되어야 하며;

(13) Whereas the acitivities referred to in Titles V and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regarding public safety, defence, State security or the acitivities of the State in the area of criminal laws fall outside the scope of Community law,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Member States under Article 56 (2), Article 57 or Article 100a of the Treaty

(13)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의 안보에 관한 EU조약 제5편과 제6편에 정한 행동 또는 형법 영역의 국가 행동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56조 제2항, 제57조 또는 제100a조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법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이러한 처리가 국가안보 사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wherea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at is necessary to safeguard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State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Directive where such processing relates to State security matters;

항과 관련될 때, 본 지침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14) Whereas, given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s under way, in the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techniques used to capture, transmit, manipulate, record, store or communicate sound and image data relating to natural persons, this Directive should be applicable to processing involving such data;

(14) 정보화 사회의 골격 내에서 자연인과 관련한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갈무리, 전송, 조정, 기록, 저장, 또는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의 진행 중인 발전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본 지침은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처리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15) Whereas the processing of such data is covered by this Directive only if it is automated or if the data processed are contained or are intended to be contained in a filing system structured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relating to individuals, so as to permit easy access to the personal data in question;

(15) 본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하여 그 처리가 자동화되거나 또는 처리된 데이터가 개인에 관한 특정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파일링시스템에 포함되거나 포함되도록 의도된 경우에 한하고;

(16) Whereas the processing of sound and image data, such as in cases of video surveillance, does not come within the scope of this Directive if it is carried out for the purposes of public security, defence, national security or in the course of State activities relating to the area of criminal law or of other activities which do not come within the scope of Community law;

(16) 비디오 감시의 경우처럼 음성과 영상 데이터의 처리는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또는 형법의 영역에 관련한 국가 활동 또는 공동체법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본 지침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17) Whereas, as far as the processing of sound and image data carried out for purposes of journalism or the purposes of literary or artistic expression is concerned, in particular in the audiovisual field, the principles of the Directive are to apply in a restricted manne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laid down in Article 9;

(17) 보도의 목적 또는 문학적 또는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수행된 음성과 영상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 특히 시청각 분야에서, 본 지침의 원칙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된 방법에 적용되어야 하고;

(18) Whereas, in order to ensure that individuals are not deprived of the protection to which they are entitled under this Directive,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mmunity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one of the Member States; whereas, in this connection, processing carried ou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a controller who is established in a Member State should be governed by the

(18) 개인은 본 지침에 따라 부여받는 보호를 박탈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회원국들 중 하나의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 회원국에서 설립되는 관리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처리는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law of that State;

(19) Whereas establishment o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implies the effective and real exercise of activity through stable arrangements; whereas the legal form of such an establishment, whether simply branch or a subsidiary with a legal personality, is not the determining factor in this respect; whereas, when a single controller is established on the territory of several Member States, particularly by means of subsidiaries, he must ensure, in order to avoid any circumvention of national rules, that each of the establishments fulfils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e national law applicable to its activities;

(19) 회원국의 영토에의 설립은 안정된 준비(stable arrangements)를 통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의 실행을 의미하고; 이러한 설립의 법적 형식은, 단순한 지점 또는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이든, 이 점에서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여러 회원국들 영토에하나의 관리자가 설립되는 경우, 특히 자회사의 방법으로, 그는 국내 규범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자회사가 그의 활동에 적용되는 국내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여야 하고;

(20) Whereas the fact that the processing of data is carried out by a person established in a third country must not stand in the way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whereas in these cases, the processing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means used are located, and there should be guarantees to ensure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are respected in practice;

(20) 제3국에 설립된 자가 데이터의 처리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본 지침에서 규정된 개인의 보호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처리는 사용된 수단이 위치한 회원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본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가 사실상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이 있어야 하며;

(21) Whereas this Directiv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of territoriality applicable in criminal matters;

(21) 본 지침은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영토주의 원칙과 저촉하지 않고;

(22) Whereas Member States shall more precisely define in the laws they enact or when bringing into force the measures taken under this Directive the general circumstances in which processing is lawful; whereas in particular Article 5, in conjunction with Articles 7 and 8, allows Member States, independently of general rules, to provide for special processing conditions for specific sectors and for the various categories of data covered by Article 8;

(22) 회원국들은 그들이 제정하는 법에서 또는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시행할 때 처리가 적법한 일반 상황을 보다 더 상세하게 정의하여야 하고; 제7조와 제8조와 함께 특히 제5조는 회원국들이, 일반원칙과 독립하여, 특정 부문을 위한 그리고 제8조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다양한 범주를 위한 특별한 처리 조건을 규정할 수 있게 허용하며;

(23) Whereas Member States are empowere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both by means of a gen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as regard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by sectorial laws such as those relating, for example, to statistical institutes;

(2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수단으로 또는 예컨대 통계기관에 관련되는 등의 부문법에 의하여 회원국들은 개인의 보호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수권받고;

(24) Whereas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leg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data which concerns them is not affected by this Directive;

(24) 법인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 법인의 보호에 관한 입법은 본 지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25) Whereas the principles of protection must be reflected, on the one hand, in the obligations imposed on persons, public authorities, enterprises, agencies or other bodies responsible for processing, in particular regarding data quality, technical security, notification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processing can be carried out, and, on the other hand, in the right conferred on individuals, the data on whom are the subject of processing, to be informed that processing is taking place, to consult the data, to request corrections and even to object to processing in certain circumstances;

(25) 보호의 원칙은 한편으로 데이터의 질, 기술적 보안, 감독당국에의 통지, 및 처리가 수행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처리에 책임 있는 사람, 공공당국, 기업,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부과된 의무에 반영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의 처리 주체인 개인에게 부여된 다음의 권리, 즉 처리가 진행 중임을 통지받고, 데이터에 관하여 협의하며, 정정을 요청하고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처리를 반대할 권리에 반영되어야 하며;

(26) Whereas the principles of protection must apply to any information concerning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person; whereas,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identifiable, account should be taken of all the means likely reasonably to be used 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person to identify the said person; whereas the principles of protection shall not apply to data rendered anonymous in such a way that the data subject is no longer identifiable; whereas codes of conduc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7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providing guidance as to the ways in which data may be rendered anonymous and retained in a form in which identification of the data subject is no longer possible;

(26) 보호의 원칙은 신원이 확인된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한 정보에 적용되어야 하고;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자 또는 문제의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다른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 같은 모든 수단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호의 원칙은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익명 (무명?)으로 제공된 데이터에 적용하지 않고; 제27조의 의미 내에서 행동강령은 데이터가 익명 (무명?)으로 제공되어 정보주체의 신원 확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형식으로 보유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27) Wherea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must apply as much to automatic processing of data as to manual processing; whereas the scope of this protection must not in effect depend on the techniques used, otherwise this would create a serious risk of circumvention; whereas, nonetheless, as regards manual processing, this Directive covers only filing systems, not unstructured files; whereas, in particular, the content of a filing system must be structured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relating to individuals allowing easy access to the personal

(27) 개인의 보호는 데이터의 자동화 처리와 마찬가지로 수작업 처리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호의 범위는 사용된 기술에 실제로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피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수작업 처리에 관하여, 본 지침은 파일링시스템만 적용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파일에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파일링시스템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개인에 관련한 특정 기준에 따라 구조화되어야 하며; 제2(c)조의 정의와 일치하여 개인정보의 구조화된 set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상

data; whereas, in line with the definition in Article 2 (c), the different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stituents of a structured set of personal data, and the different criteria governing access to such a set, may be laid down by each Member State; whereas files or sets of files as well as their cover pages, which are not structured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shall under no circumstances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Directive;

이한 기준, 및 이러한 set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상이한 기준은 각 회원국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고; 특정 기준에 따라 구조화되지 않은 파일이나 파일의 set (모음?) 또는 표지는 어떤 경우에도 본 지침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며;

(28) Whereas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must be lawful and fair to the individuals concerned; whereas, in particular, the data must be adequate, relevant and not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processed; whereas such purposes must be explicit and legitimate and must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collection of the data; whereas the purposes of processing further to collection shall not be incompatible with the purposes as they were originally specified;

(28) 개인정보의 처리는 관련 개인에게 적법하고 공정하여야 하고; 특히 데이터는 그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관련되며,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목적은 명백하고 정당하여야 하고 데이터의 수집 시점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수집 이후의 처리의 목적은 원래 특정된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29) Whereas the further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historical, statistical or scientific purposes is not generally to be considered incompatible with the purposes for which the data have previously been collected provided that Member States furnish suitable safeguards; whereas these safeguards must in particular rule out the use of the data in support of measures or decisions regarding any particular individual;

(29)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추가적 처리는 회원국들이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면 이전에 데이터가 수집된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이러한 보호장치는 특히 특정 개인에 관한 조치 또는 결정을 옹호하여 데이터의 사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30) whereas in order to be lawful,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must in addition be carried out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or be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binding on the data subject, or as a legal requirement, or for the performance of a task carried ou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or in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 natural or legal person, provided that the interest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 are not overriding; whereas, in particular, in order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involved while guaranteeing effective competition, Member States may determine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rsonal data may be used or disclosed to a third party in the context of the legitimate

(30) 적법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권리와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다면 (????), 개인정보의 처리는 추가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을 얻어 수행되거나 정보주체를 구속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또는 법적 요건으로서, 또는 공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임무의 수행을 위하거나 공적 권한의 행사에서,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필요하여야 하고; 특히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면서 관련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회사와 다른 기관의 정당한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또는 자선기관에 의하여 또는 다른 단체나 재단에 의하여, 예를 들면 정치적 성격의, 수행되는 마케팅 목적

ordinary business activities of companies and other bodies; whereas Member States may similarly spec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rsonal data may be disclosed to a third party for the purposes of marketing whether carried out commercially or by a charitable organization or by any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of a political nature for example, subject to the provisions allowing a data subject to object to the processing of data regarding him, at no cost and without having to state his reasons;

으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조건을 유사하게 명시할 수 있는데, 정보주체는 무료로 그리고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서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31) Wherea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must equally be regarded as lawful where it is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an interest which is essential for the data subject's life;

(31)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의 생활에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개인정보의 처리는 동등하게 적법하다고 간주되어야 하며;

(32) Whereas it is for national legisl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roller performing a task carried ou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should be a public administration or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governed by public law, or by private law such as a professional association;

(32) 공익을 위하여 또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자가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와 같이 공법이나 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지의 결정은 국내법에 의하고;

(33) Whereas data which are capable by their nature of infringing fundamental freedoms or privacy should not be processed unless the data subject gives his explicit consent; whereas, however, derogations from this prohibition must be explicitly provided for in respect of specific needs, in particular where the processing of these data is carried out for certain health-related purposes by persons subject to a legal obligation of professional secrecy or in the course of legitimate activities by certain associations or foundations the purpose of which is to permit the exercise of fundamental freedoms;

(33) 정보주체가 자신의 명시적 동의를 주지 않는다면 그 성질상 기본적 자유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처리되지 말아야 하고 (should); 그러나, 이들 데이터의 처리가 직업적 비밀유지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에 의하여 일정한 보건관련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기본적 자유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목적인 일정한 단체나 재단에 의하여 정당한 활동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금지로부터의 예외는 특정 필요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34) Whereas Member States must also be authorized, when justified by grounds of important public interest, to derogate from the prohibition on processing sensitive categories of data where important reasons of public interest so justify in areas such as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 especially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and cost-effectiveness of the procedures used for settling claims for benefits and services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 scien-

(34) 공중보건과 사회보호 - 특히 의료보험제도에서 급부와 서비스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의 질과 비용-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 과학적 연구와 정부 통계와 같은 분야에서 공공이익의 중요한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회원국들은 또한, 중요한 공공이익의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데이터의 민감한 분야의 처리에 대한 금지로부터 예외를 허가받아야 하고; 회원국들은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의

tific research and government statistics; whereas it is incumbent on them, however, to provide specific and suitable safeguards so a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privacy of individuals;

그리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35) Whereas, moreove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official authorities for achieving aims, laid down in constitutional law or international public law, of officially recognized religious associations is carried out on important grounds of public interest;

(35) 더구나, 헌법 혹은 국제공법에서 정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 당국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공익의 중요한 이유로 수행되고;

(36) Whereas where, in the course of electoral activities, the operation of the democratic system requires in certain Member States that political parties compile data on people's political opinion, the processing of such data may be permitted for reasons of important public interest, provided that appropriate safeguards are established;

(36) 선거활동의 과정에서 일정한 회원국들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운용으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견에 관한 데이터를 집계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요한 공공이의을 이유로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가 허용될 수 있으며;

(37) Wherea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purposes of journalism or for purposes of literary of (or???) artistic expression, in particular in the audiovisual field, should qualify for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certain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in so far as this is necessary to reconcile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with freedom of information and notably the right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s guaranteed in particular in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Member States should therefore lay down exemptions and derogation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as regards general measures on the legitimacy of data processing, measures on the transfer of data to third countries and the power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whereas this should not, however, lead Member States to lay down exemptions from the measures to ensure security of processing; whereas at least the supervisory authority responsible for this sector should also be provided with certain ex-post powers, e.g. to publish a regular report or to refer matters to the judicial authorities;

(37) 특히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의 제10조에서 보장한 정보의 자유와 특히 정보를 수령하고 전달할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과 조화할 필요의 한도에서, 보도의 목적으로 또는 문학적 또는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특히 시청각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본 지침의 일정한 규정의 요건에서의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져야 하고; 따라서 회원국들은 정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 조치, 제3국으로의 데이터의 이전에 관한 조치 및 감독당국의 권한에 관하여 ??????????????????? 기본권 사이의 균형의 목적에 필요한 면제와 예외를 규정하여야 하며 (should); 그러나 이것이 회원국들이 처리의 보안을 보장할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should); 최소한 이 부문을 책임진 감독당국은 정기적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 사안을 회부할 권한과 같은 일정한 사후권한을 가져야 하며;

(38) Whereas, if the processing of data is to be

(38) 정보의 처리가 공정하여야 한다면, 정보주

fair, the data subject must be in a position to learn of the existence of a processing operation and, where data are collected from him, must be given accurate and full information, bearing in mind the circumstances of the collection;

체는 처리 운용의 존재를 알 위치에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된 경우, 수집의 상황을 상기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받아야 하고;

(39) Whereas certain processing operations involve data which the controller has not collected directly from the data subject; whereas, furthermore, data can be legitimately disclosed to a third party, even if the disclosure was not anticipated at the t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subject; whereas, in all these cases, the data subject should be informed when the data are recorded or at the latest when the data are first disclosed to a third party;

(39) 일정한 처리 운용이 관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더구나, 데이터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었을 당시 공개가 예정되지 않았어도, 데이터는 제3자에게 정당하게 공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경우 정보주체는 데이터가 기록될 때 또는 늦어도 데이터가 제3자에게 처음으로 공개될 때에 통지받아야 하고 (should);

(40) Wherea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impose this obligation of the data subject already has the information; whereas, moreover, there will be no such obligation if the recording or disclosure are expressly provided for by law or i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data subject proves impossible or would involve disproportionate efforts, which could be the case where processing is for historical, statistical or scientific purposes; whereas, in this regard, the number of data subjects, the age of the data, and any compensatory measures adopted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40) 그러나, 정보주체가 이미 정보를 가지면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고 ?????; 더구나, 기록이나 공개가 명백하게 법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정보의 정보주체에게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처리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와 같을 수 있는 불균형한 노력을 수반할 경우 이러한 의무는 없을 것이고; 이 점에서 정보주체의 수, 데이터의 연령 ??????, 및 채택되는 보상조치가 고려될 수 있으며;

(41) Whereas any person must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access to data relating to him which are being processed, in order to verify in particular the accuracy of the data and the lawfulness of the processing; whereas, for the same reasons, every data subject must also have the right to know the logic involved in the automatic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im, at least in the case of the automated decisions referred to in Article 15 (1); whereas this right must not adversely affect trade secrets o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 particular the copyright protecting the software; whereas these considerations must not, however, result in the data subject being refused all information;

(41) 특히 데이터의 정확성과 처리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람은 처리되고 있는 자신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이유로 모든 정보주체는 또한 적어도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자동화된 결정의 경우 자신에 관한 자료의 자동화 처리에 수반된 로직을 알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 권리는 영업비밀 또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저작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러나 이러한 고려로 정보주체가 모든 정보를 거부당하지는 않아야 하며;

(42) Whereas Member States may, in the interest of the data subject or so as to protect the

(42) 회원국들은, 정보주체의 이익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restrict rights of access and information; whereas they may, for example, specify that access to medical data may be obtained only through a health professional;

여, 접근과 정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회원국들은 예컨대 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오직 보건 전문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으며;

(43) Whereas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access and information and on certain obligations of the controller may similarly be imposed by Member States in so far as they are necessary to safeguard, for example, national security, defence, public safety, or important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s of a Member State or the Union, as well as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and action in respect of breaches of ethics in the regulated professions; whereas the list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should include the tasks of monitoring, inspection or regulation necessary in the three last-mentioned areas concerning public security,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s and crime prevention; whereas the listing of tasks in these three areas does not affect the legitimacy of exceptions or restrictions for reasons of State security or defence;

(43) 형사사건의 조사와 기소 및 규제되는 직업에서 윤리 위반에 관한 소송은 물론, 국가안보, 방위, 공공의 안전, 또는 회원국이나 EU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한 회원국들은 접근과 정보의 권리 및 관리자의 일정한 의무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고; 예외와 제한의 목록은 공공의 안전,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과 범죄예방에 관한 세 가지 마지막에 언급된 영역에서 필요한 감시, 조사 또는 규제의 임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들 세 영역에서의 임무의 목록은 국가안보 또는 방위를 이유로 하는 예외 또는 제한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고;

(44) Whereas Member States may also be led,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Community law, to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concerning the right of access, the obligation to inform individuals, and the quality of data, in order to secure certain of the purposes referred to above;

(44) 공동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국들은, 위에서 언급된 일정한 목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접근권, 개인에 통지할 의무, 및 데이터의 질에 관한 본 지침의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고;

(45) Whereas, in cases where data might lawfully be processed on grounds of public interest, official authority or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 natural or legal person, any data subject should nevertheless be entitled, on legitimate and compelling grounds relating to his particular situation, to object to the processing of any data relating to himself; whereas Member States may nevertheless lay down national provisions to the contrary;

(45) 공공이익, 공적 권한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데이터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에서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should); 그럼에도 회원국들은 반대되는 국내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46) Wherea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quires that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be taken, both at the time of the design of the process-

(46)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특히 보안을 유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 시스템의 설계 당시와 처리 당시에 적절한 기술적이고 조직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

ing system and at the time of the processing itself, particularly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and thereby to prevent any unauthorized processing; whereas it is incumbent on the Member States to ensure that controllers comply with these measures; whereas these measures must ensure an appropriate level of security,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costs of their implementation in relation to the risks inherent in the processing and the nature of the data to be protected;

하고; 회원국들은 관리자가 이들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처리에 내재적인 위험과 보호될 데이터의 성질에 관련하여 이들 조치의 이행을 위한 기술상황 ??????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들 조치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여야 하고;

(47) Whereas where a message containing personal data is transmitted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or electronic mail service, the sole purpose of which is the transmission of such messages, the controller in respect of the personal data contained in the message will normally be considered to be the person from whom the message originates, rather than the person offering the transmission services; whereas, nevertheless, those offering such services will normally be considered controllers in respect of the processing of the additional personal data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47) 개인정보를 포함한 메시지가 이러한 메시지의 전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이나 전자우편서비스 수단에 의해서 전송되는 경우, 메시지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리자는 통상적으로 전송서비스를 제공한 자이기보다 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그럼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통상적으로 서비스의 운용에 필요한 추가적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관리자로 간주될 것이며;

(48) Whereas the procedures for notifying the supervisory authority are designed to ensure disclosure of the purposes and main features of any processing operation for the purpose of verification that the opera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measures taken under this Directive;

(48) 처리 운용이 본 지침에 따라 취한 국가조치에 따르는 것을 검증할 목적으로 감독당국에 통지하는 절차는 그 처리 운용의 목적과 주요 특징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49) Whereas, in order to avoid unsuitable administrative formalities, exemptions from the obligation to notify and simplification of the notification required may be provided for by Member States in cases where processing is unlikely adversely to aff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provided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a measure taken by a Member State specifying its limits; whereas exemption or simplification may similarly be provided for by Member States where a person appointed by the controller ensures that the processing carried out is not likely adversely to aff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whereas such a data protection official, whether or not

(49) 부적절한 행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경우에, 그 한계를 명시하여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따른다면, 회원국들은 통지할 의무와 요구된 통지의 간소화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할 수 있고; 관리자가 임명한 사람이 수행된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도록 보장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유사하게 면제 또는 간소화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 고용된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러한 데이터보호직원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의 기능을 수행할 지위에 있어야 하고;

an employee of the controller, must be in a position to exercise his functions in complete independence;

(50) Whereas exemption or simplification could be provided for in cases of processing operations whose sole purpose is the keeping of a register intended, according to national law,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open to consultation by the public or by any person demonstrating a legitimate interest;

(50) 국내법에 따라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도되고 공중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자에 의한 협의에 공개되는 등록부의 유지가 단일의 목적인 처리 운용의 경우에 면제 또는 간소화가 규정될 수 있고;

(51) Whereas, nevertheless, simplification or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notify shall not release the controller from any of the other obligations resulting from this Directive;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로부터의 간소화 또는 면제는 관리자를 본 지침에서 결과하는 다른 의무로부터 면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52) Whereas, in this context, ex post facto ver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must in general be considered a sufficient measure;

(52) 이와 관련하여, 관할 당국에 의한 사후 검증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조치로 간주되어야 하고;

(53) Whereas, however, certain processing operation are likely to pose specific risks to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by virtue of their nature, their scope or their purposes, such as that of excluding individuals from a right, benefit or a contract, or by virtue of the specific use of new technologies; whereas it is for Member States, if they so wish, to specify such risks in their legislation;

(53) 그러나, 일정한 처리 운용은 권리, 혜택이나 계약으로부터 개인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그 처리의 성격, 범위 또는 목적에 의하여, 또는 새로운 기술의 특정 사용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특정 위험을 줄 수 있고; 회원국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입법에 이러한 위험을 명시할 수 있으며;

(54) Whereas with regard to all the processing undertaken in society, the amount posing such specific risks should be very limited; whereas Member States must provide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or the data protection official in cooperation with the authority, check such processing prior to it being carried out; whereas following this prior check, the supervisory authority may, according to its national law, give an opinion or an authorization regarding the processing; whereas such checking may equally take place in the course of the preparation either of a measure of the national parliament or of a measure based on such a legislative measure, which defines the nature of the processing and lays down appropriate safeguards;

(54) 사회에서 수행된 모든 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특정 위험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고; 회원국들은 감독당국 또는 동 당국과 협력하여 데이터보호직원이 처리가 수행되기 전에 동 처리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전 조사에 이어 감독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에 관한 의견 또는 허가를 줄 수 있고; 처리의 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정하는 국내 의회의 조치 또는 이러한 입법조치에 근거한 조치의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조사는 동등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55) Whereas, if the controller fails to respect the

(55)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

rights of data subjects, national legislation must provide for a judicial remedy; whereas any damage which a person may suffer as a result of unlawful processing must be compensated for by the controller, who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if he proves that he is not responsible for the damage,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he establishes fault on the part of the data subject or in case of force majeure; whereas sanctions must be imposed on any person, whether governed by private of public law,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national measures taken under this Directive;

는다면, 국내 입법은 사법적 구제를 규정하여야 하고; 불법적 처리의 결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피해는 관리자에 의하여 보상받아야 하는데, 관리자는 자신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히 정보주체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불가항력의 경우에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사법 또는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여부에 관계 없이 본 지침에 따라 취한 국내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제재를 받아야 하고;

(56) Whereas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are necessary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wherea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guaranteed in the Community by this Directive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which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hereas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 afforded by a third country must be assess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transfer operation or set of transfer operations;

(56)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은 국제무역의 확장에 필요하고; 본 지침에 따라 공동체에서 보장된 개인의 보호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을 방해하지 않으며; 제3국이 부여한 보호 수준의 적절성은 이전 운용 또는 이전 운용의 set에 관련된 모든 상황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57) Whereas, on the other hand,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a third country which does not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must be prohibited;

(57) 다른 한 편으로,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은 금지되어야 하고;

(58) Whereas provisions should be made for exemptions from this prohibi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where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consent, where the transfer is necessary in relation to a contract or a legal claim, where protection of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so requires, for example in cases of international transfers of data between tax or customs administrations or between services competent for social security matters, or where the transfer is made from a register established by law and intended for consultation by the public or persons having a legitimate interest; whereas in this case such a transfer should not involve the entirety of the data or entire categories of the data contained in the register and, when the register is intended for consultation by persons having a legitimate interest, the transfer should be made only at the request of those persons

(58)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계약이나 법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전이 필요한 경우, 조세 또는 세관당국들 사이 또는 사회보장문제 담당 services 사이에서 데이터의 국제적 이전의 경우처럼 중요한 공공이익의 보호가 요구하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공중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의도된 등록부로부터 이전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금지로부터의 면제가 규정되어야 하고 (should);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이전은 등록부에 포함된 데이터의 전부 또는 데이터의 전체 범주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should), 등록부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의도된 경우 그러한 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그들이 수령자가 되는 경우에 이전되어야 하고;

or if they are to be the recipients;

(59) Whereas particular measures may be taken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protection in a third country in cases where the controller offers appropriate safeguards; whereas, moreover, provision must be made for procedures for negotiations between the Community and such third countries;

(59) 관리자가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제3국에서의 보호의 결여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더구나, 공동체와 이러한 제3국 사이에 협상을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며;

(60) Whereas, in any event, transfers to third countries may be effected only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adopted by the Member States pursuant to this Directive, and in particular Article 8 thereof;

(60) 어느 경우에도, 제3국에 대한 이전은 본 지침, 특히 제8조에 따라 회원국들이 채택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 경우에 시행될 수 있고;

(61) Whereas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i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competence, must encourage the trade associations and othe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concerned to draw up codes of conduct so as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taking account of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ing carried out in certain sectors, and respecting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for its implementation;

(61) 회원국들과 유럽위원회는, 각자의 권한 영역에서, 일정한 부문에서 수행되는 처리의 특정 특징을 고려하고,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국내 규정을 존중하여, 본 지침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당 사업자단체와 기타 대표기관들이 행동강력을 마련하도록 장려하여야 하고;

(62) Whereas the establishment in Member States of supervisory authorities, exercising their functions with complete independence,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62) 회원국들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기능을 행사하는 감독당국의 수립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의 본질적 구성부분이고;

(63) Whereas such authorities must have the necessary means to perform their duties, including powers of investigation and intervention, particularly in cases of complaints from individuals, and powers to engage in legal proceedings; whereas such authorities must help to ensure transparency of processing in the Member States within whose jurisdiction they fall;

(63) 이러한 당국은 특히 개인으로부터 고소 (청원???)의 경우 조사와 개입의 권한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한 수단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당국은 자신이 속한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서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조력하여야 하며;.

(64) Whereas the authorities in the different Member States will need to assist one another in performing their duties so as to ensure that the rules of protection are properly respected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64) EU 전역에서 보호규범이 적절하게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당국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서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65) Whereas, at Community level, a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must

(65) 공동체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작업반'이 설치되고 그 기능의 수행에서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하고;

be set up and be completely independent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whereas, having regard to its specific nature, it must advise the Commission and, in particular, contribute to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national rule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작업반은 그의 (자신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하여 유럽위원회를 자문하고, 특히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칙의 통일적 적용에 기여하여야 하며;

(66) Whereas, with regard to the transfer of data to third countries,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calls for the conferment of powers of implementation on the Commis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cedure as laid down in Council Decision 87/373/EEC[4];

(66) 제3국에 대한 데이터의 이전과 관련하여 본 지침의 적용은 유럽위원회에게 이행권한의 부여와 EU이사회결정 87/373/EEC에 규정된 절차의 수립을 요구하고;

(67) Whereas an agreement on a modus vivendi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concerning the implementing measures for acts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89b of the EC Treaty was reached on 20 December 1994;

(67) EC조약 제189b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된 법의 이행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EU이사회 및 유럽위원회 사이에 잠정협정이 1994년 12월 20일 체결되었고;

(68) Whereas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Directiv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notably their right to privacy,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may be supplemented or clarified, in particular as far as certain sectors are concerned, by specific rules based on those principles;

(68)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된 원칙은, 특히 일정한 부문에 있어서, 이들 원칙에 기초한 특정 규칙으로 보충되거나 명확해질 수 있고;

(69) Whereas Member States should be allowed a period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tional measures transposing this Directive in which to apply such new national rules progressively to all processing operations already under way; wherea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cost-effective implementation, a further period expiring 12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is Directive is adopted will be allowed to Member States to ensure the conformity of existing manual filing systems with certain of the Directive's provisions; whereas, where data contained in such filing systems are manually processed during this extended transition period, those systems must be brought into conformity with these provisions at the time of such processing;

(69) 본 지침을 전환하는 국내 조치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회원국들은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처리운용에 새로운 국내 규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비용효과적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지침이 채택된 이후 12년의 추가적 기간 내에 회원국들은 현존하는 수작업 파일링시스템을 본 지침의 일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도록 허용되며; 이러한 파일링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가 연장된 과도기간 중에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처리시점에서 이들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4) OJ No L 197, 18. 7. 1987, p. 33.

(70) Wherea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data subject to give his consent again so as to allow the controller to continue to process, after the national provisions taken pursuant to this Directive enter into force, any sensitive data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concluded on the basis of free and informed consent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se provisions;

(70) 본 지침에 따라서 취한 국내 규정의 효력 발생 전에 자유롭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민감한 데이터를, 이들 규정의 효력 발생 후에, 관리자가 계속하여 처리하도록 허용하게끔 정보주체가 자신의 동의를 다시 줄 필요가 없고;

(71) Whereas this Directive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a Member State's regulating marketing activities aimed at consumers residing in territory in so far as such regulation does not concer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71) 영토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규율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본 지침은 회원국의 이러한 규율을 방해하지 않고;

(72) Whereas this Directive allows the principle of public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Directive,

(72) 본 지침이 본 지침에 규정된 원칙을 이행할 때 공적 문서에 대한 공중의 접근의 원칙이 고려되도록 허용하면서;

HAVE ADOPTED THIS DIRECTIVE:

본 지침을 채택하였다: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Object of the Directive

1. In accordance with this Directive, Member States shall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natural persons, and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privacy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2. Member States shall neither restrict nor prohibit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between Member States for reasons connected with the protection afforded under paragraph 1.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지침의 목적)

1. 본 지침에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제1항에서 부여된 보호에 관련한 이유로 회원국들 사이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아니된다.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a) 'personal data' shall mean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제2조 (정의)

본 지침의 목적으로:

(a) '개인정보'는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인 (정보주체)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직접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신원증명번호 또는 그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을 참조하여 확인될 수 있는 자이다.

(b)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rocessing') shall mean any operation or set of operations which is performed upon personal data, whether or not by automatic means, such as collection, recording, organization, storage, adaptation or alteration, retrieval, consultation, use, disclosure by transmission, dissemination or otherwise making available, alignment or combin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b) '개인정보의 처리' (처리)는, 자동화 수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송, 유포 또는 달리 이용, 정렬 또는 조합, 차단, 삭제 또는 파괴에 의하여 수집, 기록, 조직, 저장, 각색 또는 수정, 복구, 참조, 사용, 공개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실행되는 운용 (??????) 또는 운용set를 의미한다.

(c) 'personal data filing system' ('filing system') shall mean any structured set of personal data which are accessible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whether centralized, decentralized or dispersed on a functional or geographical basis;

(c) '개인정보 파일링시스템' (파일링시스템)은 기능적 또는 지리적 근거에 따라 집중되거나, 분산되거나 또는 흩어지거나 관계 없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구조화된 set를 의미한다.

(d) 'controller' shall mean the natural or legal person, public authority, agency or any other body which alone or jointly with others determines the purposes and means of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ere the purposes and means of processing are determined by national or Community laws or regulations, the controller or the specific criteria for his nomination may be designated by national or Community law;

(d)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수단을 단독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당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처리의 목적과 수단이 국내 또는 공동체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그의 지명을 위한 특정한 기준은 국내법 또는 공동체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다.

(e) 'processor' shall mean a natural or legal person, public authority, agency or any other body which processes personal data on behalf of the controller;

(e) '처리자'는 관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당국, 기관 또는 다른 단체를 의미한다.

(f) 'third party' shall mean any natural or legal person, public authority, agency or any other body other than the data subject, the controller, the processor and the persons who, under the direct authority of the controller or the processor, are authorized to process the data;

(f) '제3자'는 정보주체, 관리자, 처리자 및 관리자나 처리자의 직접 수권에 의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수권받은 자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당국, 기관 또는 다른 단체를 의미한다.

(g) 'recipient' shall mean a natural or legal person, public authority, agency or any other

(g) '수령인'은, 제3자의 여부와 관계 없이, 데이터의 공개를 받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당

body to whom data are disclosed, whether a third party or not; however, authorities which may receive data in the framework of a particular inquiry shall not be regarded as recipients;

국, 기관 또는 다른 단체를 의미한다.

(h) 'the data subject's consent' shall mean any freely given specific and informed indication of his wishes by which the data subject signifies his agreement to personal data relating to him being processed.

(h)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합의를 표시하여 자신의 의사의 자유롭게 주어진 특정의 고지된 표시를 의미한다.

Article 3 Scope

제3조 (범위)

1. This Directive shall apply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olly or partly by automatic means, and to the processing otherwise than by automatic means of personal data which form part of a filing system or are intended to form part of a filing system.

1. 본 지침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하도록 의도된 개인정보의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법에 의한 처리에 적용되어야 한다.

2. This Directive shall not apply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 in the course of an activity which falls outside the scope of Community law, such as those provided for by Titles V and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in any case to processing operations concerning public security, defence, State security (including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State when the processing operation relates to State security matters) and the activities of the State in areas of criminal law,
   - by a natural person in the course of a purely personal or household activity.

2. 본 지침은 다음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 EU조약의 제5편과 제6편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과 같이 공동체법의 범위 밖에 해당하는 활동의 중에 그리고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의 안보 (처리운용이 국가의 안보사항에 관련될 때 국가의 경제적 복지 포함) 및 형법분야에서 국가의 활동에 관한 처리운용, ??????????????????????????????????
   - 순수하게 개인적 또는 가사적 활동의 중에 자연인에 의한 처리

Article 4 National law applicable

제4조 (적용가능한 국내법)

1. Each Member State shall apply the national provisions it adopts pursuant to this Directive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ere:

   (a) the processing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he activities of an establishment of the controller o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when the same controller is established on the territory of several Member States, he mus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1. 각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에 본 지침에 따라 채택한 자국의 규정을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a) 회원국의 영토에서 관리자의 설립의 활동 맥락에서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동일한 관리자가 수개의 회원국 영토에 설립된 때에 관리자는 이들 각각의 설립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진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필요한

to ensure that each of these establishments complies with the obligations laid down by the national law applicable;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the controller is not established on the Member State's territory, but in a place where its national law applies by virtue of international public law;

(b) 관리자가 회원국 영토에 설립되지 않지만, 국제공법에 의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립된 경우;

(c) the controller is not established on Community territory and, for purposes of processing personal data makes use of equipment, automated or otherwise,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the said Member State, unless such equipment is used only for purposes of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c) 관리자가 공동체의 영토에 설립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당해 회원국 영토에 위치한 자동화된 또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고, 이러한 장비가 공동체의 영토를 통과할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2.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c), the controller must designate a representative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without prejudice to legal actions which could be initiated against the controller himself.

2. 제1항 (c)호에 규정된 상황에서, 관리자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 (legal actions???)을 침해하지 않고, 그 회원국의 영토 내에 설립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CHAPTER II
GENERAL RULES ON THE LAWFULNESS OF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제 2 장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일반규칙

Article 5

제5조

Member States shall, within the limits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determine more precisely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lawful.

회원국들은, 본 장 규정의 한계 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적법한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SECTION I
PRINCIPLES RELATING TO DATA QUALITY

제1절
데이터의 질에 관련된 원칙

Article 6

제6조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personal data must be:

1.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에 따를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a) processed fairly and lawfully;

(a)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

(b) collected for specified, explicit and legitimate purposes and not further processed in a way incompatible with those purposes. Further processing of data for historical,

(b) 특정되고, 명백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들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데이터의 추가

statistical or scientific purposes shall not be considered as incompatible provided that Member States provide appropriate safeguards;

적 처리는 회원국들이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면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선 아니된다;

(c) adequate, relevant and not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collected and/or further processed;

(c) 개인정보가 수집되고/또는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목적에 관련하여 적절하고, 관련 있고 및 지나치지 않을 것;

(d) accurate and, where necessary, kept up to date; every reasonable step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data which are inaccurate or incomplete, having regard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collected or for which they are further processed, are erased or rectified;

(d)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정보로 유지될 것; 정보가 수집되거나 추가로 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교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

(e) kept in a form which permits identification of data subjects for no longer than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data were collected or for which they are further processed. Member States shall lay down appropriate safeguards for personal data stored for longer periods for historical, statistical or scientific use.

(e)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것 보다 더 이상 (길게???) 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유지될 것. 회원국들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더 오랜 기간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정하여야 한다.

2. It shall be for the controller to ensure that paragraph 1 is complied with.

2. 관리자는 제1항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SECTION II
CRITERIA FOR MAKING DATA PROCESSING LEGITIMATE

Article 7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personal data may be processed only if:

(a) the data subject has unambiguously given his consent; or

(b)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the data subject is party or in order to take steps at the request of the data subject prior to entering into a contract; or

(c) processing is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a legal obligation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or

제2절
정당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준

제7조

회원국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a) 정보주체가 그의 동의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또는

(b)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하거나 계약의 체결 전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c) 관리자가 적용대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d) processing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d)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task carried ou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vested in the controller or in a third party to whom the data are disclosed; or

(e) 공공이익을 위하여 또는 관리자나 데이터의 공개를 받는 제3자에게 부여된 공적권한의 행사에서 수행되는 직무의 이행을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f)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legitimate interests pursued by the controller or by the third party or parties to whom the data are disclosed, except where such interests are overridden by the interests fo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 which require protection under Article 1 (1).

(f) 관리자 또는 데이터의 공개를 받는 제3자에 의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이익의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제1조 제1항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한 이익이 이러한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III
SPECIAL CATEGORIES OF PROCESSING

제3절
처리의 특별한 범주

Article 8 The 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data

제8조 (데이터의 특별범주의 처리)

1.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trade-union membership, and the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ealth or sex life.

1. 회원국들은 민족 또는 인종적 기원, 정치적 의견, 종교 또는 철학적 믿음, 노동조합 회원자격을 드러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건강 또는 성생활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a)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explicit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those data, except wher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 provide that the prohibi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not be lifted by the data subject's giving his consent; or

(a) 정보주체가 이들 데이터의 처리에 명백하게 동의를 한 경우. 다만, 회원국들의 법이 제1항에서 언급된 금지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해제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는

(b)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the obligations and specific rights of the controller in the field of employment law in so far as it is authorized by national law providing for adequate safeguards; or

(b) 고용법 분야에서 관리자의 의무와 특정 권리를 수행할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규정한 국내법에 의하여 수권된 경우; 또는

(c) processing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of another

(c) 정보주체가 신체적 또는 법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의 핵

person where the data subject is physically or legally incapable of giving his consent; or

심적 이익의 보호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d) processing is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its legitimate activities with appropriate guarantees by a foundation, association or any other non-profit-seeking body with a political, philosophical, religious or trade-union aim and on condition that the processing relates solely to the members of the body or to persons who have regular contact with it in connection with its purposes and that the data are not disclosed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s; or

(d)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가진 재단, 사단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에 의한 적절하게 보장된 정당한 활동의 중에서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다만, 처리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단체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기적 접촉을 가지는 자에만 관련되어야 하고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다; 또는

(e) the processing relates to data which are manifestly made public by the data subject or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exercise or defence of legal claims.

(e) 처리가 정보주체에 의하여 명백하게 공개된 데이터에 관련되거나 법적 청구 (소송??)의 제기, 수행 또는 방어에 필요한 경우.

3.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processing of the data is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diagnosis, the provision of care or treatment or the management of health-care services, and where those data are processed by a health professional subject under national law or rules established by national competent bodies to the obligation of professional secrecy or by another person also subject to an equivalent obligation of secrecy.

3. 예방의학, 의학적 진단, 처치의 제공 또는 치료 또는 헬스케어서비스의 관리의 목적으로 데이터의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및 국내법 또는 국내관할기관의 규칙에 따라 직업적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의료전문직 (health professional)이나 동등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다른 자에 의하여 이들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에 제1항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Subject to the provision of suitable safeguards, Member States may, for reasons of substantial public interest, lay down exemptions in addition to those laid down in paragraph 2 either by national law or by decis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4. 회원국들은 실질적 공공이익을 이유로, 적절한 보호장치의 제공을 조건으로, 국내법 또는 감독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한 것에 추가하여 적용면제를 정할 수 있다.

5. Processing of data relating to offences, criminal convictions or security measures may be carried out only under the control of official authority, or if suitable specific safeguards are provided under national law, subject to derogations which may be granted by the Member State under national provisions providing suitable specific safeguards. However, a complete register of criminal convictions may be kept only under the control of official authority.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data relating

5. 범죄, 유죄판결 또는 담보조치 (???)에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는 공적당국의 통제 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고, 국내법에서 적절한 특정의 보호장치가 규정되어 있다면 적절한 특정의 보호장치를 규정한 국내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부여할 수 있는 예외를 조건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의 완전한 등록부는 공적당국의 통제 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회원국들은 행정적 제재 또는 민사사건의 판결에 관련된 데이터 또한 공적당국의 통제 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to administrative sanctions or judgements in civil cases shall also be processed under the control of official authority.

있다.

6. Derogations from paragraph 1 provided for in paragraphs 4 and 5 shall be notified to the Commission.

6.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제1항의 예외는 유럽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7. Member States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or any other identifier of general application may be processed.

7. 회원국들은 국내 신원증명번호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신분증이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Article 9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freedom of expression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와 표현의 자유)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exemptions or derogations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Chapter IV and Chapter VI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arried out solely for journalistic purposes or the purpose of artistic or literary expression only if they are necessary to reconcile the right to privacy with the rules governing freedom of expression.

회원국들은 보도 목적 또는 예술적 또는 문학적 표현의 목적만으로 수행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본 장, 제4장 및 제6장 규정의 면제 또는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단, 표현의 자유를 규율하는 규칙과 프라이버시권을 조화하기 위하여 이들 면제 또는 예외가 필요하여야 한다.

SECTION IV
INFORMATION TO BE GIVEN TO THE DATA SUBJECT

제4절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정보

Article 10 Information in cases of collection of data from the data subject

제10조 (정보주체에게서 데이터의 수집시 정보)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controller or his representative must provide a data subject from whom data relating to himself are collected with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except where he already has it:

회원국들은 관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자신에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된 정보주체에게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이미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a) the identity of the controller and of his representative, if any;

(a) 관리자 및, 있는 경우, 그의 대리인의 신원;

(b) the purposes of the processing for which the data are intended;

(b) 데이터가 의도된 처리의 목적;

(c) any further information such as
- the recipients or categories of recipients of the data,
- whether replies to the questions are obligatory or voluntary, as well as the possible

(c)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정보
- 데이터의 수령인 또는 그의 범주,
-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의무적인지 또는 임의적인지, 및 응답을 거부한 경우의 가능한 결과,

consequences of failure to reply,
-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access to and the right to rectify the data concerning him

in so far as such further information is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which the data are collected, to guarantee fair processing in respect of the data subject.

- 정보주체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리와 수정의 권리의 존재

데이터가 수집되는 특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적 정보가 정보주체에 관하여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한.

Article 11 Information where the data have not been obtained from the data subject

1. Where the data have not been obtained from the data subject,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controller or his representative must at the time of undertaking the recording of personal data or if a disclosure to a third party is envisaged, no later than the time when the data are first disclosed provide the data subject with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except where he already has it:

(a) the identity of the controller and of his representative, if any;

(b) the purposes of the processing;

(c) any further information such as
- the categories of data concerned,
- the recipients or categories of recipients,
-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access to and the right to rectify the data concerning him

in so far as such further information is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which the data are processed, to guarantee fair processing in respect of the data subject.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in particular for processing for statistical purposes or for the purposes of historical or scientific research, the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proves impossible or would involve a disproportionate effort or if recording or disclosure is expressly laid down by law. In these cases Member States shall provide appropriate safeguards.

제11조 (데이터주체에게서 데이터가 얻어지지 않은 경우의 정보)

1. 데이터가 정보주체에게서 얻어지지 않은 경우, 회원국들은 관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가 계획된다면 데이터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정보주체에게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규정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a) 관리자 및, 있는 경우, 그의 대리인의 신원;

(b) 처리의 목적

(c)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정보
- 관련 데이터의 범주,
- 수령인 또는 그의 범주,
- 정보주체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리와 수정의 권리의 존재

데이터가 처리되는 특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적 정보가 정보주체에 관하여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한.

2. 특히 통계적 목적으로 또는 역사적 또는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불균형한 노력을 필요하거나 또는 기록 또는 공개가 법에 의하여 명백하게 정해진 경우에 제1항은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들 경우에 회원국들은 적절한 보호장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SECTION V

제5절

THE DATA SUBJECT'S RIGHT OF ACCESS TO DATA

Article 12 Right of access

Member States shall guarantee every data subject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controller:

(a) without constraint at reasonable intervals and without excessive delay or expense:
- confirmation as to whether or not data relating to him are being processed and information at least as to the purposes of the processing, the categories of data concerned, and the recipients or categories of recipients to whom the data are disclosed,
- communication to him in an intelligible form of the data undergoing processing and of any available information as to their source,
- knowledge of the logic involved in any automatic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im at least in the case of the automated decisions referred to in Article 15 (1);

(b) as appropriate the rectification, erasure or blocking of data the processing of which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incomplete or inaccurate nature of the data;

(c) notification to third parties to whom the data have been disclosed of any rectification, erasure or blocking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b), unless this proves impossible or involves a disproportionate effort.

SECTION VI
EXEMPTIONS AND RESTRICTIONS

Article 13 Exemptions and restrictions

1. Member States may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s 6 (1), 10, 11 (1), 12 and 21 when such a restriction constitutes a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a) national security;

정보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리

제12조 (접근의 권리)

회원국들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자로부터 얻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a) 합리적인 간격으로 제약 없이 및 지나친 지연 또는 비용 없이:
- 정보주체에 관련된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적어도 처리의 목적, 관련 데이터의 범주, 및 데이터의 공개를 받는 수령인 또는 그의 범주에 관한 정보,
- 처리가 진행 중인 데이터와 그 출처에 관한 이용가능한 정보의 알기 쉬운 형식에 의한 정보주체에게의 통신,
- 적어도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자동화된 결정의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데이터의 자동적 처리에 수반된 로직의 지식;

(b) 특히 데이터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 처리가 본 지침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의 적절한대로의 교정, 삭제 또는 차단;

(c) 데이터가 공개된 제3자에게 (b)호에 부합하여 수행된 교정, 삭제 또는 차단의 통지. 단,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거나 불균형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면제와 제한

제13조 (면제와 제한)

1. 회원국들은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구성할 때 이렇게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a) 국가안보;

(b) defence;

(c) public security;

(d)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and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of breaches of ethics for regulated professions;

(e) an important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 of a Member State or of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monetary, budgetary and taxation matters;

(f) a monitoring, inspection or regulatory function connected, even occasionally, with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in cases referred to in (c), (d) and (e);

(g) the protection of the data subject or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2. Subject to adequate legal safeguards, in particular that the data are not used for taking measures or decisions regarding any particular individual, Member States may, where there is clearly no risk of breaching the privacy of the data subject, restrict by a legislative measure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2 when data are processed solely for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or are kept in personal form for a period which does not exceed the period necessary for the sole purpose of creating statistics.

(b) 방위;

(c) 공공의 안전;

(d) 범죄행위 또는 규제된 전문직업의 윤리 위반의 예방, 조사, 탐지 및 기소;

(e) 통화, 예산과 조세 문제를 포함하여 회원국 또는 EU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f) (c)호, (d)호 및 (e)호에 언급된 경우에 공적 권한의 행사와, 간헐적이라도, 관계된 감시, 검사 또는 규제적 기능;

(g)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2.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명백히 없는 경우, 특히 데이터가 특정 개인에 관한 조치나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데이터가 과학적 연구의 목적만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통계를 산출하는 단일 목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개인별 형식으로 ???????? 유지될 때, 입법조치에 의하여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VII
THE DATA SUBJECT'S RIGHT TO OBJECT

Article 14 The data subject's right to object

Member States shall grant the data subject the right:

(a) at least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7 (e) and (f), to object at any time on compelling legitimate grounds relating to his particular situation to the processing of data relating to him,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by national legislation. Where there is a justified objection, the processing in-

제7절
정보주체의 반대할 권리

제14조 (정보주체의 반대할 권리)

회원국들은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a) 적어도 제7조 (e)호와 (f)호에 언급된 경우에, 국내입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정보주체의 특별한 상황에 관련된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유로 언제든지 그에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를 반대할 권리. 정당화되는 반대가 있으면, 관리자가 지시한 ???? 처리는 더 이상 이들

stigated by the controller may no longer involve those data;

데이터를 포함할 수 없다;

(b) to object, on request and free of charge,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lating to him which the controller anticipates being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direct marketing, or to be informed before personal data are disclosed for the first time to third parties or used on their behalf for the purposes of direct marketing, and to be expressly offered the right to object free of charge to such disclosures or uses.

(b) 요청에 의하여 및 무상으로, 관리자가 직접마케팅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정보주체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 또는 개인정보가 처음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직접마케팅의 목적으로 제3자를 위하여 사용되기 전에 통지받을 권리, 및 이러한 공개나 사용에 무상으로 반대할 권리를 분명하게 제공받을 권리.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data subjects ar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right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of (b).

회원국들은 정보주체가 (b)호의 처음에 언급된 권리의 존재를 알도록 보장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rticle 15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s

제15조 (자동화된 개인적 결정)

1. Member States shall grant the right to every person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significantly affects him and which is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of data intended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him, such as his performance at work, creditworthiness, reliability, conduct, etc.

1. 직장에서의 성과, 신용도, 신뢰성, 품행 등과 같은 정보주체에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도록 의도된 데이터의 자동화 처리에만 기초하고 그에 관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거나 그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회원국들은 모든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 Subject to the other Articles of this Directive,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a person may be subjected to a decision of the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1 if that decision:

2. 본 지침의 다른 조문을 조건으로,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결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면 회원국들은 정보주체가 동 결정에 종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a) is taken in the course of the entering into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provided the request for the entering into 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lodged by the data subject, has been satisfied or that there are suitable measures to safeguard his legitimate interests, such as arrangements allowing him to put his point of view; or

(a) 정보주체에 의한 ????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한 청약이 충족되었거나 그의 견해를 밝히게 허용하는 약정처럼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의 중에 그 결정이 취하여진다면; 또는

(b) is authorized by a law which also lays down measures to safeguard the data subject's legitimate interests.

(b) 그 결정이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정한 법에 의하여 수권된 경우.

SECTION VIII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OF PROCESSING

Article 16 Confidentiality of processing

Any person ac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controller or of the processor, including the processor himself, who has access to personal data must not process them except on instructions from the controller, unless he is required to do so by law.

Article 17 Security of processing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controller must implement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data against accidental or unlawful destruction or accidental loss, alteration, unauthorized disclosure or access, in particular where the processing involves the transmission of data over a network, and against all other unlawful forms of processing.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cost of their implementation, such measures shall ensure a level of security appropriate to the risks represented by the processing and the nature of the data to be protected.

2. The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controller must, where processing is carried out on his behalf, choose a processor providing sufficient guarantees in respect of the technical security measures and organizational measures governing the processing to be carried out, and must ensure compliance with those measures.

3. The carrying out of processing by way of a processor must be governed by a contract or legal act binding the processor to the controller and stipulating in particular that:
   - the processor shall act only on instructions from the controller,
   - the obligations set out in paragraph 1, as defined by the law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processor is established, shall also be incumbent on the processor.

4. For the purposes of keeping proof, the parts of

제8절
처리의 비밀보장과 보안

제16조 (처리의 비밀보장)

처리자 자신을 포함하여,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처리의 보안)

1. 회원국들은 관리자가 특히 처리가 통신망에 대한 데이터의 전송을 수반하는 경우에 우연하거나 불법적 파괴나 우연한 소실, 변경, 허가받지 않은 공개 또는 접근, 및 처리의 모든 다른 불법적 형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적절한 기술적이고 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그 이행의 기술 상황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는 처리와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위험에 적절한 보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관리자를 대신하여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수행되어야 하는 처리를 규율하는 기술적 보안조치와 조직적 조치에 관하여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처리자를 관리자가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하고, 이들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처리자를 통한 처리의 수행은 관리자에게 처리자를 구속하는 계약 또는 법적 행위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동 계약 또는 법적 행위는 특히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 처리자는 관리자의 지시에만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정한 의무는, 처리자가 설립된 회원국 법에 의하여 정의된대로, 처리자에게도 의무가 된다.

4. 증거 유지의 목적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the contract or the legal act relating to data protection and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in writing or in another equivalent form.

계약 또는 법적 행위의 부분과 제1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련된 요건은 서면으로 또는 다른 동등한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SECTION IX
NOTIFICATION

제9절
통 지

Article 18
Obligation to notify the supervisory authority

제18조 (감독당국에 대한 통지의무)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controller or his representative, if any, must notify the supervisory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28 before carrying out any wholly or partly automatic processing operation or set of such operations intended to serve a single purpose or several related purposes.

1. 회원국들은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단일 목적 또는 수개의 관련 목적에 이용하기로 의도된 자동화 처리운용 또는 일련의 이러한 운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제28조에 언급된 감독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Member States may provide for the simplification of or exemption from notification only in the following cases an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where, for categories of processing operations which are unlikely, taking account of the data to be processed, to affect adversely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they specify the purposes of the processing, the data or categories of data undergoing processing, the category or categories of data subject, the recipients or categories of recipient to whom the data are to be disclosed and the length of time the data are to be stored, and/or
   - where the controller,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 which governs him, appoints a personal data protection official, responsible in particular:
   - for ensuring in an independent manner the internal application of the national provisions taken pursuant to this Directive
   - for keeping the register of processing operations carried out by the controller, containing the items of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1 (2),

   thereby ensuring that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s are un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processing operations.

2. 회원국들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및 아래의 조건에 따라 통지의 간소화 또는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 처리될 데이터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처리운용의 범주에 대하여, 그들 [???]이 처리의 목적, 처리 중인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범주, 정보주체의 범주 또는 범주들,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는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 및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한 경우; 및/또는
   - 관리자가, 자신을 규율하는 국내법을 준수하여, 특히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임명한 경우:
   - 본 지침에 따라 취한 국내 규정의 국내 적용을 독립적 방식으로 보장함
   - 제21조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의 항목을 포함하는, 관리자가 수행한 처리운용의 등록부를 유지함,

   이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가 처리운용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3.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processing whose sole purpose is the keeping of a register which according to laws or regulations is intend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which is open to consultation either by the public in general or by any person demonstrating a legitimate interest.

3. 회원국들은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도되고 일반적으로 대중에 의한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자에 의한 협의에 공개되는 등록부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처리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Member States may provide for an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notify or a simplification of the notification in the case of processing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8 (2) (d).

4. 회원국들은 제8조 제2(d)항에서 언급된 처리운용의 경우 통지의무의 면제 또는 통지의 간소화를 규정할 수 있다.

5. Member States may stipulate that certain or all non-automatic processing operations involving personal data shall be notified, or provide for these processing operations to be subject to simplified notification.

5. 회원국들은 개인정보를 수반하는 일정한 또는 모든 비자동화 처리운용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처리운용이 간소화된 통지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Article 19 Contents of notification

제19조 (통지의 내용)

1. Member States shall specify the information to be given in the notification. It shall include at least: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ntroller and of his representative, if any;

   (b) the purpose or purposes of the processing;

   (c) a description of the category or categories of data subject and of the data or categories of data relating to them;

   (d) the recipients or categories of recipient to whom the data might be disclosed;

   (e) proposed transfers of data to third countries;

   (f) a general description allowing a preliminary assessment to be made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taken pursuant to Article 17 to ensure security of processing.

1. 회원국들은 통지에 포함될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통지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리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b) 처리의 목적 또는 목적들;

   (c) 정보주체의 범주 또는 범주들 및 이들에 관련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범주들의 기술;

   (d)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는 수령인들 또는 수령인의 범주;

   (e) 제3국에 대한 데이터의 제안된 이전;

   (f) 처리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취한 조치의 적절함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예비평가를 허용하는 일반적 기술.

2. Member States shall specify the procedures under which any change affecting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must be notified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2. 회원국들은 제1항에서 언급된 정보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감독관청에 통지되어야 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Article 20 Prior checking

1. Member States shall determine the processing operations likely to present specific risks to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and shall check that these processing operations are examined prior to the start thereof.

2. Such prior check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following receipt of a notification from the controller or by the data protection official, who, in cases of doubt, must consult the supervisory authority.

3. Member States may also carry out such checks in the context of preparation either of a measure of the national parliament or of a measure based on such a legislative measure, which define the nature of the processing and lay down appropriate safeguards.

제20조 (사전 확인)

1. 회원국들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특정한 위험을 줄 것 같은 처리운용을 결정하고 이러한 처리운용이 시작 전에 점검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사전 확인은 관리자 또는 정보보호담당자의 통지를 수령한 감독관청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관리자 또는 정보보호담당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 감독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회원국들은 또한 처리의 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세이프가드를 정하는 국내의회의 조치 또는 이러한 입법조치에 근거한 조치의 준비와 관련하여 이러한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Article 21 Publicizing of processing operations

1. Member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processing operations are publicized.

2.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a register of processing operations no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shall be kept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 register shall contain at least the information listed in Article 19 (1) (a) to (e).
The register may be inspected by any person.

3. Member States shall provide, in relation to processing operations not subject to notification, that controllers or another body appointed by the Member States make available at least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9 (1) (a) to (e) in an appropriate form to any person on request.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processing whose sole purpose is the keeping of a register which according to laws or regulations is intend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which is open to consultation either by the public in

제21조 (처리운용의 공표)

1. 회원국들은 처리운용이 공표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제18조에 따라 통지된 처리운용의 등록부가 감독관청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등록부는 적어도 제19조 제1항 (a)호 내지 (e)호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등록부는 모든 자가 점검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리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 또는 회원국들이 임명한 다른 기관이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형식으로 적어도 제19조 제1항 (a)호 내지 (e)호에 언급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도되고 일반적으로 대중에 의한 또는 정당한 이익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에 의한 협의에 공개되는 등록부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처리에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general or by any person who can provide proof of a legitimate interest.

CHAPTER III
JUDICIAL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

Article 22 Remedies

Without prejudice to any administrative remedy for which provision may be made, inter alia before the supervisory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28, prior to referral to the judicial authori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a judicial remedy for any breach of the rights guaranteed him by the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processing in question.

Article 23 Liability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 has suffered damage as a result of an unlawful processing operation or of any act incompatible with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is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controller for the damage suffered.

2. The controller may be exempted from this liability, in whole or in part, if he proves that he is not responsible for the event giving rise to the damage.

Article 24 Sanctions

The Member States shall adopt suitabl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and shall in particular lay down the sanctions to be imposed in case of infringement of the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CHAPTER IV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제 3 장
사법적 구제, 책임 및 제재

제22조 (구제)

사법기관에 회부하기 전에, 규정될 수 있는 행정적 구제, 무엇보다도 제28조에 언급된 감독당국의 행정적 구제를 침해하지 않고, 회원국들은 문제의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의 침해에 대한 모든 자의 사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책임)

1. 회원국들은 불법적인 처리운용 또는 본 지침에 의하여 채택된 국내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로서 손해를 입은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로부터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건에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본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제24조 (제재)

회원국들은 본 지침 규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고, 특히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 부과되어야 하는 제재를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Article 25 Principles

1. The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transfer to a third country of personal data which are undergoing processing or are intended for processing after transfer may take place only if, without prejudice to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the third country in question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2.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 afforded by a third country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a data transfer operation or set of data transfer operations; particular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nature of the data, the purpose and duration of the proposed processing operation or operations, the country of origin and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the rules of law, both general and sectoral, in force in the third country in question and the professional rules and security measures which are complied with in that country.

3. The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shall inform each other of cases where they consider that a third country does not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4. Where the Commission finds,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31 (2), that a third country does not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y transfer of data of the same type to the third country in question.

5. At the appropriate time, the Commission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remedying the situation resulting from the finding made pursuant to paragraph 4.

6. The Commission may fi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31 (2), that a third country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제25조 (원칙)

1. 회원국들은 처리 중이거나 또는 이전 후에 처리될 의도인 개인정보의 제3국에 대한 이전이, 본 지침의 기타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과의 준수를 침해하지 않고, 문제의 제3국이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제3국이 부여하는 보호의 적당한 수준은 데이터 이전운용 또는 데이터 이전운용의 set를 둘러싼 모든 상황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성격, 제안된 처리운용 또는 운용들의 목적과 기간, 원산국과 최종목적국, 문제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일반적 및 부문적 법규범 및 제3국에서 준수되는 전문적 규칙과 보안조치에 특별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3. 회원국들과 유럽위원회는 제3국이 제2항의 의미 내에서 보호의 적당한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고려하는 경우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유럽위원회가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제3국이 본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보호의 적당한 수준을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회원국들은 문제의 제3국으로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의 이전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유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발견에서 결과하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유럽위원회는, 제31조 제2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3국이, 자신의 국내법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reason of its domestic law or of the international commitments it has entered into, particularly upon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5,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lives and basic freedoms and rights of individuals.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Commission's decision.

또는 자신이 체결한 국제약속을 이유로, 특히 제5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론에 따라, 본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보호의 적당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rticle 26 Derogations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25 and save where otherwise provided by domestic law governing particular cases,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a transfer or a set of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a third country which does not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5 (2) may take place on condition that:

(a)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consent unambiguously to the proposed transfer; or

(b) the transfer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controller or the implementation of pre-contractual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the data subject's request; or

(c) the transfer i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concluded in the interest of the data subject between the controller and a third party; or

(d) the transfer is necessary or legally required on important public interest grounds, or for the establishment, exercise or defence of legal claims; or

(e) the transfer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f) the transfer is made from a register which according to laws or regulations is intend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which is open to consultation either by the public in general or by any person who can demonstrate legitimate interest, to the extent

제26조 (예외)

1. 제25조의 예외로서 그리고 특정 경우를 규율하는 국내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들은 제25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보호의 적당한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이전의 set가 다음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a) 정보주체가 제안된 이전에 명백하게 동의한 경우; 또는

(b) 정보주체와 관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응하여 취한 계약전 조치의 시행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c) 관리자와 제3자의 사이에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의 종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d) 이전이 중요한 공익적 근거에 기초하거나, 또는 법적 주장???의 입증, 행사 또는 방어에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된 경우; 또는

(e) 이전이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f) 법 또는 명령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도되고 일반적으로 대중에 의한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 의한 협의에 공개되는 등록부로부터 이전이 협의를 위한 법에 정한 조건이 특정 경우에서 충족되는 정도까지 이루어지

that the conditions laid down in law for consultation are fulfilled in the particular case.

는 경우.

2.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a Member State may authorize a transfer or a set of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a third country which does not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5 (2), where the controller adduces adequate safeguard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and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nd as regards the exercise of the corresponding rights; such safeguards may in particular result from appropriate contractual clauses.

2. 제1항에 저촉하지 않고, 관리자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및 상응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적당한 보호장치를 제시한 경우, 회원국은 제25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보호의 적당한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이전의 set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특히 적절한 계약조항에 의거할 수 있다.

3. The Member State shall inform the Commission and the other Member States of the authorizations it grants pursuant to paragraph 2.
If a Member State or the Commission objects on justified grounds involving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and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the Commissio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31 (2).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comply with the Commission's decision.

3. 회원국은 유럽위원회와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2항에 따라 자신이 부여하는 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국 또는 유럽위원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를 수반하는 정당화된 사유로 반대하는 경우, 유럽위원회는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Where the Commission decid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31 (2), that certai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offer sufficient safeguards as required by paragraph 2,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comply with the Commission's decision.

4. 유럽위원회가 제31조 제2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일정한 표준적 계약 조항이 제2항이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HAPTER V
CODES OF CONDUCT

제 5 장
행동규범

Article 27

제27조

1. The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shall encourage the drawing up of codes of conduct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by the Member States pursuant to this Directive, taking account of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various sectors.

1. 회원국들과 유럽위원회는, 다양한 부문의 특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채택한 국내 규정의 적절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의도된 행동규범의 작성을 권장하여야 한다.

2. Member States shall make provision for trade associations and other bodies representing other categories of controllers which have drawn up draft national codes or which have the intention of amending or extending existing national codes to be able to submit them to the opinion of the national authority.
Member States shall make provision for this authority to ascertain, among other things, whether the drafts submitted to it a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If it sees fit, the authority shall seek the views of data subjects or their representatives.

2. 회원국들은 국내 규범 초안을 작성하거나 현존의 국내 규범을 수정하거나 확장할 의도를 가진 동업자단체와 관리자의 기타 범주를 대표하는 기타 기관이 그들을 국내당국의 의견에 제출할 수 있게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동 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규범 초안이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에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초안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당국은 정보주체나 그 대리인의 견해를 구하여야 한다.

3. Draft Community codes, and amendments or extensions to existing Community codes, may be submitted to the Working Party referred to in Article 29. This Working Party shall determine, among other things, whether the drafts submitted to it a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If it sees fit, the authority shall seek the views of data subjects or their representatives. The Commission may ensure appropriate publicity for the codes which have been approved by the Working Party.

3. 공동체 규범 초안, 및 현존 공동체 규범의 개정 또는 확장은 제29조에 언급된 작업반에 제출될 수 있다. 동 작업반은 자신에게 제출된 초안이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규정에 일치하는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초안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당국은 정보주체와 그 대리인의 견해를 구하여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작업반이 승인한 규범의 적절한 공표를 보장할 수 있다.

CHAPTER VI
SUPERVISORY AUTHORITY AND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제 6 장
감독당국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작업반

Article 28 Supervisory authority

제28조 (감독당국)

1. Each Member State shall provide that one or more public authoritie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application within its territory of the provisions adopted by the Member States pursuant to this Directive.
These authorities shall act with complete independence in exercising the functions entrusted to them.

1. 각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공공당국이 본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채택한 규정의 자국 영토 내에서의 적용의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동 당국은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의 수행에 있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Each Member State shall provide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re consulted when drawing up administrative measures or regulations relat-

2. 각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련된 행정 조치 또는 규정을 작성할 때 감독관청이 협의

ing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rights and freedom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3. Each authority shall in particular be endowed with:
   - investigative powers, such as powers of access to data forming the subject-matter of processing operations and powers to collect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supervisory duties,
   - effective powers of intervention, such as, for example, that of delivering opinions before processing operations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and ensuring appropriate publication of such opinions, of ordering the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of data, of imposing a temporary or definitive ban on processing, of warning or admonishing the controller, or that of referring the matter to national parliaments or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 the power to engage in legal proceedings where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have been violated or to bring these violations to the attention of the judicial authorities.

   Decisions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which give rise to complaints may be appealed against through the courts.

3. 각 당국은 특히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처리운용의 대상을 형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권한과 감독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조사권한,
   - 제20조에 따라 처리운용이 수행되기 전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러한 의견의 적절한 공표를 보장하며, 데이터의 차단, 삭제 또는 폐기를 명령하고, 처리의 일시적 또는 확정적 금지를 부과하며, 관리자를 경고하거나 훈계하고, 사안을 국내의회 또는 기타 정치적 기관에 회부하는 등의 효과적인 개입의 권한,
   -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이 위반된 경우 법적 절차를 개시하거나 이들 위반을 사법당국에 소추할 권한.

   이의가 제기된 감독당국의 결정은 법원을 통하여 항소될 수 있다.

4. Each supervisory authority shall hear claims lodged by any person, or by an association representing that pers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his rights and freedoms in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person concerned shall be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claim.

   Each supervisory authority shall, in particular, hear claims for checks on the lawfulness of data processing lodged by any person when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is Directive apply. The person shall at any rate be informed that a check has taken place.

4. 각 감독당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하여 모든 자 또는 그를 대표하는 협회가 제기한 청원을 들어야 한다. 해당 자는 청원의 결과를 통지받아야 한다.

   각 감독당국은 특히 본 지침의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이 적용된 때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검사의 청원을 들어야 한다. 그 자는 검사가 수행되었음을 어떤 경우에도 통지받아야 한다.

5. Each supervisory authority shall draw up a report on its activities at regular intervals. The report shall be made public.

5. 각 감독당국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6. Each supervisory authority is competent, whatever the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processing in question, to exercise, on the territory of its own Member State, the powers conferred on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Each authority may be requested to exercise its powers by an authority of another Member State.
The supervisory authorities shall cooperate with one another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particular by exchanging all useful information.

6. 문제의 처리에 어떤 국내법이 적용되든, 각 감독당국은 자신의 회원국 영토에서 제3조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관할권을 가진다. 각 당국은 다른 회원국의 당국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감독당국들은 특히 모든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여 자신의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까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7.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the members and staff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even after their employment has ended, are to be subject to a duty of professional secrecy with regard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o which they have access.

7. 회원국들은 감독당국의 구성원과 직원이, 그들의 고용이 종료한 후에도, 그들이 접근한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Article 29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제29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작업반)

1. A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orking Party', is hereby set up.
It shall have advisory status and act independently.

1.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작업반이, 이하 ‘작업반’이라 함, 이로써 설치된다.
동 작업반은 자문적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2. The Working Party shall be composed of a representative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or authorities designated by each Member State and of a representative of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established for the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and of a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
Each member of the Working Party shall be designated by the institution, authority or authorities which he represents. Where a Member State has designated more than one supervisory authority, they shall nominate a joint representativ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authorities established for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2. 작업반은 각 회원국이 지명한 감독당국 또는 당국들의 대표자와 공동체 기관들을 위하여 설치된 당국 또는 당국들의 대표자, 및 유럽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작업반의 각 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기관, 당국 또는 당국들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한다. 회원국이 둘 이상의 감독당국을 지명한 경우, 공동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공동체 기관들을 위하여 설치된 당국의 경우에도 같다.

3. The Working Party shall take decisions by a simple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3. 작업반은 감독당국들 대표들의 단순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

4. The Working Party shall elect its chairman. The chairman's term of office shall be two years. His appointment shall be renewable.

4. 작업반은 자신의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5. The Working Party's secretariat shall be provided by the Commission.

5. 유럽위원회는 작업반의 사무국을 제공하여야 한다.

6. The Working Party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6. 작업반은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7. The Working Party shall consider items placed on its agenda by its chairman, either on hi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a representative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or at the Commission's request.

7. 작업반은 위원장 자신의 발의로 또는 감독당국들의 대표의 요청으로 또는 유럽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의제에 부의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rticle 30

1. The Working Party shall:

(a) examine any question covering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measures adopted under this Directiv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uniform application of such measures;

(b) give the Commission an opinion on the level of protection in the Community and in third countries;

(c) advise the Commission on any proposed amendment of this Directive, on any additional or specific measures to safeguard the rights and freedoms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any other proposed Community measures affecting such rights and freedoms;

(d) give an opinion on codes of conduct drawn up at Community level.

2. If the Working Party finds that divergences likely to affect the equivalence of protection for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mmunity are arising between the laws or practices of Member States, it shall inform the Commission accordingly.

3. The Working Party may, on its own initiative,

제30조

1. 작업반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조치의 통일적 적용에 기여하도록 동 국내 조치의 적용에 대한 문제의 검토;

(b) 공동체 및 제3국에서의 보호 수준에 관한 의견의 유럽위원회에 대한 제출;

(c) 본 지침의 제안된 개정,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한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또는 특정의 조치 및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기타 제안된 공동체 조치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에 대한 자문;

(d) 공동체 수준에서 작성된 행동규범에 관한 의견의 제출.

2. 작업반이 공동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한 자의 보호의 동등성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차이가 회원국들의 법 또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유럽위원회에 그에 상응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작업반은 자신의 발의로 공동체에서 개인정

make recommendations o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mmunity.

보의 처리와 관한 자의 보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4. The Working Party's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shall be forwarded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31.

4. 작업반의 의견과 권고는 유럽위원회와 제31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5. The Commission shall inform the Working Party of the action it has taken in response to its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It shall do so in a report which shall also be forward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report shall be made public.

5. 유럽위원회는 작업반의 의견과 권고에 응하여 취한 조치를 작업반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도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6. The Working Party shall draw up an annual report on the situ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mmunity and in third countries, which it shall transmit to the Commissio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report shall be made public.

6. 작업반은 공동체와 제3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한 자연인의 보호에 관한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EU이사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CHAPTER VII
COMMUNITY IMPLEMENTING MEASURES

제 7 장
공동체의 조치 이행

Article 31 The Committee

제31조 (위원회)

1. The Commission shall be assisted by a committee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and chair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

1.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되고 유럽위원회의 대표가 의장이 되는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 draft of the measures to be taken. The committee shall deliver its opinion on the draft within a time limit which the chairman may lay down according to the urgency of the matter.
The opinion shall be delivered by the majority laid down in Article 148 (2) of the Treaty.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within the committee shall be weighted in the manner set out in that Article. The chairman shall not vote.
The Commission shall adopt measures which shall apply immediately. However, if these measure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opin-

2. 유럽위원회의 대표는 취할 조치의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시한 내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내려야 한다.
의견은 로마조약 제148조 제2항 [현재 ///조약 ....]에서 정한 과반수로 내려야 한다. 위원회 내의 회원국들 대표들의 표는 동 조항 [현재 ///조약////]에 정한 방식으로 가중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투표해서는 아니된다.
유럽위원회는 즉시 적용해야 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유럽위원회에 의하여 EU이사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 유럽위원회는 전달 일자로부터 3개월의

ion of the committee, they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forthwith. It that event:
- the Commission shall defer application of the measures which it has decided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mmunication,
-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may take a different decision within the time limit referred to in the first indent.

기간 동안 결정한 조치의 적용을 연기하여야 한다,
- EU이사회는 첫 단에서 언급된 시한 내에 특별다수결로 다른 결정을 취할 수 있다.

FINAL PROVISIONS

Article 32

1. Member States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at the latest at the end of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its adoption.
When Member States adopt these measures, they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is Directive or be accompanied by such re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ir official publication. The methods of making such reference shall be laid down by the Member States.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processing already under way on the date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enter into force, is brought into conformity with these provisions within three years of this date.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eceding sub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e processing of data already held in manual filing systems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in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ve shall be brought into conformity with Articles 6, 7 and 8 of this Directive within 12 years of the date on which it is adopted. Member States shall, however, grant the data subject the right to obtain, at his request and in particular at the time of exercising his right of access, the rectification, erasure or blocking of data which are incomplete, inaccurate or stored in a way incompatible with the legitimate purposes pursued by the controller.

최종규정

제32조

1. 회원국들은 늦어도 본 지침의 채택일로부터 3년의 기간 말에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 규정 및 행정규칙 ???을 시행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이 이들 조치를 채택할 때, 본 지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거나 공식적 공표의 경우 이러한 참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조의 방법은 회원국들이 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미 진행 중인 처리가 이러한 날의 3년 내에 이들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전의 호의 예외로, 회원국들은 본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국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미 수작업파일링시스템에 보관된 데이터의 처리가 지침의 채택일로부터 12년 내에 본 지침의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정보주체에게, 그의 요청으로 및 특히 그의 접근권의 행사시점에서, 관리자가 추구한 정당한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거나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수정, 삭제 또는 차단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3. 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2, Member States may provide, subject to suitable safeguards, that data kept for the sole purpose of historical research need not be brought into conformity with Articles 6, 7 and 8 of this Directive.

3. 제2항의 예외로서, 회원국들은, 적절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역사적 연구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관된 데이터가 본 지침의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4. Member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Commission the text of the provisions of domestic law which they adopt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Directive.

4. 회원국들은 본 지침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채택하는 국내법의 규정 본문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Article 33

The Commission shall report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at regular intervals, starting not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the date referred to in Article 32 (1),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ve, attaching to its report, if necessary, suitable proposals for amendments. The report shall be made public.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to the data processing of sound and image data relating to natural persons and shall submit any appropriate proposals which prove to be necessary, taking account of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 the light of the state of progr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제33조

유럽위원회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본 지침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정의 제안을 첨부하여 제32조 제1항에 언급된 일자 후 3년 이전에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자연인에 관련된 음향과 이미지 데이터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본 지침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사회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입증되는 적절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34

This Directive is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제34조

본 지침은 회원국들에 대한 것이다.

Data Protection Act 1998

An Act to make new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including the obtaining, holding, use or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16th July 1998]

1998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보유, 사용, 공개를 포함한 처리의 규율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

[1998년 7월 16일]

PART I
PRELIMINARY

1 Basic interpretative provisions.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data" means information which－
(a) is being processed by means of equipment operating automatically in response to instructions given for that purpose,
(b) is recorded with the intention that it should be processed by means of such equipment,
(c) is recorded as part of a relevant filing system or with the intention that it should form part of a relevant filing system,
(d) does not fall within paragraph (a), (b) or (c) but forms part of an accessible record as defined by section 68; or
(e) is recorded information held by a public authority and does not fall within any of paragraphs (a) to (d);

"data controller" means, subject to subsection (4), a person who (either alone or jointly or in common with other persons) determines the purposes for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any personal data are, or are to be, processed;

"data processor",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means any person (other than an employee of the data controller) who processes the data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data subject" means an individual who is the subject of personal data;

"personal data" means data which relate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제 1 장
총 칙

1 【기본해석조항】

(1) 본 법률에서 내용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란 다음의 정보를 의미한다.
(a) 입력된 처리 목적의 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처리되는 것,
(b) 이러한 장비로 처리될 의도로 기록되는 것,
(c) 관련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록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려는 의도로 기록되는 것,
(d) (a), (b), (c)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s. 68에서 정의된 접근가능한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e) 공공 관계당국이 보유하는 기록된 정보로서 (a) 내지 (d)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보관리자"란 ss.(4)를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처리해야 하는지를 (단독, 합동 혹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와 관련해 정보관리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자(정보관리자의 피고용인은 제외)를 의미한다.

"정보주체"란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란 다음으로부터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a) from those data, or
(b) from those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and includes any expression of opinion about the individual and any indication of the intentions of the data controller or an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individual;

의미하며,
(a) 해당 데이터
(b)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입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
해당 개인에 대한 모든 의견의 표현과, 정보관리자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모든 자의 의도의 표시를 포함한다.

"processing", in relation to information or data, means obtaining, recording or holding the information or data or carrying out any operation or set of operations on the information or data, including—
(a) organisation, adaptation or alteration of the information or data,
(b) retrieval, consultation or use of the information or data,
(c)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r data by transmission, dissemination or otherwise making available, or
(d) alignment, combin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of the information or data;

"처리"란 정보 또는 데이터와 관련해 이를 취득, 기록, 보유하거나 해당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작업 또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정보나 데이터의 정리, 적용, 변경
(b) 정보나 데이터의 정정, 참고, 사용
(c) 전달, 유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한 정보나 데이터의 공개
(d) 정보나 데이터의 배열, 결합, 차단, 삭제 또는 제거

"public authority" means a public authority as defined by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or a Scottish public authority as defined by the Freedom of Information (Scotland) Act 2002;

"공공 당국"이란 2000년 정보자유법에서 정의된 공공 당국 또는 2002년 (스코틀랜드) 정보자유법에서 정의된 공공 관계당국을 의미한다.

"relevant filing system" means any set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to the extent that, although the information is not processed by means of equipment operating automatically in response to instructions given for that purpose, the set is structured, either by reference to individuals or by reference to criteria relating to individuals, in such a way that specific information relating to a particular individual is readily accessible.

"관련 파일링시스템"이란 입력된 처리 목적의 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정보가 처리되지는 않으나, 개인이나 개인과 관련된 특징을 참고하여 특정인에 관한 특정 정보가 즉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집합을 의미한다.

(2)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obtaining" or "recording",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includes obtaining or recording the information to be contained in the data, and
(b) "using" or "disclosing",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includes using or disclosing

(2) 본 법률에서 내용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경우,
(a) 개인정보와 관련된 "획득" 또는 "기록"은 개인정보에 포함될 정보의 획득 또는 기록을 포함한다.
(b)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용" 또는 "공개"는 개인정보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포함한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3)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hether any information is recorded with the intention－
(a) that it should be processed by means of equipment operating automatically in response to instructions given for that purpose, or
(b) that it should form part of a relevant filing system,
it is immaterial that it is intended to be so processed or to form part of such a system only after being transferred to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3) 본 법률의 목적상 어떠한 정보가 다음의 의도로 기록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a) 입력된 처리 목적의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 또는
(b) 관련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할 것
정보가 유럽경제지역 밖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전송된 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처리되거나 그러한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고자 의도되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4) Wher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only for purposes for which they are required by or under any enactment to be processed, the person on whom the obligation to process the data is imposed by or under that enactment i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data controller.

(4) 개인정보가 오직 법령에서 혹은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요구되는 목적만을 위해 처리되는 경우, 그 법령에서 혹은 법령에 의해 처리의 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본 법률의 목적상 정보관리자를 가리킨다.

(5) In paragraph (e)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ubsection (1), the reference to information “held” by a public authority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2)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or section 3(2), (4) and (5)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Scotland) Act 2002.

(5) ss.(1)의 “데이터”의 정의 중 para.(e)에서 공공 관계당국에 의해 “보유”되는 정보라 일컬을 때 이는 2000년 정보자유법 S. 3(2), 또는 2002년 (스코틀랜드) 정보자유법 S.3(2), (4), (5)에 부합하도록 이해되어야 한다.

(6) Where
(a) section 7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prevents Parts I to V of that Act or
(b) section 7(1)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Scotland) Act 2002 prevents that Act, from applying to certain information held by a public authority, that information is not to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e)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ubsection (1) as held by a public authority.

(6) 다음의 경우
(a) 2000년 정보자유법 S.7에 의해 동법 제1장 내지 5장이, 혹은
(b) 2002년 (스코틀랜드) 정보보호법 S. 7(1)에 의해 그 법률이, 공공 관계당국이 보유하는 일정 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그 정보는 ss.(1)의 “데이터”의 정의 중 para.(e)의 목적상 공공 관계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2 Sensitive personal data.

In this Act “sensitive personal data” means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as to－

2 【민감한 개인정보】

본 법률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다음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a) the racial or ethnic origin of the data subject,
(b) his political opinions,
(c) his religious beliefs or other beliefs of a similar nature,
(d) whether he is a member of a trade un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e) his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condition,
(f) his sexual life,
(g) the commission or alleged commission by him of any offence, or
(h) any proceedings for any offence committed or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him, the disposal of such proceedings or the sentence of any court in such proceedings.

(a) 정보주체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출신
(b) 그의 정치적 견해
(c) 그의 종교적 신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속성의 신념
(d) 그가 (1992년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법에서 의미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e) 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나 상태
(f) 그의 성생활
(g) 법률 위반 또는 추정된 위반 사실
(h) 법률 위반이나 추정된 위반에 대해 소송 계속 여부와 해당 소송의 처분 또는 그 소송에 대한 법원에 의한 판결

3 The special purposes.

In this Act "the special purposes" means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the purposes of journalism,
(b) artistic purposes, and
(c) literary purposes.

3 【특별 목적】

본 법률에서 "특별 목적"이란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럿을 의미한다.
(a) 보도 목적
(b) 예술 목적
(c) 문학 목적

4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1) References in this Act to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re to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t I of Schedule 1.

(2) Those principles are to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Part II of Schedule 1.

(3) Schedule 2 (which applies to all personal data) and Schedule 3 (which applies only to sensitive personal data) set out conditions applying for the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and Schedule 4 sets out cases in which the eighth principle does not apply.

(4) Subject to section 27(1), it shall be the duty of a data controller to comply with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all personal data with respect to which he is the data controller.

4 【정보보호 기본원칙】

(1) 본 법률에서 정보보호 기본원칙이라 함은 Sch.1의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을 의미한다.

(2) 기본원칙은 Sch.1의 제2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Sch.2와 (민감한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는) Sch.3은 정보보호 제1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Sch.4는 제8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다.

(4) S.27(1)을 조건으로, 자신이 정보관리자인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해 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정보관리자의 의무이다.

5 Application of Act.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or under section 54, this Act applies to a data controller in respect of any data only if—
(a) the data controller is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data are processed in the context of that establishment, or
(b) the data controller is established neither in the United Kingdom nor in any other EEA State but uses equipment in the United Kingdom for processing the data otherwise than for the purposes of transit through the United Kingdom.

(2) A data controller falling within subsection (1)(b) must nominat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representative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s (1) and (2), each of the following is to be treated as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a) an individual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the United Kingdom,
(b) a body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or of any part of, the United Kingdom,
(c) a partnership or other unincorporated association formed under the law of any p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d) any person who does not fall within paragraph (a), (b) or (c) but maintains in the United Kingdom—
(i) an office, branch or agency through which he carries on any activity, or
(ii) a regular practice; and the reference to establishment in any other EEA State has a corresponding meaning.

5 【법률의 적용】

(1) S.54에서 또는 그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률은 데이터와 관련한 정보관리자에게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a) 정보관리자가 영국 내에서 종사하고 데이터가 그러한 종사의 맥락에서 처리되는 경우, 또는
(b) 정보관리자가 영국 또는 그 외의 유럽경제지역 국가 내 어디에서 종사하지 않으나, 데이터가 영국을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영국 내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ss.(1)(b)에 해당하는 정보관리자는 본 법률의 목적상 영국 내의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3) ss.(1), (2)의 목적상 다음 각각의 경우는 영국 내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a) 영국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b) 영국 또는 영국의 일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c) 영국 또는 영국의 일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비법인단체
(d) para.(a), (b), (c)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국 내에서 다음을 유지하고,
(i) 그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나 지점 또는 대리점
(ii) 일상적 업무
다른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종사에 관해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모든 자.

6 The Commissioner and the Tribunal.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there shall be an officer known as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n this Act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er").

(2) The Commissioner shall be appointed by Her Majesty by Letters Patent.

6 【정보위원 및 법정】

(1) 본 법률과 2000년 정보자유법의 목적상 정보위원 (본 법률에서 "정보위원"이라 칭함.)이라는 관리를 두어야 한다.

(2) 정보위원은 특허장에 의해 여왕폐하가 임명한다.

(3)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there shall be a tribunal known as the Information Tribunal (in this Act referred to as "the Tribunal").

(3) 본 법률과 2000년 정보자유법의 목적상 정보법정(본 법률에서 "법정"이라 칭함.)이라는 법정을 두어야 한다.

(4)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a chairman appointed by the Lord Chancello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Lord Advocate,
(b) such number of deputy chairmen so appointed as the Lord Chancellor may determine, and
(c) such number of other members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s he may determine.

(4) 법정은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의장
(b) 대법원장의 정하는 수로 임명하는 부의장
(c) 국무장관이 정하는 수로 임명하는 다른 구성원

(5) The members of the Tribunal appointed under subsection (4)(a) and (b) shall be—
(a) persons who satisfy the judicial-appointment eligibility condition on a 5-year basis,
(b) advocates or solicitors in Scotland of at least 5 years' standing, or
(c) members of the bar of Northern Ireland or solicitors of the Court of Judicature of Northern Ireland of at least 5 years' standing.

(5) ss.(4)(a)와 (b)에 따라 임명되는 법정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5년 기준의 재판관 임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b) 최소 5년 이상 경력의 스코틀랜드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
(c) 최소 5년 이상 경력의 북아일랜드 변호사협회 회원 또는 북아일랜드 최고법원 사무변호사

(6) The members of the Tribunal appointed under subsection (4)(c) shall be—
(a) person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aa) person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ose who make requests for information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b) person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data controllers and
(bb) person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public authorities.

(6) ss.(4)(c)에 따라 임명되는 법정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
(aa)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해 정보를 요청하는 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
(b) 정보관리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
(bb) 공공 관계당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

(7) Schedule 5 has effect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er and the Tribunal.

(7) 정보위원과 법정에 대해서는 Sch.5가 효력을 갖는다.

PART II
RIGHTS OF DATA SUBJECTS AND OTHERS

제 2 장
정보주체 및 기타인의 권리

7 Right of access to personal data.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to sections 8, 9 and 9A, an individual is entitled—
(a) to be informed by any data controller whether personal data of which that individual is the data subject are being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that data controller,
(b) if that is the case, to be given by the data controller a description of—
(i) the personal data of which that individual is the data subject,
(ii)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being or are to be processed, and
(iii) the recipients or classes of recipients to whom they are or may be disclosed,
(c) to have communicated to him in an intelligible form—
(i) the information constituting any personal data of which that individual is the data subject, and
(ii) any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data controller as to the source of those data, and
(d) where the processing by automatic means of personal data of which that individual is the data subject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matters relating to him such as, for example, his performance at work, his creditworthiness, his reliability or his conduct, has constituted or is likely to constitute the sole basis for any decision significantly affecting him, to be informed by the data controller of the logic involved in that decision-taking.

(1) 본 섹션의 규정과 S.8, 9, 9A를 조건으로, 개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정보관리자로부터 해당 개인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가 정보관리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처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b) 그러한 경우, 정보관리자로부터 다음에 대한 상세설명을 받을 권리
(i) 그 개인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
(ii) 처리중이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
(iii) 그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공개가 예상되는 수령인 또는 수령 계층
(c) 알기 쉬운 형태로 다음을 전달받을 권리
(i) 그 개인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정보
(ii) 그 개인정보의 출처에 관해 정보관리자가 알 수 있는 정보
(d) 예컨대 업무수행능력, 신용, 신뢰성, 품행과 같이 개인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그 개인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에 대해 자동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리가 그 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보관리자로부터 그러한 결정과 관련된 논리구조를 설명 받을 권리.

(2) A data controller is not obliged to supply any information under subsection (1) unless he has received—
(a) a request in writing, and
(b) except in prescribed cases, such fee (not exceeding the prescribed maximum) as he may require.

(2) 정보관리자는 다음을 수령하지 않는 한 ss.(1)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a) 서면에 의한 요청 및
(b)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수료.

(3) Where a data controller—
(a) reasonably requires further information in order to satisfy himself as to the identity of the person making a request under this section and to locate the information which

(3) 정보관리자가
(a) 본 섹션에 의해 요청을 제기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자가 구하는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that person seeks, and
(b) has informed him of that requirement,
the data controller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he is supplied with that further information.

(4) Where a data controller cannot comply with the request without disclosing information relating to another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from that information, he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a) the other individual has consented to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to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or
(b) it is reasonable in all the circumstances to comply with the reques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individual.

(5) In subsection (4) the reference to information relating to another individual includes a reference to information identifying that individual as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sought by the request; and that subsection is not to be construed as excusing a data controller from communicating so much of the information sought by the request as can be communicated without disclosing the identity of the other individual concerned, whether by the omission of names or other identifying particulars or otherwise.

(6)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b) whether it is reasonable in all the circumstances to comply with the reques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individual concerned, regard shall be had, in particular, to —
(a) any duty of confidentiality owed to the other individual,
(b) any steps taken by the data controller with a view to seeking the consent of the other individual,
(c) whether the other individual is capable of giving consent, and
(d) any express refusal of consent by the other individual.

(7) An individual making a request under this section may, in such cases as may be prescribed, specify that his request is limited

경우와,
(b) 그 자에게 그러한 요구를 알린 경우,
정보관리자는 그러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정보관리자가 그 정보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요청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다음이 아닌 한 요청에 따를 위무를 지지 아니한다.
(a) 해당 타인이 요청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b)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정당한 경우.

(5) ss.(4)에서 타인에 관계된 정보라 함은 요청된 정보의 출처로서 그 타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동 ss.은 정보관리자가 성명 또는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생략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한 상태로 요청에서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6) ss.(4)(b)의 목적상 관련된 타인의 동의 없이 요청을 따르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a) 그 타인에 대해 지는 비밀유지 의무
(b) 그 타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정보관리자가 취한 모든 절차
(c) 그 타인이 동의를 표시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d) 그 타인에 의한 동의에 대한 명시적 거절.

(7) 본 섹션에 따라 요청을 제기하는 개인은, 사전 지정이 가능한 경우, 그의 요청이 법정된 사항에 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는

to personal data of any prescribed description.

점을 명시할 수 있다.

(8) Subject to subsection (4), a data controller shall comply with a request under this section promptly and in any event before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beginning with the relevant day.

(8) ss.(4)의 제한 하에 정보관리자는 본 섹션에 의한 요청에 신속히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적정일자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응해야 한다.

(9) If a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who has made a request under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at the data controller in questi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request in contravention of those provisions, the court may order him to comply with the request.

(9) 만약 법원이 본 섹션의 위 규정들에 따라 요청을 제기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정보관리자가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요청을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정보관리자에게 요청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10) In this section—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the [F18 Secretary of State] by regulations;
"the prescribed maximum" means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the prescribed period" means forty days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prescribed;
"the relevant day", in relation to a request under this section, means the day on which the data controller receives the request or, if later, the first day on which the data controller has both the required fee and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

(10) 본 섹션에서,
"법정된"이라 함은 국무정관에 의해 규칙으로서 사전에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법정된 최대"라 함은 사전에 지정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법정된 기간"이란 40일 또는 사전에 지정될 수 있는 다른 기간을 의미한다.
"적정일자"란 본 섹션에 따른 요청과 관련해, 정보관리자가 요청을 접수한 날짜, 혹은 그 이후 요구한 수수료와 ss.(3)에 언급된 정보를 정보관리자가 모두 수령한 최초 일자를 의미한다.

(11) Different amounts or periods may be prescribed under this section in relation to different cases.

(11) 사안에 따라 본 섹션에 대해 서로 다른 액수 또는 기간이 법정될 수 있다.

(12) A person is a relevant person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c) if he—
(a) is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4(a) or (b) or paragraph 8(a) or (b) of Schedule 11;
(b) is employed by an education authority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6 of Schedule 11) in pursuance of its functions relating to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relates to him, or he supplied the information in his capacity as such an employee; or
(c) is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12) ss.(4)(c)의 목적상 관계자는 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그가 Sch.11의 para.4(a)나 (b), 또는 8(a)나 (b)에 언급된 자인 경우
(b) (Sch.11 para.6에서 의미하는) 교육 당국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써 교육 및 그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기능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제공한 경우
(c) 그가 요청을 제기하는 자인 경우

(12) A person is a relevant person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c) if he—

(12) ss.(4)(c)의 목적상 관계자는 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is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p) or (q) of the Schedule to the Data Protection (Subject Access Modification) (Social Work) Order 2000; or
(b) is or has been employed by any person or bod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at Schedule in connection with functions which are or have been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data consisting of the information; or
(c) has provided for reward a service similar to a service provided in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specified in paragraph 1(a)(i), (b), (c) or (d) of that Schedule, and the information relates to him or he supplied the information in his official capacity or, as the case may be,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that service.

(a) 그가 2000년 정보보호(주체 접근 정정)(사회사업)명령 Sch.의 para.1(p)나 (q)에서 규정된 자인 경우
(b) 그가 동 Sch. para.1에 규정된 자 또는 단체에 그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c) 그가 대가를 받고 그 Sch. para.1 (a)(i), (b), (c), (d)에 명시된 기능의 수행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경우 그 정보가 서비스의 제공과 연결되어 그와 관련되거나 그가 공적인 자격으로서 제공한 것인 경우.

8 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7.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provide that, in such cases as may be prescribed,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any provision of subsection (1) of section 7 is to be treated as extending also to information under other provisions of that subsection.

(2) The obligation imposed by section 7(1)(c)(i) must be complied with by supplying the data subject with a copy of the information in permanent form unless—
(a) the supply of such a copy is not possible or would involve disproportionate effort, or
(b) the data subject agrees otherwise;
and where any of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ection 7(1)(c)(i) is expressed in terms which are not intelligible without explanation the copy must be accompanied by an explanation of those terms.

(3) Where a data controller has previously complied with a request made under section 7 by an individual, the data controller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a subsequent identical or similar request under that section by that individual unless a reasonable interval has elapsed between compliance with the previous request and the making of the current request.

8 【S.7에 대한 보충 규정】

(1) 국무장관은 법정할 수 있는 경우, 법규로써 S.7 ss.(1)의 제규정에 따른 정보 요청이 동 ss.의 다른 규정들의 정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취급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S.7(1)(c)(i)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에 대해 정보를 영구적 형태의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a) 이러한 사본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비례하지 않는 노력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b) 정보주체가 달리 동의하는 경우;
S.7(1)(c)(i)에서 말하는 정보 중 어느 것이라도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 사본과 함께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정보관리자가 앞서 S.7에 따라 개인이 제기한 요청에 따른 적이 있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동 S.에 따라 동일인이 후속하여 제기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요청에 대해서는 선생 요청에 대한 이행과 현재 요청 간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3) whether requests under section 7 are made at reasonable intervals, regard shall be had to the nature of the data,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are processed and the frequency with which the data are altered.

(4) ss.(3)의 목적성 S.7에 따른 요청 간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 처리의 목적 및 데이터가 변경되는 빈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5) Section 7(1)(d) is not to be regarded as requir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s to the logic involved in any decision-taking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information constitutes a trade secret.

(5) S.7(1)(d)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결정에 관한 논리구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6)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pursuant to a request under section 7 must be supplied by reference to the data in question at the time when the request is received, except that it may take account of any amendment or deletion made between that time and the time when the information is supplied, being an amendment or deletion that would have been made regardless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6) S.7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공급되는 정보는 그 요청이 접수될 당시에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단, 그 시점과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 간에 개정이나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 그 요청이 접수되었는지와 관계 없이 개정이나 삭제가 이루어질 것이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For the purposes of section 7(4) and (5) another individual can be identified from the information being disclosed if he can be identified from that information, or from that and any other information which, in the reasonable belief of the data controller, is likely to be in, or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subject making the request.

(7) S.7(4), (5)의 목적상 타인의 신원이, 공개되는 정보나 혹은 그 정보와 함께 요청을 제기하는 정보주체가 보유하거나 입수하게 될 것을 정보관리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다.

9 Application of section 7 where data controller is credit reference agency.

9 【정보관리자가 신용조회기관인 경우 S.7의 적용】

(1) Where the data controller is a credit reference agency, section 7 has effec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1) 정보관리자가 신용조회기관인 경우 S.7은 본 섹션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2) An individual making a request under section 7 may limit his request to personal data relevant to his financial standing, and shall be taken to have so limited his request unless the request shows a contrary intention.

(2) S.7에 따라 요청을 하는 개인은 자신의 요청을 재정적 평가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한정시킬 수 있으며, 그 요청이 반대의 의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한정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Where the data controller receives a request under section 7 in a case where personal data of which the individual making the request is

(3) 정보관리자가 S.7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였을 때, 요청을 제기하는 개인이 정보주체인 개

the data subject are being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the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under that section includes an obligation to give the individual making the request a statement, in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y regulations, of the individual's rights－

(a) under section 159 of the Consumer Credit Act 1974 , and

(b)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prescribed form, under this Act.

인정보가 정보관리자에 의해 또는 정보관리자를 대신하여 처리되는 경우, 동 섹션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에는 요청을 제기한 개인에게 국무장관이 규칙에 의해 법정한 형식으로 개인의 다음 권리에 관한 진술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

(a) 1974년 소비자신용법 S.159의 권리

(b) 본 법률에서 법정된 형식으로 요구된 것

9A Unstructured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authorities.

(1) In this section "unstructured personal data" means any personal data falling within paragraph (e)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other than information which is recorded as part of, or with the intention that it should form part of, any set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to the extent that the set is structured by reference to individuals or by reference to criteria relating to individuals.

(2) A public authority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subsection (1) of section 7 in relation to any unstructured personal data unless the request under that section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data.

(3) Even if the data are described by the data subject in his request, a public authority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subsection (1) of section 7 in relation to unstructured personal data if the authority estimates that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quest so far as relating to those data would exceed the appropriate limit.

(4) Subsection (3) does not exempt the public authority from its obligation to comply with paragraph (a) of section 7(1) in relation to the unstructured personal data unless the estimated cost of complying with that paragraph alone in relation to those data would exceed the appropriate limit.

(5) In subsections (3) and (4) "the appropriate

9A【공공 당국이 보유하는 체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1) 본 섹션에서 "체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란 S.1(1)의 "데이터"의 정의 중 para.(e)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집합이 개인이나 개인에 대한 특징을 참조하여 체계화한 것인 경우, 그 집합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기록될 것으로 의도된 정보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2) 공공당국은 S.7에 의한 요청이 데이터에 대해 상술하지 않는 한, 체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 S.7 ss.(1)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청에서 상술된 경우에도 만약 공공당국이 그 데이터와 관련한 범위에서 요청에 따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한 한도를 초과한다고 산정하는 경우, 공공당국은 체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 S.7 ss.(1)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ss.(3)은 S.7(1) para.(a)에 따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이 그 데이터에 대한 적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공공당국이 동 para.에 따를 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5) ss.(3), (4)에서 "정정한 한도"란 국무장관에

limit" means such amount as may be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y regulations, and different amounts may be prescribed in relation to different cases.

의해 규칙으로써 법정될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하며, 각기 다른 경우에 대해 상이한 액수가 법정될 수 있다.

(6) Any estimat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under section 12(5)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6) 본 섹션을 위한 산정은 2000년 정보자유법 S.12(5)의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Right to prevent processing likely to cause damage or distress.

10【손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리를 금지할 권리】

(1) Subject to subsection (2), an individual is entitled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to a data controller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at the end of such period as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cease, or not to begin, processing, or processing for a specified purpose or in a specified manner, any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he is the data subject, on the ground that, for specified reasons—
(a) the processing of those data or their processing for that purpose or in that manner is causing or is likely to cause substantial damage or substantial distress to him or to another, and
(b) that damage or distress is or would be unwarranted.

(1) ss.(2)에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정보주체인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을 근거로 하여 정보관리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언제라도 정당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처리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그 데이터의 처리 또는 그 목적이나 방법으로의 처리가 타인에게 중대한 손해나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b) 그러한 손해나 고통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a) in a case where any of the conditions in paragraphs 1 to 4 of Schedule 2 is met, or
(b) in such other case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y order.

(2) 다음의 경우에는 ss.(1)은 적용되지 않는다.
(a) Sch.2 para.1 내지 4까지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b) 그 외 명령으로서 국무장관에 의해 지정된 경우

(3) The data controller must within twenty-one days of receiving a notice under subsection (1) ("the data subject notice") give the individual who gave it a written notice—
(a) stating that he has complied or intends to comply with the data subject notice, or
(b) stating his reasons for regarding the data subject notice as to any extent unjustified and the extent (if any) to which he has complied or intends to comply with it.

(3) 정보관리자는 ss.(1)에 의한 통지 ("정보주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통지를 한 개인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a)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통지를 따르고 있거나 혹은 따를 것임을 진술하는 내용
(b) 그가 정보주체통지를 어떠한 범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행하였다면) 어느 정도 이행하였는지 혹은 이행하려 하는지를 진술하는 내용.

(4) If a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who has given a notice under

(4) 만약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또는 일정 범위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ss.(1)의

subsection (1) which appears to the court to be justified (or to be justified to any extent), that the data controller in questi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notice, the court may order him to take such steps for complying with the notice (or for complying with it to that extent) as the court thinks fit.

통지를 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관리자가 통지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 법원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또는 일정 범위까지 따르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5) The failure by a data subject to exercise the right conferred by subsection (1) or section 11(1) does not affect any other right conferred on him by this Part.

(5) 정보주체가 ss.(1) 또는 S.11(1)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 장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Right to prevent processing for purposes of direct marketing.

11【직접적인 영업 목적의 처리를 금지할 권리】

(1) An individual is entitled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to a data controller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at the end of such period as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cease, or not to begin, processing for the purposes of direct marketing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he is the data subject.

(1) 개인은 언제라도 정보관리자에 대한 서명 통지를 통해 정황상 정당한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보관리자에게 자신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에 대해 직접적 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If the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who has given a notice under subsection (1), that the data controller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notice, the court may order him to take such steps for complying with the notice as the court thinks fit.

(2) 만약 법원이 ss.(1)의 통지를 한 자의 신청에 의해 정보관리자가 그 통지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 법원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A)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such data as are mentioned in paragraph (1) of regulation 8 of the Tele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1999 (processing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data for certain marketing purposes) for the purpose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at regulation.

(2A) 이 섹션은 1999년 전기통신(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규칙의 제8규칙 para.(2)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para.(1)(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한 전기통신 요금 데이터의 처리)에 언급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In this section "direct marketing" means the communication (by whatever means) of any advertising or marketing material which is directed to particular individuals.

(3) 이 섹션에서 "직접 영업"이란 특정 개인을 겨냥한 (수단을 불문하고) 광고나 영업 자료의 통신을 의미한다.

12 Rights in relation to automated decision-taking.

12【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1) An individual is entitled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to any data controller,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ensure that no decision taken by or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at individual is based solely on the processing by automatic means of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that individual is the data subject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matters relating to him such as, for example, his performance at work, his creditworthiness, his reliability or his conduct.

(1) 개인은 언제라도 정보관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해 업무수행능력, 신용, 신뢰성, 품행과 같이 개인에 관한 평가의 목적상 그 개인이 정보주체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관리자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처리가 오직 자동적 수단에 의한 처리에만 근거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in a case where no notice under subsection (1) has effect, a decision which significantly affects an individual is based solely on such processing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1)—

(a) the data controller must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notify the individual that the decision was taken on that basis, and

(b) the individual is entitled, within twenty-one days of receiving that notification from the data controller, by notice in writing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reconsider the decision or to take a new decision otherwise than on that basis.

(2) ss.(1)에 의한 어떠한 통지도 효력을 갖지 목하는 경우,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오직 ss.(1)에 언급된 수단에 의한 처리에만 근거하였다면,

(a) 정보관리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결정이 그러한 바탕에 따라 행해졌다는 것을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b) 개인은 정보관리자로부터 통보를 받은지 21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통해 그 결정을 재고하거나 그러한 근거가 아닌 다른 근거에 의해 다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 data controller must, within twenty-one days of receiving a notice under subsection (2)(b) ("the data subject notice") give the individual a written notice specifying the steps that he intends to take to comply with the data subject notice.

(3) 정보관리자는 ss.(2)(b)의 통지("정보주체통지")를 접수한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개인에게 정보주체통지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A notice under subsection (1) does not have effect in relation to an exempt decision; and nothing in subsection (2) applies to an exempt decision.

(4) ss.(1)에 따른 통지는 면제 결정과 관련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ss.(2)의 어떠한 내용도 면제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In subsection (4) "exempt decision" means any decision—

(a) in respect of which the condition in subsection (6) and the condition in subsection (7) are met, or

(b) which is made in such other circumstance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y order.

(5) ss.(4)에서 "면제 결정"이란 다음의 결정을 의미한다.

(a) ss.(6)의 조건과 ss.(7)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또는

(b) 국무장관에 의한 명령으로써 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

(6) The condition in this subsection is that the decision—

(6) 이 ss.에서 결정에 관해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is taken in the course of steps taken—
(i)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whe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data subject,
(ii) with a view to entering into such a contract, or
(iii) in the course of performing such a contract, or
(b) is authorised or required by or under any enactment.

(a) 아래의 취해진 조치의 과정에서 행해진 결정
(i)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
(ii)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
(iii)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조치.
(b) 법령에서 또는 그에 따라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결정

(7) The condition in this subsection is that either—
(a) the effect of the decision is to grant a request of the data subject, or
(b) steps have been taken to safeguar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for example, by allowing him to make representations).

(7) 이 ss.에서 정하는 조건은 다음 중 하나이다.
(a) 그 결정의 효과가 정보주체의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것일 것, 또는
(b) 정보주체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 (예를 들어, 그에게 대리를 허가하는 것)

(8) If a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 data subject that a person taking a decision in respect of him ("the responsible person") has failed to comply with subsection (1) or (2)(b), the court may order the responsible person to reconsider the decision, or to take a new decision which is not based solely on such processing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1).

(8) 만약 법원이 정보주체의 신청에 의해,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자("책임자")이 ss.(1)이나 ss.(2)(b)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면, 법원은 그 책임자에게 그 결정을 재고하거나 ss.(1)에서 언급한 처리에만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할 수 있다.

(9) An order under subsection (8) shall not affect the rights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data subject and the responsible person.

(9) ss.(8)에 따른 명령은 정보주체와 책임자 외에 그 누구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A Rights of data subjects in relation to exempt manual data.

12A【적용면제 수작업 데이터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1) A data subject is entitled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a)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rectify, block, erase or destroy exempt manual data which are inaccurate or incomplete, or
(b)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cease holding exempt manual data in a way incompatible with the legitimate purposes pursued by the data controller.

(1) 정보주체는 어느 때라도 서면에 의해 다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a)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적용면제 수작업 데이터를 수정, 차단, 삭제, 파기할 것에 대한 정보관리자 대한 요구.
(b) 정보관리자가 추구하는 적법한 목적에 상치되는 방법으로 적용면제 수작업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을 중단할 것에 대한 요구.

(2) A notice under subsection (1)(a) or (b) must state the data subject's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data are inaccurate or incomplete or, as the case may be, his reasons for believing

(2) ss.(1)(a)나 (b)에 의한 통지는 정보주체가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믿는 이유를 진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그가 그 데이터가 정보관리자가 추구하는 적법한 목

that they are held in a way incompatible with the legitimate purposes pursued by the data controller.

적에 상치되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데 대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3) If the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who has given a notice under subsection (1) which appears to the court to be justified (or to be justified to any extent) that the data controller in questi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notice, the court may order him to take such steps for complying with the notice (or for complying with it to that extent) as the court thinks fit.

(3) 법원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는 (또는 일정 범위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는) ss.(1)의 통지를 한 자의 신청에 대하여 문제되는 정보관리자가 통지를 따르지 않았음을 확신하면, 법원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에 따라 이루어질 (또는 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4) In this section "exempt manual data" means—
(a) in relation to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as defined by paragraph 1(2) of Schedule 8, data to which paragraph 3 or 4 of that Schedule applies, and
(b) in relation to the second transitional period, as so defined, data to which paragraph 14 or 14A of that Schedule applies.

(4) 이 섹션에서 "적용면제 수작업 데이터"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제1과도기에 대하여, Sch.8 para. 1(2)에서 정의된 바 동 Sch. para.3이 적용되는 데이터와,
(b) 제2과도기에 대하여, 동 Sch.의 para. 14 또는 14A가 적용되는 데이터.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personal data are incomplete if, and only if, the data, although not inaccurate, are such that their incompleteness would constitute a contravention of the third or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if those principles applied to the data.

(5) 이 섹션의 목적상 데이터는 오직 데이터가 부정확할지라도 그 불완전성이 정보보호 기본원칙의 제3원칙이나 제4원칙이 적용될 경우 그 원칙들에 위반하는 것인 경우에 한해서 불완전한 것이다.

13 Compensation for failure to comply with certain requirements.

13【특정 요건을 통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

(1) An individual wh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any contravention by a data controll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rom the data controller for that damage.

(1) 정보관리자가 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함으로서 손해를 입은 개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정보관리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2) An individual who suffers distress by reason of any contravention by a data controll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rom the data controller for that distress if—
(a) the individual als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the contravention, or
(b) the contravention relat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special purposes.

(2) 다음의 경우 정보관리자가 본 법률의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고통을 당한 개인은 그 고통에 대해 정보관리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a) 그 개인이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b) 해당 위반이 특별한 목적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경우.

(3) In proceedings brought against a person by virtue of this section it is a defence to prove that he had taken such care as in all the circumstances was reasonably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concerned.

(3) 이 섹션에 따라 어떠한 자가 제기한 소에어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관련 요건을 따르기 위해 필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함은 항변사유가 된다.

14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and destruction.

(1) If a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 data subject that personal data of which the applicant is the subject are inaccurate, the court may order the data controller to rectify, block, erase or destroy those data and any other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he is the data controller and which contain an expression of opinion which appears to the court to be based on the inaccurate data.

(2) Subsection (1) applies whether or not the data accurately record information received or obtained by the data controller from the data subject or a third party but where the data accurately record such information, then—
(a) if the requir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7 of Part II of Schedule 1 have been complied with, the court may, instead of making an order under subsection (1), make an order requiring the data to be supplemented by such statement of the true facts relating to the matters dealt with by the data as the court may approve, and
(b) if all or any of those requirements have not been complied with, the court may, instead of making an order under that subsection,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fit for securing compliance with those requirements with or without a further order requiring the data to be supplemented by such a statement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a).

(3) Where the court—
(a)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1), or
(b)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 data subject that personal data of which he was the data subject and which have been rectified, blocked, erased or destroyed were inaccurate,

14【교정, 차단, 삭제, 폐기】

(1) 만약 법원이 정보주체의 신청에 의해, 신청자가 정보주체가 되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법원은 정보관리자에게 그 데이터 및 법원이 보기에 그 부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의견의 표현을 포함한 것으로 그가 정보관리자인 다른 개인정보들을 교정, 차단, 삭제,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ss.(1)은 데이터가 정보주체나 제3자로부터 정보관리자가 수령하거나 획득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나, 정확히 기록된 경우에는,
(a) Sch.1 제2장 para.7에 언급된 요건을 준수한 경우, 법원은 ss.(1)에 따른 명령 대신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다루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실의 진술로써 보완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b) 만약 그러한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동 ss.에 따른 명령 대신에, para.(a)에 언급된 진술에 의해 데이터를 보완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또는 별도로 그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기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법원이
(a) ss.(1)의 명령을 내리거나,
(b) 정보주체의 신청에 의해 그가 정보주체가 되며 교정, 차단, 삭제, 파기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법원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교정,

it may, where it considers it reasonably practicable, order the data controller to notify third parties to whom the data have been disclosed of the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차단, 삭제, 파기했음을 공개하였던 제3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If a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 data subject—
(a) that he has suffered damage by reason of any contravention by a data controller of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n respect of any personal data, in circumstances entitling him to compensation under section 13, and
(b)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urther contravention in respect of those data in such circumstances,
the court may order the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of any of those data.

(4) 법원이 정보주체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확인하면,
(a) S.13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본 법률의 요건을 정보관리자가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점
(b) 같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위반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점
법원은 그 데이터들에 대한 개정, 차단, 삭제,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5) Where the court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4) it may, where it considers it reasonably practicable, order the data controller to notify third parties to whom the data have been disclosed of the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5) 법원이 ss.(4)에 의해 명령을 내릴 때에는, 합리적으로 샐행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교정, 차단, 삭제, 파기했음을 공개하였던 제3자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reasonably practicable to require such notification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3) or (5) the court shall have regard, in particular, to the number of persons who would have to be notified.

(6) ss.(3), (5)에서 언급한 통보와 같은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특히 통보 받을 자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15 Jurisdiction and procedure.

15【관할권 및 소송절차】

(1) The jurisdiction conferred by sections 7 to 14 is exercisable by the High Court or a county court or, in Scotland, by the Court of Session or the sheriff.

(1) S.7 내지 S.14까지에서 부여된 관할권은 대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대심원 민사부나 주지사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any question whether an applicant under subsection (9) of section 7 is entitled to the information which he seeks (including any question whether any relevant data are exempt from that section by virtue of Part IV) a court may require the information constituting any data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and any information as to the logic involved in any

(2) S.7 ss.(9)의 신청인이 그가 구하는 정보에 대해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 (관련된 데이터가 제4장에 의해 동 섹션으로부터 면제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포함)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원은 정보관리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처리된 데이터를 구성하는 정보와 S.7(1)(d)에 나오는 의사결정에 관한 논리구조에 관한 정보가 법원 자신에 의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

decision-taking as mentioned in section 7(1)(d) to be made available for its own inspection but shall not, pending the determination of that question in the applicant's favour, require the information sought by the applicant to be disclosed to him or his representatives whether by discovery (or, in Scotland, recovery) or otherwise.

나, 그 의문이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기까지는 신청인이 구하는 정보가 디스커버리(스코틀랜드에서는 리커버리) 등에 의해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공개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PART III
NOTIFICATION BY DATA CONTROLLERS

제 3 장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보

16 Preliminary.

(1) In this Part "the registrable particulars", in relation to a data controller, means—
- (a) his name and address,
- (b) if he has nominated a 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 (c) a description of the personal data being or to be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and of the category or categories of data subject to which they relate,
- (d) a description of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 data are being or are to be processed,
- (e) a description of any recipient or recipients to whom the data controller intends or may wish to disclose the data,
- (f) the names, or a description of, any countries or territories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to which the data controller directly or indirectly transfers, or intends or may wish directly or indirectly to transfer, the data,
- (ff) where the data controller is a public authority, a statement of that fact, and
- (g) in any case where—
  - (i) personal data are being, or are intended to be, processed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prohibition in subsection (1) of section 17 is excluded by subsection (2) or (3) of that section, and
  - (ii) the notification does not extend to those data,

  a statement of that fact.

(2) In this Part—

16【총칙】

(1) 이 장에서 정보관리자와 관련하여 "등록 가능한 사항"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그의 이름과 주소
- (b) 그가 본 법률의 목적상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c) 정보관리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해서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와, 그것이 관련되는 정보주체의 범주에 관한 설명
- (d)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또는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 (e) 정보관리자가 데이터를 공개하고자 의도하거나 의도할 수 있는 수령자나 수령자들에 대한 설명
- (f) 정보관리자가 데이터를 직접, 간접적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전송할 의도가 있거나 희망하는, 유럽경제지역 밖의 국가나 지역의 이름이나 설명
- (ff) 정보관리자가 공공 당국인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진술
- (g) 다음의 경우—
  - (i) S.17 ss.(1)의 금지가 ss.(2), (3)에 의해 배제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될 것이 의도되는 경우와,
  - (ii) 통보가 그 데이터에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진술.

(2) 이 장에서—

"fees regulations" means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ection 18(5) or 19(4) or (7);

"수수료 규칙"은 S.18(5) 또는 S.19(4), (7)에 따라 국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notification regulations" means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Part;

"통보 규칙"은 이 장의 다른 규정들에 따라 국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prescribed", except where used in relation to fees regulations, means prescribed by notification regulations.

"지정된"이란 수수료 규칙에 대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 규칙에 의해 사전 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3)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so far as it relates to the addresses of data controllers—
(a) the address of a registered company is that of its registered office, and
(b) the address of a person (other than a registered company) carrying on a business is that of hi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United Kingdom.

(3) 이 장의 목적상, 정보관리자의 주소에 관한 한—
(a) 등록 회사의 주소는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이며,
(b) (등록된 회사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주소는 영국 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이다.

17 Prohibition on processing without registration.

17【미등록 처리의 금지】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personal data must not be processed unless an entry in respect of the data controller is included in the register maintained by the Commissioner under section 19 (or is treated by notification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ection 19(3) as being so included).

(1) 본 섹션의 다음 규정을 조건으로, S.19에 의해 정보위원이 유지하는 등록부에 정보관리자에 대한 등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등록부에 S.19(3)에 의해 제정되는 통보 규칙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는 처리되서는 안된다.

(2) Except where the processing is assessable processing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which falls neither within 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nor within paragraph (b) of that definition.

(2) S.22의 목적상 사정 가능한 처리인 경우를 제외하고, ss.(1)은 S.1(1)의 "데이터"의 정의 중 para.(a)나 그 정의의 para.(b)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If it appears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processing of a particular description is unlikely to prejudice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notification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in such cases as may be prescribed, subsection (1) is not to apply in relation to processing of that description.

(3) 국무장관의 입장에서 특별한 설명에 따른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볼 때에는, 통보 규칙은 지정될 수 있는 경우 ss.(1)이 그러한 설명에 따른 처리와 관련해 적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할 수 있다.

(4) Subsection (1)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4) ss.(1)은 처리의 목적이 오직 공적 등록부를

any processing whose sole purpose is the maintenance of a public register.

유지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Notification by data controllers.

(1) Any data controller who wishes to be included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19 shall give a notification to the Commissioner under this section.

(2) A notification under this section must specify in accordance with notification regulations—
(a) the registrable particulars, and
(b) a general description of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the seventh data protection principle.

(3) Notification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2) may provide for the determination by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any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form in which the registrable particulars and the description mentioned in subsection (2)(b) are to be specified, including in particular the detail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6(1)(c), (d), (e) and (f) and subsection (2)(b).

(4) Notification regulations may make provision as to the giving of notification—
(a) by partnerships, or
(b) in other cases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the data controllers in respect of any personal data.

(5) The notif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such fee as may be prescribed by fees regulations.

(6) Notification regulations may provide for any fee paid under subsection (5) or section 19(4) to be refunded in prescribed circumstances.

18【정보관리자에 의한 통보】

(1) S.19에 의해 유지되는 등록부에 포함되고자 하는 정보관리자는 이 섹션에 따라 정보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이 섹션에 따른 통보는 통보 규칙에 따라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a) 등록 가능한 사항 및
(b) 정보보호 제7원칙을 따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3) ss.(2)에 의해 제정되는 통보 규칙은 정보위원에 의한 판정에 대하여 규칙의 모든 요건에 따라, 등록 가능한 사항과 특히 S.16(1)(c), (d), (e), (f)와 ss.(2)(b)의 목적상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ss.(2)(b)에 언급된 설명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을 규정할 수 있다.

(4) 통보 규칙은 다음 통보의 제출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a) 합명회사에 의한 경우, 또는
(b) 개인정보에 대해 2인 이상이 정보관리자가 되는 다른 경우

(5) 통보에는 수수로 규칙에서 법정될 수 있는 바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반해야 한다.

(6) 통부 규칙은 지정된 조건에서 ss(5) 또는 S.19(4)에 따라 지불된 해당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19 Register of notifications.

(1) The Commissioner shall—
(a) maintain a register of persons who have given notification under section 18, and
(b) make an entry in the register in pursuance

19【통보의 등록】

(1) 정보위원은—
(a) S.18에 따라 통보를 한 자의 등록부를 유지해야 하며,
(b) 정보관리자로서의 등재가 당시 등록부에

of each notification received by him under that section from a person in respect of whom no entry as data controller was for the time being included in the register.

포함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자로부터 그 섹션에 다라 자신이 수령한 각각의 통보에 따라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Each entry in the register shall consist of—
(a) the registrable particulars notified under section 18 or, as the case requires, those particulars as amended in pursuance of section 20(4), and
(b)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Commissioner may be authorised or required by notification regulations to include in the register.

(2) 등록부의 등재사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S.18에 따라 통보된 등록 가능한 항목, 또는 필요한 경우 S.20(4)에 따라 경정된 항목,
(b) 통보 규칙에 의해 정보위원이 등록부에 포함시키도록 권한이 부여되거나 요구되는 기타 정보.

(3) Notification regulations may make provision as to the time as from which any entry in respect of a data controller is to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7 as having been made in the register.

(3) 통보 규칙에는 정보관리자에 대한 등재가 이루어진 시점이 S.17의 목적상 등록부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4) No entry shall be retained in the register for more than the relevant time except on payment of such fee as may be prescribed by fees regulations.

(4) 수수료 규칙에 법정될 수 있는 해당 수수료의 지불이 완료될 때를 제외하고, 적정 시간 이상으로 등록부상의 등재를 유지하여서는 안된다.

(5) In subsection (4) "the relevant time" means twelve months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prescribed by notification regulations; and different periods may be prescribed in relation to different cases.

(5) ss.(4)에서 "적정 시간"이란 12개월 또는 통보 규칙에서 지정될 수 있는 기타의 기간을 의미하며, 각기 다른 경우에 대해 상이한 기간이 지정될 수 있다.

(6) The Commissioner—
(a) shall provide facilities for mak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ntries in the register available for inspection (in visible and legible form) by members of the public at all reasonable hours and free of charge, and
(b) may provide such other facilities for mak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ose entries available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as he considers appropriate.

(6) 정보위원은—
(a) 등록부의 기재에 포함된 정보를 정당한 모든 시간에 무료로 (가시적이고 명료한 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b) 적절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등재사항에 포함된 정보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기타의 제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7) The Commissioner shall, on payment of such fee, if any, as may be prescribed by fees regulations, supply any member of the public with a duly certified copy in writing of the particulars contained in any entry made in the register.

(7) 정보위원은 수수료 규칙에 의해 법정된 수수료의 납부에 따라, 등록부상의 등재에 포함된 사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정당하게 보증된 사본을 대중의 누구에게라도 제공하여야 한다.

20 Duty to notify changes.

(1) For the purpose specified in subsection (2), notification regulations shall include provision imposing on every person in respect of whom an entry as a data controller is for the time being included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19 a duty to notify to the Commissioner, in such circumstances and at such time or times and in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such matters relating to the registrable particulars and measures taken as mentioned in section 18(2)(b) as may be prescribed.

(2) The purpos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that of ensuring, so far as practicable, that at any time—
(a) the entries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19 contain current names and addresses and describe the current practice or intentions of the data controller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b) the Commissioner is provided with a general description of measures currently being taken as mentioned in section 18(2)(b).

(3) Subsection (3) of section 18 has effect in relation to notification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1) as it has effect in relation to notification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2) of that section.

(4) On receiving any notification under notification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1), the Commissioner shall make such amendments of the relevant entry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19 as are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the notification.

21 Offences.

(1) If section 17(1) is contravened, the data controller is guilty of an offence.

(2) An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duty

20【변경사항을 통보할 의무】

(1) ss.(2)에 특정된 목적상, 통보 규칙에서는 S.19에 의거해 유지되는 등록부에 일정 기간동안 정보관리자로서의 등재가 포함되는 모든 자에게, 지정된 상황과 시점에, 지정된 형식에 의해 등록 가능한 사항과 관련한 문제들과 S.18(2)(b)에서 언급된 지정된 조치들을 정보위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ss.(1)에서 언급한 목적은 가능한 한 항상 다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a) S.19에 의거해 유지되는 등록부의 등재에 현재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관리자의 현재의 업무와 의도를 설명할 것.
(b) 정보위원이 S.18(2)(b)에 기술된 바에 따라 현재 취해지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받을 것.

(3) ss.(1)에 따라 제정된 통보 규칙에 대해서는 S.18 ss.(2)에 따라 제정된 통부 규칙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섹션의 ss.(3)이 효력을 갖는다.

(4) ss.(1)에 따라 제정된 통보 규칙에 따른 모든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정보위원은 그 통보를 참조하여, 필요에 따라 S.19에 의거해 유지되는 등록부의 관련된 등재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21【위반】

(1) S.17(1)이 위반된 경우, 정보관리자가 위반의 죄가 있다.

(2) S.20(1)에 따라 제정된 통보 규칙에서 부과

imposed by notification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ection 20(1) is guilty of an offence.

된 의무를 따르지 않은 모든 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3) It shall be a defence for a person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subsection (2) to show that he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comply with the duty.

(3) ss.(2)의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항변사유가 된다.

22 Preliminary assessment by Commissioner.

22 【정보위원에 의한 예비 평가】

(1) In this section "assessable processing" means processing which is of a description specified in an order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as appearing to him to be particularly likely—
(a) to cause substantial damage or substantial distress to data subjects, or
(b) otherwise significantly to prejudice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1) 이 섹션에서 "평가 가능한 처리"란 국무장관에 의한 명령에서, 특히 다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설명이 명시된 처리를 의미한다.
(a)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손해 또는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
(b) 그 외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히 해칠 가능성.

(2) On receiving notification from any data controller under section 18 or under notification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ection 20 the Commissioner shall consider—
(a) whether any of the processing to which the notification relates is assessable processing, and
(b) if so, whether the assessable processing is likely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2) 정보위원이 S.18에 따라 또는 S.20에 의거해 제정된 통보 규칙에 따라 정보관리자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다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a) 그 통보가 관련된 처리가 평가 가능한 처리인지의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그 평가 가능한 처리가 본 법률의 규정에 합치될 수 있는지 여부.

(3) Subject to subsection (4), the Commissioner shall, within the period of twenty-eight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he receives a notification which relates to assessable processing, give a notice to the data controller stating the extent to which the Commissioner is of the opinion that the processing is likely or unlikely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3) ss.(4)를 조건으로, 정보위원은 평가 가능한 처리와 관련된 통보를 접수하는 날짜로부터 28일간의 기간 이내에 정보관리자에게 해당 처리가 본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통보해야 한다.

(4)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3) the Commissioner may,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extend that period on one occasion only by notice to the data controller by such further period not exceeding fourteen days as the Commissioner may specify in the notice.

(4) ss.(3)에서 말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에 대한 통보를 통하여,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을 그 통보에 특정함으로써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No assessable processing in respect of which a

(5) 정보위원에게 ss.(2)에서 설명된 통보가 이루

notification has been given to the Commissioner as mentioned in subsection (2) shall be carried on unless either—

(a) the period of twenty-eight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Commissioner (or,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4), that period as extended under that subsection) has elapsed, or

(b) before the end of that period (or that period as so extended) the data controller has received a notice from the Commissioner under subsection (3) in respect f the processing.

어진 어떠한 평가 가능한 처리도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실행될 수 없다.

(a) 정보위원이 통보를 접수하는 날짜로부터 28일의 기간 (또는 ss.(4)에 해당하는 경우, 그 ss.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도과, 또는

(b)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는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보관리자가 커미셔너로부터 그 처리에 대하여 ss.(3)에 따른 통보를 받을 것.

(6) Where subsection (5) is contravened, the data controller is guilty of an offence.

(6) ss.(5)가 위반된 경우, 정보관리자가 위반에 대한 죄가 있다.

(7)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subsections (3), (4) and (5) by substituting for the number of days for the time being specified there a different number specified in the order.

(7) 국무장관은 명령을 통하여 그 명령에 특정된 다른 일수로 ss.(3), (4), (5)에 규정된 일수를 개정할 수 있다.

23 Power to make provision for appointment of data protection supervisor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 make provision under which a data controller may appoint a person to act as a data protection supervisor responsible in particular for monitoring in an independent manner the data controller'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b) provide that, in relation to any data controller who has appointed a data protection supervis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order and who complies with such condi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re to have effect subject to such exemptions or other modifica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2)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a) impose duties on data protection supervisors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er, and

(b) confer functions on the Commissioner in relation to data protection supervisors.

23 【정보보호 감독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만들 권한】

(1) 국무장관은 명령으로써—

(a) 정보관리자가 본 법률의 규정을 준수함을 독립적인 방법으로 감시하는 책임을 지는 정보보호 감독자로서 활동하는 자를 정보관리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b) 해당 명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감독자를 임명하고 명령에 명시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들이 그 예외나 명령에 명시되는 기타의 수정에 따라서 효력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2) 이 섹션에서의 명령은—

(a) 정보위원과의 관계에서 정보보호 감독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b) 정보보호감독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위원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24 Duty of certain data controllers to make certain information available.

(1) Subject to subsection (3), wher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in a case where－
(a) by virtue of subsection (2) or (3) of section 17, subsection (1) of that 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processing, and
(b) the data controller has not notified the relevant particulars in respect of that processing under section 18,
the data controller must, within twenty-one days of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any person, make the relevant particulars available to that person in writing free of charge.

(2) In this section "the relevant particulars" means the particular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f) of section 16(1).

(3) This section has effect subject to any exemption conferr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y notification regulations.

(4) Any data controller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duty imposed by subsection (1) is guilty of an offence.

(5) It shall be a defence for a person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subsection (4) to show that he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comply with the duty.

24【일정 자료를 사용가능하게 해야 할 일정 정보관리자의 의무】

(1) ss.(3)을 조건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다음의 경우,－
(a) S.17 ss.(2)나 (3)에 의하여 그 섹션의 ss.(1)이 그 처리에 적용되지 않으며,
(b) 정보관리자가 S.18에 따라 처리에 대한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정보관리자는 누구에게로부터던지 서명 요청을 받은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리고 무료로 그에게 관련 항목들을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2) 이 섹션에서 "관련 항목"이란 S.16(1) 중 para.(a) 내지 (f)까지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 섹션은 본 조항의 목적상 통보 규칙에 의해 부여되는 면제를 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4) ss.(1)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정보관리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5) ss.(4)의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항변사유가 된다.

25 Functions of Commissioner in relation to making of notification regulations.

(1)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the Commissioner shall submit to the Secretary of State proposals as to the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the first notification regulations.

(2) The Commissioner shall keep under review the working of notification regulations and ay from time to time submit to the Secretary of State proposals as to amendments o be made to the regulations.

25【통보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정보위원의 임무】

(1) 본 법률이 통과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정보위원은 첫 번째 통보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제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정보위원은 통보 규칙의 작용을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때때로 규칙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from time to time require the Commissioner to consider any matter relating to notification regulations and to submit to him proposals as to amendments to be made to the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at matter.

(3) 국무장관은 때때로 정보위원에게 통보 규칙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정에 대한 제안을 자신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Before making any notification regulation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 consider any proposals made to him by the Commissioner under subsection (2) or (3), and
(b) consult the Commissioner.

(4) 모든 통보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국무장관은－
(a) ss.(2), (3)에 따라 정보위원에 의해 제출되는 제안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b) 정보위원과 협의해야 한다.

26 Fees regulations.

26【수수료 규칙】

(1) Fees regulations prescribing fees for the purposes of any provision of this Part may provide for different fees to be payable in different cases.

(1) 본 장의 모든 규정의 목적상 수수료를 사전에 지정하는 수수료 규칙은 각기 다른 경우에 대하여 지불 가능한 수수료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다.

(2) In making any fees regulation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have regard to the desirability of securing that the fees payable to the Commissioner are sufficient to offset －
(a)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Commissioner and the Tribunal in discharging their functions under this Act]and any expenses of the Secretary of State in respect of the Commissioner or the Tribunal so far as attributable to their functions under this Act, and
(b) to the extent that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appropriate－
(i) any deficit previously incurred (whether before or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in respect of the expenses mentioned in paragraph (a), and
(ii) expenses incurred or to be incurred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respect of the inclusion of any officers or staff of the Commissioner in any scheme under section 1 of the Superannuation Act 1972.

(2) 수수료 규칙을 제정할 때, 국무장관은 정보위원에게 지불될 수수료가 다음을 보전하기 위해 충분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그들의 임무를 본 법률에 따라 수행하면서 정보위원과 정보법정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본 법률상의 그들의 임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정보위원과 정보법정에 관한 국무장관의 비용과,
(b)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범위에서－
(i) para.(a)에 서술된 비용에 대해 (본 법률의 통과 전후에 상관없이) 이전에 발생한 결손액
(ii) 정보위원의 관리나 직원을 1972년 퇴직연금법 S.1의 제도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에 의해 발생한 비용.

PART IV
EXEMPTIONS

제 4 장
면 제

27 Preliminary.

(1) References in any of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or any provision of Parts II and III to personal data or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do not include references to data or processing which by virtue of this Part are exempt from that principle or other provision.

(2) In this Part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means—
(a)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pliance with paragraph 2 of Part II of Schedule 1, and
(b) section 7.

(3) In this Part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means the provisions specified in subsection (4) to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 disclosure in question.

(4)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3) are —
(a)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except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in Schedules 2 and 3,
(b)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c) sections 10 and 14(1) to (3).

(5) Except as provided by this Part,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notwithstanding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disclosure, or authorising the withholding, of information.

27【총칙】

(1) 정보보호 기본원칙이나 제2장, 제3장에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것은 이 장의 효력에 의하여 그 기본원칙들이나 다른 규정들로부터 면제되는 개인정보나 그 처리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에서 "필수 정보 규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Sch.1 제2장 para.2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범위에서 정보보호 제1원칙과,
(b) S.7.

(3) 이 장에서 "비공개 규정"이란 문제되는 공개에 대해 부합하지 않는 범위에서 ss.(4)에 명시된 규정들을 의미한다.

(4) ss.(3)에서 말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a) 그 원칙이 Sch.2와 3의 조건들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범위는 제외한 정보보호 제1원칙
(b) 정보보호 제2, 3, 4, 5 원칙
(c) S.10, S.14(1) 내지 (3).

(5) 이 장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정보 규정들은 정보의 공개를 금지 또는 정보를 보유할 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법령이나 법규에 관계 없이 효력을 갖는다.

28 National security.

(1)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any of the provisions of—
(a)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b) Parts II, III and V, and
(c) sections 54A and 55,
if the exemption from that provision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2) Subject to subsection (4), a certificate signed by a Minister of the Crown certifying that

28【국가안보】

(1) 개인정보는 다음의 구정들로부터의 면제가 국가 안보 보장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떤 규정으로부터도 면제된다.
(a) 정보보호 기본원칙
(b) 제 2, 3, 5 장
(c) S.54A와 S.55.

(2) ss.(4)를 조건으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하여 ss.(1)에서 언급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로

exemption from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mentioned in subsection (1) is or at any time was required for the purpose there mentioned in respect of any personal data shall be conclusive evidence of that fact.

부터 면죄되거나, 어느 시점에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는 점을 공인하는, 왕실장관에 의해 서명된 증명서는 그러한 사실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

(3)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2) may identify the personal data to which it applies by means of a general description and may be expressed to have prospective effect.

(3) ss.(2)의 증명서는 그것이 적용되는 개인정보를 일반적인 설명으로 밝힐 수 있으며, 장래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표현될 수 있다.

(4) Any person directly affected by the issuing of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2) may appeal to the Tribunal against the certificate.

(4) ss.(2)의 증명서의 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는 정보법정에 그 증명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If on an appeal under subsection (4), the Tribunal finds that, applying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on an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the Minister did not have reasonable grounds for issuing the certificate, the Tribunal may allow the appeal and quash the certificate.

(5) 만약 ss.(4)에 따른 이의제기절차에서 정보법정이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에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장관이 증명서를 발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증명서를 파기할 수 있다.

(6) Where in any proceedings under or by virtue of this Act it is claimed by a data controller that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2) which identifies the personal data to which it applies by means of a general description applies to any personal data, any other party to the proceedings may appeal to the Tribunal on the ground that the certificate does not apply to the personal data in question and, subject to any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7), the certificate shall be conclusively presumed so to apply.

(6) 본 법률에 근거한, 또는 그 효력에 의하여 소송에서 정보관리자가, 일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ss.(2)의 증명서가 어떠한 개인정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면, 소송의 어떤 당사자라도 증명서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ss.(7)의 결정을 조건으로 그 증명서는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7) On any appeal under subsection (6), the Tribunal may determine that the certificate does not so apply.

(7) ss.(6)에 따른 이의제기에서, 정보법정은 증명서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8) A document purporting to be a certificate under subsection (2) shall be received in evidence and deemed to be such a certificate unless the contrary is proved.

(8) ss.(2)에 따른 증명서로 주장되는 문서는 증거로서 채택되어야 하며, 반증이 없으면 해당되는 증명서로 간주되어야 한다.

(9) A document which purports to be certified by or on behalf of a Minister of the Crown as a true copy of a certificate issued by that Minister under subsection (2) shall in any legal proceedings be evidence (or, in Scotland,

(9) ss.(2)에 따라 왕실장관에 의해, 또는 그를 대리하여 발행한 증명서의 진정한 사본이라고 주장되는 문서는 모든 법적 소송절차에서 그 증명서의 증거(스코틀랜드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sufficient evidence) of that certificate.

(10)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2) on a Minister of the Crown shall not be exercisable except by a Minister who is a member of the Cabinet or by the Attorney General or the Lord Advocate.

(10) ss.(2)에 의해 부여된 왕실장관의 권한은 내각의 일원인 장관 또는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에 의한 경우 외에는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11) No power conferred by any provision of Part V may be exercised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which by virtue of this section are exempt from that provision.

(11) 제5장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도 이 섹션에 의해 그 규정들로부터 면제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행사될 수 없다.

(12) Schedule 6 shall have effect in relation to appeals under subsection (4) or (6) and the proceedings of the Tribunal in respect of any such appeal.

(12) ss.(4) 또는 ss.(6)에 따른 이의제기와,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정보법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Sch.6이 효력을 갖는다.

29 Crime and taxation.

(1) Personal data processed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 the prevention or detection of crime,
(b) the apprehension or prosecution of offenders, or
(c)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any tax or duty or of any imposition of a similar nature,
are exempt from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except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in Schedules 2 and 3) and section 7 in any case prejudice any of the matters mentioned in this subsection.

29【범죄 및 과세】

(1)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정보보호 제1원칙으로부터 면제되며, (단, Sch.2와 3의 조건들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범위는 제외) 개인정보에 대한 S.7의 적용이 이 섹션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 일부라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a) 범죄의 예방이나 탐지 목적
(b) 범죄자의 체포 또는 기소 목적
(c) 조세나 의무의 산정이나 수금, 또는 유사한 성질의 부과 목적.

(2) Personal data which—
(a) are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discharging statutory functions, and
(b) consist of information obtained for such a purpose from a person who had it in his possession for any of the purposes mentioned in subsection (1),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to the same extent as personal data processed for any of the purposes mentioned in that subsection.

(2) 다음의 개인정보는—
(a) 법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면제해 줄 목적으로 처리되며,
(b) 그러한 목적으로 ss.(1)에 언급된 목적 중의 하나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그 ss.에 규정된 목적 중의 하나로 처리되는 범위 내에서는 필수 정보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3)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in any case in which

(3)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에 비공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
(a) the disclosure is for any of the purposes mentioned in subsection (1), and
(b)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in relation to the disclosure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any of the matters mentioned in that subsection.

(a) ss.(1)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한 공개일 경우와,
(b) 공개와 관련한 해당 규정들의 적용이 동 ss.에서 언급한 문제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

(4)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the data controller is a relevant authority and which—
(a) consist of a classification applied to the data subject as part of a system of risk assessment which is operated by that authority for either of the following purposes—
(i)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any tax or duty or any imposition of a similar nature, or
(ii) the prevention or detection of crime, or apprehension or prosecution of offenders, where the offence concerned involves any unlawful claim for any payment out of, or any unlawful application of, public funds, and
(b) are processed for either of those purposes,
are exempt from section 7 to the extent to which the exemption is required in the interests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4) 정보관리자가 관계당국인 경우의 개인정보와 다음의 개인정보는 그 면제가 체제의 운영상의 이익에 따라 요구되는 범주까지 S.7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a)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관계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위험 평가 체계의 일부로써 정보주체에게 적용되는 분류로 구성된 개인정보—
(i) 조세나 의무의 산정이나 수금, 또는 유사한 성질의 부과, 또는
(ii) 범죄의 예방이나 탐지, 또는 해당 위반이 공공기금에 대해 그로부터 지출되는 불법적 청구 또는 불법적 적용과 관련된 경우, 범죄자의 체포 또는 기소,
(b) 이 중 하나의 목적으로 처리된 개인정보.

(5) In subsection (4)—
"public funds" includes funds provided by any Community institution;
"relevant authority" means—
(a) a government department,
(b) a local authority, or
(c) any other authority administering housing benefit or council tax benefit.

(5) ss.(4)에서—
"공공기금"은 모든 공동체 기관으로부터 공급된 자금을 포함한다.
"관계당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정부 부서
(b) 지방 정부당국
(c) 주택수당이나 자문위 세금 수당을 운영하는 기타 기관.

30 Health, education and social work.

30 【보건, 교육 및 사회사업】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or modify those provisions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as to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condition of the data subject.

(1) 국무장관은 정보주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상태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명령으로써 필수 정보 규정으로부터 면제하거나, 그 규정들을 수정할 수 있다.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or modify those provisions in relation to—

(2) 국무장관은 명령으로써 다음에 관해 필수 정보 규정으로부터 면제하거나, 그 규정들을 수정할 수 있다.

(a)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the data controller is the proprietor of, or a teacher at, a school, and which consist of information relating to persons who are or have been pupils at the school, or
(b) personal data in respect of which the data controller is an education authority in Scotland, and which consist of information relating to persons who are receiving, or have received, further education provided by the authority.

(a) 정보관리자가 학교의 교주이거나 교사이고,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
(b) 정보관리자가 스코틀랜드 교육당국인 경우에 대하여, 개인정보나 해당 당국에서 제공하는 추가적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or modify those provisions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of such other descrip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being information—
(a) processed by government departments or local authorities or by voluntary organisations or other bodies designated by or under the order, and
(b) appearing to him to be processed in the course of, or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social work in relation to the data subject or other individuals;
but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under this subsection confer any exemption or make any modification except so far as he considers that the application to the data of those provisions (or of those provisions without modification)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carrying out of social work.

(3) 국무장관은 명령으로써 그 명령에서 특정하는 다른 설명에 의해 정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정보 규정으로부터 면제하거나, 그 규정들을 수정할 수 있다.
(a) 그 명령에 의해, 또는 그에 의거하여 지정된 정부 부서나 지방당국, 또는 자율조직이나 기타 단체에 의해 처리되고,
(b) 그에게 정보주체나 타인에 관련된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중이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다만 국무장관은 그가 데이터에 대한 해당 규정들의 (또는 수정되지 않은 규정들의) 적용이 사회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본 ss.에 따라 면제하거나 수정을 가해서는 안된다.

(4)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make different provision in relation to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of different descriptions.

(4) 이 섹션에 따른 명령에서는 각기 달리 설명된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에 대해 상이한 규정을 둘 수 있다.

(5) In this section—

"education authority" and "further education"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Education (Scotland) Act 1980 ("the 1980 Act"), and

"proprietor"—
(a) in relation to a school in England or Wale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Education Act 1996,
(b) in relation to a school in Scotland, means —
(i) in the case of a self-governing school,

(5) 이 섹션에서—

"교육 당국" 및 "추가적 교육"은 1980년 (스코틀랜드) 교육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교주"는—
(a)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학교의 경우 1996년 교육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b) 스코틀랜드의 학교의 경우,
(i) 자율학교의 경우, 1989년 (스코틀랜드) 자율학교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 내에서 운영위원회,

the board of managem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Self-Governing Schools etc. (Scotland) Act 1989,

(ii) in the case of an independent school, the proprietor within the meaning of the 1980 Act,

(iii) in the case of a grant-aided school, the managers within the meaning of the 1980 Act, and

(iv) in the case of a public school, the education author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1980 Act, and

(c) in relation to a school in Northern Ireland,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 1986 and includes, in the case of a controlled school,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school.

(ii) 독립학교의 경우 1980년 법의 개념 내에서 교주,

(iii) 학자금보조학교의 경우, 1980년 법의 개념 내에서 관리자,

(iv) 공립학교의 경우, 1980년 법의 개념 내에서 교육당국을 의미한다.

(c) 북아일랜드의 학교의 경우, 1986년 교육 및 도서관 명령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통제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통제위원회를 포함한다.

31 Regulatory activity.

(1)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discharging functions to which this subsection applies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ose functions.

(2) Subsection (1) applies to any relevant function which is designed—

(a) for protecting members of the public against—

(i) financial loss due to dishonesty, malpractice or other seriously improper conduct by, or the unfitness or incompetence of, persons concerned in the provision of banking, insurance,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services or in the management of bodies corporate,

(ii) financial loss due to the conduct of discharged or undischarged bankrupts, or

(iii) dishonesty, malpractice or other seriously improper conduct by, or the unfitness or incompetence of, persons authorised to carry on any profession or other activity,

(b) for protecting charities or community inter-

31【규제 활동】

(1) 이 ss.이 적용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들의 적용이 동 임무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범위에서는 어느 때로도 필수 정보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ss.(1)은 다음을 위해 계획된 모든 관련 임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a) 다음으로부터 대중을 보호

(i) 은행, 보험, 투자, 기타 금융 서비스 규정이나 법인체의 경영과 관련된 자의 불성실, 배임행위, 기타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위나 부적격, 무능력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ii) 면책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파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iii) 어떤 직업이나 기타 활동을 행하도록 허가된 자의 불성실, 배임행위, 기타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위나 부적격, 무능력

(b) 자선기금이나 공익기업의 관리에 있어 (수탁자, 감독자 또는 다른 자에 의한) 부정행위 또는 부실 경영으로부터의 보호

(c) 손실이나 오용으로부터 자선기금이나 공

est companies against misconduct or mismanagement (whether by trustees, directors or other persons) in their administration,
(c) for protecting the property of charities or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from loss or misapplication,
(d) for the recovery of the property of charities or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e) for securing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ersons at work, or
(f) for protecting persons other than persons at work against risk to health or safet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ctions of persons at work.

익기업의 자산의 보호
(d) 자선기금이나 공익기업의 자산의 회복
(e) 직업인의 건강, 안전, 복지의 보호
(f) 직업인의 활동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직업인 이외의 자를 보호

(3) In subsection (2) "relevant function" means—
(a) any function conferred on any person by or under any enactment,
(b) any function of the Crown, a Minister of the Crown or a government department, or
(c) any other function which is of a public nature and is exercised in the public interest.

(3) ss.(2)에서 "관련 임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어떤 자에게든지 법률에서 또는 이에 의거하여 부여된 임무
(b) 왕실, 왕실장관, 또는 정부 부서의 임무
(c) 공공성을 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기타 임무

(4)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discharging any function which—
(a) is conferred by or under any enactment on—
(i)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ii) the Commission for Local Administration in England or, the Commission for Local Administration in Wales,
(iii) the Health Service Commissioner for England or, the Health Service Commissioner for WalesF48,
(iv) the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Wales,
(v) the Assembly Ombudsman for Northern Ireland,
(vi) the Northern Ireland Commissioner for Complaints, or
(vii) the Scottish Public Services Ombudsman, and
(b) is designed for protecting members of the public against—
(i) maladministration by public bodies,
(ii) failures in services provided by public bodies, or
(iii) a failure of a public body to provide

(4)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된 개인정보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a) 법률에서 또는 이에 의거하여 다음의 자에게 부여되고—
(i) 의회 행정관
(ii) 잉글랜드의 지방행정위원회나 웨일즈의 지방행정위원회
(iii) 잉글랜드의 보건행정위원이나 웨일즈의 보건행정위원
(iv) 웨일즈의 공공서비스 옴부즈만
(v) 북아일랜드의 의회 옴부즈만
(vi) 북아일랜드의 민원조사관,
(vii) 스코틀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만
(b) 다음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
(i) 공공기관에 의한 부정 행정
(ii)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태만
(iii) 자신이 공급 기능을 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태만

a service which it was a function of the body to provide,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at function.

(4A)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discharging any function which is conferred by or under Part XVI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on the body established by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at Part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e function.

(4A) 2000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에 관한 법률 제16장에서 또는 이에 의거하여 금융 서비스 당국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게 부과되는 임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장의 목적상 그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4B)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discharging any function of the Legal Services Board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e function.

(4B) 법률 서비스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5)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discharging any function which—

(a) is conferred by or under any enactment on the Office of Fair Trading], and

(b) is designed—

(i) for protecting members of the public against conduct which may adversely affect their interests by persons carrying on a business,

(ii) for regulating agreements or conduct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in connection with any commercial activity, or

(iii) for regulating conduct on the part of one or more undertakings which amounts to th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in a market,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at function.

(5) 다음과 같은 임무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a) 법령에서 또는 이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소에 부과하고,

(b) 다음을 위해 설정된 임무.

(i) 사업을 하는 자에 의한 대중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

(ii) 그 목적이나 효과가 상업적 활동에 대한 경쟁의 금지, 제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이나 행위의 규제

(iii)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상당하는 사업자의 규제

(5A) Personal data processed by a CPC enforcer for the purpose of discharging any function conferred on such a body by or under the CPC Regulation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at function.

(5A) CPC 규칙에서 또는 이에 의거하여 CPC 집행자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단체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5B) In subsection (5A)—
(a) "CPC enforcer" has the meaning given to it in section 213(5A) of the Enterprise Act 2002 but does not include the Office of Fair Trading;
(b) "CPC Regulation" has the meaning given to it in section 235A of that Act.

(5B) ss.(5A)에서—
(a) "CPC 집행자"는 2002년 회사법 S. 213(5A)에서 이에 대해 주어진 의미를 가지나 공정거래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b) "CPC 규칙"은 동 법 S.245A에서 이에 대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6)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the function of considering a complaint under section 113(1) or (2) or 114(1) or (3) of the 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 2003, or section 24D, 26 or 26ZB of the Children Act 1989,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at function.

(6) 2003년 보건 및 사회적 보호 (공동체 보건 및 기준)에 관한 법률 S.113(1), (2), S.114(1), (3), 또는 1989년 아동법 S.24D, S.26, S.26ZB의 항의를 고려하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7)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discharging any function which is conferred by or under Part 3 of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on—
(a) the monitoring officer of a relevant authority,
(b) an ethical standards officer, or
(c) the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Wales,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proper discharge of that function.

(7) 2000년 지방정부법 제3장에서 또는 이에 의거하여 다음에게 부여되는 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필수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a) 관련 당국의 감시 담당관
(b) 윤리적 기준 담당관
(c) 웨일즈의 공공서비스 옴부즈만.

(8) In subsection (7)—
(a) "relevant authority"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49(6) of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and
(b) any reference to the monitoring officer of a relevant authority, or to an ethical standards offic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8) ss.(7)에서—
(a) "관련 당국"은 2000년 지방정부법 S. 49(6)에서 주어진 의미를 가지며,
(b) 관련 당국의 감시 담당관이나 윤리적 기준 담당관에 대한 것은 동법 제3장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Part 3 of that Act.

32 Journalism, literature and art.

(1) Personal data which are processed only for the special purposes are exempt from any provision to which this subsection relates if—
(a) the processing is undertaken with a view to the publication by any person of any journalistic, literary or artistic material,
(b) the data controller reasonably believes that, having regard in particular to the special importance of the public interest in freedom of expression, publication w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and
(c) the data controller reasonably believes that, in all the circumstances, compliance with that provision is incompatible with the special purposes.

(2) Subsection (1) relates to the provisions of—
(a)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except the seventh data protection principle,
(b) section 7,
(c) section 10,
(d) section 12, and
(e) section 14(1) to (3).

(3) In considering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b) whether the belief of a data controller that publication w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was or is a reasonable one, regard may be had to his compliance with any code of practice which—
(a) is relevant to the publication in question, and
(b) is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y order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4) Where at any time ("the relevant time") in any proceedings against a data controller under section 7(9), 10(4), 12(8) or 14 or by virtue of section 13 the data controller claims, or it appears to the court, that any personal data to which the proceedings relate are being processed—
(a) only for the special purposes, and
(b) with a view to the publication by any person of any journalistic, literary or artistic

32【언론, 문학, 예술】

(1) 특별 목적에 한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 이 ss.이 관련된 모든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a) 처리가 누군가에 의하여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자료의 출판을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b) 정보관리자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공 이익의 특별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출판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경우
(c) 정보관리자가 모든 상황에서 해당 규정들의 준수가 틀별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경우.

(2) ss.(1)은 다음의 규정들과 관련된다.
(a) 정보보호 제7원칙을 제외한 정보보호 기본원칙들
(b) Section 7
(c) Section 10
(d) Section 12
(e) Section 14(1) 내지 (3).

(3) ss.(1)(b)의 목적상 출판하는 것이 공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보관리자의 판단이 합리적이었거나 합리적인 것인지를 고려함에 있어, 다음의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참작할 수 있다.
(a) 해당 출판과 관련된 것
(b) 이 ss.의 목적을 위해 국무장관의 명령으로 지목된 것

(4) S.7(9), 10(4), 12(8), 14에서, 또는 S.13에 의거하여 정보관리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절차의 계속 중 어떤 시점("관련 시점")에서든지, 그 소송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정보관리자가 주장하거나, 법원이 그렇게 볼 경우 법원은 ss.(5)의 어느 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a) 특별 목적에 한해서, 그리고
(b) 관련 시점의 24시간 직전의 시점에 정

material which, at the time twenty-four hours immediately before the relevant time, had not previously been published by the data controller,

the court shall stay the proceedings until either of the conditions in subsection (5) is met.

보관리자에 의해 먼저 출판되지 아니한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자료를 누군가가 출판할 의도로.

(5) Those conditions are—

(a) that a determination of the Commissioner under section 45 with respect to the data in question takes effect, or

(b) in a case where the proceedings were stayed on the making of a claim, that the claim is withdrawn.

(5) 그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a) 해당 데이터에 대한 S.45조에 따른 정보위원의 결정이 효력을 가질 것

(b) 소송절차가 청구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 그 청구가 취하되었을 것.

(6)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publish", in relation to journalistic, literary or artistic material, means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or any section of the public.

(6) 본 법률의 목적상 "출판"은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인 자료에 대해 대중이나 대중의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Research, history and statistics.

33【연구, 역사, 통계】

(1) In this section—

"research purposes" includes statistical or historical purposes;

"the relevant conditions", in relation to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means the conditions—

(a) that the data are not processed to support measures or decisions with respect to particular individuals, and

(b) that the data are not processed in such a way that substantial damage or substantial distress is, or is likely to be, caused to any data subject.

(1) 이 섹션에서—

"연구 목적"은 통계적, 역사적 목적을 포함한다.

"관련 조건"이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다음의 조건을 의미한다.

(a) 개인정보가 특정인에 대한 조치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처리되지 아니할 것과,

(b) 개인정보가 어떤 정보주체에게라도 중대한 손해 또는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지 아니할 것.

(2) For the purposes of the second data protection principle, the further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ly for research purposes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ditions is not to be regarded as incompatible with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obtained.

(2) 정보보호 제2원칙의 목적상,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목적에 한정된 개인정보의 추가적 처리는 그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Personal data which are processed only for research purposes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ditions may, notwithstanding the

(3)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 연구 목적에 한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정보보호 제5원칙과 관계 없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

fifth data protection principle, be kept indefinitely.

(4) Personal data which are processed only for research purposes are exempt from section 7 if —
(a) they are processed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ditions, and
(b)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r any resulting statistics are not made available in a form which identifies data subjects or any of them.

(4) 오직 연구 목적에 한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 S.7로부터 면제된다.
(a)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 처리되고,
(b) 그 연구 결과나 결과적인 통계자료가 정부주체 모두나 일부인의 신상을 밝히는 형식으로 공개되지 아니할 것.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s (2) to (4) personal data are not to be treated as processed otherwise than for research purposes merely because the data are disclosed—
(a) to any person, for research purposes only,
(b) to the data subject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c) at the request, or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or
(d)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disclosure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disclosure falls within paragraph (a), (b) or (c).

(5) ss.(2) 내지 (4)까지의 목적상 개인정보는 단지 그 개인정보가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a) 연구 목적에 한해 누구에게든지 공개
(b) 정보주체나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공개
(c) 정보주체의 요구나 동의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의 요구나 동의에 따른 공개
(d)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자가 그 공개가 para. (a), (b), (c)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의 공개.

33A Manual data held by public authorities.

(1) Personal data falling within paragraph (e)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are exempt from—
(a) the first, second, third, fifth, seventh and eigh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b) the sixth data protection principle except so far as it relates to the rights conferred on data subjects by sections 7 and 14,
(c) sections 10 to 12,
(d) section 13, except so far as it relates to damage caused by a contravention of section 7 or of the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 and to any distress which is also suffered by reason of that contravention,
(e) Part III, and
(f) section 55.

33A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수작업 데이터

(1) S.1(1)의 "데이터"의 정의 중 para.(e)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으로부터 면제된다.
(a) 정보보호 기본원칙 제 1, 2, 3, 5, 7, 8 원칙
(b) S.7과 14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계된 범위를 제외하고 정보보호 제6원칙
(c) Section 10 내지 12
(d) S.7이나 정보보호 제4원칙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나 그 위반을 이유로 겪은 고통과 관계된 범위를 제외하고, Section 13
(e) 제3장
(f) Section 55.

(2) Personal data which fall within paragraph (e)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and relate to appointments or removals, pay,

(2) 다음과 관련해 S.1(1)의 "데이터"의 정의 중 para.(e)에 해당하고 임명이나 해고, 급여, 징계, 퇴임, 기타 인사 문제에 관한 개인정

discipline, superannuation or other personnel matters, in relation to—
(a) service in any of the armed forces of the Crown,
(b) service in any office or employment under the Crown or under any public authority, or
(c) service in any office or employment, or under any contract f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power to take action, or to determine or approve the action taken, in such matters is vested in Her Majesty, any Minister of the Crown,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any Northern Ireland Minister (within the meaning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or any public authority,
are also exempt from the remaining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the remaining provisions of Part II.

보 역시 나머지 정보보호 기본원칙들과 제2장의 규정들로부터 면제된다.
(a) 왕실 군대에서의 복무
(b) 왕실 소속 또는 공공 당국에서의 복무 또는 고용
(c) 여왕폐하, 왕실장관, 웨일즈 국회, (2000년 정보자유법에서의 의미상) 북아일랜드의 장관이나 공공 당국에 의해 행동을 취할 권한이나 취해질 행동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관청에서의 근무, 고용 또는 서비스 계약.

34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by or under enactment.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a)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b) the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 and section 14(1) to (3), and
(c)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if the data consist of information which the data controller is obliged by or under any enactment other than an enactment contained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whether by publishing it, by making it available for inspection, or otherwise and whether gratuitously or on payment of a fee.

34【관계법령에 의한 또는 이에 의거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정보관리자가 2000년 정보관리법에 포함된 법령을 제외한 어떠한 입법에서 또는 이에 의거하여 무상으로든지 수수료의 납부에 따라서든지 출판, 열람의 허용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는 다음으로부터 면제된다.
(a) 필수 정보 규정
(b) 정보보호 제4원칙과 S.14(1) 내지 (3)
(c) 비공개 규정

35 Disclosures required by law or made in connection with legal proceedings etc.

(1)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where the disclosure is required by or under any enactment, by any rule of law or by the order of a court.

(2)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where the disclosure

35【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소송절차 등에 따른 공개】

(1) 법률상의 규정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 또는 이에 따라 그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개인정보는 비공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개인정보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is necessary—
(a) for the purpose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legal proceedings (including prospective legal proceedings), or
(b)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legal advice, or is otherwis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exercising or defending legal rights.

법률상의 권리를 입증, 행사 또는 방어할 목적으로 달리 필요한 경우, 비공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a) (장래의 소송을 포함하여) 소송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되거나,
(b)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35A Parliamentary privilege.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a)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except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in Schedules 2 and 3,
(b)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c) section 7, and
(d) sections 10 and 14(1) to (3),
if the exemption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an infringement of the privileges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35A【의회의 특권】

개인정보는 양 의원의 특권의 침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면제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으로부터 면제된다.
(a) 그 원칙이 Sch.2와 3의 조건들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범위는 제외한 정보보호 제1원칙
(b) 정보보호 제 2, 3, 4, 5 원칙
(c) Section 7
(d) S.10과 S.14(1) 내지 (3).

36 Domestic purposes.

Personal data processed by an individual only for the purposes of that individual's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affairs (including recreational purposes) are exempt from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the provisions of Parts II and III.

36【가정적 목적】

오직 해당인의 개인적, 가족적, 가사적 용건(오락적 목적을 포함)의 목적에 한해 개인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37 Miscellaneous exemptions.

Schedule 7 (which confers further miscellaneous exemptions) has effect.

37【기타 면제조항】

(추가적 면제를 부여하는) Sch.7이 효력을 갖는다.

38 Powers to make further exemptions by order.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s prohibited or restricted by or under any enactment if and to the extent that he considers it necessary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38【명령으로써 추가적 면제를 규정할 권한】

(1) 국무장관은, 개인정보의 공개가 법률에서 또는 그에 의거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다른 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이 필수 정보 규정에 우선할 것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명령으로써 필수 정보 규정으로부터 면제시킬 수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any other individual that the prohibition or restriction ought to prevail over those provisions.

있다.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exempt from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any disclosures of personal data made in circumstances specified in the order, if he considers the exemption is necessary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any other individual.

(2) 국무장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다른 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명령으로써 해당 명령에 명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공개를 비공개 규정으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다.

39 Transitional relief.

Schedule 8 (which confers transitional exemptions) has effect.

39【과도기적 구제】

(과도기적 면제를 부여하는) Sch.8이 효력을 갖는다.

PART V
ENFORCEMENT

제 5 장
집 행

40 Enforcement notices.

(1) If the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a data controller has contravened or is contravening any of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the Commissioner may serve him with a notice (in this Act referred to as "an enforcement notice") requiring him, for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r principles in question, to do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a) to take within such tim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or to refrain from taking after such time as may be so specified, such steps as are so specified, or
(b) to refrain from processing any personal data, or any personal data of a description specified in the notice, or to refrain from processing them for a purpose so specified or in a manner so specified, after such time as may be so specified.

40【집행 통지】

(1)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보위원이 납득한 경우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가 문제되는 원칙 또는 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본 법률상 "집행 통지"로 규정)를 송달할 수 있다.
(a) 통지에서 특정되는 시간 이내에 특정된 절차를 취하거나 혹은 특정되는 시간의 경과 후에 특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을 삼갈 것, 또는
(b) 특정되는 시간의 경과 후에, 어떤 개인정보나 혹은 통지에 특정된 설명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삼갈 것, 또는 이들을 특정 목적이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삼갈 것.

(2) In deciding whether to serve an enforcement notice, the Commissioner shall consider whether the contravention has caused or is likely to cause any person damage or distress.

(2) 집행통지를 송달할 것인지 결정할 때 정보위원은 그 위반이 누군가에게 손해나 고통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3) An enforcement notice in respect of a

(3) 정보보호 제4원칙의 위반에 대하여 정보관

contravention of the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 which requires the data controller to rectify, block, erase or destroy any inaccurate data may als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rectify, block, erase or destroy any other data held by him and containing an expression of opinion which appears to the Commissioner to be based on the inaccurate data.

리자에게 부정확한 데이터를 교정, 차단, 삭제,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통지에서는 그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정보위원이 보기에 부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의견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들 역시 교정, 차단, 삭제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An enforcement notice in respect of a contravention of the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 in the case of data which accurately record information received or obtained by the data controller from the data subject or a third party, may require the data controller either—
(a) to rectify, block, erase or destroy any inaccurate data and any other data held by him and containing an expression of opinion as mentioned in subsection (3), or
(b) to take such steps as are specified in the notice for securing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paragraph 7 of Part II of Schedule 1 and, if the Commissioner thinks fit, for supplementing the data with such statement of the true facts relating to the matters dealt with by the data as the Commissioner may approve.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관리자가 수령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한 데이터의 경우, 정보보호 제4원칙의 위반에 대한 집행통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정보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a) 부정확한 데이터 및 ss.(3)에서 언급하는 의견을 포함하고, 그가 보유하는 다른 데이터의 교정, 차단, 삭제 또는 파기
(b) 통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Sch.1 제1장 para.7에 명시된 조건의 충족을 보장하고, 만약 정보위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보위원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에서 다루는 문제에 관한 진정한 사실의 기술로써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Where—
(a) an enforcement notice requires the data controller to rectify, block, erase or destroy any personal data, or
(b) the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personal data which have been rectified, blocked, erased or destroyed had been processed in contravention of any of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 enforcement notice may, if reasonably practicable,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notify third parties to whom the data have been disclosed of the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and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reasonably practicable to require such notification regard shall be had, in particular, to the number of persons who would have to be notified.

(5) 다음의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면, 집행통지에서는 정보관리자가 데이이터가 공개된 제3자에게 교정, 차단, 삭제, 파기되었음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보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히 통보되어야 할 대상자의 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a) 집행통지가 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교정, 차단,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b) 교정, 차단, 삭제, 파기되는 개인정보가 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처리되었음을 정보위원이 확인하였을 때.

(6) An enforcement notice must contain—
(a) a statement of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 or principles which the commissioner is

(6) 집행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위반되었거나 위반되고 있다고 정보위원이 확인하는 정보보호 기본원칙 또는 원

satisfied have been or are being contravened and his reasons for reaching that conclusion, and

(b) particulars of the rights of appeal conferred by section 48.

(7) Subject to subsection (8), an enforcement notice must not require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notice to be complied with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gainst the notice and, if such an appeal is brought, the notice need not be complied with pending the determination or withdrawal of the appeal.

(8) If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an enforcement notice should be complied with as a matter of urgency he may include in the notice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a statement of his reasons for reaching that conclusion; and in that event subsection (7) shall not apply but the notice must not require the provisions of the notice to be complied with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seven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served.

(9) Notification regulations (as defined by section 16(2)) may make provision as to the effect of the service of an enforcement notice on any entry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19 which relates to the person on whom the notice is served.

(10) This section has effect subject to section 46(1).

41 Cancellation of enforcement notice.

(1) If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an enforcement notice need not be complied with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 or principles to which it relates, he may cancel or vary the notice by written notice to the person on whom it was served.

(2) A person on whom an enforcement notice has been served may, at any time after the expiry

칙들에 대한 기술과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와,

(b) S.48에 의해 부여된 이의제기권의 세부사항들.

(7) ss.(8)을 조건으로, 집행통지에서는 통지의 어떠한 규정도 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행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또는 철회가 있을 때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없다.

(8) 만약 정보위원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집행통지가 긴급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정보위원은 통지에 그러한 효력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 때 ss.(7)은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나, 단 집행통지는 그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통지의 규정이 이행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9) (S.16(2)에서 정의된 바) 통보 규칙은 S.19에 따라 유ㅈ되는 등록부의 등재사항에 관한 집행통지의 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통지가 송달되는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10) 이 섹션은 S.46(1)을 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41【집행통지의 취소】

(1) 만약 정보위원이 집행통지의 모든 규정이나 일부 규정이 그 집행통지를 송달받는 자와 관계있는 정보보호 기본원칙 또는 원칙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보위원은 그 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그 집행통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집행통지를 송달받은 자는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of the period during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gainst that notice, apply in writing to the Commissioner for the cancellation or variation of that notice on the round that, by reason of a change of circumstances, all or any of the provisions of that otice need not be complied with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data protection rinciple or principles to which that notice relates.

후에 어느 때라도 정보위원에게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통지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이 그 통지와 관련된 정보보호 기본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로 정보위원에게 통지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41A Assessment notices *prospective

(1) The Commissioner may serve a data controller within subsection (2) with a notice (in this Act referred to as an "assessment notice") for the purpose of enabling the Commissioner to determine whether the data controller has complied or is complying with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2) A data controller is within this subsection if the data controller is—
(a) a government department,
(b) a public authority design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y an order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or
(c) a person of a description design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y such an order.

(3) An assessment notice is a notice which requires the data controller to do all or any of the following—
(a) permit the Commissioner to enter any specified premises;
(b) direct the Commissioner to any documents on the premises that are of a specified description;
(c) assist the Commissioner to view any information of a specified description that is capable of being viewed using equipment on the premises;
(d) comply with any request from the Commissioner for—
(i) a copy of any of the documents to which the Commissioner is directed;
(ii) a copy (in such form as may be requested) of any of the information which the Commissioner is assisted to view;

41A【사정 통지】 *개정 예정

(1) 정보위원은 ss.(2)에 해당하는 정보관리자에게

(2)

(3)

(e) direct the Commissioner to any equipment or other material on the premises which is of a specified description;
(f) permit the Commissioner to inspect or examine any of the documents, information, equipment or material to which the Commissioner is directed or which the Commissioner is assisted to view;
(g) permit the Commissioner to observe the processing of any personal data that takes place on the premises;
(h) make available for interview by the Commissioner a specified number of persons of a specified description who process personal data on behalf of the data controller (or such number as are willing to be interviewed).

(4) In subsection (3) references to the Commissioner include references to the Commissioner's officers and staff. (4)

(5) An assessment notice must, in relation to each requirement imposed by the notice, specify— (5)
(a) the time at which the requirement is to be complied with, or
(b)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quirement is to be complied with.

(6) An assessment notice must also contain particulars of the rights of appeal conferred by section 48. (6)

(7) The Commissioner may cancel an assessment notice by written notice to the data controller on whom it was served. (7)

(8) Where a public authority has been designated by an order under subsection (2)(b) the Secretary of State must reconsider, at intervals of no greater than 5 years, whether it continues to be appropriate for the authority to be designated. (8)

(9) The Secretary of State may not make an order under subsection (2)(c) which designates a description of persons unless— (9)
(a) the Commissioner has made a recommendation that the description be designated, and

(b) the Secretary of State has consulted—
(i) such persons as appear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ose that meet the description;
(ii) such other persons as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appropriate.

(10) The Secretary of State may not make an order under subsection (2)(c), and the Commissioner may not make a recommendation under subsection (9)(a), unless the Secretary of State or (as the case may be) the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description of persons in question to be designated having regard to—
(a) the nature and quantity of data under the control of such persons, and
(b) any damage or distress which may be caused by a contravention by such persons of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11) Where a description of persons has been designated by an order under subsection (2)(c) the Secretary of State must reconsider, at intervals of no greater than 5 years, whether it continues to be necessary for the description to be designated having regard to the matters mentioned in subsection (10).

(12) In this section—

"public authority" includes any body, office-holder or other person in respect of which—
(a) an order may be made under section 4 or 5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or
(b) an order may be made under section 4 or 5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Scotland) Act 2002;

"specified" means specified in an assessment notice.

41B Assessment notices: limitations[*prospective]

(1) A time specified in an assessment notice under section 41A(5) in relation to a requirement must not fall, and a period so specified must

(10)

(11)

(12)

41B【사정 통지 : 제한】[*prospective]

(1)

not begin,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gainst the notice, and if such an appeal is brought the requirement need not be complied with pending the determination or withdrawal of the appeal.

(2) If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data controller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in an assessment notice as a matter of urgency, the Commissioner may include in the notice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at conclusion; and in that event subsection (1) applie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 as if for the words from "within" to the end there were substituted of 7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served.

(3) A requirement imposed by an assessment notice does not have effect in so far as compliance with it would result in the disclosure of—

(a)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the adviser's client in connection with the giving of legal advice with respect to the client's obligations, liabilities or rights under this Act, or

(b)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the adviser's client, or between such an adviser or the adviser's client and any other person, mad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proceedings under or arising out of this Act (including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and for the purposes of such proceedings.

(4) In subsection (3) references to the client of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include references to any person representing such a client.

(5) Nothing in section 41A authorises the Commissioner to serve an assessment notice on —

(a) a judge,

(b) a body specified in section 23(3)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bodies dealing with security matters), or

(c)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in so far as it is a data controller in respect of information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functions exercisable by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 by virtue of section 5(1)(a) of the Care Standards Act 2000.

(6) In this section "judge" includes —
(a) a justice of the peace (or, in Northern Ireland, a lay magistrate),
(b) a member of a tribunal, and
(c) a clerk or other officer entitled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r tribunal;
and in this subsection "tribunal" means any tribunal in which legal proceedings may be brought.

(6)

41C Code of practice about assessment notices[*pros.]

41C 【사정 통지에 대한 행동규범】[*prospective]

(1) The Commissioner must prepare and issue a code of practice as to the manner in which the Commissioner's functions under and in connection with section 41A are to be exercised.

(1)

(2) The code must in particular—
(a) specify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o serve an assessment notice on a data controller;
(b) specify descriptions of documents and information that—
(i) are not to be examined or inspected in pursuance of an assessment notice, or
(ii) are to be so examined or inspected only by persons of a description specified in the code;
(c) deal with the nature of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carried out in pursuance of an assessment notice;
(d) deal with the nature of interviews carried out in pursuance of an assessment notice;
(e) deal with the preparation, issuing and publication by the Commissioner of assessment reports in respect of data controllers that have been served with assessment notices.

(2)

(3) The provisions of the code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2)(b) must, in particular, include

(3)

provisions that relate to—
(a) documents and information concerning an individual's physical or mental health;
(b) documents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vision of social care for an individual.

(4) An assessment report is a report which contains—
(a)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data controller has complied or is complying with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b) recommendations as to any steps which the data controller ought to take, or refrain from taking, to ensure compliance with any of those principles, and
(c) such other matters as are specified in the code.

(5) The Commissioner may alter or replace the code.

(6) If the code is altered or replaced, the Commissioner must issue the altered or replacement code.

(7) The Commissioner may not issue the code (or an altered or replacement code)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of State.

(8) The Commissioner must arrange for the publication of the code (and any altered or replacement code) issued under this section in such form and manner as the Commissioner considers appropriate.

(9) In this section "social care"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1 of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 (see section 9(3) of that Act).

42 Request for assessment.

(1) A request may be made to the Commissioner by or on behalf of any person who is, or believes himself to be, directly affected by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an assessment as to whether it is likely or unlikely that the processing has been or is being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4)

(5)

(6)

(7)

(8)

(9)

42【사정 요청】

(1) 어떠한 개인정보의 처리로부터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러하다고 믿는 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해당 처리가 본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는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위원에게 사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On receiving a request under this section, the Commissioner shall make an assessment in such manner as appears to him to be appropriate, unless he has not been supplied with such information as he may reasonably require in order to—
(a) satisfy himself as to the identity of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and
(b) enable him to identify the processing in question.

(2) 이 섹션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보위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자신에게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사정을 해야 한다.
(a) 그가 요청을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b) 그가 문제되는 처리과정을 식별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3) The matters to which the Commissioner may have regard in determining in what manner it is appropriate to make an assessment include—
(a) the extent to which the request appears to him to raise a matter of substance,
(b) any undue delay in making the request, and
(c) whether or not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is entitled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7 in respect of the personal data in question.

(3) 사정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정보위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그 요청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
(b) 그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의 과도한 지체.
(c)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S.7에 따른 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4) Where the Commissioner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this section 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a) whether he has made an assessment as a result of the request, and
(b) to the extent that he considers appropriate, having regard in particular to any exemption from section 7 applying in relation to the personal data concerned, of any view formed or action taken as a result of the request.

(4) 이 섹션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정보위원은 그 요청을 한 자에게 다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a) 그 요청에 따라 사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b) 해당 개인정보와 관련해 적용되는 S.7의 예외를 특히 고려하여,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요청의 결과로 형성된 관점이나 취한 행동.

43 Information notices.

(1) If the Commissioner—
(a)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section 42 in respect of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r
(b) reasonably requires any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data controller has complied or is complying with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he may serve the data controller with a notice (in this Act referred to as "an information notice") requiring the data controller, within such time as is specified in the notice, to

43【정보 통지】

(1) 만약 정보위원이—
(a)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S.42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였거나,
(b)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 기본원칙들을 준수하였는지, 혹은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정보라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는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통지에 특정된 시간 이내에 특정되는 형태로 요청이나 명시된 원칙의 준수와 관련된 정보를 정보위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본 법률상 "정보통지"라 함.)를 송달할 수 있다.

furnish the Commissioner, in such form as may be so specified, with such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quest or to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as is so specified.

(2) An information notice must contain—
(a)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1)(a), a statement that the Commissioner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section 42 in relation to the specified processing, or
(b)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1)(b), a statement that the Commissioner regards the specified information as releva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data controller has complied, or is complying, with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his reasons for regarding it as relevant for that purpose.

(3) An information notice must also contain particulars of the rights of appeal conferred by section 48.

(4) Subject to subsection (5), the time specified in an information notice shall not expire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gainst the notice and, if such an appeal is brought, the information need not be furnished pending the determination or withdrawal of the appeal.

(5) If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is required as a matter of urgency, he may include in the notice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a statement of his reasons for reaching that conclusion; and in that event subsection (4) shall not apply, but the notice shall not require the information to be furnished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seven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served.

(6) A person shall not be required by virtue of this section to furnish the Commissioner with any information in respect of—
(a)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his client in connection with the giving of legal advice to the client with respect to his obligations, liabilities or rights under this Act, or

(2) 정보통지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ss.(1)(a)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위원이 특정한 처리에 관하여 S.42에 의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나,
(b) ss.(1)(b)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위원이 그 특정 정보를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준수하였거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그러한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한 기술.

(3) 정보통지는 S.48에 의해 부여된 이의제기권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ss.(5)를 조건으로 정보통지에 특정된 시간은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전에 만료해서는 아니되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또는 철회가 있을 때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없다.

(5) 만약 정보위원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보통지가 긴급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정보위원은 통지에 그러한 효력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 때 ss.(4)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나, 단 집행통지는 그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통지의 규정이 이행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6) 누구도 이 섹션에 의거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정보위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받아서는 아니된다.
(a) 의뢰인의 본 법률상의 의무나 책임, 권리에 관한 법적 자문과 관련한 전문적 법조인과 그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소통이나,
(B) 본 법률상의, 또는 본 법률에 의거한 소

(b)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his client, or between such an adviser or his client and any other person, mad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proceedings under or arising out of this Act (including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and for the purposes of such proceedings.

송(정보법정에서의 절차를 포함.)과 관련하거나 이를 의도하여 전문적 법조인과 그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소통이나, 전문적 법조인이나 의뢰인과 다른 자 간에 이루어진 소통.

(7) In subsection (6) references to the client of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include references to any person representing such a client.

(7) ss.(6)에서 전문적 법조인의 의뢰인에 대한 내용은 그러한 의뢰인을 대리하는 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8) A person shall not be required by virtue of this section to furnish the Commissioner with any information if the furnishing of that information would, by revealing evidence of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other than an offence under this Act, expose him to proceedings for that offence.

(8) 해당 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것이라도 본 법률의 위반 이외의 위반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어 당사자를 그 위반에 대한 절차에 노출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이 섹션에 의하여 정보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9) The Commissioner may cancel an information notice by written notice to the person on whom it was served.

(9) 정보위원은 정보통지를 송달받은 자에 대한 서면의 통지를 통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0) This section has effect subject to section 46(3).

(1) 이 섹션은 S.46(3)을 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44 Special information notices.

(1) If the Commissioner—
(a)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section 42 in respect of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r
(b) has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in a case in which proceedings have been stayed under section 32, the personal data to which the proceedings relate—
(i) are not being processed only for the special purposes, or
(ii) are not being processed with a view to the publication by any person of any journalistic, literary or artistic material which has not previously been published by the data controller,

he may serve the data controller with a notice (in this Act referred to as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requiring the data controller, within such time as is specified in

44【특별 정보통지】

(1) 만약 커미셔너가—
(a) 어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S.42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b) S.32에 따라서 소송절차가 정지된 경우 해당 소송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i) 특별 목적에 한해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나,
(ii) 정보관리자에 의해 먼저 출판되지 아니한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자료를 누군가가 출판할 의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는 특정된 기간 이내에 특정된 형식에 의하여, ss.(2)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즉정 정보를 정보위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본 법률상 "특별 정보통지"라 함.)를 정보관리자에게 발부할 수 있다.

the notice, to furnish the Commissioner, in such form as may be so specified, with such information as is so specified for the purpose specified in subsection (2).

(2) That purpose is the purpose of ascertaining—
(a) whether the personal data are being processed only for the special purposes, or
(b) whether they are being processed with a view to the publication by any person of any journalistic, literary or artistic material which has not previously been published by the data controller.

(3)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must contain—
(a) in a case falling within paragraph (a) of subsection (1), a statement that the Commissioner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section 42 in relation to the specified processing, or
(b) in a case falling within paragraph (b) of that subsection, a statement of the Commissioner's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personal data are not being processed as mentioned in that paragraph.

(4)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must also contain particulars of the rights of appeal conferred by section 48.

(5) Subject to subsection (6), the time specified in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shall not expire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gainst the notice and, if such an appeal is brought, the information need not be furnished pending the determination or withdrawal of the appeal.

(6) If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is required as a matter of urgency, he may include in the notice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a statement of his reasons for reaching that conclusion; and in that event subsection (5) shall not apply, but the notice shall not require the information to be furnished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seven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notice is served.

(7) A person shall not be required by virtue of

(2) 그 목적은 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a) 개인정보가 특별 목적에 한해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나,
(b) 정보관리자가 이전에 출판하지 않았던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자료를 누군가에 의한 출판의 의도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3) 특별 정보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ss.(1)(a)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위원이 특정한 처리와 관련해 S.42에 따른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
(b) ss.(1)(b)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위원이 개인정보가 그 para.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

(4) 특별 정보통지는 S.48에 의해 부여되는 이의제기권의 세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5) ss.(6)을 조건으로 특별 정보통지에 명시된 기간은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전에 만료해서는 아니되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또는 철회가 있을 때까지는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없다.

(6) 만약 정보위원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보가 긴급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정보위원은 통지에 그러한 효력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 때 ss.(5)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나, 단 집행통지는 그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정보가 제공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7) 누구도 이 섹션에 의거하여 다음에 관한 정

this section to furnish the Commissioner with any information in respect of—

(a)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his client in connection with the giving of legal advice to the client with respect to his obligations, liabilities or rights under this Act, or

(b)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his client, or between such an adviser or his client and any other person, mad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proceedings under or arising out of this Act (including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and for the purposes of such proceedings.

보를 정보위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받아서는 아니된다.

(a) 의뢰인의 본 법률상의 의무나 책임, 권리에 관한 법적 자문과 관련한 전문적 법조인과 그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소통이나,

(B) 본 법률상의, 또는 본 법률에 의거한 소송(정보법정에서의 절차를 포함.)과 관련하거나 이를 의도하여 전문적 법조인과 그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소통이나, 전문적 법조인이나 의뢰인과 다른 자 간에 이루어진 소통.

(8) In subsection (7) references to the client of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include references to any person representing such a client.

(8) ss.(7)에서 전문적 법조인의 의뢰인에 대한 내용은 그러한 의뢰인을 대리하는 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9) A person shall not be required by virtue of this section to furnish the Commissioner with any information if the furnishing of that information would, by revealing evidence of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other than an offence under this Act, expose him to proceedings for that offence.

(9) 해당 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것이라도 본 법률의 위반 이외의 위반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어 당사자를 그 위반에 대한 절차에 노출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이 섹션에 의하여 정보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10) The Commissioner may cancel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by written notice to the person on whom it was served.

(10) 정보위원은 특별 정보통지를 송달받은 자에 대한 서면의 통지를 통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5 Determination by Commissioner as to the special purposes.

45【특별 목적에 대한 정보위원의 결정】

(1) Where at any time it appears to the Commissioner (whether as a result of the service of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or otherwise) that any personal data—

(a) are not being processed only for the special purposes, or

(b) are not being processed with a view to the publication by any person of any journalistic, literary or artistic material which has not previously been published by the data controller,

he may make a determination in writing to that effect.

(1) 개인정보가 (특별 정보통지의 송달 혹은 다른 것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다고 정보위원에게 보이는 경우, 그는 그러한 효력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 특별 목적에 한해 처리되고 있지 않거나,

(b) 정보관리자에 의해 먼저 출판되지 아니한 언론적, 문학적, 예술적 자료를 출판하기 위한 의도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

(2) Notice of the determination shall be given to the data controller; and the notice must contain particulars of the right of appeal conferred by section 48.

(2) 정보관리자에게 결정의 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통지는 S.48에 의거해 부여된 이의제기권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nd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nd, where an appeal is brought, shall not take effect pending the determination or withdrawal of the appeal.

(3) ss.(1)의 결정은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의 이 만료되기까지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또는 철회가 있을 때까지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46 Restriction on enforcement in case of processing for the special purposes.

(1) The Commissioner may not at any time serve an enforcement notice on a data controller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special purposes unless－
(a)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45(1) with respect to those data has taken effect, and
(b) the court has granted leave for the notice to be served.

(2) The court shall not grant leav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b) unless it is satisfied －
(a) that the Commissioner has reason to suspect a contravention of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which is of substantial public importance, and
(b) except where the case is one of urgency, that the data controller has been given notice, in accordance with rules of court, of the application for leave.

(3) The Commissioner may not serve an information notice on a data controller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special purposes unless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45(1) with respect to those data has taken effect.

46【특별 목적을 위한 처리의 경우 집행의 제한】

(1) 정보위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때에도 정보관리자에게 특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집행통지를 송달할 수 없다.
(a)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S.45(1)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발한 경우와,
(b) 법원이 통지의 송달를 허가한 경우.

(2) 법원은 다음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ss.(1)(b)의 목적상 허가를 내려서는 아니된다.
(a) 정보보호 기본원칙의 위반을 정보위원이 의심하기에 상당한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유가 있을 것과,
(b) 사안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관리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전달받을 것.

(3) 정보위원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S.45(1)의 판정이 효력을 발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관리자에게 정보 통지를 송달할 수 없다.

47 Failure to comply with notice.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enforcement notice, an information notice or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is guilty of an offence.

47【통지의 미이행】

(1) 집행통지, 정보통지, 특별정보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2) A person who, in purported compliance with an information notice or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a) makes a statement which he knows to be false in a material respect, or
(b) recklessly makes a statement which is false in a material respect,
is guilty of an offence.

(2) 정보통지, 특별정보통지를 이행하였다고 할 때, 다음의 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a) 중대한 점에서 거짓임을 알면서 진술을 하는 자, 또는
(b) 중대한 점에서 거짓인 진술을 무분별하게 하는 자.

(3) It is a defence for a person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to prove that he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comply with the notice in question.

(3) ss.(1)에 따라 위반에 대해 기소된 자가 사안의 통지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항변사유가 된다.

48 Rights of appeal.

(1) A person on whom an enforcement notice, an information notice or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has been served may appeal to the Tribunal against the notice.

(2) A person on whom an enforcement notice has been served may appeal to the Tribunal against the refusal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1(2) for cancellation or variation of the notice.

(3) Where an enforcement notice, an information notice or a special information notice contains a statement by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40(8), 43(5) or 44(6) then, whether or not the person appeals against the notice, he may appeal against—
(a) the Commissioner's decision to include the statement in the notice, or
(b) the effect of the inclusion of the statement as respects any part of the notice.

(4) A data controller in respect of whom a determination has been made under section 45 may appeal to the Tribunal against the determination.

(5) Schedule 6 has effect in relation to appeals under this section and the proceedings of the Tribunal in respect of any such appeal.

48 【이의를 제기할 권리】

(1) 집행통지, 정보통지, 특별정보통지를 송달받은 자는 해당 통지에 대해 정보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집행통지를 송달받은 자는 S.41(2)에 따른 통지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의 거절에 대하여 정보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집행통지, 정보통지, 특별정보통지에 S.40(8), 43(5), 44(6)에 따른 정보위원의 진술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는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해당 진술을 통지에 포함시킨다는 정보위원의 결정이나,
(b) 통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든지 진술이 포함됨에 따른 효과.

(4) S.45에 따른 판정을 받은 정보관리자는 그 판정에 대하여 정보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이 섹션의 이의제기와 이와 관련한 정보법원의 모든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Sch.6이 효력을 갖는다.

49 Determination of appeals.

(1) If on an appeal under section 48(1) the Tribunal considers—
(a) that the notice against which the appeal is brough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r
(b) to the extent that the notice involved an exercise of discretion by the Commissioner, that he ought to have exercised his discretion differently,
the Tribunal shall allow the appeal or substitute such other notice or decision as could have been served or made by the Commissioner; and in any other case the Tribunal shall dismiss the appeal.

(2) On such an appeal, the Tribunal may review any determination of fact on which the notice in question was based.

(3) If on an appeal under section 48(2)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enforcement notice ought to be cancelled or varied by reason of a change in circumstances, the Tribunal shall cancel or vary the notice.

(4) On an appeal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48 the Tribunal may direct—
(a) that the notice in question shall have effect as if it did not contain any such statement as is mentioned in that subsection, or
(b) that the inclusion of the statement shall not have effect in relation to any part of the notice, and may make such modifications in the notice as may be required for giving effect to the direction.

(5) On an appeal under section 48(4), the Tribunal may cancel the determination of the Commissioner.

(6) Any party to an appeal to the Tribunal under section 48 may appeal from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n a point of law to the appropriate court; and that court shall be—
(a) the High Court of Justice in England if the address of the person who was the appellant before the Tribunal is in England or Wales,

49【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1) S.48(1)에 의거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보법정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 정보법원은 이의제기를 인정하거나, 또는 정보위원에 의해 송달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었던 다른 통지나 결정으로 갈음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기각해야 한다.
(a) 이의가 제기된 통지가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때나,
(b) 통지가 정보위원의 재량의 행사와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위원이 재량을 다르게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볼 때.

(2) 그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보법정은 통지의 기초가 된 사실의 판단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3) S.48(2)에 의거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보법정이 집행통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 정보법정은 해당 통지를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 한다.

(4) S.48(3)에 의거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보법정은 다음을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시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통지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a) 문제되는 통지가 동 ss.에 언급된 진술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것, 또는
(b) 해당 진술의 포함이 통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지 못할 것.

(5) S.48(4)에 의거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보법정은 정보위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S.48에 의거해 정보법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떠한 당사자도 정보법정의 결정의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다음과 같다.
(a) 정보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자의 주소가 잉글랜드나 웨일즈인 경우에는 잉글랜드 고등법원,
(b) 그 주소가 스코틀랜드인 경우에는 최고

(b) the Court of Session if that address is in Scotland, and
(c) the High Court of Justice in Northern Ireland if that address is in Northern Ireland.

민사법원,
(c) 그 주소가 북아일랜드인 경우에는 북아일랜드 고등법원.

(7)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6)—
(a) the address of a registered company is that of its registered office, and
(b) the address of a person (other than a registered company) carrying on a business is that of hi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United Kingdom.

(7) ss.(6)의 목적상,—
(a) 등록된 회사의 주소는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이며,
(b) (등록된 회사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주소는 영국 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이다.

50 Powers of entry and inspection.
Schedule 9 (powers of entry and inspection) has effect.

50【진입 및 수색 권한】
Sch.9 (진입 및 수색 권한)가 효력을 갖는다.

PART VI
MISCELLANEOUS AND GENERAL

Functions of Commissioner

51 General duties of Commissioner.

(1)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ommissioner to promote the following of good practice by data controllers and, in particular, so to perform his functions under this Act as to promote the observance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by data controllers.

(2) The Commissioner shall arrange for the dissemination in such form and manner as he considers appropriate of such information as it may appear to him expedient to give to the public about the operation of this Act, about good practice, and about other matters within the scope of his functions under this Act, and may give advice to any person as to any of those matters.

(3) Where—
(a) the Secretary of State so directs by order, or
(b) the Commissioner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the Commissioner shall, after such consultation

제 6 장
잡칙 및 통칙

정보위원의 기능

51【정보위원의 일반적 의무】

(1) 정보위원의 의무는 정보관리자에 의한 다음의 모범적 실무를 장려하고, 특히 정보관리자가 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그의 기능을 이행하는 것이다.

(2) 정보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본 법률의 작용과 모범적 실무, 그리고 이 법률상 자신의 임무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대중에게 제공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의 보급을 준비해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 누구에 거든지 조언을 할 수 있다.

(3) 만약—
(a) 국무장관이 명령으로써 지시하거나,
(b)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정보위원이 여기는 경우,
정보위원은 자신에게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 단체, 정보주체나 정보주체를 대리하

with trade associations, data subjects or persons representing data subjects as appears to him to be appropriate, prepare and disseminate to such persons as he considers appropriate codes of practice for guidance as to good practice.

는 자와의 협의 후,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모범적 실무를 지도하기 위한 행동 규범을 보급하여야 한다.

(4) The Commissioner shall also—
(a) where he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encourage trade associations to prepare, and to disseminate to their members, such codes of practice, and
(b) where any trade association submits a code of practice to him for his consideration, consider the code and, after such consultation with data subjects or persons representing data subjects as appears to him to be appropriate, notify the trade association whether in his opinion the code promotes the following of good practice.

(4) 정보위원은 또한—
(a)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 단체들이 그러한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그 회원들에게 보급할 것을 장려하여야 하며,
(b) 사업자 단체가 커미셔너의 검토를 위해 행동규범을 제출하는 경우, 그 규범을 검토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주체나 정보주체를 대리하는 자와의 협의 후, 사업자 단체에게 그 규범이 모범적 실무를 따르는 것을 장려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An order under subsection (3) shall describe the personal data or processing to which the code of practice is to relate, and may also describe the persons or classes of persons to whom it is to relate.

(5) ss.(3)의 명령은 행동규범이 관련되는 개인정보 또는 처리를 기술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자 또는 관련 계층을 기술할 수 있다.

(6) The Commissioner shall arrange for the dissemination in such form and manner as he considers appropriate of—
(a) any Community finding as defined by paragraph 15(2) of Part II of Schedule 1,
(b) any deci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31(2)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which is mad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6(3) or (4) of the Directive, and
(c) such other information as it may appear to him to be expedient to give to data controllers in relation to any personal data abo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countries and territories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6) 정보위원은 다음에 대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식과 방법에 의한 보급을 준비하여야 한다.
(a) Sch.1 제2장 para.15(2)에 정의된 공동체 판정,
(b) 정보보호지침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침 제26조 제3항 또는 4항의 목적상 내려지는 유럽위원회의 결정,
(c) 기타 유럽경제구역 외의 국가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관리와 자유의 보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이는 정보.

(7) The Commissione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controller, assess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following of good practice and shall inform the data controller of

(7)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의 동의 아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모범적 실무를 따르는지에 대한 사정을 할 수 있으며, 사정의 결과를 정보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8) The Commissioner may charge such sums as h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 for any services provided by the Commissioner by virtue of this Part.

(9) In this section－

"good practice" means such practice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s appears to the Commissioner to be desirable having regard to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and others, an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trade association" includes any body representing data controllers.

52 Reports and codes of practice to be laid before Parliament.

(1) The Commissioner shall lay annually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a general report o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under this Act.

(2) The Commissioner may from time to time lay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such other reports with respect to those functions as he thinks fit.

(3) The Commissioner shall lay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any code of practice prepared under section 51(3) for complying with a direction of the [F66 Secretary of State] , unless the code is included in any report laid under subsection (1) or (2).

52A Data-sharing code*prospective

(1) The Commissioner must prepare a code of practice which contains－
(a) practical guidance in relation to the sharing of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d
(b) such other guidance as the Commissioner considers appropriate to promote good practice in the sharing of personal data.

(8) 정보위원은 이 장에 따라 정보위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국무장관의 동의 아래 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9) 이 섹션에서－

"모범적 실무"란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위원이 보기에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실무를 의미하며, 이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본 법률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자 단체"는 정보관리자를 포함하는 단체들을 포함한다.

52【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및 행동 규범】

(1) 정보위원은 매년 본 법률상 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보고서를 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보위원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에 따라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타 보고서를 각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정보위원은 국무장관의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S.51(3)에 따라 작성된 행동규범이 ss.(1)이나 (2)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한, 그 규범들을 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2A【데이터 공유 규범】*prospective

(1)

(2) For this purpose "good practice" means such practice in the sharing of personal data as appears to the Commissioner to be desirable having regard to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and others, an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2)

(3) Before a code is prepared under this section, the Commissioner must consult such of the following as the Commissioner considers appropriate— (3)
(a) trade association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1);
(b) data subjects;
(c) persons who appear to the Commissioner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4) In this section a reference to the sharing of personal data is to the disclosure of the data by transmission, dissemination or otherwise making it available. (4)

52B Data-sharing code: procedure *prospective

52B 【데이터 공유 규범 : 절차】 *prospective

(1) When a code is prepared under section 52A, it must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approval. (1)

(2) Approval may be withheld only if it appears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the terms of the code could result in the United Kingdom being in breach of any of its Community obligations or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2)

(3) The Secretary of State must— (3)
(a) if approval is withheld, publish details of the reasons for withholding it;
(b) if approval is granted, lay the code before Parliament.

(4) If, within the 40-day period, either House of Parliament resolves not to approve the code, the code is not to be issued by the Commissioner. (4)

(5) If no such resolution is made within that period, the Commissioner must issue the code. (5)

(6) Where—
(a) the Secretary of State withholds approval, or
(b) such a resolution is passed,
the Commissioner must prepare another code of practice under section 52A.

(6)

(7) Subsection (4) does not prevent a new code being laid before Parliament.

(7)

(8) A code comes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period of 21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it is issued.

(8)

(9) A code may include transitional provision or savings.

(9)

(10) In this section "the 40-day period" means the period of 40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code is laid before Parliament (or, if it is not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on the same day, the later of the 2 days on which it is laid).

(10)

(11) In calculating the 40-day period, no account is to be taken of any period during which Parliament is dissolved or prorogued or during which both Houses are adjourned for more than 4 days.

(11)

52C Alteration or replacement of data-sharing code
*prospective

52C【데이터 공유 규범의 변경 또는 대체】
*prospective

(1) The Commissioner—
(a) must keep the data-sharing code under review, and
(b) may prepare an alteration to that code or a replacement code.

(1)

(2) Where, by virtue of a review under subsection (1)(a) or otherwise, the Commissioner becomes aware that the terms of the code could result in the United Kingdom being in breach of any of its Community obligations or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the Commissioner must exercise the power under subsection (1)(b) with a view to remedying the situation.

(2)

(3) Before an alteration or replacement code is

(3)

prepared under subsection (1), the Commissioner must consult such of the following as the Commissioner considers appropriate—

(a) trade association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1);

(b) data subjects;

(c) persons who appear to the Commissioner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4) Section 52B (other than subsection (6)) applies to an alteration or replacement code prepared under this section as it applies to the code as first prepared under section 52A.

(5) In this section "the data-sharing code" means the code issued under section 52B(5) (as altered or replaced from time to time).

52D Publication of data-sharing code*prospective

(1) The Commissioner must publish the code (and any replacement code) issued under section 52B(5).

(2) Where an alteration is so issued, the Commissioner must publish either—

(a) the alteration, or

(b) the code or replacement code as altered by it.

52E Effect of data-sharing code*prospective

(1) A failure on the part of any person to act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datasharing code does not of itself render that person liable to any legal proceedings in any court or tribunal.

(2) The data-sharing code is admissible in evidence in any legal proceedings.

(3) If any provision of the data-sharing code appears to—

(a) the Tribunal or a court conducting any proceedings under this Act,

(b) a court or tribunal conducting any other legal proceedings, or

(4)

(5)

52D【데이터 공유 규범의 출판】*prospective

(1)

(2)

52E【데이터 공유 규범의 효력】*prospective

(1)

(2)

(3)

(c) the Commissioner carrying out any function under this Act,

to be relevant to any question arising in the proceedings, or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at jurisdiction or the carrying out of those functions, in relation to any time when it was in force, that provision of the code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at question.

(4) In this section "the data-sharing code" means the code issued under section 52B(5) (as altered or replaced from time to time).

(4)

53 Assistance by Commissioner in cases involving processing for the special purposes.

(1) An individual who is an actual or prospective party to any proceedings under section 7(9), 10(4), 12(8) or 14 or by virtue of section 13 which relate to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special purposes may apply to the Commissioner for assistance in relation to those proceedings.

(2) The Commissioner shal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consider it and decid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o grant it, but he shall not grant the application unless, in his opinion, the case involves a matter of substantial public importance.

(3) If the Commissioner decides to provide assistance, he shal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making the decision, notify the applicant, stating the extent of the assistance to be provided.

(4) If the Commissioner decides not to provide assistance, he shal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making the decision, notify the applicant of his decision and, if he thinks fit, the reasons for it.

(5) In this section—

(a) references to "proceedings" include references to prospective proceedings, and

(b) "applicant", in relation to assistance under this section, means an individual who ap-

53【특별 목적을 위한 처리가 관련된 경우 정보위원의 조력】

(1) S.7(9)나 10(4), 12(8), 14의 절차 또는 특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S.13에 의거한 소송절차에서 실제 또는 예상되는 당사자가 되는 개인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정보위원에게 조력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보위원은 ss.(1)의 신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다한 빨리 이를 검토하고, 이를 승낙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승낙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위원은 그가 보기에 사건이 상당한 공공의 중요도를 갖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신청을 승낙하여서는 안된다.

(3) 정보위원이 조력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는 결정을 내린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제공될 조력의 범위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정보위원이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는 결정을 내린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점에 그의 결정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이 섹션에서—

(a) "소송절차"에 대한 내용은 장래의 소송에 관한 것을 포함하며,

(b) 이 섹션에서의 조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란 조력을 신청하는 개인을 의미한

plies for assistance.

다.

(6) Schedule 10 has effect for supplementing this section.

(6) 이 섹션을 보충하기 위해 Sch.10이 효력을 갖는다.

54 International co-operation.

54【국제적 협력】

(1) The Commissioner—
(a) shall continue to be the designated authority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and
(b) shall be the supervisory authority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purposes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1) 정보위원은—
(a) 계속적으로 협약 제13조의 목적상 영국 내의 지명된 당국의 지위를 가지며,
(b) 정보보호지침의 목적상 영국 내의 감독 당국이 된다.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make provision as to the functions to be discharged by the Commissioner as the designated authority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2) 국무장관은 협약 정보위원이 제13조의 목적상 영국의 지명된 당국으로서 수행할 임무에 관한 규정을 명령으로써 제정할 수 있다.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make provision as to co-operation by the Commissioner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and with supervisory authorities in other EEA State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respective duties and, in particular, as to —
(a)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supervisory authorities in other EEA States or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and
(b) the exercise within the United Kingdom at the request of a supervisory authority in another EEA State, in cases excluded by section 5 from the application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of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specified in the order.

(3) 국무장관은 각각의 임무의 수행,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정보위원의 유럽위원회와의 협력 또는 기타 유럽경제지역 국가들의 감독 당국들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명령으로써 제정할 수 있다.
(a) 다른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감독 당국들 또는 유럽위원회와의 정보 교환과,
(b) 본 법률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이 S.5에 의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감독당국들의 요청에 따라 영국 내에서 수행되는, 명령에 특정된 정보위원의 임무.

(4) The Commissioner shall also carry out any data protection functions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direct him to carry out for the purpose of enabling Her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to give effect to any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United Kingdom.

(4) 정보위원은 또한 영국 정부가 영국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무장관이 명령으로써 지시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5) The Commissioner shall, if so direc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provide any authority exercising data protection functions under the

(5) 정보위원은 국무장관에 의하여 지시를 받는 경우, 국무장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그러한 임무를 이행하는 것과 연계하여 그 지시

law of a colony specified in the direction with such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the discharge of those functions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or approve, on such terms (including terms as to payment)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or approve.

에 명시된, 식민지의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관계당국에게, 국무장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지불 에 관한 조건을 포함)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Where the European Commission makes a decision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6(3) or (4)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31(2) of the Directive, the Commissioner shall comply with that decision in exercising his functions under paragraph 9 of Schedule 4 or, as the case may be, paragraph 8 of that Schedule.

(6) 유럽위원회가 정보보호지침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침 제26조 제3항 또는 4항의 목적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정보위원은 Sch.4 para.9에 의거하거나, 경우에 따라 동 Sch. para.8에 의거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The Commissioner shall inform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in other EEA States－
(a) of any approvals granted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8 of Schedule 4, and
(b) of any authorisations granted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9 of that Schedule.

(7) 정보위원은 유럽위원회와 다른 유럽경제구역 국가들의 감독당국에 다음을 알려야 한다.
(a) Sch.4 para.8에 따라 인정된 모든 승인과,
(b) Sch.4 para.9에 따라 인정된 모든 권한 부여.

(8) In this section－

(8) 이 섹션에서－

"the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ich was opened for signature on 28th January 1981;

"협약"이라 함은 1981년 1월 28일 서명이 개시된,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에 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data protection functions" means funct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의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의미한다.

54A Inspection of overseas information systems

54A 해외 정보 시스템의 조사

(1) The Commissioner may inspect any personal data recorded in－
(a)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b) the Europol information system,
(c) the Customs information system.

(1) 정보위원은 다음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a) 쉥겐 정보 시스템
(b) 유로폴 정보 시스템
(c) 관세 정보 시스템

(2)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1) is exercisable only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whether or not any processing of the data has been or is being carried out in compliance

(2) ss.(1)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은 데이터의 처리가 이 법률에 부합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다.

with this Act.

(3) The power includes power to inspect, operate and test equipment which is used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3) 이 권한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사용된 장비를 조사, 운용, 시험할 권한을 포함한다.

(4) Before exercising the power, the Commissioner must give notice in writing of his intention to do so to the data controller.

(4) 정보위원은 본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그러한 자신의 의도를 서면에 의하여 정보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But subsection (4) does not apply if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case is one of urgency.

(5) 그러나 정보위원이 사안을 긴급한 것이라 여기는 경우 ss.(4)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Any person who—
(a) intentionally obstructs a person exercising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1), or
(b) fails without reasonable excuse to give any person exercising the power any assistance he may reasonably require,
is guilty of an offence.

(6) 다음의 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a) ss.(1)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나,
(b)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정당히 요구하는 조력의 제공을 하지 않는 자.

(7) In this section—

"the Customs information system" means the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under Chapter II of the Convention on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Customs Purposes,

"the Europol information system" means the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under Title II of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means the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under Title IV of the Convention implement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th June 1985, or any system established in its place in pursuance of any Community obligation.

(7) 이 섹션에서—

"관세 정보 시스템"이란 '관세 목적을 위한 정보 기술의 이용에 관한 협약' 제2장에 따라 설립된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유로폴 정보 시스템"이란 '유럽 경찰국의 설립에 관한 협약' Title II에 따라 설립된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쉥겐 정보 시스템"이란 '1985년 6월 14일의 쉥겐 조약의 이행을 위한 협약' Title IV에 따라 설립된 정보 체계나, 또는 공동체 의무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설립된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Unlawful obtaining etc. of personal data

55 Unlawful obtaining etc. of personal data.

(1) A person must not knowingly or reckless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controller—
(a) obtain or disclose personal data o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personal data, or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등

55【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등】

(1) 누구도 정보관리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든 과실로든 다음을 해서는 안된다.
(a)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포함된 정보의 취득이나 공개, 또는

(b) procure the disclosure to another person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personal data.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shows—
(a) that the obtaining, disclosing or procuring—
(i) wa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detecting crime, or
(ii) was required or authorised by or under any enactment, by any rule of law or by the order of a court,
(b) that he acted in the reasonable belief that he had in law the right to obtain or disclose the data or information or, as the case may be, to procure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to the other person,
(c) that he acted in the reasonable belief that he would have had the consent of the data controller if the data controller had known of the obtaining, disclosing or procuring and the circumstances of it, or
(d) tha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obtaining, disclosing or procuring was justified as being in the public interest.

(3) A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is guilty of an offence.

(4) A person who sells personal data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has obtained the data in contravention of subsection (1).

(5) A person who offers to sell personal data is guilty of an offence if—
(a) he has obtained the data in contravention of subsection (1), or
(b) he subsequently obtains the data in contravention of that subsection.

(6)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5), an advertisement indicating that personal data are or may be for sale is an offer to sell the data.

(7) Section 1(2) does not apply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s (4) to (6), "personal data" includes information extracted from personal data.

(8) References in this section to personal data do not include references to personal data which

(b) 타인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에 포함된 정보의 조달.

(2) ss.(1)은 다음을 입증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취득이나 공개, 조달이—
(i) 범죄의 예방 또는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ii) 어떠한 법령에서나 법령에 의거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되었다는 점.
(b) 그가 법률상 데이터나 정보를 취득, 공개하거나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조달할 권리를 가진다는 데 대한 정당한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
(c) 정보관리자가 취득, 공개, 조달의 사실과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가 정보관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정당한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
(d) 특별한 상황으로 그 취득, 공개, 조달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여 정당화된다는 점.

(3) ss.(3)을 위반하는 자는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

(4)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자는 그가 ss.(1)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면 위반의 죄가 있다.

(5)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a) 그가 ss.(1)에 위반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거나,
(b) 그가 그 ss.에 위반한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취득하였을 때.

(6) ss.(5)의 목적 상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거나 판매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광고는 그 데이터의 판매를 위한 제공이 된다.

(7) S.1(2)는 이 섹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ss.(4) 내지 (6)의 목적상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포함한다.

(8) 이 섹션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S.28이나 S.33A에 따라 이 섹션이 배제되는 개인

by virtue of section 28 or 33A are exempt from this section.

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Monetary penalties

55A Power of Commissioner to impose monetary penalty.

(1) The Commissioner may serve a data controller with a monetary penalty notice if the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a) there has been a serious contravention of section 4(4) by the data controller,
(b) the contravention was of a kind likely to cause substantial damage or substantial distress, and
(c) subsection (2) or (3) applies.

(2) This subsection applies if the contravention was deliberate.

(3) This subsection applies if the data controller—
(a) knew or ought to have known —
(i) that there was a risk that the contravention would occur, and
(ii) that such a contravention would be of a kind likely to cause substantial damage or substantial distress, but
(b) failed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vent the contravention.

(4) A monetary penalty notice is a notice requiring the data controller to pay to the Commissioner a monetary penalty of an amou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and specified in the notice.

(5)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must not exceed the prescribed amount.

(6) The monetary penalty must be paid to the Commissioner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notice.

(7) The notice must contain such information as may be prescribed.

(8) Any sum received by the Commissioner by virtue of this section must be paid into the

벌금형

55A【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위원의 권한】

(1) 정보위원은 다음을 만족하면 정보관리자에게 벌금형 통지를 송달할 수 있다.
(a) S.4(4)에 대하여 정보관리자에 의한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는 점과,
(b) 그 위반이 중대한 손해나 중대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었으며,
(c) ss.(2)와 (3)이 적용됨.

(2) 이 ss.은 그 위반이 고의적이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3) 이 ss.은 정보관리자가 다음인 경우 적용된다.
(a) 다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i) 위반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점과,
(ii) 그러한 위반이 중대한 손해나 중대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는 점.
(b) 그 위반을 막기 위해 합당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벌금 통지는 정보관리자에 대하여 정보위원이 결정하고 그 통지에 명시된 액수의 벌금을 정보위원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이다.

(5) 정보위원이 결정하는 액수는 법정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6) 벌금은 통지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정보위원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7) 통지에는 법정된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이 장에 의거하여 정보위원이 수령한 액수는 통합 기금에 납부되어야 한다.

Consolidated Fund.

(9) In this section—

"data controller" does not include the Crown Estate Commissioners or a person who is a data controller by virtue of section 63(3);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55B Monetary penalty notices: procedural rights

(1) Before serving a monetary penalty notice, the Commissioner must serve the data controller with a notice of intent.

(2) A notice of intent is a notice that the Commissioner proposes to serve a monetary penalty notice.

(3) A notice of intent must—
(a) inform the data controller that he may make written representations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er's proposal within a period specified in the notice, and
(b) contain such other information as may be prescribed.

(4) The Commissioner may not serve a monetary penalty notice until the time within which the data controller may make representations has expired.

(5) A person on whom a monetary penalty notice is served may appeal to the Tribunal against—
(a) the issue of the monetary penalty notice;
(b) the amount of the penalty specified in the notice.

(6) In this section,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55C Guidance about monetary penalty notices

(1) The Commissioner must prepare and issue guidance on how he proposes to exercise his functions under sections 55A and 55B.

(9) 이 섹션에서—

"정보관리자"는 왕실 재산 관리위원이나 S. 63(3)에 의거하여 정보관리자가 되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정된"이란 국무장관에 의하여 규칙으로써 사전에 지정되었음을 의미한다.

55B【벌금 통지 : 절차적 권리】

(1) 정보위원은 벌금 통지를 송달하기 전에 그러한 의도에 대한 통지를 정보관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의도에 대한 통지는 정보위원이 벌금 통지를 송달할 것을 제시하는 통지이다.

(3) 의도에 대한 통지는—
(a) 그 통지에 특정된 기간 이내에 정보위원이 제시한 바에 대하여 정보관리자가 서면에 의한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b) 법정되는 다른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4) 정보위원은 정보관리자가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벌금 통지를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5) 벌금 통지를 송달받은 자는 다음에 대하여 정보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벌금 통지의 발행.
(b) 그 통지에 명시된 벌금의 액수.

(6) 이 섹션에서 "법정된"이란 국무장관에 의해 사전에 지정되었음을 의미한다.

55C【벌금 통지에 대한 안내】

(1) 정보위원은 S.55A 및 S.55B의 그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고 발행해야 한다.

(2) The guidance must, in particular, deal with—
(a) the circumstances in which he would consider it appropriate to issue a monetary penalty notice, and
(b) how he wi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penalty.

(2) 안내문은 특히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a) 그가 벌금 통지를 발행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길 상황과,
(b) 그가 벌금의 액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3) The Commissioner may alter or replace the guidance.

(3) 정보위원은 안내문을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4) If the guidance is altered or replaced, the Commissioner must issue the altered or replacement guidance.

(4) 안내문이 변경되거나 대체되면, 정보위원은 그 변경되거나 대체된 안내문을 발행해야 한다.

(5) The Commissioner may not issue guidance under this sec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of State.

(5) 정보위원은 국무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 섹션의 안내문을 발행할 수 없다.

(6) The Commissioner must lay any guidance issued under this section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6) 정보위원은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되는 안내문을 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The Commissioner must arrange for the publication of any guidance issued under this section in such form and manner as he considers appropriate.

(7) 정보위원은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되는 안내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출판되도록 해야 한다.

(8) In subsections (5) to (7), "guidance" includes altered or replacement guidance.

(8) ss.(5) 내지 (7)에서 "안내문"은 변경되거나 대체된 안내문을 포함한다.

55D Monetary penalty notices: enforcement

55D【벌금 통지 : 집행】

(1) This section applies in relation to any penalty payable to the Commissioner by virtue of section 55A.

(1) 이 섹션은 S.55A에 의거하여 정보위원에게 납부될 수 있는 모든 벌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2) In England and Wales, the penalty is recoverable—
(a) if a county court so orders,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f the High Court so orders,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2)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벌금이 환급될 수 있다.
(a) 그것이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되는 경우처럼, 지방법원이 그렇게 명령할 때.
(b) 그것이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되는 경우처럼, 고등법원이 그렇게 명령할 때.

(3) In Scotland, the penalty may be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3) 스코틀랜드에서는, 벌금은 집행을 위해 스코틀랜드의 모든 주의 주법원에서 발행된 영장을 보유한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4) In Northern Ireland, the penalty is recoverable —
(a) if a county court so orders,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f the High Court so orders,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4) 북아일랜드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벌금이 환급될 수 있다.
(a) 그것이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되는 경우처럼, 지방법원이 그렇게 명령할 때.
(b) 그것이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되는 경우처럼, 고등법원이 그렇게 명령할 때.

55E Notices under sections 55A and 55B: supplemental *prospective

55E【S.55A와 55B에 의한 통지 : 보충적】 *prospective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make further provision in connection with monetary penalty notices and notices of intent.

(1)

(2)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in particular—
(a) provide that a monetary penalty notice may not be served on a data controller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the special purposes except in circumstances specified in the order;
(b) make provision for the cancellation or variation of monetary penalty notices;
(c) confer rights of appeal to the Tribunal against decisions of the Commissioner in relation to the cancellation or variation of such notices;
(d) make provision for the proceedings of the Tribunal in respect of appeals under section 55B(5) or appeals made by virtue of paragraph (c);
(e) make provision for the determination of such appeals;
(f) confer rights of appeal against any decision of the Tribunal in relation to monetary penalty notices or their cancellation or variation.

(2)

(3)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apply any provision of this Act with such modifica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3)

(4)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amend this Act.

(4)

Records obtained under data subject's right of access

정보주체의 접근권에 따라 취득한 기록

56 Prohibition of requirement as to production of certain records.

(1) A person must not, in connection with—
(a) the recruitment of another person as an employee,
(b) the continued employment of another person, or
(c) any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him by another person,
require that other person or a third party to supply him with a relevant record or to produce a relevant record to him.

(2) A person concerned with the provision (for payment or not) of goods, facilities or ervices to the public or a section of the public must not, as a condition of providing or offering to provide any goods, facilities or services to another person, require that other person or a third party to supply him with a relevant record or to produce a relevant record to him.

(3) Subsections (1) and (2) do not apply to a person who shows—
(a) that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was required or authorised by or under any enactment, by any rule of law or by the order of a court, or
(b) tha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was justified as being in the public interest.

(4)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Part V of the Police Act 1997 (certificates of criminal records etc.), the imposition of the require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2) is not to be regarded as being justified as being in the public interest on the ground that it would assist in the prevention or detection of crime.

(5) A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or (2) is guilty of an offence.

(6) In this section "a relevant record" means any record which—
(a) has been or is to be obtained by a data subject from any data controller specified in the first column of the Table below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conferred by sec-

56 【일정 기록을 보여줄 것에 대한 요구의 금지】

(1) 어떤 자도 다음과 관련하여 타인이나 제3자가 자신에게 관련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에게 관련된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a) 타인에 대한 피고용인으로의 채용이나,
(b) 타인에 대한 고용의 계속, 또는
(c) 타인이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2) 공중에게나 공중의 집단에게 (유상으로든 무상으로든) 상품이나 시설,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는 데 대한 조건으로, 그 타인이나 제3자가 자신에게 관련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에게 관련된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3) ss.(1)과 (2)는 다음을 입증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어떤 법령에서나 법령에 의거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되었다는 점이나,
(b) 특별한 상황으로 그러한 요건의 부과가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여 정당화된다는 점.

(4) 1997년 경찰법 제5장(범죄기록 증명서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ss.(1)과 (2)에 규정된 요건의 부과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ss.(1)과 (2)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6) 이 섹션에서 "관련 기록"이란 다음의 기록을 말하며, 그와 같은 기록이나 그 기록의 일부의 사본을 포함한다.
(a) 정보주체가 S.7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하여 아래 표의 제1행에 특정된 정보관리자로부터 획득하였거나 획득할 것

tion 7, and

(b) contains information relating to any matter specified in relation to that data controller in the second column,

and includes a copy of such a record or a part of such a record.

과,

(b) 그 정보관리자와 관련하여 제2행에 특정된 문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TABLE <표>

Data controller 데이터관리자	*Subject-matter 대상 문제*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다음 중 한 사람 (a) a chief officer of police of a police force in England and Wales. (a)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청장. (b) a chief constable of a police force in Scotland. (c) the Chief Constable of the Royal Ulster Constabulary. (c) Royal Ulster Constabulary.의 총사무관. (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d) 강력조직범죄국의 장.	(a) Convictions. (a) 유죄 판결 (b) Cautions. (b) 경고
2. The Secretary of State. 2. 국무장관	(a) Convictions. (a) 유죄 판결. (b) Cautions. (b) 경고. (c) His functions under section 92 of 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ection 205(2) or 208 of the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1995 or section 73 of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Northern Ireland) 1968 in relation to any person sentenced to detention. (c) 구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00년 형사법원의 권한 (선고)에 관한 법률 S.92, 1995 (스코틀랜드)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 S.205(2), 208, 1968년 (북아일랜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률 S.73에 의한 그의 임무. (d) His functions under the Prison Act 1952, the Prisons (Scotland) Act 1989 or the Prison Act (Northern Ireland) 1953 in relation to any person imprisoned or detained. (d)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진 자에 대하여, 1952년 교도소법, 1989년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53년 (북아일랜드) 교도소법에 의한 그의 임무. (e) His functions under th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or the Jobseekers Act 1995. (e) 1992년 사회보장 기여 및 수혜에 관한 법률, 1992년 사회보장행정법, 1995년 구직자법에 의한 그의 임무. (f) His functions under Part V of the Police Act 1997. (f) 1997년 경찰법에 의한 그의 임무. (g) His functions under the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 2006 or the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Northern Ireland) Order 2007. (g) 2006년 소외계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북아일랜드) 소외계층의 보호에 관한 명령에 의한 그의 임무.

3.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Northern Ireland. 3. 북아일랜드의 보건복지부	Its functions under th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Northern Ireland) Act 1992,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orthern Ireland) Act 1992 or the Jobseekers (Northern Ireland) Order 1995. 1992년 사회보장 기여 및 수혜에 관한 법률, 1992년 사회보장행정법, 1995년 구직자법에 의한 그 임무.
The 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 독립적 보호 당국	Its functions under the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 2006 or the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Northern Ireland) Order 2007. 2006년 소외계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북아일랜드) 소외계층의 보호에 관한 명령에 의한 그 임무.

(6A) A record is not a relevant record to the extent that it relates, or is to relate, only to personal data falling within paragraph (e)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6A) 기록이 단지 S.1(1)의 "데이터"의 정의 중 para.(e)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만 관련되거나, 관련이 될 것인 범위에 있어서는, 이는 관련 기록이 아니다.

(7) In the Table in subsection (6)—

"caution" means a caution given to any person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in respect of an offence which, at the time when the caution is given, is admitted;

"convict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o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Northern Ireland) Order 1978.

(7) ss.(6)의 표에서,

"경고"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경고가 주어졌을 당시 위반행위를 시인하였을 때 그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를 의미한다.

"유죄판결"은 1974년 범죄자의 갱생에 관한 법률이나 1978년 (북아일랜드) 범죄자의 갱생에 관한 명령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8)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a) the Table in subsection (6), and
(b) subsection (7).

(8) 국무장관은 명령으로써 다음을 개정할 수 있다.
(a) ss.(6)의 표와, (b) ss.(7)

(9)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record which states that a data controller is not processing any personal data relating to a particular matter shall be taken to be a record contain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at matter.

(9) dl 섹션의 목적상 정보관리자가 특정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개인정보도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는 기록은 그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 간주해야 한다.

(10) In this section "employee" means an individual who—
(a) works under a contract of employment, as defined by section 230(2) of the Employment Rights Act 1996, or
(b) holds any office,
whether or not he is entitled to remuneration; and "employmen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10) 이 섹션에서 "피고용인"이란 그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개인을 의미하며,—
(a) 1996년 고용권리법 S.230(2)에서 정의된 바, 고용 계약에 따라서 노동하는 자나,
(b) 영업소를 유지하는 자.
"고용"도 이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57 Avoidance of certain contractual terms relating to health records.

(1) Any term or condition of a contract is void in so far as it purports to require an individual－
(a) to supply any other person with a record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or with a copy of such a record or a part of such a record, or
(b) to produce to any other person such a record, copy or part.

(2) This section applies to any record which－
(a) has been or is to be obtained by a data subject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conferred by section 7, and
(b) consist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ny health record as defined by section 68(2).

Information provided to Commissioner or Tribunal

58 Disclosure of information.

No enactment or rule of law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shall preclude a person from furnishing the Commissioner or the Tribunal with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ischarge of their functions under this Act 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59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 No person who is or has been the Commissioner, a member of the Commissioner's staff or an agent of the Commissioner shall disclose any information which－
(a) has been obtained by, or furnished to, the Commissioner under or for the purposes of the information Acts,
(b) relates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or business, and
(c) is not at the time of the disclosure, and has not previously been, available to the public from other sources,
unless the disclosure is made with lawful

57【건강기록과 관련된 일정한 계약 조건의 방지】

(1) 개인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취지의 계약 조건 또는 요건은 무효이다.
(a) 이 섹션이 적용되는 기록이나 그러한 기록의 사본 또는 그러한 기록의 일부를 다른 어떠한 자에게라도 공급할 것, 또는
(b) 그런 기록이나 그 사본,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보여줄 것.

(2) 이 섹션은 다음의 기록에 적용된다.
(a) 정보주체가 S.7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획득하였거나 획득할 예정이고,
(b) S.68(2)에 정의된 바, 건강기록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된 것.

정보위원 또는 정보법정에 제공된 정보

58【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입법 또는 법률의 규정도 어떤 자가 정보위원이나 정보법정에 본 법률이나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그들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59【정보의 비밀성】

(1) 정보위원이나 정보위원의 직원, 정보위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자는 누구도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서는 아니된다.
(a) 정보관련 법률들의 목적을 위해 정보위원이 획득하였거나 그에게 제공된 것과,
(b) 신원이 식별되거나 식별되지 않은 개인이나 영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c) 공개의 시점에서나 그 이전에 다른 정보원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것.

authority.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made with lawful authority only if, and to the extent that—
(a) the disclosure is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or of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carrying on the business,
(b) the information wa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its being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whatever manner) under any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Acts],
(c) the disclosure is made for the purposes of, and is necessary for, the discharge of—
(i) any functions under [the information Acts], or
(ii) any Community obligation,
(d) the disclosure is made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s, whether criminal or civil and whether arising under, or by virtue of, the information Acts or otherwise, or
(e) having regard to the rights and freedoms or legitimate interests of any person, the disclosure is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3) Any person who knowingly or recklessly discloses information in contravention of subsection (1) is guilty of an offence.

(4) In this section "the information Acts" means this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offences

60 Prosecutions and penalties.

(1) No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shall be instituted—
(a) in England or Wales, except by the Commissioner or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b) in Northern Ireland, except by the Commissioner or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for Northern Ireland.

(2)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any

(2) ss.(1)의 목적상 정보의 공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그 범위에서만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a) 공개가 해당 개인 또는 당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나,
(b) 그 정보가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 경우,
(c) 공개가 다음의 이행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것인 경우,—
(i) 정보관련 법률들에서의 임무나,
(ii) 공동체 의무.
(d) 공개가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정보관련 법률들이든 다른 것에서나 그에 의거해서인제에 관계없이, 소송절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 어떤 자라도 그의 권리, 자유, 법익을 고려하였을 때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ss.(1)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는 위반의 죄가 있다.

(4) 이 섹션에서 "정보관련 법률"이란 본 법률과 2000년 정보자유법을 의미한다.

위반에 대한 일반 조항

60【기소 및 처벌】

(1) 본 법률에 대한 어떤 소송도—
(a)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경우, 정보위원에 의해, 또는 검찰총장에 의해서나 그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b) 북아일랜드의 경우, 정보위원에 의해, 또는 북아일랜드 검찰총장에 의하거나 그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2) S.54와 Sch.9 para.12 이외의 본 법률의 규

provision of this Act other than section 54A and paragraph 12 of Schedule 9 is liable—
(a)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or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정의 위반에 대해 죄가 있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즉결심판의 경우,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나,
(b) 기소에 따른 유죄판결의 경우, 과태료.

(3)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section 54A and paragraph 12 of Schedule 9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3) S.54와 Sch.9 para.12의 위반의 죄가 있는 자는 즉결심판에 따라 표준등급의 제5등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

(4) Subject to subsection (5), the court by or before which a person is convicted of—
(a) an offence under section 21(1), 22(6), 55 or 56,
(b) an offence under section 21(2) relating to processing which is assessable processing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2, or
(c) an offence under section 47(1) relating to an enforcement notice,
may order any document or other material u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appearing to the court to be connected with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to be forfeited, destroyed or erased.

(4) ss.(5)를 조건으로, 다음에 대해 기소하거나 수소한 법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위반의 범행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나 기타 자료가 몰수, 파괴, 삭제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a) S.21(1), 22(6), 55, 56의 위반이나
(b) S.22의 목적상 사정 가능한 처리에 해당하는 처리와 관련하여 S21(2)의 위반, 또는
(c) 집행통지와 관련된 S.47(1)의 위반.

(5) The court shall not make an order under subsection (4) in relation to any material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offender) claiming to be the owner of or otherwise interested in the material applies to be heard by the court, unless an opportunity is given to him to show cause why the order should not be made.

(5) 그 자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거나 기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의한 심리를 청구하는 경우, 명령이 내려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법원은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ss.(4)에 의한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61 Liability of directors etc.

(1) Where an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committed by a body corporate and is proved to have been committed with the consent or connivance of or to be attributable to any neglect on the part of 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any person who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 he as well as the body corporate shall be guilty of that offence and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and punished accordingly.

61 【감독자 등의 책임】

(1) 본 법률의 위반이 법인체에 의해 행해지고, 그 임원, 운영자, 비서 또는 법인체의 이와 유사한 담당자나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의 동의나 방조에 따라 행해지거나 그 태만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그 자는 법인체와 공동으로 해당 위반에 대해 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2) Where the affairs of a body corporate are managed by its members subsection (1) shall apply in relation to the acts and defaults of a member in connection with his functions of management as if he were a director of the body corporate.

(2) 법인체의 업무가 그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관리 기능과 관련된 구성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그를 그 법인체의 임원인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ss.(1)을 적용한다.

(3) Where an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committed by a Scottish partnership and the contravention in question is proved to have occurred with the consent or connivance of, or to be attributable to any neglect on the part of, a partner, he as well as the partnership shall be guilty of that offence and shall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and punished accordingly.

(3) 이 법률의 위반이 스코틀랜드의 합명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그 공동경영자의 동의나 방조에 따라 행해지거나 그 태만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그 자는 합명회사와 공동으로 해당 위반에 대해 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Amendments of Consumer Credit Act 1974

62 Amendments of Consumer Credit Act 1974.

(1) In section 158 of the M12Consumer Credit Act 1974 (duty of agency to disclose filed information)—
(a) in subsection (1)—
(i) in paragraph (a) for "individual" there is substituted "partnership or other unincorporated body of persons not consisting entirely of bodies corporate", and
(ii) for "him" there is substituted " it",
(b) in subsection (2), for "his" there is substituted "the consumer's", and
(c) in subsection (3), for "him" there is substituted " the consumer".

(2) In section 159 of that Act (correction of wrong information) for subsection (1) there is substituted—
"(1) Any individual (the "objector") given—
(a) information under section 7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by a credit reference agency, or
(b) information under section 158,
who considers that an entry in his file is incorrect, and that if it is not corrected he is likely to be prejudiced, may give notice to the agency requiring it either to remove the entry from the file or amend it."

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수정

62【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개정】

(1) 1974년 소비자신용법 S.158(파일화된 정보를 공개할 대행사의 의무)에서—
(a) ss.(1) 중
(i) para.(a)의 "개인"은 "합명회사, 또는 법인체들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비법인 단체"로 대치되며,
(ii) "그"는 "그것"으로 대치된다.
(b) ss.(2) 중 "그의"는 "소비자의"로 대치되고,
(c) ss.(3) 중 "그"는 "소비자"로 대치된다.

(2) 동 법 S.159(잘못된 정보의 교정)에서 ss.1은 다음과 같이 대치된다.
"(1) 다음이 주어지는 개인("대상자")으로서 자신의 파일의 기재사항이 부정확하고, 그것이 정정되지 아니하면 자신이 불리하게 된다고 여기는 자는 대행사에 파일에서 그 기재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a) 신용조회기관에 의한『1998년 개인정보보호법』S.7에 따른 정보, 또는
(b) S.158에 따른 정보."

(3) In subsections (2) to (6) of that section—
(a) for "consumer", wherever occurring, there is substituted " objector", and
(b) for "Director", wherever occurring, there is substituted " the relevant authority".

(4) After subsection (6) of that section there is inserted—
"(7)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may vary or revoke any order made by him under this section.
(8) In this section "the relevant authority" means—
(a) where the objector is a partnership or other unincorporated body of persons, the Director, and
(b) in any other case,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5) In section 160 of that Act (alternative procedure for business consumers)—
(a) in subsection (4)—
(i) for "him" there is substituted " to the consumer", and
(ii) in paragraphs (a) and (b) for "he" there is substituted " the consumer" and for "his" there is substituted " the consumer's", and
(b) after subsection (6) there is inserted—
"(7) In this section "consum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158."

(3) 동 섹션 ss.(2) 내지 (6)에서—
(a) "소비자"가 나오는 경우, 모두 "대상자"로 대치되며,
(b) "감독자"가 나오는 경우, 모두 "관계당국" 으로 대치된다.

(4) 동 섹션 ss.(6) 뒤에 다음이 삽입된다.
"(7) 정보보호 위원은 이 섹션에 따라 자신에 의해 부과된 모든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8) 이 섹션에서 "관계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대상자가 합명회사이거나 개인들의 기타 비법인단체인 경우의 감독자와,
(b) 그 외의 어떠한 경우든지, 정보보호 위원."

(5) 동 법 S.160(기업 소지자를 위한 대체적 절차)에서—
(a) ss.(4) 중
(i) "그에게"는 "소비자에게"로 대치되고,
(ii) para.(a)와 (b)에서 "그는"은 "소비자는"으로, "그의"는 "소비자의"로 대치된다.
(b) ss.(6) 뒤에 다음이 삽입된다.
"(7) 이 섹션에서 "소비자"는 S.158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General

63 Application to Crown.

(1) This Act binds the Crown.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all be treated as a person separate from any other government department.

(3) Where the purposes for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any personal data are, or are to be, processed are determined by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Royal Household, the Duchy of Lancaster or the Duchy of Cornwall, the data controller in respect of those data for the

일반규정

63【국왕에 대한 적용】

(1) 이 법률은 국왕을 구속한다.

(2) 이 법률의 목적상 각 정부부서는 다른 정부부서들과 별개의 인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목적과 방법이 왕실관리인이나 랭카스터 공작, 콘월 공작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본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관리자는 다음이 되어야 한다.

purposes of this Act shall be—
(a) in relation to the Royal Household, the Keeper of the Privy Purse,
(b) in relation to the Duchy of Lancaster, such person as the Chancellor of the Duchy appoints, and
(c) in relation to the Duchy of Cornwall, such person as the Duke of Cornwall, or the possessor for the time being of the Duchy of Cornwall, appoints.

(a) 왕실관리인에 대해서는 왕실출납장관,
(b) 랭카스터 공작에 대해서는, 공령 서기관이 임명하는 자,
(c) 콘월 공작에 대해서는, 콘월 공작 또는 곤월 공작직의 일시적인 보유자가 임명하는 자.

(4) Different persons may be appointed under subsection (3)(b) or (c) for different purposes.

(4) ss.(3)(b) 또는 (c)에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상이한 자가 임명될 수 있다.

(5) Neither a government department nor a person who is a data controller by virtue of subsection (3) shall be liable to prosecution under this Act, but sections 54A and 55 and paragraph 12 of Schedule 9 shall apply to a person in the service of the Crown as they apply to any other person.

(5) 정부 부서나 ss.(3)에 따라 정보관리자가 되는 자 중 누구도 본 법률에 의해 소추대상이 되지 않으나, S.54A와 55, Sch.9 para.12는 다른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왕실에 복무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63A Application to Parliament.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to section 35A, this Act appli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or on behalf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as it appli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other persons.

(2) Where the purposes for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any personal data are, or are to be, processed are determined by or on behalf of the House of Commons, the data controller in respect of those data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shall be the Corporate Officer of that House.

(3) Where the purposes for which and the manner in which any personal data are, or are to be, processed are determined by or on behalf of the House of Lords, the data controller in respect of those data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shall be the Corporate Officer of that House.

(4) Nothing in subsection (2) or (3) is to be taken to render the Corporate Officer of the House

63A【의회에 대한 적용】

(1) 이 섹션의 다음 규정들과 S.35A를 조건으로, 본 법률은 각 의회에 의하거나 각 의회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다른 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목적과 방법이 하원에 의하거나 하원을 대신하여 결정되는 경우, 본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관리자는 하원의 사무장이 된다.

(3)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목적과 방법이 상원에 의하거나 상원을 대신하여 결정되는 경우, 본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관리자는 상원의 사무장이 된다.

(4) ss.(2), (3)의 어떤 내용도 하원의 사무장이나 상원의 사무장을 이 법률에 따라 형사소추

of Commons or the Corporate Officer of the House of Lords liable to prosecution under this Act, but section 55 and paragraph 12 of Schedule 9 shall apply to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either House as they apply to any other person.

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은 아니나, S.54A와 55, Sch.9 para.12는 다른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양원의 사무장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64 Transmission of notices etc. by electronic or other means.

(1) This section applies to—
(a) a notice or request under any provision of Part II,
(b) a notice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24 or particulars made available under that subsection, or
(c)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1(2),
but does not apply to anything which is required to be serve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court.

(2) The requirement that any notice, request, particulars or applic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should be in writing is satisfied where the text of the notice, request, particulars or application—
(a) is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b) is received in legible form, and
(c) is capable of being used for subsequent reference.

(3)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provide that any requirement that any notice, request, particulars or applic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should be in writing is not to apply in such circumstance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64 【전자적 또는 기타의 수단에 의한 통지 등의 전달】

(1) 이 섹션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나, 이 때 법원의 예규에 따라서 송달될 것이 요구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통지나 요청이나,
(b) S.24 ss.(1)의 규정의 통지나 동 ss.에 의해 가능한 사항, 또는
(c) S41(2)에 의한 신청.

(2) 이 섹션이 적용되는 통지, 요청, 항목들이나 신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통지, 요청, 항목 또는 신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충족된다.
(a)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되는 경우와
(b)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수취되는 경우, 그리고
(c) 후속적인 참조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

(3) 국무장관은 법규에 의하여 이 섹션이 적용되는 통지, 요청, 항목, 신청이 서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그 법규에 명시되는 상황에서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65 Service of notices by Commissioner.

(1) Any notice authorised or required by this Act to be served on or given to any person by the Commissioner may—
(a) if that person is an individual, be served on him—
(i) by delivering it to him, or
(ii) by sending it to him by post addressed to him at his usual or last-known place

65 【정보위원에 의한 통지의 송달】

(1) 정보위원에 의하여 어떤 자에게 송달되거나 전달될 것이 본 법률에 의해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통지는—
(a) 만약 그 자가 개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그에게 송달될 수 있다.
(i) 그에게 인도하거나,
(ii) 그에게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그의 일상적 혹은 최후의 거주지 또는

of residence or business, or
(iii) by leaving it for him at that place;
(b) if that person is a body corporate or unincorporate, be served on that body—
(i) by sending it by post to the proper officer of the body at its principal office, or
(ii) by addressing it to the proper officer of the body and leaving it at that office;
(c) if that person is a partnership in Scotland, be served on that partnership—
(i) by sending it by post to the principal office of the partnership, or
(ii) by addressing it to that partnership and leaving it at that office.

(2) In subsection (1)(b) "principal office", in relation to a registered company, means its registered office and "proper officer", in relation to any body, means the secretary or other executive officer charged with the conduct of its general affairs.

(3) This section is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lawful method of serving or giving a notice.

66 Exercise of rights in Scotland by children.

(1) Where a question falls to be determined in Scotland as to the legal capacity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to exercise any right conferred by any provision of this Act, that person shall be taken to have that capacity where he has a general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exercise that right.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 person of twelve years of age or more shall be presumed to be of sufficient age and maturity to have such understanding as is mentioned in that subsection.

67 Orders, regulations and rules.

(1) Any power conferred by this Act on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 order, regulations or rules shall be exercisable by

사업 소재지에 우편으로 발송, 또는
(iii) 그러한 장소에 그를 위해 놓아둠으로써.
(b) 그 자가 법인이거나 비법인단체인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단체에 송달될 수 있다.
(i) 그 주된 사무소로 적절한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ii) 그 단체의 적절한 직원 앞으로 그러한 사무소에 놓아둠으로써.
(c) 그 자가 스코틀랜드의 합명회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그 합명회사에 송달될 수 있다.
(i) 그 합명회사의 주된 사무소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ii) 그 합명회사 앞으로 그러한 사무소에 놓아둠으로써.

(2) ss.(1)(b)에서 "주된 사무소"란 등록된 회사에 관해 그 등록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적절한 직원"이란 어떤 단체에 관해서든지, 그 일반적 사무의 운영을 담당하는 비서나 임원을 의미한다.

(3) 이 섹션은 통지의 송달 또는 전달의 다른 합법적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6【스코틀랜드에서 아동의 권리 행사】

(1) 스코틀랜드에서 16세 미만인 자가 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능력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가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 자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ss.(1)의 보편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2세 이상의 자는 그 ss.에 언급된 이해를 하기에 충분한 연령이며 성숙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67 명령, 규칙, 예규

(1) 본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부여되는 명령, 규칙, 예규를 제정할 권한은 행정입법으로써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statutory instrument.

(2) Any order, regulations or rule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is Act may—
(a) make different provision for different cases, and
(b) make such supplemental, incidental, consequential or transitional provision or savings as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appropriate;
and nothing in section 7(11), 19(5), 26(1) or 30(4) limits the generality of paragraph (a).

(2) 본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에 의해 작성되는 명령, 규칙, 예규는—
(a)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하여 상이한 규정을 둘 수 있고,
(b)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충적, 한시적, 결과적, 과도기적 규정이나 유보를 둘 수 있으며,
S.7(11)이나 19(5), 26(1), 30(4) 중의 어떠한 것도 para.(a)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Before making—
(a) an order under any provision of this Act other than section 75(3),
(b) any regulations under this Act other than notification regulations (as defined by section 16(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Commissioner.

(3) 국무장관은 다음을 제정하기 전에 정보위원과 협의해야 한다.
(a) S.75(3)을 제외한 본 법률의 제규정에 따른 명령.
(b) (S.16(2)에 규정된) 통보 규칙을 제외하고, 본 법률의 제규정에 따른 모든 규칙.

(4) A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whether alone or with other provisions) an order under—
section 10(2)(b),
section 12(5)(b),
section 22(1),
section 30,
section 32(3),
section 38,
section 55E(1),
section 56(8),
paragraph 10 of Schedule 3, or
paragraph 4 of Schedule 7,
shall not be made unless a draft of the instrument has been laid before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of Parliament.

(4) (단독으로든지 다른 규정들과 함께든지) 다음 규정들에 의거한 행정입법은, 법규의 초안이 각 의회에 상정되고 그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제정될 수 없다.
section 10(2)(b),
section 12(5)(b),
section 22(1),
section 30,
section 32(3),
section 38,
section 55E(1),
section 56(8),
Sch.3 para.10,
Sch.7 para.4.

(5) A statutory instrument which contains (whether alone or with other provisions)—
(a) an order under—
section 22(7),
section 23,
section 51(3),
section 54(2), (3) or (4),
paragraph 3, 4 or 14 of Part II of Schedule 1,
paragraph 6 of Schedule 2,
paragraph 2, 7 or 9 of Schedule 3,

(5) (단독으로든지 다른 규정들과 함께든지) 다음을 포함하고, ss.(4)의 법규의 초안이 각 의회에 제출되고 그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위임입법은 상원 또는 하원의 결의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
(a) 다음에 의거한 명령.
section 22(7),
section 23,
section 51(3),
section 54(2), (3), (4),

paragraph 4 of Schedule 4,
paragraph 6 of Schedule 7,
(b) regulations under section 7 which—
(i) prescribe cases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b),
(ii) are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7), or
(iii) relate to the definition of "the prescribed period",
(c) regulations under section 8(1), 9(3) or 9A(5)],
(ca) regulations under section 55A(5) or (7) or 55B(3)(b),
(d) regulations under section 64,
(e) notification regulations (as defined by section 16(2)), or
(f) rules under paragraph 7 of Schedule 6,
and which is not subject to the requirement in subsection (4) that a draft of the instrument be laid before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of Parliament,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Sch.1 제2장 para. 3, 4, 14,
Sch.2 para.2, 7, 9,
Sch.4 para.4
Sch.7 para.6.
(b) S.7에 의거한 다음의 규칙.
(i) ss.(2)(b)의 목적상 사안을 규정하는 것이나,
(ii) ss.(7)에 의거해 제정되는 것, 또는
(iii) "지정된 기간"의 정의에 관련된 것.
(c) S.8(1)이나 S.9(3), S.9A(5)의 규칙.
(ca) S.55A(5), (7)이나 55(3)(b)의 규칙.
(d) S.64의 규칙.
(e) (S.16(2)에 정의된 바) 통보 규칙.
(f) Sch.6 para.7의 규칙.

(6) A statutory instrument which contains only—
(a) regulations prescribing fees for the purposes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b) regulations under section 7 prescribing fees for the purposes of any other enactment,
shall be laid before Parliament after being made.

(6) 다음만을 포함하는 행정입법은 제정된 후에 의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a) 본 법률의 규정을 위한 수수료를 법정하는 규칙이나,
(b) 기타의 법령을 위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S.7에 의한 규칙.

68 Meaning of "accessible record".

(1) In this Act "accessible record" means—
(a) a health record as defined by subsection (2),
(b) an educational record as defined by Schedule 11, or
(c) an accessible public record as defined by Schedule 12.

68 【"접근가능한 기록"의 의미】

(1) 본 법률에서 "접근가능한 기록"은 다음을 의미한다.
(a) ss.(2)에서 정의된 건강기록이나,
(b) Sch.11에서 정의된 교육기록, 또는
(c) Sch.12에서 정의된 접근 가능한 공적 기록.

(2) In subsection (1)(a) "health record" means any record which—
(a) consists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condition of an individual, and
(b) has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a health professional in connection with the care of

(2) ss.(1)(a)에서 "건강기록"이라 함은 다음의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a)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상태에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b) 그 개인의 치료를 담당한 보건전문가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작성된 것.

that individual.

69 Meaning of "health professional".

(1) In this Act "health professional"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b) a registered dentist as defined by section 53(1) of the M13Dentists Act 1984,
(c) a registered dispensing optician or a registered optometrist within the meaning of the Opticians Act 1989,
(d) a registered pharmacist or registered pharmacy technician within the meaning of the Pharmacists and Pharmacy Technicians Order 2007 or a registered person as defined by Article 2(2) of the Pharmacy (Northern Ireland) Order 1976,
(e) a registered nurse or midwife,
(f) a registered osteopath as defined by section 41 of the Osteopaths Act 1993,
(g) a registered chiropractor as defined by section 43 of the Chiropractors Act 1994,
(h) any person who is registered as a member of a profession to which the Health Professions Order 2001 for the time being extends,
(i) a child psychotherapist] ,
(j) ...
(k) a scientist employed by such a body as head of a department.

(2) In subsection (1)(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includes any person who is provisionally registered under section 15 or 21 of the Medical Act 1983 and is engaged in such employment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3) of that section.

(3) In subsection (1) "health service body" means －
(a) a Strategic Health Authority established under section 13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b) a Special Health Authority established under section 28 of that Act, or section 22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Wales) Act 2006,
(bb) a Primary Care Trust established under

69 【"보건전문가"의 의미】

(1) 본 법률에서 "보건전문가"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등록된 의료 시술자,
(b) 1984년 치과의사법 S.53(1)에 정의된 등록된 치과의사,
(c) 1989년 안경사법에서의 의미에 해당하는 등록된 안경사나 등록된 검안사,
(d) 2007년 약사 및 조제사에 관한 명령에서의 의미에 해당하거나 1976년 (북아일랜드) 약국령 제2(2)조에 정의된 바 등록된 자에 해당하는 등록된 약사 또는 등록된 조제사,
(e) 등록된 간호사, 조산사,
(f) 1993년 접골사법 S.41에 정의된 등록된 접골사,
(g) 1994년 척추지압사법 S.43에 정의된 등록된 척추지압사,
(h) 2001년 보건전문가령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등록된 모든 전문가,
(i) 아동 정신치료사,
(j) [삭제]
(k) 그러한 조직의 부서장으로 고용된 과학자.

(2) ss.(1)(a)에서 "등록된 의료 시술자"는 1983년 의료법 S.15 또는 S.21에 의해 잠정적으로 등록된 자와 동 섹션 ss.(3)에서 말하는 고용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3) ss.(1)에서 "보건서비스 단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2006년 국민보건사업법 S.13에 의해 설립된 전략적 보건 당국,
(b) 동 법 S.28 또는 2006년 (웨일즈) 국민보건사업법 S.22에 의해 설립된 특수 보건 당국,
(bb) 2006년 국민보건사업법 S.18에 의해 설립된 일차의료트러스트,
(bbb) 2006년 (웨일즈) 국민보건사업법 S.11

section 18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bbb) a Local Health Board established under section 11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Wales) Act 2006,

(c) a Health Board with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Scotland) Act 1978,

(d) a Special Health Board within the meaning of that Act,

(e) the managers of a State Hospital provided under section 102 of that Act,

(f) a National Health Service trust first established under section 5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section 25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section 18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Wales) Act 2006] or section 12A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Scotland) Act 1978,

(fa) an NHS foundation trust;

(g) a Health and Social Services Board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Northern Ireland) Order 1972,

(h) a special health and social services agency established under th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Special Agencies) (Northern Ireland) Order 1990, or

(i) a Health and Social Services trust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of th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Northern Ireland) Order 1991.

에 의해 설립된 지역보건국,

(c) 1978년 (스코틀랜드) 국민보건사업법의 의미에 해당하는 보건국,

(d) 위 법률의 의미에서의 특수 보건국,

(e) 동 법률 S.102에서 규정하는 국립병원의 관리자,

(f) 1990년 국민보건사업 및 지역의료법 S.5 또는 2006년 국민보건사업법 S.25, 2006년 (웨일즈) 국민보건사업법 S.18, 1978년 (스코틀랜드) 국민보건사업법 S.12A에 의해 일차적으로 설립된 국민보건사업 트러스트,

(fa) NHS 기초 트러스트,

(g) 1972년 (북아일랜드) 보건 및 개인적 사회사업 명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보건 및 사회 사업국,

(h) 1990년 (북아일랜드) 보건 및 개인적 사회사업 (특수 기관) 명령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 보건 및 사회 사업 기관,

(i) 1990년 (북아일랜드) 보건 및 개인적 사회사업 명령 제10조에 의해 설립되느 보건 및 사회사업 트러스트.

70 Supplementary definitions.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business" includes any trade or profession;

"the Commissioner" means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credit reference agency"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onsumer Credit Act 1974;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means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70【보충적 정의】

(1) 본 법률에서, 문맥상 다를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사업"은 모든 거래나 직업을 포함한다.

"정보위원"이란 "정보 위원"을 의미한다.

"신용조회기관"은 1974년 소비자신용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보보호지침"이란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인 이동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는 지침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를 의미한다.

"EEA State" means a State which is a contracting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signed at Oporto on 2nd May 1992 as adjusted by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17th March 1993;

"유럽경제지역 국가"란 1992년 5월 2일 오포르토에서 체결되고, 1993년 3월 17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의정서에 의해 조정된,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enactment" includes an enactment passed after this Act and any enactment comprised in, or in any instrument made under, an Act of the Scottish Parliament;

"법령"은 본 법률 이후에 통과되고,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률에 포함된 법령이나 그에 의한 입법을 모두 포함한다.

"government department" includes a Northern Ireland department and any body or authority exercising statutory functions on behalf of the Crown;

"정부 부서"는 북아일랜드의 부서와, 국왕을 대신하여 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을 포함한다.

"Minister of the Crown"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Ministers of the Crown Act 1975;

"왕실장관"은 1975년 왕실장관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public register" means any register which pursuant to a requirement imposed—
(a) by or under any enactment, or
(b) in pursuance of any international agreement,
is open to public inspection or open to inspection by any person having a legitimate interest;

"공적 기록"은 다음에서 부과되는 요건에 따라 대중의 열람을 위해 개방되거나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열람이 개방되는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a) 법령에서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또는
(b) 국제조약에 따르기 위해 부과되는 요건.

"pupil"—
(a) in relation to a school in England and Wales, means a registered pupil within the meaning of the Education Act 1996,
(b) in relation to a school in Scotland, means a pupil within the meaning of the Education (Scotland) Act 1980, and
(c) in relation to a school in Northern Ireland, means a registered pupil within he meaning of the 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 1986;

"학생"은—
(a)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교에 대해서는 1996년 교육법에서 의미하는 등록된 학생을 의미한다.
(b) 스코틀랜드의 학교에 대해서는, 1980년 (스코틀랜드) 교육법에서 의미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c) 북아일랜드의 학교에 대해서는, 1986년 (북아일랜드) 교육 및 도서관 령에서 의미하는 등록된 학생을 의미한다.

"recipient", in relation to any personal data, means any person to whom the data are disclosed, including any person (such as an employee or agent of the data controller, a data processor or an employee or agent of a data processor) to whom they are disclosed in the course of processing the data for the data

"수령인"은, 어떠한 개인정보에 관해서든지 데이터를 공개받는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며, 데이터가 정보관리자를 위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모든 자(정보관리자의 피고용인이나 대행자, 정보처리자, 정보처리자의 피고용인이나 대행자와 같은 자)를 포함하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controller, but does not include any person to whom disclosure is or may be made as a result of, or with a view to, a particular inquiry by or on behalf of that person made in the exercise of any power conferred by law;

권한의 행사로서 그 자에 의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특정한 요청의 결과로써, 혹은 그러한 의도로 그 자에게 공개가 이로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registered company" means a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enactments relating to compani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in the United Kingdom;

"등록된 회사"란 회사에 관해 현재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 법령에 의해 등록됭 회사를 의미한다.

"school"—
(a) in relation to England and Wale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Education Act 1996,
(b) in relation to Scotland,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Education (Scotland) Act 1980, and
(c) in relation to Northern Ireland,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 1986;

"학교"는—
(a)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교에 대해서는 1996년 교육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b) 스코틀랜드의 학교에 대해서는, 1980년 (스코틀랜드) 교육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c) 북아일랜드의 학교에 대해서는, 1986년 (북아일랜드) 교육 및 도서관 령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teacher" includes—
(a) in Great Britain, head teacher, and
(b) in Northern Ireland, the principal of a school;

"교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대영제국의 수석교사와,
(b) 북아일랜드의 교장.

"third party",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means any person other than—
(a) the data subject,
(b) the data controller, or
(c) any data processor or other person authorised to process data for the data controller or processor;

개인정보와 관련해 "제3자"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a) 정보주체
(b) 정보관리자
(c) 정보처리자, 또는 정보관리자나 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권한을 갖는 자.

"the Tribunal" means the Information Tribunal.

"정보법정"은 "정보 법정"을 의미한다.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data are inaccurate if they are incorrect or misleading as to any matter of fact.

(2) 본 법률의 목적상 사실관계에 대하여 틀리거나 오도하는 데이터는 부정확한 데이터이다.

71 Index of defined expressions.

71 【정의된 용어의 색인】

The following Table shows provisions defining or otherwise explaining expressions used in this Act (other than provisions defining or explaining an expression only used in the same section or Schedule)—

다음의 표는 (같은 섹션이나 스케쥴에서 한정되어 사용된 표현의 정의 또는 설명을 제외하고,) 본 법률에서 사용된 표현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규정을 나타낸다.

accessible record 접근가능한 기록	section 68
address (in Part III) (제3장에서) 주소	section 16(3)
business 사업	section 70(1)
the Commissioner 정보위원	section 70(1)
credit reference agency 신용조회기관	section 70(1)
data 데이터	section 1(1)
data controller 정보관리자	sections 1(1) and (4) and 63(3)
data processor 정보처리자	section 1(1)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정보보호지침	section 70(1)
data protection principles 정보보호 기본원칙	section 4 and Schedule 1
data subject 정보주체	section 1(1)
disclosing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의) 공개	section 1(2)(b)
EEA State 유럽경제지역 국가	section 70(1)
enactment 법령	section 70(1)
enforcement notice 집행통지	section 40(1)
fees regulations (in Part III) (제3장에서) 요금규칙	section 16(2)
government department 정부 부서	section 70(1)
health professional 보건전문가	section 69
inaccurate (in relation to data) (데이터에 관한) 부정확	section 70(2)
information notice 정보통지	section 43(1)

Minister of the Crown 왕실장관	section 70(1)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in Part IV) 비공개 규정 (제IV장)	section 27(3)
notification regulations (in Part III) (제3장에서) 통지규칙 (제3장)	section 16(2)
obtaining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의) 취득	section 1(2)(a)
personal data 개인정보	section 1(1)
prescribed (in Part III) (제3장에서) 지정된	section 16(2)
public authority 공공 당국	section 1(1)
processing (of information or data) (정보 또는 데이터의) 처리	section 1(1) and para.5 of Schedule 8
public register 공적 등록부	section 70(1)
publish (in relation to journalistic, literary or artistic material) (언론, 문학, 예술적 소재에 대한) 출판)	section 32(6)
pupil (in relation to a school) (학교와 관련해) 학생	section 70(1)
recipient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개인정보와 관련한) 수령인	section 70(1)
recording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의) 기록	section 1(2)(a)
registered company 등록된 회사	section 70(1)
registrable particulars (in Part III) (제3장에서) 등록가능한 사항	section 16(1)
relevant filing system 관련 파일링 시스템	section 1(1)
school 학교	section 70(1)
sensitive personal data 민감한 개인정보	section 2
special information notice 특별정보통지	section 44(1)

the special purposes 특별 목적	section 3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Part IV) (제4장에서) 필수 정보 규정	section 27(2)
teacher 교사	section 70(1)
third party (in relation to processing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제3자	section 70(1)
the Tribunal 정보법정	section 70(1)
using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의) 사용	section 1(2)(b).

72 Modifications of Act.

During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commencement of this section and ending with 23rd October 2007,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modifications set out in Schedule 13.

72【법률의 수정】

이 섹션의 발효 시점으로부터 2007년 10월 23일을 만료 시점으로 하는 기간 동안, 본 법률의 규정들은 Sch.13에 열거된 수정에 따라서 효력을 가진다.

73 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Schedule 14 (which contains 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has effect.

73【경과적 규정 및 유예】

(경과규정과 유예를 포함하는) Sch.14가 효력을 갖는다.

74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repeals and revocations.

(1) Schedule 15 (which contains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has effect.

(2) The enactments and instruments specified in Schedule 16 are repealed or revoked to the extent specified.

74【소개정, 부수적 개정, 폐지 및 철회】

(1) (소개정 및 부수적 개정을 담고 있는) Sch.15가 효력을 갖는다.

(2) Sch.16에 명시된 법령 및 문서는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회 또는 폐지된다.

75 Short title, commencement and extent.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2)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ct—

75【약칭, 발효 및 적용범위】

(1) 본 법률은 1998 정보보호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본 법률의 다음 규정들은 본 법률이 통과되

(a) sections 1 to 3,
(b) section 25(1) and (4),
(c) section 26,
(d) sections 67 to 71,
(e) this section,
(f) paragraph 17 of Schedule 5,
(g) Schedule 11,
(h) Schedule 12, and
(i) so much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as confers any power to make subordinate legislation,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는 날짜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a) section 1 에서 3,
(b) section 25(1) 및 (4),
(c) section 26,
(d) sections 67 에서 71,
(e) 본 section,
(f) Schedule 5의 paragraph 17,
(g) Schedule 11,
(h) Schedule 12,
(i) 부수적 입법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본 법률의 기타 규정 전부.

(3)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on such day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ppoint; and different days may be appointed for different purposes.

(3) 본 법률의 나머지 규정들은 국무장관이 명령으로서 지목하는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하며,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상이한 날짜가 지목될 수 있다.

(4) The day appointed under subsection (3) for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56 must not be earlier than the first day on which sections 112, 113 and 115 of the Police Act 1997 (which provide for the issue by the Secretary of State of criminal conviction certificates, criminal record certificates and enhanced criminal record certificates) are all in force.

(4) S.56의 발효를 위해 ss.(3)에서 지목되는 날짜는 (국무장관에 의한 범죄판결 증명서, 범죄기록 증명서, 중범죄기록 증명서의 발행을 규율하는) 1997년 경찰법 S.12, 113, 115가 모두 효력을 발하는 제1일보다 빨라서는 아니된다.

(4A) Subsection (4) does not apply to section 56 so far as that section relates to a record containing information relating to—
(a) the Secretary of State's functions under the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 2006 or the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Northern Ireland) Order 2007, or
(b) the "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s" functions under that Act or that Order.

(4A) S.56이 다음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ss.(4)는 동 섹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2006년 소외계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2007년 (북아일랜드) 소외계층의 보호에 관한 명령에 의한 국무장관의 기능이나,
(b) 동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독립적 보호당국의" 기능.

(5) Subject to subsection (6), this Act extends to Northern Ireland.

(5) ss.(6)을 조건으로, 본 법률은 북아일랜드까지 효력을 갖는다.

(6) Any amendment, repeal or revocation made by Schedule 15 or 16 has the same extent as that of the enactment or instrument to which it relates.

(6) Sch.15, Sch.16에 의한 모든 개정, 폐지, 철회는 그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입법과 같은 영역에서 효력을 갖는다.

SCHEDULE 1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PART I
THE PRINCIPLES

1 Personal data shall be processed fairly and lawfully and, in particular, shall not be processed unless—
(a) at least one of the conditions in Schedule 2 is met, and
(b) in the case of sensitive personal data, at least one of the conditions in Schedule 3 is also met.

2 Personal data shall be obtained only for one or more specified and lawful purposes, and shall not be further processed in any manner incompatible with that purpose or those purposes.

3 Personal data shall be adequate, relevant and not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y are processed.

4 Personal data shall be accurate and, where necessary, kept up to date.

5 Personal data processed for any purpose or purposes shall not be kept for longer than is necessary for that purpose or those purposes.

6 Personal data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rights of data subjects under this Act.

7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shall be taken against unauthorised or un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against accidental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ersonal data.

8 Personal data shall not be transferred to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unless that country or territory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SCHEDULE 1
정보보호 기본원칙

제 1 장
기본원칙

1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a) Sch.2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b)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Sch.3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2 개인정보는 하나 이성의 특정되고 적법한 목적으로만 취득되어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3 개인정보는 처리되어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적절하고, 관련되어야 하며 과도해서는 안된다.

4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필요에 따라 최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5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존되어서는 안된다.

6 개인정보는 본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에 부합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7 권한 없는, 또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와,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괴,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적, 구조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8 유럽경제지역 밖의 국가나 지역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는 그러한 국가나 지역으로 선송되어서는 아니된다.

PART II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S IN PART I

The first principle

1 (1)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whether personal data are processed fairly, regard is to be had to the method by which they are obtained, including in particular whether any person from whom they are obtained is deceived or misled as to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y are to be processed.

(2) Subject to paragraph 2, for the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data are to be treated as obtained fairly if they consist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a person who—

(a) is authorised by or under any enactment to supply it, or

(b) is required to supply it by or under any enactment or by any convention or other instrument imposing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n the United Kingdom.

2 (1) Subject to paragraph 3, for the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personal data are not to be treated as processed fairly unless—

(a) in the case of data obtained from the data subject, the data controller ensures so far as practicable that the data subject has, is provided with, or has made readily available to him,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sub-paragraph (3), and

(b) in any other case, the data controller ensures so far as practicable that, before the relevant time or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at time, the data subject has, is provided with, or has made readily available to him,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sub-paragraph (3).

(2) In sub-paragraph (1)(b) "the relevant time" means—

(a) the time when the data controller first processes the data, or

(b) in a case where at that time disclosure to a third par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is envisaged—

(i) if the data are in fact disclosed to

제 2 장

제1장의 기본원칙의 해석

제 1 원칙

1 (1) 제1원칙의 목적상 개인정보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데이터를 취득한 방법, 특히 그 데이터를 제공한 자가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목적에 대하여 기만이나 오도를 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2) para.2를 조건으로, 제1원칙의 목적상 다음의 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로 구성된 개인정보는 공정하게 취득된 것으로 취급한다.

(a) 관련 법령에서 또는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가된 자, 또는

(b) 관련 법령에서 또는 이에 따라, 혹은 국제 조약이나 기타 영국에 국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에 따라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자.

2 (1) para.3을 조건으로, 정보보호 제1원칙의 목적상 개인정보는 다음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공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a) 정보주체로부터 취득된 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가 sub-para.(3)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즉시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보관리자가 최대한 보장할 것과,

(b) 기타의 경우, 관련 시점 전이나 그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정보주체가 sub-para.(3)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즉시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보관리자가 최대한 보장할 것.

(2) sub-para.(1)(b)에서 "관련시점"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정보관리자가 최초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한 시간이나,

(b) 그 시점에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정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i) 만약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자에게

such a person within that period, the time when the data are first disclosed,

(ii) if within that period the data controller becomes, or ought to become, aware that the data are unlikely to be disclosed to such a person within that period, the time when the data controller does become, or ought to become, so aware, or

(iii) in any other case, the end of that period.

실제로 데이터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최초로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을,

(ii) 만약 그 그간 동안에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가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할 때에는, 정보관리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하였을 시점,

(iii) 다른 모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시점.

(3)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is as follows, namely—

(a) the identity of the data controller,

(b) if he has nominated a 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identity of that representative,

(c)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 data are intended to be processed, and

(d) any further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having regar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which the data are or are to be processed, to enable processing in respect of the data subject to be fair.

(3) sub-para.(1)에서 말하는 정보란 다음과 같다.

(a) 정보관리자의 신원

(b) 만약 그 정보관리자가 본법률의 대리인을 임명한 경우, 그 대리인의 신원

(c)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

(d)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또는 처리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 정보.

3 (1) Paragraph 2(1)(b) does not apply where either of the primary conditions in subparagraph (2), together with such further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y order, are met.

3 (1) para.(2)(1)(b)는 sub-para.(2)의 기본적 조건 중 하나와, 국무장관이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The primary condi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are—

(a) that the provision of that information would involve a disproportionate effort, or

(b) that the recording of the information to be contained in the data by, or the disclosure of the data by, the data controller is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any legal obligation to which the data controller is subject, other than an obligation imposed by contract.

(2) sub-para.(1)에서 말하는 기본적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a) 그 정보의 제공 불균형한 노력이 관련되거나, 또는

(b) 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의 정보관리자에 의한 기록이나 데이터의 공개가 정보관리자가 대상이 되는 것 중 계약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제외한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할 것.

4 (1) Personal data which contain a general identifier falling within a description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y order are not to be treated as processed fairly and lawfully un-

4 (1) 국무장관의 명령에서 지정된 설명에 해당하는 일반적 식별요소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는, 그 설명에서 일반적 식별요소에 대하여 지정되는 조건들을 준수하여 처리되

less they are processed in compliance with any conditions so prescribed in relation to general identifiers of that description.

지 않는 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2) In sub-paragraph (1) "a general identifier" means any identifier (such as, for example, a number or code us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which—
(a) relates to an individual, and
(b) forms part of a set of similar identifiers which is of general application.

(2) sub-para.(1)에서 "일반적 식별요소"란 다음과 같은 식별요소(예를 들어 신원증명 목적의 번호나 코드와 같은 것)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a) 개인과 관계된 것이며,
(b)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사한 식별요소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The second principle

제 2 원칙

5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personal data are obtained may in particular be specified—
(a) in a notice given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by the data controller to the data subject, or
(b) in a notification given to the Commissioner under Part III of this Act.

5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은, 특히 다음에서 특정될 수 있다.
(a) para.(2)의 목적상 정보관리자로부터 정보주체에게 주어지는 통지에서나,
(b) 본 법률 제3장에 따라 정보위원에게 주어지는 통보.

6 In determining whether any disclosure of personal data is compatible with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 data were obtained, regard is to be had to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 personal data are intended to be processed by any person to whom they are disclosed.

6 개인정보의 공개가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목적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개인정보가 공개를 받는 자에 의해 처리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fourth principle

제 4 원칙

7 The fourth principle is not to be regarded as being contravened by reason of any inaccuracy in personal data which accurately record information obtained by the data controller from the data subject or a third party in a case where—
(a) having regard to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 data were obtained and further processed, the data controller has taken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data, and
(b) if the data subject has notified the data controller of the data subject's view that the data are inaccurate, the data indicate that fact.

7 제4원칙은 다음의 경우,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a) 해당 데이터가 취득되어 추가적으로 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정보관리자가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와,
(b) 정보주체가 그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그의 견해를 정보관리자가 통보한 경우, 데이터에 그러한 사실이 표시되었을 때.

The sixth principle

8 A person is to be regarded as contravening the sixth principle if, but only if—

(a) he contravenes section 7 by failing to suppl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section,

(b) he contravenes section 10 by failing to comply with a notice given under subsection (1) of that section to the extent that the notice is justified or by failing to give a notice under subsection (3) of that section,

(c) he contravenes section 11 by failing to comply with a notice given under subsection (1) of that section, or

(d) he contravenes section 12 by failing to comply with a notice given under subsection (1) or (2)(b) of that section or by failing to give a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 (2)(a) of that section or a notice under subsection (3) of that section.

제 6 원칙

8 어떤 자가 제6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에 한정된다.

(a) 그가 S.7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섹션을 위반한 경우나,

(b) 그가 S.10 ss.(1)에 의해 주어진 통지가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동 섹션 ss.(3)의 통지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섹션을 위반한 경우,

(c) 그가 S.11 ss.(1)에 의해 주어진 통지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섹션을 위반한 경우, 또는

(d) 그가 S.12 ss.(1)이나 (2)(b)에 의해 주어진 통지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섹션 ss.(2)(a)의 통보나 동 섹션 ss.(3)의 통지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섹션을 위반한 경우.

The seventh principle

9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cost of implementing any measures, the measures must ensure a level of security appropriate to—

(a) the harm that might result from such unauthorised or unlawful processing or accidental loss, destruction or damage as are mentioned in the seventh principle, and

(b) the nature of the data to be protected.

10 The data controller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any employees of his who have access to the personal data.

11 Wher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carried out by a data processor on behalf of a data controller, the data controller mus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seventh principle—

(a) choose a data processor providing sufficient guarantees in respect of the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security measures governing the processing to be carried

제 7 원칙

9 기술적 발전 상황과 어떤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조치들은 다음을 위해 적절한 보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a) 제7원칙에서 언급된 권한이 없거나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와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괴,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b)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속성

10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피고용인에 대한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11 정보의 처리가 정보관리자를 대신하여 정보처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관리자는 제7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a) 수행되는 처리를 규율하는 기술적, 구조적 보안 조치에 대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정보처리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b) 그러한 조치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

out, and
(b)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ose measures.

해 정당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12 Wher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carried out by a data processor on behalf of a data controller, the data controller is not to be regarded as complying with the seventh principle unless—
(a) the processing is carried out under a contract—
(i) which is made or evidenced in writing, and
(ii) under which the data processor is to act only on instructions from the data controller, and
(b) the contract requires the data processor to comply with obligations equivalent to those imposed on a data controller by the seventh principle.

12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관리자를 대신하여 정보처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관리자는 제7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처리가 다음과 같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와—
(i)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고,
(ii) 정보처리자가 정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
(b) 계약에서 정보처리자가 제7원칙에 의해 정보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The eighth principle

제 8 원칙

13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s one which is adequate i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aving regard in particular to—
(a) the nature of the personal data,
(b) the country or territory of origin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c) the country or territory of final destination of that information,
(d) the purposes for which and period during which the data are intended to be processed,
(e) the law in force in the country or territory in question,
(f)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at country or territory,
(g) any relevant codes of conduct or other rules which are enforceable in that country or territory (whether generally or by arrangement in particular cases), and
(h) any security measures taken in respect of the data in that country or territory.

13 적절한 수준의 보호는 사안의 모든 상황, 특히 다음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것이다.
(a) 개인정보의 속성,
(b) 개인정보에 포함된 출생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
(c) 그 정보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국가나 지역,
(d) 그 데이터가 처리되고자 의도된 목적과 기간,
(e)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
(f) 그 국가나 지역의 국제적 의무,
(g) 그 국가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든지 특정 사안에 대한 협정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는 관련 행동 규범이나 기타 규칙,
(h)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그 국가나 지역에서 취해지는 보안 조치.

14 The eighth principle does not apply to a transfer falling within any paragraph of Schedule 4, except in such circumstances and to such extent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14 제8원칙은 Sch.4의 어떤 para.에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국무장관에 의해 명령으로써 규정되는 상황과 범위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provide.

15 (1) Where—

(a) in any proceedings under this Act any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requirement of the eighth principle as to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s met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any personal data to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b) a Community finding has been made in relation to transfers of the kind in question,

that question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at finding.

(2) In sub-paragraph (1) "Community finding" means a finding of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31(2)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that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does, or does not,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5(2) of the Directive.

15 (1) 만약—

(a) 본 법률에 따른 소송에서 유럽경제구역 밖의 국가나 지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 수준에 대한 제8원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b) 그러한 유형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동체 판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의문은 그 판정에 부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sub-para.(1)에서 "공동체 판정"은 정보보호지침 제3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럽경제지역 밖의 국가나 지역이 동 지침 제25(2)조에서의 의미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지 혹은 보장하지 않는지에 대해 내려진 유럽위원회의 판정을 의미한다.

SCHEDULE 2

CONDITIONS RELEVANT FOR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PROCESSING OF ANY PERSONAL DATA

1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consent to the processing.

2 The processing is necessary—

(a)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the data subject is a party, or

(b) for the taking of steps at the request of the data subject with a view to entering into a contract.

3 Th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any legal obligation to which the data controller is subject, other than an obligation imposed by contract.

4 The processing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SCHEDULE 2

제1원칙의 목적상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건

1 정보주체가 그 처리에 동의하였을 것.

2 다음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할 것.

(a)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나,

(b) 계약의 체결을 위한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절차를 취하기 위해.

3 정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중 계약에 의해 부과되는 것을 제외한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해 처리가 불가피할 것.

4 정보주체의 필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처리가 불가피할 것.

5 The processing is necessary—
(a)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a) for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b) for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conferred on any person by or under any enactment,
(c) for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of the Crown, a Minister of the Crown or a government department, or
(d) for the exercise of any other functions of a public nature exercised in the public interest by any person.

5 다음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할 것.
(a) 법의 집행을 위하거나,
(aa) 각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b) 법령에서 또는 그에 의거해 어떤 자에게라도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c) 왕실이나 왕실장관, 정부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d) 어떤 자에 의해서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속성을 가진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6 (1) Th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legitimate interests pursued by the data controller or by the third party or parties to whom the data are disclosed, except where the processing is unwarranted in any particular case by reason of prejudice to the rights and freedoms or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6 (1) 정보관리자나 제3자, 또는 데이터를 공개할 당사자에 의해 추구되는 법익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할 것. 단, 개별 사안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나 자유, 법익을 해치게 되어 처리가 부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specify particular circumstances in which this condition is, or is not, to be taken to be satisfied.

(2) 국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이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별 사안을 특정할 수 있다.

SCHEDULE 3

CONDITIONS RELEVANT FOR PURPOSES OF THE FIRST PRINCIPLE: PROCESSING OF SENSITIVE PERSONAL DATA

SCHEDULE 3

제1원칙의 목적상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건

1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explicit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the personal data.

1 정보주체가 그 처리에 동의하였을 것.

2 (1) Th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exercising or performing any right or obligation which is conferred or imposed by law on the data controller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2 (1) 고용과 관련하여 정보관리자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권리나 의무의 행사나 수행을 위한 목적상 처리가 불가피할 것.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 exclude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2) 국무장관은 명령으로써—
(a) 특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sub-para.(1)

(1) in such cases as may be specified, or

(b) provide that, in such cases as may be specified,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1) is not to be regarded as satisfied unless such further condi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are also satisfied.

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b) 특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명령에 특정되는 추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이상 sub-para.(1)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The processing is necessary—

(a) in order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another person, in a case where—

(i) consent cannot be given by or on behalf of the data subject, or

(ii) the data controller can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or

(b) in order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another person, in a case where consent by or on behalf of the data subject has been unreasonably withheld.

3 다음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할 것.

(a)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나 다른 자의 필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i) 정보주체에 의해서나 그를 대신하여 동의가 주어질 수 없는 경우나,

(ii)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때.

(b) 정보주체에 의하거나 그를 대신한 동의가 불합리하게 거부된 경우, 다른 자의 필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4 The processing—

(a) is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its legitimate activities by any body or association which—

(i) is not established or conducted for profit, and

(ii) exists for political, philosophical, religious or trade-union purposes,

(b) is carried out with appropriate safeguards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c) relates only to individuals who either are members of the body or association or have regular contact with it in connection with its purposes, and

(d) does not involve disclosure of the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4 처리가 다음과 같을 것.

(a) 다음의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행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i)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ii)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목적이나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

(b)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루어지며,

(c)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목적과 관련해 그 법인이나 단체와 정기적인 접촉이 있는 개인에 한해 관계되고, 또한

(d)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5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ersonal data has been made public as a result of steps deliberately taken by the data subject.

5 정보주체가 의도적으로 취한 단계의 결과로서 개인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일반에게 알려질 것.

6 The processing—

(a)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legal proceedings (including prospective legal proceedings),

(b)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6 처리가 다음과 같을 것.

(a) (장래의 법적 소송절차를 포함한) 법적 소송절차의 목적으로나 그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거나,

(b)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legal advice, or
(c) is otherwis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exercising or defending legal rights.

(c) 법적 권리의 확립이나 행사, 방어를 위해 달리 불가피할 것.

7 (1) The processing is necessary—
(a)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a) for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b) for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conferred on any person by or under an enactment, or
(c) for the exercise of any functions of the Crown, a Minister of the Crown or a government department.

7 (1) 다음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할 것.
(a) 법의 집행을 위하거나,
(aa) 각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b) 법령에서 또는 그에 의거해 어떤 자에게라도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c) 왕실이나 왕실장관, 정부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 exclude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1) in such cases as may be specified, or
(b) provide that, in such cases as may be specified, the condition in subparagraph (1) is not to be regarded as satisfied unless such further condi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are also satisfied.

(2) 국무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a) 특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sub-para.(1)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b) 특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명령에 특정되는 추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이상 sub-para.(1)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7A (1) The processing—
(a) is either—
(i) the disclosure of sensitive personal data by a person as a member of an anti-fraud organisation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any arrangements made by such an organisation; or
(ii) any other processing by that person or another person of sensitive personal data so disclosed; and
(b)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fraud or a particular kind of fraud.

7A (1) 처리가 다음과 같을 것.
(a) 다음 둘 중 하나일 것과—
(i) 사기 방지 조직체의 구성원인 자에 의하거나 그러한 조직체의 주선에 따른 자에 의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이거나,
(ii) 그렇게 공개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그 자나 다른 자에 의한 기타의 처리.
(b) 사기나 특정한 유형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상 불가피할 것.

(2) In this paragraph "an anti-fraud organisation" means any unincorporated association, body corporate or other person which enables or facilitates any sharing of information to prevent fraud or a particular kind of fraud or which has any of these functions as its purpose or one of its purposes.

(2) 이 para.에서 "사기 방지 조직체"란 사기나 특정한 유형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시키는, 또는 이러한 기능을 그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중 하나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체, 또는 기타의 자를 의미한다.

8 (1) Th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medical purposes and is undertaken by—
(a) a health professional, or

8 (1) 그 처리가 의료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며 다음의 자에 의해 착수될 것.
(a) 보건전문가나,

(b) a person who in the circumstances owes a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equivalent to that which would arise if that person were a health professional.

(b) 상황에 따라 그가 보건전문가였다면 제기될 것과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는 자.

(2) In this paragraph "medical purposes" includes the purposes of preventative medicine, medical diagnosis, medical research, the provision of care and treatment and the management of healthcare services.

(2) 이 para.에서 "의료 목적"은 예방 의학, 의학적 진단, 의학적 연구, 간호와 치료의 제공, 건강관리 서비스의 관리를 포함한다.

9 (1) The processing—

(a) is of sensitive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as to racial or ethnic origin,

(b)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or keeping under review the existence or absence of equality of opportunity or treatment between persons of different racial or ethnic origins, with a view to enabling such equality to be promoted or maintained, and

(c) is carried out with appropriate safeguards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9 (1) 처리가 다음과 같을 것.

(a) 인종적, 민족적 출신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고,

(b) 서로 다른 인종적, 민족적 출신의 자들 간의 기회나 치료에 대한 평등의 존재나 부재를, 그러한 평등을 고취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식별하거나 계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또한

(c)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루어질 것.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specify circumstances in which processing falling within sub-paragraph (1)(a) and (b) is, or is not, to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c) to be carried out with appropriate safeguards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2) 국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sub-para.(a)와 (b)에 해당하는 처리가 sub-para.(1)(c)의 목적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특정할 수 있다.

10 Th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in circumstances specified in an order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10 개인정보가 이 para.의 목적상 국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명령에서 특정된 상황에서 처리될 것.

SCHEDULE 4

CASES WHERE THE EIGHTH PRINCIPLE DOES NOT APPLY

SCHEDULE 4

제8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

1 The data subject has given his consent to the transfer.

1 정보주체가 이전에 대한 동의를

2 The transfer is necessary—
(a)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roller, or
(b) for the taking of steps at the request of the data subject with a view to his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data controller.

2 이전이 다음을 위해 불가피할 것.
(a)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 간에 맺어진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나,
(b) 정보관리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정보주체의 요청을 위한 절차를 취하기 위해.

==========

3 The transfer is necessary—
(a) fo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between the data controller and a person other than the data subject which—
(i) is entered into at the request of the data subject, or
(ii) is in th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b) for the performance of such a contract.

3 그 이동이 다음을 위해 불가피할 것.
(a) 정보주체 외의 다른 자와 정보관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의 체결을 위해—
(i) 정보주체의 청약에 따른 것이나,
(ii) 정보주체의 이익이 되는 것.
(b)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4 (1) The transfer is necessary for reasons of substantial public interest.

(2)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specify—
(a) circumstances in which a transfer is to be taken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 to be necessary for reasons of substantial public interest, and
(b) circumstances in which a transfer which is not required by or under an enactment is not to be taken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1) to be necessary for reasons of substantial public interest.

4 (1) 중대한 공익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할 것.

(2) 국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다음을 명시할 수 있다.
(a) 썹(1)의 목적상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과,
(b) 썹(1)의 목적상 법령에서나 법령에 의거해 요구되지 아니하는 이전은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상황.

5 The transfer—
(a)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legal proceedings (including prospective legal proceedings),
(b)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legal advice, or
(c) is otherwis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exercising or defending legal rights.

5 그 이동이—
(a) (장래의 법적 소송을 포함한) 법적 소송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거나,
(b) 법적 조언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또는
(c) 그 외에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방어를 위해 불가피할 것.

6 The transfer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6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할 것.

7 The transfer is of part of the personal data on a public register and any conditions subject to which the register is open to inspection are

7 그 이동은 공적 기록상의 개인 데이터의 일부이며 그 기록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조건은 그 이동 이후에 공개되는, 또는 될 수 있는

complied with by any person to whom the data are or may be disclosed after the transfer.

8 The transfer is made on terms which are of a kind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as ensuring adequate safeguards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9 The transfer has been authorised by the Commissioner as being made in such a manner as to ensure adequate safeguards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data subjects.

모든 사람이 준수하여야 한다.

8 그 이동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장하는 정보보호위원에 의해 승인받을 경우.

9 그 이동을 시행할 자격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장하도록 하는 정보보호위원에게 주어진 경우.

SCHEDULE 5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AND THE DATA PROTECTION TRIBUNAL

PART I
THE COMMISSIONER

Status and capacity

1 (1) The corporation sole by the name of the Data Protection Registrar established by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shall continue in existence by the name of the [F132Information Commissioner].

(2) The Commissioner and his officers and staff are not to be regarded as servants or agents of the Crown.

Tenure of office

2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the Commissioner shall hold office for such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as may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his appointment.

(2) The Commissioner may be relieved of his office by Her Majesty at his own request.

(3) The Commissioner may be removed from of-

SCHEDULE 4
정보보호위원 및 정보보호법정

제 1 장
정보보호위원

지위 및 역할

1 (1) 『데이터 보호법 1984』에 의해 설립된 데이터 보호 등록관이라는 이름의 법인은 정보보호위원라는 이름으로 존속한다.

(2) 정보보호위원과 임원 및 직원은 왕의 대리인이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재직 기간

2 (1)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위원은 임명시에 결정되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 할 수 있다.

(2) 정보보호위원은 자신이 요청하여 여왕의 명령으로 재직을 중단할 수 있다.

(3) 정보보호위원은 양원으로부터의 칙어봉답문(Address)에 따라 여왕의 명령으로 직위

fice by Her Majesty in pursuance of an Address from both Houses of Parliament.

를 박탈당할 수 있다.

(4) The Commissioner shall in any case vacate his office—
(a) on completing the year of service in which he attains the age of sixty-five years, or
(b) if earlier, on completing his fifteenth year of service.

(4) 정보보호위원은 다음의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a) 65세의 정년을 채웠을 때
(b) 그 전의 경우 15년간의 재직 기간을 채웠을 때

(5) Subject to sub-paragraph (4), a person who ceases to be Commissioner on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office shall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but a person may not be re-appointed for a third or subsequent term as Commissioner unless,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person's re-appointment for such a term is desirable in the public interest.

(5) (4)항에 따라, 자신의 재직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정보보호위원을 그만두는 사람은 재임명 최우선 자가 된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사람의 재임명이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재임명되지 않는다.

Salary etc.

봉급 등

3 (1) There shall be paid—
(a) to the Commissioner such salary, and
(b) to or in respect of the Commissioner such pension,
as may be specified by a resolution of the House of Commons.

3 (1) 정보보호위원은 하원의 결의으로 명시될 수 있는
(a) 봉급이나
(b) 연금을
지급 받는다.

(2) A resolu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ay—
(a) specify the salary or pension,
(b) provide that the salary or pension is to be the same as, or calculated on the same basis as, that payable to, or to or in respect of, a person employed in a specified office under, or in a specified capacity in the service of, the Crown, or
(c) specify the salary or pension and provide for it to be increased by reference to such variables as may be specified in the resolution.

(2)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한 하원 결의는
(a) 봉급이나 연금을 명시하며
(b) 그 봉급이나 연금이 정부 행정에 따라 또는 이에 명시된 기능에 따라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또는 같은 근거로 산출됨을 규정한다.
(c) 그 봉급이나 연금을 명시하며 그 결의에 명시되는 값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3) A resolu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ay take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it is passed or from any earlier or later date specified in the resolution.

(3) 본 조항에 따른 결의는 통과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있거나 그 결의에 명시된 통과 이전이나 이후 해당 일로부터 효력을 지닐 수 있다.

(4) A resolu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ay make different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pension payable to or in respect of different holders of the office of Commissioner.

(4) 본 조항에 따른 결의는 정보보호위원의 각기 다른 임무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5) Any salary or pension payable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charged on and issued out of the Consolidated Fund.

(5) 본 조항에 따른 모든 봉급이나 연금은 통합기금(Consolidated Fund)이 맡아서 배포한다.

(6) In this paragraph "pension" includes an allowance or gratuity and any reference to the payment of a pension includes a reference to the making of payments towards the provision of a pension.

(6) 본 조항에서 "연금"은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하며, 연금에 대한 모든 언급은 연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을 의미한다.

Officers and staff

임원 및 직원

4 (1) The Commissioner—
(a) shall appoint a deputy commissioner [F133or two deputy commissioners], and
(b) may appoint such number of other officers and staff as he may determine.

4 (1) 정보보호위원은
(a) 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b) 기타 임원 및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1A) The Commissioner shall, when appointing any second deputy commissioner, specify which of the Commissioner's functions are to be performed,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5(1), by each of the deputy commissioners.]

(1A)

(2) The remuner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service of the persons appoint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2)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의 보수와 기타 근무 조건은 정보보호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3) The Commissioner may pay such pensions, allowances or gratuities to or in respect of the persons appointed under this paragraph, or make such payments towards the provision of such pensions, allowances or gratuities, as he may determine.

(3)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에 대한 연금이나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연금, 수당, 상여금 내역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 references in sub-paragraph (3) to pensions, allowances or gratuities to or in respect of the persons appointed under this paragraph include references to pensions, allowances or gratuities by way of compensation to or in respect of any of those persons

(4)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에 대한 연금이나 수당 또는 상여금에 대한 (3)항의 규정은 직위 박탈이나 해직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지급한 연금,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다.

who suffer loss of office or employment.

(5) Any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1)(b), (2) or (3)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F135 Secretary of State] .

(6) The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shall not require insurance to be effected by the Commissioner.

5 (1) The deputy commissioner [F136or deputy commissioners] shall perform the functions conferred by this Act [F137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on the Commissioner during any vacancy in that office or at any time when the Commissioner is for any reason unable to act.

(2) Without prejudice to sub-paragraph (1), any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Act [F138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may, to the extent authorised by him, be performed by any of his officers or staff.

Authentication of seal of the Commissioner

6 The application of the seal of the Commissioner shall be authenticated by his signature or by the signature of some other person authorised for the purpos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of documents issued by the Commissioner

7 Any document purporting to be an instrument issued by the Commissioner and to be duly executed under the Commissioner's seal or to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Commissioner shall be received in evidence and shall be deemed to be such an instrument unless the contrary is shown.

Money

8 The [F139 Secretary of State] may make payments to the Commissioner out of money provided by Parliament.

⑸ (1)항 (b)나 (2)항, 또는 (3)항의 결정은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⑹ 『고용주 책임 규정법(보상 보험) (Employers' Liability Act) 1969』는 정보보호위원에게 보험을 걸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1) 부위원은 정보보호위원이 부재중이거나 어떤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안에 감독관에 대해 본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1)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해 주어지는 정보보호위원의 모든 임무는 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한도까지 임원이나 직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정보보호위원의 날인 인증

6 정보보호위원의 날인은 그의 서명이나 그 목적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은 타인의 서명으로 인증된다.

정보보호위원이 발행한 문서의 인증

7 정보보호위원이 발행하고 정보보호위원나 정보보호위원을 대신한 정당한 날인에 의한 증서로 보이는 모든 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분명하게 수령하여 해당 문서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금

8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제공되는 자금을 정보보호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9 (1) All fees and other sums received by the Commissioner i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s under this Act [F140, under section 159 of the Consumer Credit Act 1974 or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shall be paid by him to the [F141 Secretary of State] .

(2) Sub-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e [Secretary of State] , with the consent of the Treasury, otherwise directs.

(3) Any sums recei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ub-paragraph (1) shall be paid into the Consolidated Fund.

Accounts

10 (1)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ommissioner—

(a) to keep proper accounts and other records in relation to the accounts,

(b) to prepare in respect of each financial year a statement of account in such form as the [F142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and

(c) to send copies of that statement to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on or before 31st August next following the end of the year to which the statement relates or on or before such earlier date after the end of that year as the Treasury may direct.

(2)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shall examine and certify any statement sent to him under this paragraph and lay copies of it together with his report thereon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3) In this paragraph “financial year” means a period of twelve months beginning with 1st April.

Application of Part I in Scotland

11 Paragraphs 1(1), 6 and 7 do not extend to Scotland.

9 (1) 정보보호위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나 기타 금액은 본 법령이나 『소비자신용법 1974』의 159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지급한다.

(2) (1)항은 국무장관이 재무성의 동의를 얻어 달리 지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통합기금에 지불되어야 한다.

회계

10 (1) 다음은 정보보호위원의 의무이다.

(a) 적절한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기타 기록을 유지한다.

(b) 각 회계연도의 회계기록을 국무장관이 지시한 형식으로 준비한다.

(c) 회계 기록 사본을 감사원장과 감사관에게 그 회계기록의 관련 연도 다음해 8월 3 1까지나 재무성에서 지시한 그 이전 날짜에 송부한다.

(2) 감사원장과 감사관은 본 항에 따라 송부된 회계기록을 검토, 확인하며 각 의회에 보고서와 함께 그 사본을 상정한다.

(3) 본 항에서 " 회계연도"란 4월 1일로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스코틀랜드에서 제 1장의 적용

11 1조 (1)항, 6조, 7조는 스코틀랜드에 확대적

용되지 않는다.

PART II
THE TRIBUNAL

Tenure of office

12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a member of the Tribunal shall hold and vacate his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his appointment and shall, on ceasing to hold office,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2) Any member of the Tribunal may at any time resign his office by notice in writing to the Lord Chancellor [F143(in the case of the chairman or a deputy chairman) or to the Secretary of State (in the case of any other member)].

(3) A person who is the chairman or deputy chairman of the Tribunal shall vacate his office on the day on which he attains the age of seventy years; but this sub-paragraph is subject to section 26(4) to (6) of the M31Judicial Pensions and Retirement Act 1993 (power to authorise continuance in office up to the age of seventy-five years).

Salary etc.

13 The [F144 Secretary of State] shall pay to the members of the Tribunal out of money provided by Parliament such remuneration and allowances as he may determine.

Officers and staff

14 The [F145 Secretary of State] may provide the Tribunal with such officers and staff as he thinks necessary for the proper discharge of its functions.

Expenses

15 Such expenses of the Tribunal as the [F146

제 2 장
정보보호법정

재직 기간

12 (1) 본 조항의 다음 규정들에 따라 심판원의 구성원은 그 임명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따라 재직, 퇴직하여야 하며, 재직을 마친 후에 재임용 적격자가 된다.

(2) 모든 심판원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의장이나 부의장의 경우) 대법원장이나 (기타 임원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임 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3) 심판원 의장이나 부의장은 70세가 되는 날짜에 퇴직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항은 (75세까지 재직 할 수 있는 권리)인 『법관의 연금 및 사퇴에 관한 법 1993』26조 ⑷항에서 ⑹항에 따른다.

봉급 등

13 국무장관은 심판원의 구성원에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보수와 수당을 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지급한다.

임원 및 직원

14 국무장관은 심판원이 그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원 및 직원을 두도록 할 수 있다.

비 용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shall be defray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ut of money provided by Parliament.

15 국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심판원의 유지 비용은 의회에서 지급되는 자금으로 국무장관이 지출한다.

PART III

. . . . . .

제 3 장

삭 제

SCHEDULE 6

APPEAL PROCEEDINGS

Hearing of appeals

1 For the purpose of hearing and determining appeals or any matter preliminary or incidental to an appeal the Tribunal shall sit at such times and in such places as the chairman or a deputy chairman may direct and may sit in two or more divisions. Constitution of Tribunal in national security cases

Constitution of Tribunal in national security cases

2 (1) The Lord Chancellor shall from time to time designate, from among the chairman and deputy chairmen appointed by him under section 6(4)(a) and (b), those persons who are to be capable of hearing appeals under section 28(4) or (6) [F148or under section 60(1) or (4)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2) A designation under sub-paragraph (1) may at any time be revoked by the Lord Chancellor.

[F149(3) The Lord Chancellor may make, or revoke, a designation under this paragraph only with the concurrence of all of the following —

(a) the Lord Chief Justice;

(b) the Lord President of the Court of

SCHEDULE 6

이의제기 절차

이의제기의 심리

1 항소나 항소 예비 문제나 부수 문제를 심문, 판결하기 위해 심판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지시하고 개회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구역에서의 장소와 시간에 개회해야 한다.

국가 안보 사건에서의 심판원의 구성

2 (1) 대법원장은 수시로 본문 6조⑷항(a)와 (b)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의장과 부의장 중에서 본문 28조 ⑷항이나 ⑹항에 따른 항소 심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지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3)

Session;

(c) the Lord Chief Justice of Northern Ireland.

(4) The Lord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may nominate a judicial office holder (as defined in section 109(4)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to exercise his functions under sub-paragraph (3) so far as they relate to a designation under this paragraph. (4)

(5) The Lord President of the Court of Session may nominate a judge of the Court of Session who is a member of the First or Second Division of the Inner House of that Court to exercise his functions under sub-paragraph (3) so far as they relate to a designation under this paragraph. (5)

(6) The Lord Chief Justice of Northern Ireland may nominate any of the following to exercise his functions under sub-paragraph (3) so far as they relate to a designation under this paragraph— (6)

(a) the holder of one of the offices listed in Schedule 1 to the Justice (Northern Ireland) Act 2002;

(b) a Lord Justice of Appeal (as defined in section 88 of that Act).]

[F1 **3** (1)] The Tribunal shall be duly constituted— **3** (1)

(a) for an appeal under section 28(4) or (6) in any case where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6(1) is excluded by rules under paragraph 7, or

(b) for an appeal under section 60(1) or (4)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if it consists of three of the persons designated under paragraph 2(1), of whom one shall be designated by the Lord Chancellor to preside.

[(2) The Lord Chancellor may designate a person to preside under this paragraph only with the concurrence of all of the following— (2)

(a) the Lord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b) the Lord President of the Court of Session;

(c) the Lord Chief Justice of Northern Ireland.

(3) The Lord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may nominate a judicial office holder (as defined in section 109(4)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to exercise his functions under this paragraph.

(3)

(4) The Lord President of the Court of Session may nominate a judge of the Court of Session who is a member of the First or Second Division of the Inner House of that Court to exercise his functions under this paragraph.

(4)

(5) The Lord Chief Justice of Northern Ireland may nominate any of the following to exercise his functions under this paragraph—

(a) the holder of one of the offices listed in Schedule 1 to the Justice (Northern Ireland) Act 2002;

(b) a Lord Justice of Appeal (as defined in section 88 of that Act).]]

(5)

Constitution of Tribunal in other cases

기타 경우 심판원의 구성

4 (1) Subject to any rules made under paragraph 7, the Tribunal shall be duly constituted for an appeal under section 48(1), (2) or (4) if it consists of—

(a) the chairman or a deputy chairman (who shall preside), and

(b) an equal number of the members appointed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a) and (b) of section 6(6).

4 (1) 7조에 따라 규정된 모든 규칙에 따라 심판원이 다음으로 구성된 경우 본문 48조 (1)항, (2)항, 또는 ⑷항에 따른 상소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다.

(a) (사회자가 되는) 의장이나 부의장

(b) 본문 6조 ⑹항(a)와 (b)와 일치하게 각각 임명된 동수의 심판원 구성원

[F153(1A) Subject to any rules made under paragraph 7, the Tribunal shall be duly constituted for an appeal under section 57(1) or (2)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if it consists of—

(a) the chairman or a deputy chairman (who shall preside), and

(b) an equal number of the members appointed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aa) and (bb) of section 6(6).]

(1A)

(2) The members who are to constitute the Tribunal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1)항과 일치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심판원은 의장이나 의장이 활동할 수 없는 이유가

(1) [F154or (1A)] shall be nominated by the chairman or, if he is for any reason unable to act, by a deputy chairman.

있을 때는 부의장에 의해 지명된다.

Determination of questions by full Tribunal

5 The determination of any question before the Tribunal when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r 4 shall be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hearing the appeal.

전 심판원에 의한 현안의 판결

5 3항 및 4항에 따라 구성된 심판원에게 제시된 현안의 판결은 그 항소를 심문하는 심판원 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Ex parte proceedings

6 (1) Subject to any rules made under paragraph 7,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in respect of an appeal under section 28(4) or (6) shall be exercised ex parte by one or more persons designated under paragraph 2(1).

(2) Subject to any rules made under paragraph 7,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in respect of an appeal under section 48(3) shall be exercised ex parte by the chairman or a deputy chairman sitting alone.

일방당사자 소송

6 (1) 7조의 규정에 따라, 본문 28조 ⑷항이나 ⑹항의 항소에서 심판원의 재판권은 2조 (1)항에 따라 지명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방의 당사자에 대해 행사되어야 한다.

(2) 7조의 규정에 따라 본문 48조 (3)항에 따른 항소에서 심판원의 재판권은 단독으로 개회한 의장이나 부의장이 일방 당사자에 대해 행사한다.

Rules of procedure

7 (1) The [F155 Secretary of State] may make rules for [F156regulating—
(a)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appeal conferred—
(i) by sections 28(4) and (6) and 48, and
(ii) by sections 57(1) and (2) and section 60(1) and (4)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nd
(b)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Tribunal.]

(2) Rules under this paragraph may in particular make provision—
(a) with respect to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nd the burden of proof on an appeal,
[F157(aa) for the joinder of any other person as a party to any proceedings on an

소송 절차 규칙

7 (1) 국무장관은 명령으로 본문 28조 ⑷항이나 ⑹항, 48조에 의해 주어진 항소권과 심판원의 소송절차를 조정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본 항에 따른 규칙은 특히 다음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a)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 시 증거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
(aa)
(ab)
(b) 목격자의 소환(스코틀랜드에서는 소환

appeal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b) for the hearing of an appeal under this Act with an appeal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b) for the summoning (or, in Scotland, citation) of witnesses and the administration of oaths,

(c) for securing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material used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d) for the inspection, examination, operation and testing of any equipment or material u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 for the hearing of an appeal wholly or partly in camera,

(f) for hearing an appeal in the absence of the appellant or for determining an appeal without a hearing,

(g) for enabling an appeal under section 48(1) against an information notice to be determined by the chairman or a deputy chairman,

(h) for enabling any matter preliminary or incidental to an appeal to be dealt with by the chairman or a deputy chairman,

(i) for the awarding of costs or, in Scotland, expenses,

(j) for the publication of reports of the Tribunal's decisions, and

(k) for conferring on the Tribunal such ancillary powers as the [Secretary of State] thinks necessary for the proper discharge of its functions.

장)과 선서에 대한 규정

(c)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사용된 문서와 단서의 보안에 대한 규정

(d)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련해 사용된 장비나 도구의 검열, 검토, 동작, 시험에 대한 규정

(e) 전체적 또는 부분적 비공개 상소 심문을 위한 규정

(f) 상소인 불참시 항소 심문과 심문 부재 항소의 판결을 위한 규정

(g) 의장이나 부의장에 의해 결정된 고소장에 대해 48조 (1)항에 따른 상소를 가능케 하기 위한 규정

(h) 상소 예비 사건이나 부수 사건을 의장이나 부의장이 다루게 하기 위한 규정

(i) 소송비용, 스코틀랜드의 경우 경비의 산정을 위한 규정

(j) 심판원의 판결 공포를 위한 규정

(k) 국무장관이 심판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심판원의 부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

(3) In making rules under this paragraph which relate to appeals under section 28(4) or (6)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have regard, in particular, to the need to secure that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3) 본문 28조 ⑷항이나 ⑹항에 따른 상소에 관련된 본 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때는 국무장관 이 특히 정보가 공익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Obstruction etc.

8 (1) If any person is guilty of any act or omission in relation to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which, if those proceedings were proceedings before a court having power to

의사 방해 및 기타

8 (1) 개인이 심판원에 대한 소송에서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이나 부작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그 소송이 법정 모독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

commit for contempt, would constitute contempt of court, the Tribunal may certify the offence to the High Court or, in Scotland, the Court of Session.

(2) Where an offence is so certified, the court may inquire into the matter and, after hearing any witness who may be produced against or on behalf of the person charged with the offence, and after hearing any statement that may be offered in defence, deal with him in any manner in which it could deal with him if he had committed the like offence in relation to the court.

앞의 소송일 경우, 심판원은 해당 범법 사실을 고등 법원이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대심원 민사부에서 인증할 수 있다.

(2) 범법 사실이 인증된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범법행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또는 그를 대변하는 목격자의 심문을 들은 후 그 사람의 변호 진술을 듣는다. 그 후 그가 법원에 대해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범했다면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SCHEDULE 7
MISCELLANEOUS EXEMPTIONS

Confidential references given by the data controller

1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section 7 if they consist of a reference given or to be given in confidence by the data controller for the purposes of—
(a) the education, training or employment, or prospective education, training or employment, of the data subject,
(b) the appointment, or prospective appointment, of the data subject to any office, or
(c) the provision, or prospective provision, by the data subject of any service.

Armed forces

2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combat effectiveness of any of the armed forces of the Crown.

SCHEDULE 7
기타 면제 조항

정보관리자에 의해 행해지는 신용 위탁

1 개인 데이터는 다음을 위해 정보관리자가 행하는 또는 행해야 하는 신용 위탁일 경 우 본문 7조에서 예외가 된다.
(a) 정보주체의 교육, 훈련, 고용, 또는 예상 교육, 훈련, 또는 고용을 위해
(b) 정보주체를 어떤 임무에 임명, 또는 이후에 임명하기 위해
(c) 정보주체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앞으로 제공하기 위해

군대

2 개인 데이터는 주요 정보 규약의 적용으로 인해 정부 군대의 효과적인 전투력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그 규약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Judicial appointments and honours

3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a) assessing any person's suitability for judicial office or the office of Queen's Counsel, or
(b) the conferring by the Crown of any honour [F158or dignity],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법조인의 임명과 훈장

3 다음을 위해 처리된 개인 데이터는
(a) 어떤 사람이 법률 사무소나 왕실 고문 변호사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이거나
(b) 정부가 훈장 기타 명예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Crown employment and Crown or Ministerial appointments

[F1594 (1) The [F160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assessing any person's suitability for—
(a) employment by or under the Crown, or
(b) any office to which appointments are made by Her Majesty, by a Minister of the Crown or by a [F161Northern Ireland authority].

[F162(2) In this paragraph "Northern Ireland authority" means the First Minister, the deputy First Minister, a Northern Ireland Minister or a Northern Ireland department.]

정부 고용인, 정부 관리나 장관 임명자

4 (1) 국무장관은 명령으로 어떤 사람이 다음의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처리된 개인 데이터를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a) 정부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정부의 지휘 하에 일하는 고용인의 직무
(b) 여왕이나 각료, 또는 북아일랜드 행정부서에 의해 정해진 임명자의 직무

(2)

Management forecasts etc.

5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management forecasting or management planning to assist the data controller in the conduct of any business or other activity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conduct of that business or other activity.

경영 예측 및 기타

5 정보관리자의 업무 수행이나 기타 활동시 그를 도와 경영 예측이나 계획 수립을 위해 처리된 개인 데이터는 주요 정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그 업무의 수행이나 기타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로부터 예외가 된다.

Corporate finance

6 (1) Wher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for the purposes of, or in connection with, a corporate finance service provided by a relevant person—

법인 금융

6 (1) 개인 데이터가 관계인에 의해 제공되는 법인 금융 서비스를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경우
(a)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주요 정보

(a) the data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either—
  (i)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could affect the price of any instrument which is already in existence or is to be or may be created, or
  (ii) the data controller reasonably believes that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to the data could affect the price of any such instrument, and
(b) to the extent that the data are not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by virtue of paragraph (a), they are exempt from those provisions if the exemption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an important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 of the United Kingdom.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i) 그 데이터에 이 규약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증서(instrume nt)나 이후에 작성될 수 있는 증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ii) 정보관리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러한 증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타당하게 판단하는 경우
(b) (a)에 의해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영국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주요 정보 규약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b)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specify—
(a)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whether exemption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an important economicor financial interest of the United Kingdom, or
(b) circumstances in which exemption from those provisions is, or is not, to be taken to be required for that purpose.

(2) (1)항 (b)의 목적상 국무장관은 명령으로 다음을 명시할 수 있다.
(a) 영국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주요 정보 규약으로부터 예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b) 그러한 예외가 필요한 목적에 요구되는, 또는 요구되지 않는 조건.

(3) In this paragraph—

(3) 본 항에서

"corporate finance service" means a service consisting in—
(a) underwriting in respect of issues of, or the placing of issues of, any instrument,
(b) advice to undertakings on capital structure, industrial strategy and related matters and advice and service relating to mergers and the purchase of undertakings, or
(c) services relating to such underwriting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a);

"법인 금융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a) 증서에 대한, 또는 발행된 증서의 인수
(b)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관련된 자금 구조, 사업 전략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
(c) (a)에서 언급된 인수와 관련된 서비스

"instrument" means any instrument listed in [F164section C of Annex I to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markets

"증서"은 『투자 서비스 법규(Investme nt Se rvice Regulation) 1995』Schedule1에 정해진 것과 같이 보안분야의 투자 서비스 (93/22/EEC)에 대한 의회령 Schedule(Annex

in financial instruments]F165. . . ;

"price" includes value;

"relevant person" means—

(a) [F166any person who, by reason of any permission he has under Part IV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is abletocarry on a corporate finance service without contravening the general prohibi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9 of that Act;

(b) an EEA firm of the kind mentioned in paragraph 5(a) or (b) of Schedule 3 to that Act whichhasqualified for authorisation under paragraph 12 of that Schedule, and may lawfully carry on a corporate finance service;

(c) any person who is exempt from the general prohibition in respect of any corporate finance service—

(i) as a result of an exemption order made under section 38(1) of that Act, or

(ii) by reason of section 39(1) of that Act (appointed representatives);

(d) any person, not falling within paragraph (a), (b) or (c) who may lawfully carry onacorporate finance service without contravening the general prohibition;]

(e) any person who,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provides to his employer a service falling within paragraph (b) or (c) of the definition of "corporate finance service", or

(f) any partner who provides to other partners in the partnership a service falling within either of those paragraphs.

to the Council Dire ctive)의 B조에 열거된 문서들을 의미한다.

"가격(price)"은 가치(va lue)를 포함한다.

"관계인"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금융 서비스법(Finacia l Se rvice Act) 1986』제 1부 3장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제 1부 4장에 따라 예외가 되는 사람

(b) 위 법의 Schedule 1, 제 3부나 4부에 속하지 않으면서, 위 법에서 허가를 필요로하는 사람

(c) 『투자 서비스법 1995』제 3법규에 의해 주어진 의미 내에서의 모든 유럽 투자회사

(d) 고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법인 금융 서비스"의 정의인 (b)와 (c)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고용자에게 제공하는 사람

(e) 합명회사의 경우 타 당사자에게 위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쪽 당사자

(f)

Negotiations

7 Personal data which consist of records of the intentions of the data controller in relation to any negotiations with the data subject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n any case to the extent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ose negotiations.

협상

7 정보주체와의 협상에 관련된 정보관리자의 의도를 담은 기록으로 구성된 개인 데 이터는 주요 정보 규정의 적용이 그 협상에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요 정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Examination marks

8 (1) Section 7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2) to (4) in the case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mark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ed by a data controller—

(a)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sults of an academic, professional or other examination or of enabling the results of any such examination to be determined, or

(b) in consequence of the determination of any such results.

(2) Where the relevant day falls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are announced, the period mentioned in section 7(8) shall be extended until—

(a) the end of five months beginning with the relevant day, or

(b) the end of forty days beginning with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whichever is the earlier.

(3) Where by virtue of sub-paragraph (2) a period longer than the prescribed period elapses after the relevant day before the request is complied with,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pursuant to the request shall be supplied both by reference to the data in question at the time when the request is received and (if different) by reference to the data as from time to time held in the period beginning when the request is received and ending when it is complied with.

(4)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results of an examination shall be treated as announced when they are first published or (if not published) when they are first made available or communicated to the candidate in question.

(5) In this paragraph— "examination" includes any process for determining the knowledge, intelligence, skill or ability of a candidate by reference to his performance in any test, work or other activity; "the prescribed peri-

검토 표시

8 (1) 섹7은 개인 데이터가 다음을 위해 정보관리자에 의한 표시나 다른 정보로 구성 된 경우에 (2)항과 ⑷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효력을 지닌다.

(a) 학문적, 직업적, 또는 기타의 검토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b) 그러한 결과 판정을 계속했을 때의 영향

(2) 관련 일자가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날 이전에 해당할 때, 본문 7조 ⑻항에 언급된 다음의 기간 중 이른 날짜까지 연장된다.

(a) 관련 일자로 시작해서 5개월이 끝날 때

(b) 발표 당일로 시작해서 14일이 끝날 때

(3) (2)항에 따라 그 요청에 대한 관련 일자 이후에 규정된 기간이상의 연장 기간과 그 요청에 따라 주어지는 정보는 그 요청이 접수되는 때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되는 때에 시작해서 이행되는 때에 끝나는 기간 동안에 수 시로 그 데이터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⑷ 본 조항의 목적상 검토 결과는 그것이 처음 공표되는 시기 또는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지원자가 처음 사용할 수 있게되고 이를 전달받은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취급한다.

⑸ 본 조항에서 "검토"는 그의 모든 시험, 작업, 또는 기타활동 수행능력에 대하여 해당자의 지식, 지성, 기술, 능력을 판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규정된 기간"은 해당 개인 데이터에 대하여 본문 7조에서

od" means forty days or such other period as is for the time being prescribed under section 7 in relation to the personal data in question; "relevant day"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7.

임시로 규정될 수 있는 14일이나 기타의 기간을 의미한다. "관련 일자"는 본문 7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Examination scripts etc.

9 (1) Personal data consisting of information recorded by candidates during an academic, professional or other examination are exempt from section 7.

(2) In this paragraph "examinat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agraph 8.

검토안 및 기타

9 (1) 학문적, 직업적, 또는 기타의 검토 기간 동안 해당자에 의해 기록된 정보로 구성된 개인 데이터는 본문 7조에서 예외가 된다.

(2) 본 항에서 "검토"는 8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10 Personal data are exempt from the subject information provisions if the data consist of information in respect of which a claim to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F167or, in Scotland, to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could be maintained in legal proceedings.

법률가의 직업적 특권

10 법률가의 직업적 특권, 또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고객과 법률전문가 사이의 비밀 보장에 대한 항소가 법률 소송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개인 데이터는 주요 정보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Self-incrimination

11 (1) A person need not comply with any request or order under section 7 to the extent that compliance would, by revealing evidence of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other than an offence under this Act, expose him to proceedings for that offence.

(2) Information disclosed by any person in compliance with any request or order under section 7 shall not be admissible against him in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유죄 인정

11 (1) 본 법령에 따른 범법 사항 이외의 어떤 범법 사실의 증거를 드러내어 본문 7조에 따른 요청이나 명령에 한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 범법 사실에 대한 재판에 회부된다.

(2) 본문 7조에 따른 요청이나 명령을 준수하는 사람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본 법령에 따른 범법 사항에 대한 소송에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

SCHEDULE 8

TRANSITIONAL RELIEF

SCHEDULE 8

과도기적 보호

PART I

INTERPRETATION OF SCHEDU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personal data are "eligible data" at any time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t that time subject to processing which was already under way immediately before 24th October 1998.

(2) In this Schedule— "eligible automated data" means eligible data which fall within paragraph (a) or (b)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eligible manual data" means eligible data which are not eligible automated data;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means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commencement of this Schedule and ending with 23rd October 2001; "the second transitional period" means the period beginning with 24th October 2001 and ending with 23rd October 2007.

제1장

Schedule의 해석

1 (1) 본 Schedule의 목적상, 개인데이터는 1998년 10월 24일 이전 어느 시기에 해해진 처리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언제나 "적격의 데이터"이다

(2) 본 Schedule에서 "적격의 자동화된 데이터"란 본문 1조 (1)항의 "데이터"의 정의 (a),(b)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 "는 적절히 자동화되지 않은 적격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제1과도기 "는 본 Schedule의 발효로 시작해서 200 1년 10월 23일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2과도기"는 200 1년 10월 24일로 시작하여 2007년 10월 23일 끝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PART II

EXEMPTIONS AVAILABLE BEFORE 24TH OCTOBER 2001

Manual data

2 (1) Eligible manual data, other than data forming part of an accessible record, are exempt from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Parts II and III of this Act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2)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to eligible manual data to which paragraph 4 applies.

3 (1) This paragraph applies to—

(a) eligible manual data forming part of an accessible record, and

(b) personal data which fall within paragraph (d)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but which,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processing which was already under way immediately before 24th October 1998, are not eligible data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2)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data to

제 2 장

2001년 10월 이전에 적용가능한 예외조항

수기 데이터

2 (1) 접근 가능한 기록의 형태를 가진 데이터가 아닌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는 첫 번째 과도기 동안 데이터 보호 원칙과 본 법령의 2장과 3장으로부터 제외된다.

(2) 본 항은 4조가 적용되는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3 (1) 본 항은 다음에 적용된다.

(a) 접근 가능한 기록의 일부가 되는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

(b) 본문 1조 (1)항의 정의 (d)에 해당하지만 1998년 10월 24일 이전의 어느 시기에 행해진 처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 Schedule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 데이터 .

(2) 첫 번째 과도기 동안에 본 항이 적용되는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are exempt from—
(a)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except the sixth principle so far as relating to sections 7 and 12A,
(b) Part II of this Act, except—
(i) section 7 (as it has effect subject to section 8) and section 12A, and
(ii) section 15 so far as relating to those sections, and
(c) Part III of this Act.

데이터는 다음으로부터 제외 된다.
(a) 본문 7조와 12A에 관련된 경우 제 6 원칙을 제외한 데이터 보호 원칙
(b) 다음을 제외한 본 법령 제 2장
(i)(본문 8조에 따른 효력을 가지는 경우) 본문 7조와 12A
(ii) 위 조항에 연관된 15조
(c) 본 법령의 제 3장

4 (1) This paragraph applies to eligible manual data which consist of information relevant to the financial standing of the data subject and in respect of which the data controller is a credit reference agency.

4 (1) 본 항은 정보주체의 경제적 상황에 관련된 정보로 구성된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와 정보관리자가 신용 대리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2)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data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are exempt from—
(a)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except the sixth principle so far as relating to sections 7 and 12A,
(b) Part II of this Act, except—
(i) section 7 (as it has effect subject to sections 8 and 9) and section 12A, and
(ii) section 15 so far as relating to those sections, and
(c) Part III of this Act.

(2) 첫 번째 과도기 동안 본 항이 적용되는 데이터는 다음으로부터 제외 된다.
(a) 데이터 보호 원칙. 단 본문 제 7조와 12A와 관련된 경우 제 6원칙은 제외한다.
(b) 본 법령 제 2장, 단 다음을 제외한다.
(i)(본문 8조와 9조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본문 7조와 12A
(ii)위 조항에 관련된 경우 15조
(c) 본 법령 제3장

Processing otherwise than by reference to the data subject

5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part from paragraph 1), eligible automated data are not to be regarded as being “processed” unless the processing is by reference to the data subject.

정보주체의 위탁에 의하지 않은 처리

5 첫 번째 과도기 동안 (1장을 제외한) 본 법령에 따라 적격의 자동화 데이터는 그 처리가 정보주체의 위탁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Payrolls and accounts

6 (1) Subject to sub-paragraph (2), eligible automated data processed by a data controller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rposes—
(a) calculating amounts payable by way of remuneration or pensions in respect of

임금 및 회계

6. (1) 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목적으로 적격의 자동 데이터를 처리한다.
(a) 고용이나 직무에 대해 봉급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또는 이들 봉급이나 연금과 같은 것의 합계 해당하는 금액

service in any employment or office or making payments of, or of sums deducted from, such remuneration or pensions, or

(b) keeping accounts relating to any business or other activity carried on by the data controller or keeping records of purchases, sales or other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at the requisite payments are made by or to him in respect of those transactions or for the purpose of making financial or management forecasts to assist him in the conduct of any such business or activity,

are exempt from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Parts II and III of this Act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을 지급하기 위해

(b) 정보관리자가 수행한 모든 업무나 기타 활동에 관련된 회계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업무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 매출, 또는 기타 업무 처리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정보관리자가 어떤 재정적, 경영적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해 재정적, 금융적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과도기 동안 본 법령 제 2장과 3장 그리고 데이터 보호 원칙으로부터 제외 된다.

(2) It shall be a condition of the exemption of any eligible automated data under this paragraph that the data are not processed for any other purpose, but the exemption is not lost by any processing of the eligible data for any other purpose if the data controller shows that he had taken such care to prevent it as in all the circumstances was reasonably required.

(2)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본 항의 적격의 자동 데이터에 대한 예외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정보관리자가 모든 상황에서 이의 방지를 위해 정당하게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면 그 예외 조항은 다른 목적을 위한 적격의 데이터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Data processed only for one or more of the purposes mentioned in sub-paragraph (1)(a) may be disclosed—

(a) to any person, other than the data controller, by whom the remuneration or pensions in question are payable,

(b)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ctuarial advice,

(c) for the purpose of giving information as to the persons in any employment or office for use in medical research into the health of, or injuries suffered by, persons engaged in particular occupations or working in particular places or areas,

(d) if the data subject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has requested or consented to the disclosure of the data either generally or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isclosure in question is made, or

(e) if the person making the disclosure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3) (1)항 (a)에 언급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 처리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공개될 수 있다.

(a) 해당 봉급이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정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게

(b) 보험 계리인의 조언은 얻기 위해

(c)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위해 어떤 고용이나 직무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 정보주체나 그를 대신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도는 그 데이터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e)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람이 (d)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disclosure falls within paragraph (d).

(4) Data processed for any of the purposes mentioned in sub-paragraph (1) may be disclosed —

(a) for the purpose of audit or where the disclosure is for the purpose only of giving information about the data controller's financial affairs, or

(b) in any case in which disclosure would be permitted by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art of this Act if sub-paragraph (2) were included among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5) In this paragraph "remuneration" includes remuneration in kind and "pensions" includes gratuities or similar benefits.

Unincorporated members' clubs and mailing lists

7 Eligible automated data processed by an unincorporated members' club and relating only to the members of the club are exempt from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Parts II and III of this Act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8 Eligible automated data processed by a data controller only for the purposes of distributing, or recording the distribution of, articles or information to the data subjects and consisting only of their names, addresses or other particulars necessary for effecting this Act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9 Neither paragraph 7 nor paragraph 8 applies to personal data relating to any data subject unless he has been asked by the club or data controller whether he objects to the data relating to him being processed as mentioned in that paragraph and has not objected.

10 It shall be a condition of the exemption of any data under paragraph 7 that the data are not disclosed except as permitted by paragraph 11 and of the exemption under paragraph 8 that the data are not proces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mentioned in that paragraph or as permitted by paragraph 11, but—

⑷ (1) 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처리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공개 될 수 있다.

(a) 회계 감사를 목적으로 또는 데이터가 정보관리자의 재정적 업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된 경우

(b)(2)항이 비공개 규정 중에 포함되는 경우 그 데이터는 본 법령 본 장의 기타 규정에 의해 공개가 허용된 경우

⑸ 본 항에서 "봉급"은 현물의 보수를 말하며 "연금"은 상여금이나 유사한 수익을 말한다.

비법인 회원 단체 및 우편 주소

7 비법인 회원 단체에 의해 그 단체의 회원에만 관련되어 처리되는 데이터는 첫 번째 과도기 동안 데이터 보호 원칙과 본 법령의 2장 및 3장으로부터 제외된다.

8 정보주체의 정보나 기사를 보급하거나 기록할 목적 만으로 정보관리자가 처리하며, 이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이름, 주소 또는 다른 세부 사항으로만 구성된 적격의 자동 데이터는 첫 번째 과도기 동안 데이터 보호 원칙과 본 법령 2장 및 3장으로부터 제외된다.

9 정보주체가 비법인 단체나 정보관리자에 의해 요구받지 않으면 7조나 8조 중 어느 것도 자신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정보주체가 그 데이터가 7조와 8조에 언급된 처리를 반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10 11조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7조에 따른 모든 데이터의 예외 조건이 되며 8조에 언급되거나 11조에서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8조에 따른 예외 조건이 된다. 그러나 정보관리자가 모든 상황에서 제기된 합당한 요구에 따라 다음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a) the exemption under paragraph 7 shall not be lost by any disclosure in breach of that condition, and
(b) the exemption under paragraph 8 shall not be lost by any processing in breach of that condition,

if the data controller shows that he had taken such care to prevent it as in all the circumstances was reasonably required.

11 Data to which paragraph 10 applies may be disclosed—
(a) if the data subject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has requested or consented to the disclosure of the data either generally or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isclosure in question is made,
(b) if the person making the disclosure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disclosure falls within paragraph (a), or
(c) in any case in which disclosure would be permitted by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art of this Act if paragraph 8 were included among the non-disclosure provisions.

Back-up data

12 Eligible automated data which are processed only for the purpose of replacing other data in the event of the latter being lost, destroyed or impaired are exempt from section 7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Exemption of all eligible automated data from certain requirements

13 (1) During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eligible automated data are exempt from the following provisions—
(a)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pliance with—
(i) paragraph 2 of Part II of Schedule 1,
(ii) the conditions in Schedule 2, and
(iii) the conditions in Schedule 3,
(b) the seventh data protection principle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

(a) 7조에 따른 예외 조항은 그 조건을 위반한 정보 공개에 의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b) 8조에 따른 예외 조항은 그 조건을 위반한 처리에 의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11 10조가 적용되는 데이터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a) 정보주체(또는 그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가 일반적으로 또는 해당 데이터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b)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람이 그 데이터의 공개가 (a)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c) 8조가 비공개 규약에 포함될 때 그 데이터의 공개가 본 법령의 기타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

백업 데이터

12 나중에 분실, 파괴, 수정되는 경우의 다른 데이터로 교체할 목적으로만 처리된 적격의 자동 데이터는 첫 번째 과도기 동안에 본문 7조로부터 제외된다.

특정 요건에 의한 모든 적격의 자동 데이터에 관한 예외 조항

13 (1) 첫 번째 과도기 동안에 적격의 자동 데이터는 다음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a)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 보호 제 1원칙
(i) Schedule 1의 제2장 2조
(ii) Schedule 2의 조건
(iii) Schedule 3의 조건
(b) Schedule1의 제 2장 12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 보호 제 7원칙
(c) 데이터 보호 제 8원칙

pliance with paragraph 12 of Part II of Schedule 1;
(c) the eighth data protection principle,
(d) in section 7(1), paragraphs (b), (c)(ii) and (d),
(e) sections 10 and 11,
(f) section 12, and
(g) section 13, except so far as relating to—
(i) any contravention of the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
(ii) any disclosu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controller,
(iii) loss or destruction of data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controller, or
(iv) processing for the special purposes.

(d) 본문 7조 (1)항의 (b), (c)의 (ii)와 (d)
(e) 본문 10조와 11조
(f) 본문 12조
(g) 다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본문 13조
(i) 데이터 보호 제 4원칙의 위반
(ii) 정보관리자의 동의가 없는 공개
(iii) 정보관리자의 동의가 없는 데이터의 손실이나 파괴
(iv) 특수 목적의 처리

(2) The specific exemptions conferred by sub-paragraph (1)(a), (c) and (e) do not limit the data controller's general duty under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to ensure that processing is fair.

(2) (1)항 (a), (c), (e)에 의해 부여된 특수 예외는 데이터의 처리가 공정해야 하는 데이터 보호 제 1원칙에 따른 정보관리자의 일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PART III

EXEMPTIONS AVAILABLE AFTER 23RD OCTOBER 2001 BUT BEFORE 24TH OCTOBER 2007

제 3 장

2001년 10월 23일 이후부터 2007년 10월 24일 전까지 적용가능한 예외

14 (1) This paragraph applies to—
(a) eligible manual data which were held immediately before 24th October 1998, and
(b) personal data which fall within paragraph (d)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but do not fall within paragraph (a) of this sub-paragraph,
but does not apply to eligible manual data to which the exemption in paragraph 16 applies.

14 (1) 본 항은 다음에 적용된다.
(a) 1998년 10월 24일 이전에 기록된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
(b) 본문 1조 (1)항의 "데이터"의 정의인 (d)에 해당하지만 본 항의 (a)에 해당하지 않는 개 인 데이터
그러나 16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During the second transitional period, data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are exempt from the following provisions—
(a)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except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pliance with paragraph 2 of Part II of Schedule 1,
(b)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c) section 14(1) to (3).

(2) 두 번째 과도기 동안 본 조항이 적용되는 데이터는 다음의 규정에서 제외 된다.
(a) Schedule 1의 제 2장 2조에 부합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데이터 보호 제 1원칙
(b) 데이터 보호 제 2, 3, 4, 5 원칙
(c) 본문 14조 (1)에서 (3)항 까지

[14A (1) This paragraph applies to personal data which fall within paragraph (e) of the definition of “data” in section 1(1) and do not fall within paragraph 14(1)(a), but does not apply to eligible manual data to which the exemption in paragraph 16 applies.

(2) During the second transitional period, data to which this paragraph applies are exempt from—

(a) the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 and

(b) section 14(1) to (3).]

(2)

PART IV

EXEMPTIONS AFTER 23RD OCTOBER 2001 FOR HISTORICAL RESEARCH

15 In this Part of this Schedule “the relevant conditions”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33.

16 (1) Eligible manual data which are processed only for the purpose of historical research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ditions are exempt from the provis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 (2) after 23rd October 2001.

(2)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are—

(a)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except in so far as it requires compliance with paragraph 2 of Part II of Schedule 1,

(b)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c) section 14(1) to (3).

17 (1) After 23rd October 2001 eligible automated data which are processed only for the purpose of historical research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ditions are exempt from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to the extent to which it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in Schedules 2 and 3.

(2) Eligible automated data which are processed —

(a) only for the purpose of historical research,

(b)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

제 4 장

역사적 연구를 위한 200 1년 10월 23일 이후의 예외 조항

15 Schedule의 본 장에서 "관련 조건"은 본문 33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6 (1) 관련 조건에 따라 역사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처리된 적격의 수작업 데이터는 2001년 10월 23일 이후에 (2)항에서 명시된 규정에서 제외된다.

(2) (1)항에서 언급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Schedule1의 제 2장 2조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데이터 보호 제 1원칙

(b) 데이터 보호 제 2, 3, 4, 5 원칙

(c) 본문 14조 (1)에서 (3)항까지

17 (1) 2001년 10월 23일 이후에 관련 조건에 따라 역사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처리된 적격 의 수작업 데이터는 Schedule 2와 3의 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 보호 제 1원칙으로부터 제외 된다.

(2) 다음과 같이 처리된 적격의 자동 데이터는

(a) 역사적 목적

(b) 관련 조건

(c) 정보주체의 위탁에 의하지 않고 달리 처리된 경우

ditions, and

(c) otherwise than by reference to the data subject,

are also exempt from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after 23rd October 2001.

(3)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are—

(a) the first data protection principle except in so far as it requires compliance with paragraph 2 of Part II of Schedule 1,

(b)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c) section 14(1) to (3).

18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f this Schedule personal data are not to be treated as processed otherwise than for the purpose of historical research merely because the data are disclosed—

(a) to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historical research only,

(b) to the data subject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c) at the request, or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or a person acting on his behalf, or

(d)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disclosure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disclosure falls within paragraph (a), (b) or (c).

PART V

EXEMPTION FROM SECTION 22

19 Processing which was already under way immediately before 24th October 1998 is not assessable processing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2.

2001년 10월 23일 이후 (3)항에 언급된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3) (2)항에서 언급한 규정은

(a) Schedule 1의 제 2장 2조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 보호 제 1원칙에서 예외가 된다.

(b) 데이터 보호 제 2, 3, 4, 5 원칙

(c) 본문 14조 (1)에서 (3)항까지

18 Schedule의 본 장의 목적상, 개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공개된 경우 역사적 목적 이외로 처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a) 역사적 연구의 목적을 위한 사람에게

(b) 정보주체나 그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c) 정보주체나 그를 대신하는 사람의 요구나 동의에 의해서

(d) 데이터를 공개한 사람이 (a), (b), (c)에 해당하는 데이터 공개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 5 장

제22조에 대한 예외

19 1998년 10월 23일 직전에 행해진 처리는 본문 22조의 목적상의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다.

SCHEDULE 9

POWERS OF ENTRY AND INSPECTION

Issue of warrants

SCHEDULE 9

진입 및 수색권

영장 발급

1 (1) If a circuit judge [F169or a District Judge (Magistrates' Courts)] is satisfied by information on oath supplied by the Commissioner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a) that a data controller has contravened or is contravening any of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or

(b) that an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or is being committed,

and that evidence of the contravention or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is to be found on any premises specified in the information, he may, subject to subparagraph (2) and paragraph 2, grant a warrant to the Commissioner.

1 (1) 순회 판사가 정보보호위원에 의해 제공된 서약서상의 고소에 의해 다음을 의심할 타당한 근 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a) 정보관리자가 데이터 보호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b) 본 법령에 따른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위반이나 범법 사실의 증거가 그 정보에 명시된 어떤 전술사항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순회 판사는 (2)항에 따라 정보보호위원에게 영장을 부여한다.

(2) A judge shall not issue a warrant under this Schedule in respect of any personal data processed for the special purposes unless a determination by the Commissioner under section 45 with respect to those data has taken effect.

(2) 효력을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 본문 45조에 따른 정보보호위원의 판결이 없으면, 판사는 특수 목적으로 처리된 개인 데이터에 대해 본 Schedule에 따른 소환장을 발행할 수 없다.

(3) A warrant issued under sub-paragraph (1) shall authorise the Commissioner or any of his officers or staff at any time within seven days of the date of the warrant to enter the premises, to search them, to inspect, examine, operate and test any equipment found there which i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o inspect and seize any documents or other material found there which may be such evidence as is mentioned in that sub-paragraph.

(3) (1)항에 따라 발행된 영장은 그 영장이 증거사항이 되는 7일 이내에 이를 조사, 사정, 검토를 거쳐 그곳에서 발견되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사용된,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장비를 작동, 시험하고, (1)항에서 언급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곳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서나 기타 물품을 사정,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보호위원과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부여한다.

2 (1) A judge shall not issue a warrant under this Schedule unless he is satisfied—

(a) that the Commissioner has given seven days' notice in writing to the occupier of the premises in question demanding access to the premises, and

(b) that either—

(i) access was demanded at a reasonable hour and was unreasonably refused, or

(ii) although entry to the premises was granted, the occupier unreasonably refused to comply with a request by the Commissioner or any of the

2 (1) 판사는 다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본 Schedule에 따른 영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a) 정보보호위원이 서면으로 해당 전술사항의 점유자에게 그 증거사항에 대한 정보보호위원의 접근을 요구하는 통보를 7일간 보냈다는 사실

(b) 다음 중 하나의 사실

(i) 정당한 시간에 접근을 요구했으나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는 사실

(ii) 그 전술사항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어도 점유자가 정보보호위원나 그 임원, 또는 직원들이 1조 (3)항의 어떤 것을 허가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부당하게 거부하였

Commissioner's officers or staff to permit the Commissioner or the officer or member of staff to do any of the thing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and

(c) that the occupier, has, after the refusal, been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application for the warrant and has had an opportunity of being heard by the judge on the question whether or not it should be issued.

(2) Sub-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judge is satisfied that the case is one of urgency or that compliance with those provisions would defeat the object of the entry.

3 A judge who issues a warrant under this Schedule shall also issue two copies of it and certify them clearly as copies.

Execution of warrants

4 A person executing a warrant issued under this Schedule may use such reasonable force as may be necessary.

5 A warrant issued under this Schedule shall be executed at a reasonable hour unless it appears to the person executing it that there ar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evidence in question would not be found if it were so executed.

6 If the person who occupies the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warrant is issued under this Schedule is present when the warrant is executed, he shall be shown the warrant and supplied with a copy of it; and if that person is not present a copy of the warrant shall be left in a prominent place on the premises.

7 (1) A person seizing anything in pursuance of a warrant under this Schedule shall give a receipt for it if asked to do so.

(2) Anything so seized may be retained for so long as is necessary in all the circumstances but the person in occupation of the premises

다는 사실

(c) 그 점유자가 이를 거부한 후에 그 정보보호위원에 의해 그 영장의 적용을 통보 받고 판사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 영장이 발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2) 판사가 그 사건이 긴급하거나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점유권의 목적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Schedule에 따라 영장을 발행하는 판사는 2개의 사본을 동시에 발행하여 그 영장이 사본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

영장 집행

4 본 Schedule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정도의 정당한 강제력을 행사한다.

5 본 Schedule에 따라 발행되는 영장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볼 때 영장이 그와 같이 실행되었을 때 해당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근거가 있지 않는 한, 타당한 시간에 집행되어야 한다.

6 영장이 본 Schedule에 따라 발부되는 경우 증거사항을 점유한 사람이 그 영장이 집행되는 때에 출석하게 되면 그 점유자는 영장을 사본과 함께 제공받아야 한다. 만약 점유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 사본은 그 증거사항 상에 눈에 잘 띠는 위치에 남겨두어야 한다.

7 (1) 본 Schedule의 영장에 따라 어떤 것을 압수하는 사람은 압수당한 사람이 요구하면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2) 이와 같이 압수되는 모든 것은 필요한 조건이 있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가 요구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in question shall be given a copy of anything that is seized if he so requests and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considers that it can be done without undue delay.

판단할 때, 그 영장이 부당하게 연기되지 않고 집행될수 있다면, 해당 증거사항의 점유자에게는 압수된 모든 증거사항의 사본이 주어져야 한다.

Matters exempt from inspection and seizure

조사 및 압수 시 예외 사항

8 The powers of inspection and seizure conferred by a warrant issued under this Schedule shall not be exercisable in respect of personal data which by virtue of section 28 are exempt from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8 본 Schedule에 따라 발행되는 영장에 의해 주어지는 사정권 및 압수권은 본문 28조의 효력에 의해 본 법령의 모든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는다.

9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the powers of inspection and seizure conferred by a warrant issued under this Schedule shall not be exercisable in respect of—

(a)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his client in connection with the giving of legal advice to the client with respect to his obligations, liabilities or rights under this Act, or

(b) any communication between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and his client, or between such an adviser or his client and any other person, mad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proceedings under or arising out of this Act (including proceedings before the Tribunal) and for the purposes of such proceedings.

9 (1) 본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Schedule에 따라 발행되는 영장에 의해 주어지는 사정권 및 압수권은 다음에 대하여 집행되지 않는다.

(a) 법률 전문가가 고객에게 본 법령에 따른 그의 의무, 책임, 권리 등에 대한 법률 상담 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와 고객 사이의 모든 대화

(b) (대심판원 소송을 포함하여) 본 법령으로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모든 소송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고려하는 중에 행한 법률 전문가 또는 법률 조언자와 고객 간의 모든 대화

(2) Sub-paragraph (1) applies also to—

(a) any copy or other record of any such communication as is there mentioned, and

(b) any document or article enclosed with or referred to in any such communication if made in connection with the giving of any advice or, as the case may be, in connection with or in contemplation of and for the purposes of such proceedings as are there mentioned.

(2) (1)항은 다음에도 적용된다.

(a) 위에 언급된 모든 대화 기록이나 사본

(b)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 모든 대화를 담고 있는, 또는 이에 대한 모든 문서나 물품, 또는 가령 어떤 경우에, 위에서 언급된 소송에 대하여, 또는 이를 숙고하기 위하여, 또는 그 소송을 위한 법률 상담에서의 문서나 물품.

(3)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to anything in the possession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professional legal adviser or his client or to

(3) 본 조항은 법률전문가나 그 고객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 소유된 문서나 물품, 또는 범죄적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취해진

anything held with the intention of furthering a criminal purpose.

(4) In this paragraph references to the client of a professional legal adviser include references to any person representing such a client.

10 If the person in occupation of any premises in respect of which a warrant is issued under this Schedule objects to the inspection or seizure under the warrant of any material on the grounds that it consists partly of matters in respect of which those powers are not exercisable, he shall, if the person executing the warrant so requests, furnish that person with a copy of so much of the material as is not exempt from those powers.

Return of warrants

11 A warrant issued under this Schedule shall be returned to the court from which it was issued —

(a) after being executed, or

(b) if not executed within the time authorised for its execution;

and the person by whom any such warrant is executed shall make an endorsement on it stating what powers have been exercised by him under the warrant.

Offences

12 Any person who—

(a) intentionally obstructs a person in the execution of a warrant issued under this Schedule, or

(b) fails without reasonable excuse to give any person executing such a warrant such assistance as he may reasonably require for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is guilty of an offence.

Vessels, vehicles etc.

13 In this Schedule “premises” includes any vessel,

문서나 물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본 조항에서 법률전문가의 고객에는 그러한 고객을 대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된다.

10 영장이 본 Schedule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어떤 증거사항의 점유자가 중요 요소에 대한 영장이 부분적으로 사정권과 압수권이 적용 불가능한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사정이나 압수를 반대할 경우, 그 점유자는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사정, 또는 압수권에서 제외되지 않는 정도에 해당하는 물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영장의 반납

11 본 Schedule에 따라 발행되는 영장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발행한 법원으로 반납되어야 한다.

(a) 집행된 후에

(b) 집행력을 가진 시기 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또한 그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영장에 따른 어떤 권한을 집행하였는지를 진술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범법 행위

12 다음의 모든 사람은

(a) 본 Schedule에 따라 발행되는 영장의 집행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b)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그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그가 정당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범법자가 된다.

선박, 차량 등

13 본 Schedule에서 "장소" 란 선박, 수송수단,

vehicle, aircraft or hovercraft, and references to the occupier of any premises include references to the person in charge of any vessel, vehicle, aircraft or hovercraft.

항공기, 호버크래프트를 포함하며 임의의 증거사항의 점유자에 대한 것은 선박, 차량, 항공기, 호버크래프트를 맡은 사람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14 In the application of this Schedule to Scotland —
(a) for any reference to a circuit judge there is substituted a reference to the sheriff,
(b) for any reference to information on oath there is substituted a reference to evidence on oath, and
(c) for the reference to the court from which the warrant was issued there is substituted a reference to the sheriff clerk.

14 다음에 대해 본 Schedule을 스코틀랜드에 적용할 때는
(a) 순회 판사에 대한 서술을 주 장관에 대한 서술로 대체한다.
(b) 서약서 상의 정보에 대한 서술 서약서 상의 증거에 대한 서술로 대체한다.
(c) 영장을 발행하는 법원에 대한 서술은 주장관 서기에 대한 서술로 대체한다.

15 In the application of this Schedule to Northern Ireland—
(a) for any reference to a circuit judge there is substituted a reference to a county court judge, and
(b) for any reference to information on oath there is substituted a reference to a complaint on oath.

15 본 Schedule을 북아일랜드에 적용할 때는
(a) 순회 판사에 대한 서술은 주 재판관에 대한 서술로 대체한다.
(b) 서약서 상의 고소에 대한 서술은 서약서상의 불만사항에 대한 서술로 대체한다.

*Self-incrimination *prospective*

자기범죄화(????)

16 An explanation given, or information provided, by a person in response to a requirement under paragraph (e) or (f) of paragraph 1(3) may only be used in evidence against that person—
(a) on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i) paragraph 12,
(ii) section 5 of the Perjury Act 1911 (false statements made otherwise than on oath),
(iii) section 44(2) of the Criminal Law (Consolidation) (Scotland) Act 1995 (false statements made otherwise than on oath), or
(iv) Article 10 of the Perjury (Northern Ireland) Order 1979 (false statutory declarations and other false unsworn statements), or
(b) on a prosecution for any other offence

16

where—
(i) in giving evidence that person makes a statement inconsistent with that explanation or information, and
(ii) evidence relating to that explanation or information is adduced, or a question relating to it is asked, by that person or on that person's behalf.

SCHEDULE 10
FURTHER PROVISIONS RELATING TO ASSISTANCE UNDER SECTION 53

1 In this Schedule "applicant" and "proceedings" have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53.

2 The assistance provided under section 53 may include the making of arrangements for, or for the Commissioner to bear the costs of—
(a) the giving of advice or assistance by a solicitor or counsel, and
(b) the representation of the applicant, or the provision to him of such assistance as is usually given by a solicitor or counsel—
(i) in steps preliminary or incidental to the proceedings, or
(ii) in arriving at or giving effect to a compromise to avoid or bring an end to the proceedings.

3 Where assistance is provided with respect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a) it shall include an agreement by the Commissioner to indemnify the applicant (subject only to any exceptions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in respect of any liability to pay costs or expenses arising by virtue of any judgment or order of the court in the proceedings,
(b) it may include an agreement by the Commissioner to indemnify the applicant in respect of any liability to pay costs or expenses arising by virtue of any compromise or settlement arrived at in

SCHEDULE 10
S.53의 조력에 관한 추가적 규정

1 본 Schedule에서 "지원자"와 "소송"은 본문 53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본문 53조에 의해 제공되는 조력은 커미셔너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사무 변호사나 법률 상담원의 조언이나 지원 비용
(b) 지원자의 진술,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무 변호사나 상담원에 의해 주어지는 지원 비용
(ⅰ) 소송에 대한 예비 또는 부수 절차
(ⅱ) 소송을 피하거나 종결하기 위한 타협에 이르기 위해 또는 그 타협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3 그 소송 행위에 대하여 조력이 제공된 경우
(a) 그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할 책임에 대하여 (통보에 명시된 예외 조항만을 따르는)지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커미셔너의 계약을 포함해야 한다.
(b) 소송을 회피하거나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도달한 타협안이나 중재안을 수행하면서 생하는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할 책임에 대하여 지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커미셔너의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c) 중간 구제책(스코틀랜드에서는 잠정

order to avoid the proceedings or bring the proceedings to an end, and

(c) it may include an agreement by the Commissioner to indemnify the applicant in respect of any liability to pay damages pursuant to an undertaking given on the grant of interlocutory relief (in Scotland, an interim order) to the applicant.

명령)을 지원자에게 주어지는 중간 구제책의 부여에 의해 주어지는 임무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책임에 대하여 지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커미셔너의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4 Where the Commissioner provides assistance in relation to any proceedings, he shall do so on such terms, or make such other arrangements, as will secure that a person against whom the proceedings have been or are commenced is informed that assistance has been or is being provided by the Commissioner in relation to them.

4 커미셔너가 어떤 소송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 그 커미셔너는 그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거나 진행중인 사람에게 그 소송에 대해 커미셔너가 지원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5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the recovery of expenses incurred by the Commissioner in providing an applicant with assistance (as taxed or assesse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by rules of court) shall constitute a first charge for the benefit of the Commissioner—

(a) on any costs which, by virtue of any judgment or order of the court, are payable to the applicant by an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matter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assistance is provided, and

(b) on any sum payable to the applicant under a compromise or settlement arrived at in connection with that matter to avoid or bring to an end any proceedings.

5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커미셔너가 지원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세금 또는 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형태로 부과되는) 비용을 보전한 것은 커미셔너가 다음의 수익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우선 징수 대상이 된다.

(a)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의하여 그 조력이 제공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지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든 비용

(b) 소송을 피하거나 종결하기 위해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타협안이나 중재안에 따라 지원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총액

6 In Scotland, the recovery of such expenses (as taxed or assesse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by rules of court) shall be paid to the Commissioner, in priority to other debts—

(a) out of any expenses which, by virtue of any judgment or order of the court, are payable to the applicant by an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matter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assistance is provided, and

(b) out of any sum payable to the applicant under a compromise or settlement arrived

6 스코틀랜드에서 (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부과되는) 그와 같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다음의 기타 채무에 우선하여 커미셔너에게 부여된다.

(a)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의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지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든 비용에 의한 채무

(b) 소송을 피하거나 종결하기 위해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타협안이나 중재안에 따라 지원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총액에 의한 채무

at in connection with that matter to avoid or bring to an end any proceedings.

SCHEDULE 11
EDUCATIONAL RECORDS

Meaning of "educational record"

1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8 "educational record" means any record to which paragraph 2, 5 or 7 applies.

England and Wales

2 This paragraph applies to any record of information which—
(a) is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ing body of, or a teacher at, any school in England and Wales specified in paragraph 3,
(b) relates to any person who is or has been a pupil at the school, and
(c) originated from or was supplied by or on behalf of any of the persons specified in paragraph 4,
other than information which is processed by a teacher solely for the teacher's own use.

3 The schools referred to in paragraph 2(a) are—
(a) a school maintained by a local education authority, and
(b) a special school, as defined by section 6(2) of the M32Education Act 1996, which is not so maintained.

4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c) are—
(a) an employee of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which maintains the school,
(b) in the case of—
(i) a voluntary aided, foundation or foundation special school (within the meaning of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or

SCHEDULE 11
교육 기록

"교육기록"의 의미

1 본문 68조의 목적상, "교육적 기록"은 2, 5, 7조가 적용되는 기록을 의미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2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의 기록에 적용된다.
(a) 3조에 명시된 잉글랜드와 웨일즈 학교의 운영단체나 교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처리된 정보
(b) 그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이었던 사람에 관련된 정보
(c) 4조에 명시된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고안하거나 공급된 정보
단, 교사가 자신만의 용도로 처리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3 2조 (a)에서 언급한 학교는 다음과 같다.
(a) 지역 교육 당국이 운영하는 학교
(b) 지역 교육 당국이 운영하지 않고, 『교육법 1996』6조 (2)항에 정의된 특수학교

4 2조 (c)에서 언급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학교를 보유한 교육 당국의 고용인
(b) 다음의 경우
(i) 『학교 기준법(School Sta nda rd a nd Framewo rk) 1998』의 의미 내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학교나 특수학교의 (근무 계약에 따라 학교 운영 단체에 고용된 교육 심리

(ii) a special school which is not maintained by a local eduction authority, a teacher or other employee at the school (including an educational psychologist engaged by the governing body under a contract for services),

(c) the pupil to whom the record relates, and

(d) a parent, as defined by section 576(1) of the Education Act 1996, of that pupil.

학자를 포함한) 학교의 교사나 기타 고용인

(ⅱ)지방 교육 당국이 보유하지 않은 특수학교의 (근무 계약에 따라 학교 운영 단체에 고용된 교육 심리학자를 포함한) 학교의 교사나 기타 고용인

(c) 그 기록과 관련된 학생

(d) 『교육법 1996』576조 (1)항에 정의된 그 학생의 학부모

Scotland

스코틀랜드

5 This paragraph applies to any record of information which is processed—

(a) by an education authority in Scotland, and

(b) for the purpose of the relevant function of the authority,

other than information which is processed by a teacher solely for the teacher's own use.

5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 모든 정보의 기록에 적용된다.

(a) 스코틀랜드 교육 당국에 의해

(b) 교육 당국의 관련 기능을 위해

단, 교사가 자신만의 용도로 처리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6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5—

(a) "education authority" means an education author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M33Education (Scotland) Act 1980 ("the 1980 Act") [F170or, in relation to a self-governing school, the board of managem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M34Self-Governing Schools etc. (Scotland) Act 1989 ("the 1989 Act")],

(b) "the relevant function" means, in relation to each of those authorities, their function under section 1 of the 1980 Act and section 7(1) of the 1989 Act, and

(c) information processed by an education authority is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the relevant function of the authority if the processing relates to the discharge of that function in respect of a person—

(i) who is or has been a pupil in a school provided by the authority, or

(ii) who receives, or has received, further educ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1980 Act) so provided.

6 5조의 목적상,

(a) "교육 당국"은 스코틀랜드 『교육법 1980("1980년 법")』의 의미 내에서의 교육 당국이나, 『자율 학교 및 기타 관계법(Se lf- Gove rning School etc. Act) 1989("1989년 법)』의 의미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인 자치 학교의 교육 당국을 의미한다.

(b) "관련 기능"은 각 교육 당국에 대해 1980년 법 1조와 1989년 법 7조 (1)항에 따른 기능을 의미한다.

(c) 교육 당국에 의해 처리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처리에 사용된 경우 교육 당국의 관련 기능을 위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ⅰ) 해당 교육 당국이 제공하는 학교의 학생이거나 학생이었던 사람

(ⅱ) (1980년 법의 의미 내에서) 추가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람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

7 (1) This paragraph applies to any record of information which—
(a) is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or a teacher at, any grant-aided school in Northern Ireland,
(b) relates to any person who is or has been a pupil at the school, and
(c) originated from or was supplied by or on behalf of any of the persons specified in paragraph 8,
other than information which is processed by a teacher solely for the teacher's own use.

7 (1)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 모든 정보의 기록에 적용된다.
(a) 북아일랜드의 무상원조학교의 운영위원회나 교사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처리된 정보
(b) 그 학교의 학생이거나 학생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정보
(c) 8조에 명시된 사람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연유된, 또는 이들이 제공한 정보
단, 교사가 자신만의 용도로 처리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2) In sub-paragraph (1) "grant-aided school"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M35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 1986.

(2) (1)항의 "무상원조 학교"는 북아일랜드의 『교육 및 도서관령 1986』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8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7(1) are—
(a) a teacher at the school,
(b) an employee of an education and library board, other than such a teacher,
(c) the pupil to whom the record relates, and
(d) a parent (as defined by Article 2(2) of the 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 1986) of that pupil.

8 7조 (1)항에서 언급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그 학교의 교사
(b) 교사 이외에 교육 및 도서관 운영회의 고용인
(c) 그 기록에 관련된 학생
(d) (『교육 및 도서관령 1989』2조 (2)에서 정의된) 그 학생의 학부모

England and Wales: transitory provisions

9 (1) Until the appointed day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0 of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this Schedule shall have effect subject to the following modifications.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과 규정

9 (1) 『학교 기준법 1998』20조의 의미 내에서 지정하고 있는 날까지 본 Schedule은 다음의 수정 조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가진다.

(2) Paragraph 3 shall have effect as if for paragraph (b) and the "and" immediately preceding it there were substituted—
"(aa) a grant-maintained school, as defined by section 183(1) of the Education Act 1996,
(ab) a grant-maintained special school, as defined by section 337(4) of that Act, and
(b) a special school, as defined by section 6(2) of that Act, which is neither a maintained special school, as defined by section 337(3) of that Act, nor a

(2) 3조는 (b)항과 그 항 바로 앞의 그리고 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a) 『교육법 1996』183조 (1)항에서 정의된 보조금 지급학교
(ab) 이 법 337조 (4)항에서 정의한 보조금 지급 특수학교, 그리고
(b) 그 법 337조 (3)항에서 정의한 공립 특수학교나 보조금 지급 특수 학교가 아닌 이 법 의 6조 (2)항에서 정의한 특수학교"

grant-maintained special school."

(3) Paragraph 4(b)(i) shall have effect as if for the words from "foundation", in the first place where it occurs, to "1998)" there were substituted " or grant-maintained school".

⑶ 4조 ⒝항 (i)은 "설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날 때 "1998 또는 보조금 지급 학교"로 대체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SCHEDULE 12
ACCESSIBLE PUBLIC RECORDS

SCHEDULE 12
접근가능한 공공기록

Meaning of "accessible public record"

1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8 "accessible public record" means any record which is kept by an authority specified—
(a) as respects England and Wales, in the Table in paragraph 2,
(b) as respects Scotland, in the Table in paragraph 4, or
(c) as respects Northern Ireland, in the Table in paragraph 6,
and is a record of information of a description specified in that Table in relation to that authority.

"접근가능한 공공기록"의 의미

1 본문 68조에 따라 "접근 가능한 공공 기록"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 관계 당국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을 의미한다.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대하여 2항에 있는 표에 명시
⒝ 스코틀랜드에 대하여 4조에 있는 표에 명시
⒞ 북아일랜드에 대하여 6조에 있는 표에 명시
또한 그 당국에 대해 해당 표에 명시된 설명 정보 기록을 의미한다.

Housing and social services records : England and Wales

2 The following is the Table referred to in paragraph 1(a).

주택 공급 및 사회 서비스 기록 : 잉글랜드와 웨일즈

2 1조 ⒜항에서 언급한 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OF AUTHORITIES AND INFORMATION 관계당국과 정보에 관한 표

The authorities *관계당국*	***The accessible information*** *접근가능한 정보*
Housing Act local authority. 주택보급법상 지방당국.	Information held for the purpose of any of the authority's tenancies. 그 당국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정보.
Local social services authority. 지역 사회복지사업 당국.	Information held for any purpose of the authority's social services functions. 그 당국의 사회복지 기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정보.

3 (1)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ble in paragraph 2.

3 (1) 다음 규정은 2조의 표 해석에 적용된다.

(2) Any authority which, by virtue of section 4(e) of the M36Housing Act 1985, is a local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any provision of that Act is a “Housing Act local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and so is any housing action trust established under Part III of the M37Housing Act 1988.

(2) 『주택보급법 1985』4조 (e)항의 효력에 따라 이 법의 모든 규정을 위한 지역 당국인 모든 관계 당국은 본 Schedule의 목적상 "주택보급법상의 관리 지역 당국"이 되며 『주택 보급법 1988 』제 3장에 따라 설립된 주택보급활동 위탁자가 된다.

(3) Information contained in records kept by a Housing Act local authority is “held for the purpose of any of the authority’s tenancies” if it is held for any purpose of the relationship of landlord and tenant of a dwelling which subsists, has subsisted or may subsist between the authority and any individual who is, has been or, as the case may be, has applied to be, a tenant of the authority.

(3) 주택보급법상의 관리 지역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그 당국에 대해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었거나 또는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 당국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현재나 과거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주거 관계를 설정하려고 한 경우 이에 포함된 정보는 "관계 당국의 어떤 임차 관련 목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4) Any authority which, by virtue of section 1 or 12 of the M38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is or is treated as a local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is a “local social services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and information contained in records kept by such an authority is “held for any purpose of the authority’s social services functions” if it is held for the purpose of any past, current or proposed exercise of such a function in any case.

(4) 『지역 사회 서비스법 1970』2조 및 12조에 따라 본 법의 목적상 지역 당국이거나 이로 처리되는 관계 당국은 본 Schedule의 목적상의 "지역 사회 서비스당국"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관계 당국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과거나 현재 또는 제안된 모든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한 경우 "관계 당국의 사회 서비스 기능을 위해 확보"되어 있다.

(5) Any expression used in paragraph 2 or this paragraph and in Part II of the Housing Act 1985 or 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at Act.

(5) 2항이나 주택 보급법 1985 2장 또는 지역 사회 서비스법 1970에 사용된 모든 표현은 본 법령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Housing and social services records: Scotland

주택 보급 및 사회 서비스 기록: 스코틀랜드

4 The following is the Table referred to in paragraph 1(b).

4 1조 (b)항에서 언급한 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OF AUTHORITIES AND INFORMATION

The authorities *담당 당국*	***The accessible information*** *접근가능한 정보*
Local authority. Scottish Homes. 지역 당국. 스코틀랜드 국무부	Information held for the purpose of any of the authority’s tenancies.

	그 당국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정보.
Social work authority. 사회 사업부	Information held for any purpose of the authority's functions under the Social Work (Scotland) Act 1968 and the enactments referred to in section 5(1B) of that Act. 스코틀랜드『사회 사업법 1968』과 이법 5조(1B)에서 언급된 규정에 따른 당국의 모든 기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정보

5 (1)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ble in paragraph 4.

(2) "Local authority" means—
(a) a council constituted under section 2 of the M39Local Government etc. (Scotland) Act 1994,
(b) a joint board or joint committee of two or more of those councils, or
(c) any trust under the control of such a council.

(3) Information contained in records kept by a local authority or Scottish Homes is held for the purpose of any of their tenancies if it is held for any purpose of the relationship of landlord and tenant of a dwelling-house which subsists, has subsisted or may subsist between the authority or, as the case may be, Scottish Homes and any individual who is, has been or, as the case may be, has applied to be a tenant of theirs.

(4) "Social work authority" means a local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e M40Social Work (Scotland) Act 1968; and information contained in records kept by such an authority is held for any purpose of their functions if it is held for the purpose of any past, current or proposed exercise of such a function in any case.

Housing and social services records : Northern Ireland

6 The following is the Table referred to in paragraph 1(c).

5 ⑴ 다음의 규정은 4조에 나타난 표의 해석에 적용된다.

⑵ "지역 당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지방 정부 및 기타 법 1994』2조에 따라 구성된 회의
ⓑ 그 회의의 둘 이상의 공동회의나 공동위원회
ⓒ 이와 같은 회의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위탁자

⑶ 지역 당국이나 스코틀랜드 국무부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그 당국에 대해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었거나 또는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스코틀랜드 국무부 사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현재나 과거,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주거 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에 포함된 정보는 관계 당국의 임차 관련 목적으로 사용된다.

⑷ "사회 사업부"는『사회 사업법 1968』의 목적상 지역 당국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관계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어떤 경우에나 과거나 현재 또는 제안된 관계 당국의 기능을 위해 사용된 경우 해당 정보는 이들의 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주택 보급 및 서비스 기록: 북 아일랜드

6 1장 ⓒ항에서 언급된 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OF AUTHORITIES AND INFORMATION

The authorities 담당 당국	*The accessible information 접근가능한 정보*
The Northern Ireland Housing Executive. 북아일랜드 주택 보급부.	Information held for the purpose of any of the Executive's tenancies.
A Health and Social Services Board. 보건 및 사회 복지부	Information held for the purpose of any past, current or proposed exercise by the Board of any function exercisable, by virtue of directions under Article 17(1) of th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Northern Ireland) Order 1972, by the Board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of personal social services under— (a)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Northern Ireland) 1968; (b) th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Northern Ireland) Order 1972; (c) Article 47 of the Matrimonial Causes (Northern Ireland) Order 1978; (d) Article 11 of the Domestic Proceedings (Northern Ireland) Order 1980; (e) the Adoption (Northern Ireland) Order 1987; or (f) the Children (Northern Ireland) Order 1995.
An HSS trust	Information held for the purpose of any past, current or proposed exercise by the trust of any function exercisable, by virtue of an authorisation under Article 3(1) of th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Northern Ireland) Order 1994, by the trust on behalf of a Health and Social Services Board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of personal social services under any statutory provision mentioned in the last preceding entry.

7 (1) This paragraph appli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ble in paragraph 6.

(2) Information contained in records kept by the Northern Ireland Housing Executive is "held for the purpose of any of the Executive's tenancies" if it is held for any purpose of the relationship of landlord and tenant of a dwelling which subsists, has subsisted or may subsist between the Executive and any individual who is, has been or, as the case may be, has applied to be, a tenant of the Executive.

7 (1) 본 조항은 6조의 표의 해석에 적용된다.

(2) 북아일랜드 주택 보급부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그 부서에 대해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었거나 또는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이 부서 사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현재나 과거,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주거 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에 포함된 정보는 " 주택 보급부의 임차 관련 목적으로 확보" 되고 있다.

SCHEDULE 13

MODIFICATIONS OF ACT HAVING EFFECT BEFORE 24TH OCTOBER 2007

1 After section 12 there is inserted—

"12A Rights of data subjects in relation to exempt manual data.

(1) A data subject is entitled at any time by notice in writing—

(a)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rectify, block, erase or destroy exempt manual data which are inaccurate or incomplete, or

(b) to require the data controller to cease holding exempt manual data in a way incompatible with the legitimate purposes pursued by the data controller.

(2) A notice under subsection (1)(a) or (b) must state the data subject's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data are inaccurate or incomplete or, as the case may be, his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y are held in a way incompatible with the legitimate purposes pursued by the data controller.

(3) If the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who has given a notice under subsection (1) which appears to the court to be justified (or to be justified to any extent) that the data controller in question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notice, the court may order him to take such steps for complying with the notice (or for complying with it to that extent) as the court thinks fit.

(4) In this section "exempt manual data" means—

(a) in relation to the first transitional period, as defined by paragraph 1(2) of Schedule 8, data to which paragraph 3 or 4 of that Schedule applies, and

(b) in relation to the second transitional period, as so defined, data to which paragraph 14 [F171or 14A] of that Schedule applies.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personal data are incomplete if, and only if, the

SCHEDULE 13

2007년 10월 24일 이전에 효력을 갖는 법률의 수정

1 제12조 다음에 다음이 삽입된다.

"제12조A. 예외적 수동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

(1) 데이터 주체는 언제나 서면 통보를 통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데이터 주체에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예외적 수작업 데이터를 개정, 폐쇄,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b) 데이터 관리자에게 데이터 관리자가 추구하는 법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 수작업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

(2) (1)항 (a) 나 (b) 에 따른 통보에는 데이터 주체가 해당 데이터를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상황에 따라 그 데이터가 데이터 관리자가 추구하는 법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만약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또는 어느 정도 까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1)항에 따른 통보를 낸 사람의 요청에 대해, 해당 데이터 관리자가 그 통보를 따르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법원은 그에게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통보를 따르는(또는 어느 정도까지 그 통보를 따르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본문 12 조에서 예외적 수작업 데이터 는 다음을 의미한다.

(a) Schedule 8의 1조 (2)항에 정의된 제 1 과도기 동안 Schedule 8의 3 조와 4 조가 적용되는 데이터

(b) Schedule 8의 1조 (2)항에 정의된 제 2 과도기 동안 Schedule 8의 14 조가 적용되는 데이터

(5) 본문 12 조의 목적상, 불완전하지 않은 데이터일지라도 그 데이터가 제 3 , 4 데이터 보호 원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개인 데이터는 불완전한 것으로 본다."

data, although not inaccurate, are such that their incompleteness would constitute a contravention of the third or fourth data protection principles, if those principles applied to the data.”

2 In section 32—
(a) in subsection (2) after “section 12” there is inserted—
“(dd) section 12A,”, and
(b) in subsection (4) after “12(8)” there is inserted “ , 12A(3)”.

3 In section 34 for “section 14(1) to (3)” there is substituted “ sections 12A and 14(1) to (3).”

4 In section 53(1) after “12(8)” there is inserted “ , 12A(3)”.

5 In paragraph 8 of Part II of Schedule 1, the word “or” at the end of paragraph (c) is omitted and after paragraph (d) there is inserted “or (e) he contravenes section 12A by failing to comply with a notice given under subsection (1) of that section to the extent that the notice is justified.”

2 제32조에서
(a) ⑵항에서 "12조" 다음에는 다음이 삽입된다.
"(dd) 12조 A"와
(b) ⑷항에서 "12조 ⑻항"다음에는 "12조 A의 ⑶항"이 삽입된다.

3 S.24 중 “S.14(1) 내지 (3)”은 “S.12A와 S.14(1) 내지 (3)”으로 대치된다.

4 본문 53조 ⑴항에서 "12조 ⑻항" 다음에 "12조 A의 ⑶항"이 대체되어 삽입된다.

5 Schedule 2장 8조에서 ⒸⒸ항의 끝에 있는 " 또는"이라는 말이 생략되고 ⒹⒹ항 다음에 ", 또는 ⒺⒺ 그가 12조 A의 ⑴항에 따라 주어지는 통보가 정당한 한도에 한하여, 이를 지키지 않아서 12조 A를 위반하게 되면"이 삽입된다.

SCHEDULE 14
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Interpretation

1 In this Schedule— “the 1984 Act” means the M41Data Protection Act 1984; “the old principles” means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within the meaning of the 1984 Act; “the new principles” means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Effect of registration under Part II of 1984 Act

2 (1) Subject to sub-paragraphs (4) and (5) any person who,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t III of this Act—

SCHEDULE 13
경과적 규정과 유예

해 석

1 본 Schedule에서— "1984년 법"은 『데이터 보호법 1984』를 의미한다. "구 원칙"은 1984년 법의 의미 내에서의 데이터 보호 원칙을 의미한다. "신 원칙"은 본 법령의 의미 내에서의 데이터 보호 원칙을 의미한다.

1984년 법 제 2장에 따른 기록의 효과

2 ⑴ ⑷항과 ⑸항에 의거하여 본 법령 제 3장의 발효 직전의 다음의 모든 사람은
ⒶⒶ 1984년 법 제 2장에 따라 데이터 사

(a) is registered as a data user under Part II of the 1984 Act, or
(b) is treated by virtue of section 7(6) of the 1984 Act as so registered,
is exempt from section 17(1) of this Act until the end of the registration period F172. . ..

용자로 등록된 사람
(b) 그와 같이 기록된 1984년 법 7조 (6)항에 의해 취급된 사람
등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만료된 경우 200 1년 10월 24일까지 본 법령의 본문 17조 (1)항으로부터 제외된다.

(2) In sub-paragraph (1) "the registration period", in relation to a person, means—
(a) where there is a single entry in respect of that person as a data user, the period at the end of which, if section 8 of the 1984 Act had remained in force, that entry would have fallen to be removed unless renewed, and
(b) where there are two or more entries in respect of that person as a data user, the period at the end of which, if that section had remained in force, the last of those entries to expire would have fallen to be removed unless renewed.

(2) (1)항에서 "등록 기간"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 데이터 사용자로서의 그 사람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있을 경우 1984년 법 8조가 집행되고 있을 때는 집행 만료 후 그 기록이 갱신되지 않으면 삭제되어야 하는 기간
(b) 데이터 사용자로서의 그 사람에 대한 둘 이상의 기록이 있는 경우 1984년 법 8조가 집행되고 있을 때는 집행 만료 후 그 중 최근 기록이 갱신되지 않으면 삭제되어야 하는 기간

(3) An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 data user under Part II of the 1984 Act which is received by the Commissioner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t III of this Act (including any appeal against a refusal of regist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old principles and the provisions of the 1984 Act.

(3) (등록 거부에 대한 모든 항소를 포함하여) 본 법령 3장의 시행 이전에 커미셔너가 수령하는1984년 법 2장에 따른 데이터 사용자로서의 모든 등록 신청은 기존 원칙과 1984년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If a person falling within paragraph (b) of sub-paragraph (1) receives a notification under section 7(1) of the 1984 Act of the refusal of his application, sub-paragraph (1) shall cease to apply to him—
(a) if no appeal is brought, at the end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brought against the refusal, or
(b) on the withdrawal or dismissal of the appeal.

(4) (1)항 (b)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하여 1984년 법 7조 (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경우 그 통보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1)항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a) 이 거부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만료시 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b) 항소가 철회나 기각되었을 경우

(5) If a data controller gives a notification under section 18(1) at a time when he is exempt from section 17(1) by virtue of sub-paragraph (1), he shall cease to be so exempt.

(5) 데이터 관리자가 (1)항에 따라 본문 17조 (1)항에서 예외가 되는 시기에 18조 (1)에 따른 통보를 수령한 경우, 그는 이와 같은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6) The Commissioner shall include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19 an entry in respect of each person who is exempt from

(6) 커미셔너는 (1)항에 따라 본문 17조 (1)항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본문 19조의 기록 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각

section 17(1) by virtue of subparagraph (1); and each entry shall consist of the particulars which,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Part III of this Act, were included (or treated as included) in respect of that person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4 of the 1984 Act.

기록은 본 법령 3장의 발효 전에 1984년 법 4조에 따라 관리된 등록상의 사람에 대한 (또는 이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는) 세부 기재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 Notification regulations under Part III of this Act may make provision modifying the duty referred to in section 20(1) in its application to any person in respect of whom an entry in the register maintained under section 19 has been made under subparagraph (6).

⑺ 본 법령 3장에 따른 통지 법규는 본문 19조에 따라 관리되는 등록상 기재된 사항은 (6)항에 따라 작성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본문 20조 ⑴항에서 언급한 의무를 수정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8) Notification regulations under Part III of this Act may make further transitional provision in connection with the substitution of Part III of this Act for Part II of the 1984 Act (registration), including provision modifying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Part III in transitional cases.

⑻ 본 법령 3장에 따른 통지 규정은 변환의 경우에 3장의 규정의 적용을 수정하는 규정을 포함한, 1984년 법(등록) 2장을 3장으로 대체하는 추가 변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Rights of data subjects

데이터 주체의 권리

3 (1) The repeal of section 21 of the 1984 Act (right of access to personal data)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at section in any case in which the request (together with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a) of subsection (4) of that section and, in a case where it is required, the consent referred to in paragraph (b) of that subsection) was received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peal comes into force.

3 ⑴ 1984년 법(개인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2 1조의 폐기는 이것이 집행되는 날짜 이전에 요청한 모든 경우에 (2 1조 ⑷항 ⓐ에서 언급된 정보와 그 정보를 요구했을 때의 2 1조 ⓑ에서 언급된 동의와 함께) 2 1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Sub-paragraph (1) does not apply where the request is made by reference to this Act.

⑵ ⑴항은 본 법령을 원용하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Any fee pai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1 of the 1984 Act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7 in a case not falling within sub-paragraph (1) shall be taken to have been pai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7.

⑶ ⑴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문 7조의 발효 이전에 1984년 법 2 1조를 목적으로 지불된 모든 수수료는 본문 7조의 목적으로 지불된 것으로 취급한다.

4 The repeal of section 22 of the 1984 Act (compensation for inaccuracy) and the repeal of section 23 of that Act (compensation for loss or unauthorised disclosure) do not affect the

4. 1984년 법 22조(부정확성에 대한 손해배상)와 본 법령 23조(데이터 손실에 대한 배상 및 무자격 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의 폐기는 그것이 발효되기 이전에 행해졌거나 무시됨

application of those sections in relation to damage or distress suffered at any time by reason of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peals.

으로 인해 받은 피해나 고통에 대해 각 조항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The repeal of section 24 of the 1984 Act (rectification and erasure) does not affect any case in which the application to the court was made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peal comes into force.

5 1984년 법의 24조(개정 및 삭제)의 폐기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발효되기 이전에 법원에 적용된 모든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Subsection (3)(b) of section 14 does not apply where the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occurr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at section.

6 본문 14조 ⑶항 ⒷⒷ는 1984년 법 시행 이전에 행한 개정, 폐쇄, 삭제, 파기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Enforcement and transfer prohibition notices served under Part V of 1984 Act

1984년 법 5장에 따라 시행된 집행 및 양도 금지 통지

7 (1) If,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40—
(a)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10 of the 1984 Act has effect, and
(b) either the time for appealing against the notice has expired or any appeal has been determined,
then, after that commencement, to the extent mentioned in sub-paragraph (3), the notice shall have effect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41 and 47 as if it were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40.

7 ⑴ 본문 40조의 시행 이전에
ⒶⒶ 1984년 법 10조에 따른 집행통지가 효력을 가지고,
ⒷⒷ 그 집행통지에 대해 항소할 시기가 만료되거나 모든 항소가 결정된 경우
그 시행 이후 ⑶항에 언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집행장은 본문 40조에 따른 집행통지의 경우와 같은, 본문 4 1조와 47조의 목적상의 효력을 가진다.

(2) Where an enforcement notice has been served under section 10 of the 1984 Act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40 and immediately before that commencement either —
(a) the time for appealing against the notice has not expired, or
(b) an appeal has not been determined,
the appeal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1984 Act and the old principles and, unless the notice is quashed on appeal, to the extent mentioned in sub-paragraph (3) the notice shall have effect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41 and 47 as if it were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40.

⑵ 본문 40조 시행 직전이며 다음 시기 직전에 집행장이 1984년 법 10조에 따라 시행되었을 때
ⒶⒶ 그 집행장에 대한 항소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항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항소는 1984년 법의 규정과 구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그 집행장이 ⑶항에 언급된 경우에 한하여 상소에서 폐기되지 않으면 그 집행통지는 본문 40조에 따른 집행통지의 경우와 같은 본문 4 1조와 47조의 목적상의 효력을 가진다.

(3)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10 of the 1984 Act has the effect described in sub-paragraph (1) or (2) only to the extent that the steps specified in the notice for complying with the old principle or principles in question are steps which the data controller could be required by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40 to take for complying with the new principles or any of them.

(3) 1984년 법 10조에 따른 집행통지는 (1)항과 (2)항에 기술된 효력을 가진다. 단 기존 원칙이나 해당 원칙을 따르는 그 집행통지에 명시된 조치가 데이터 관리자가 신 원칙 전부나 그 중 일부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지는 본문 40조에 따른 집행장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조치일 경우에 한한다.

8 (1) If,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40—
(a) a transfer prohibition notice under section 12 of the 1984 Act has effect, and
(b) either the time for appealing against the notice has expired or any appeal has been determined,
then, on and after that commencement, to the extent specified in sub-paragraph (3), the notice shall have effect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41 and 47 as if it were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40.

8 (1) 본문 40조의 시행 직전에
(a) 1984년 법 12조의 양도 금지 통지가 효력을 가지거나
(b) 그 집행장에 대해 항소할 시기가 만료되거나 모든 항소가 결정된 경우
그 시행시나 시행 이후에 (3)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본문 40조에 따른 집행통지의 경우와 같은 본문 4 1조와 47조의 목적상의 효력을 가진다.

(2) Where a transfer prohibition notice has been served under section 12 of the 1984 Act and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40 either—
(a) the time for appealing against the notice has not expired, or
(b) an appeal has not been determined,
the appeal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1984 Act and the old principles and, unless the notice is quashed on appeal, to the extent mentioned in sub-paragraph (3) the notice shall have effect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41 and 47 as if it were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40.

(2) 양도 금지 통지가 1984년 법 12조에 따라 실행된 경우와 본문 40조의 시행 이전에
(a) 그 집행장에 대한 항소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나
(b) 항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항소는 1984년 법의 규정과 기존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그 집행장이 (3)항에 언급된 경우에 한하여 상소에서 폐기되지 않으면 그 집행통지는 본문 40조에 따른 집행장의 경우와 같은 본문 4 1조와 47조의 목적상의 효력을 가진다.

(3) A transfer prohibition notice under section 12 of the 1984 Act has the effect described in sub-paragraph (1) or (2)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hibition imposed by the notice is one which could be imposed by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40 for complying with the new principles or any of them.

(3) 1984년 법 12조에 따른 양도 금지 규정은 (1)항이나 (2)항에 기술된 효력을 가진다. 단 통지에 의해 부과되는 그 금지 규정은 신 원칙 전부나 그 중 일부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지는 본문 40조에 따른 집행통지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금지 규정일 경우에 한한다.

Notices under new law relating to matters in relation to which 1984 Act had effect

9 The Commissioner may serve an enforcement notice under section 40 on or after the day on which that section comes into force if he is satisfied that, before that day, the data controller contravened the old principles by reason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would also have constituted a contravention of the new principles if they had applied before that day.

10 Subsection (5)(b) of section 40 does not apply where the rectification, blocking, erasure or destruction occurr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at section.

11 The Commissioner may serve an information notice under section 43 on or after the day on which that section comes into force if he has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before that day, the data controller contravened the old principles by reason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would also have constituted a contravention of the new principles if they had applied before that day.

12 Where by virtue of paragraph 11 an information notice is served on the basis of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before the day on which section 43 comes into force, subsection (2)(b) of that section shall have effect as if the reference to the data controller having complied, or complying, with the new principles were a reference to the data controller having contravened the old principles by reason of any such act or omission as is mentioned in paragraph 11.

Self-incrimination, etc.

13 (1) In section 43(8), section 44(9) and paragraph 11 of Schedule 7, any reference to an offence under this Act includes a reference to an offence under the 1984 Act.

(2) In section 34(9) of the 1984 Act, any reference to an offence under that Act includes a reference to an offence under this Act.

1984년 법이 효력을 가진 문제와 관련한 신법상의 통지

9 커미셔너는 데이터 관리자가 그 효력 발생일 이전에도 적용되는 신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나 근무 태만으로 인해 구 원칙을 위반했음을 확인한 경우 본문 40조가 발효되는 날짜나 그 이후에 40조에 따른 집행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

10 40조 ⑸항 ⒷⒷ는 본문 40조 발효 이전에 발생한 개정, 폐쇄, 삭제, 파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11 커미셔너는 그 정보공개요구통보 발부 이전에 데이터 관리자가 그 효력 발생일 이전에도 적용되는 경우 신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나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구 원칙을 위반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본문 40조가 발효된 날이나 그 이후에 정보공개요구통보를 발부할 수 있다.

12 본문 43조가 발효되는 날짜 이전의 어떤 행위나 근무 태만을 근거로 11조에 따른 정보공개요구통보를 발부하는 경우, 본문 43조 ⑵항 ⒷⒷ는 신규 원칙을 준수한, 또는 준수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자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 관리자가 11조에서 언급된 행위나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구 원칙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죄 인정

13 ⑴ 43조 ⑻항, 44조 ⑼항, Schedule 7의 11조에서 본 법령에 따른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한 언급은 1984년 법에 따른 범법 행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⑵ 1984년 법 34조 ⑼항에서 1984년 법에 따른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한 언급은 본 법령에 따른 범법 행위에 대한 언급을 포

Warrants issued under 1984 Act

14 The repeal of Schedule 4 to the 1984 Act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at Schedule in any case where a warrant was issued under that Schedul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peal.

Complaints under section 36(2) of 1984 Act and requests for assessment under section 42

15 The repeal of section 36(2) of the 1984 Act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in any case where the complaint was received by the Commissione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peal.

16 In dealing with a complaint under section 36(2) of the 1984 Act or a request for an assessment under section 42 of this Act, the Commissioner shall have regard to the provisions from time to time applicable to the processing, and accordingly—

(a) in section 36(2) of the 1984 Act, the reference to the old principles and the provisions of that Act includes, in relation to any time when the new principles and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ve effect, those principles and provisions, and

(b) in section 42 of this Act, the reference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cludes, in relation to any time when the old principles and the provisions of the 1984 Act had effect, those principles and provisions.

Applications under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or corresponding Northern Ireland legislation

17 (1) The repeal of any provision of the M42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does not affect—

(a) the application of section 3 or 6 of that Act in any case in which the application under that section was received before

함한다.

1984년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

14 1984년 법에서 Schedule의 폐기는 어떤 경우에도 이의 폐기 발효 전에 그 Schedule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그 Schedule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84년 법 36조 ⑵항의 청구 및 제42조의 사정 신청

15 1984년 법 36조 ⑵항의 폐기는 어떤 경우에도 커미셔너가 그 조항의 폐기 발효 전에 접수한 고소의 경우 이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 1984년 법 36조 ⑵항에 따른 고소나 본 법령 42조에 따른 사정 신청을 다룰 때, 커미셔너는 수시로 그 처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1984년 법 36조 ⑵항에서 구 원칙과 1984년 법의 규정에 대한 언급은 신 원칙과 본 법령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원칙 및 규정 모두를 포함하며

(b) 본 법령 42조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대한 언급은 구 원칙과 1984년 법이 효력을 가지는 그와 같은 원칙 및 규정 모두를 포함한다.

『건강 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법 1990』또는 상응하는 북아일랜드의 법규에 의한 적용

17 ⑴ 『건강 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법 1990』의 규정의 폐기는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본 법 3조나 6조의 적용이 폐기 발효 이전에 시행된 경우에 대한 적용

(b) 본 법 8조의 적용이 폐기 발효 이전

the day on which the repeal comes into force, or

(b) the application of section 8 of that Act in any case in which the application to the court was made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peal comes into force.

에 시행된 경우에 대한 적용

(2) Sub-paragraph (1)(a)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n application for access to information which was made by reference to this Act.

(2) (1)항 (a)은 본 법령을 원용해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18 (1) The revocation of any provision of the M43Access to Health Records (Northern Ireland) Order 1993 does not affect—

(a) the application of Article 5 or 8 of that Order in any case in which the application under that Article was received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peal comes into force, or

(b)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at Order in any case in which the application to the court was made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peal comes into force.

18 (1) 북아일랜드의『건강 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명령 1993』의 임의 규정의 폐기는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이 명령 5조나 8조의 적용이 폐기 발효 이전에 시행된 경우 이에 대한 적용

(b) 법원에 대한 요청이 이 명령 10조가 폐기 발효 이전에 행해진 경우 이에 대한 적용

(2) Sub-paragraph (1)(a)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n application for access to information which was made by reference to this Act.

(2) (1)항 (a)는 본 법령을 원용해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Applications under regulations under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or corresponding Northern Ireland legislation

『개인 파일에의 접근에 관한 법 1987』또는 상응하는 북아일랜드 법규의 적용

19 (1) The repeal of the personal files enactments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under those enactments in relation to—

(a) any request for information,

(b) any application for rectification or erasure, or

(c) any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which was made before the day on which the repeal comes into force.

19 (1) 개인 파일에 대한 법령의 폐기는 그것이 폐기 발효 이전에 시행된 다음에 대한 법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정보에 대한 요청

(b) 개정이나 삭제에 대한 요청

(c)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

(2) Sub-paragraph (1)(a)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which was made by reference to this Act.

(2) (1)항 (a)는 본 법령에 의한 정보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In sub-paragraph (1) "the personal files enactments" means—
(a) in relation to Great Britain, the M44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and
(b) in relation to Northern Ireland, Part II of the M45Access to Personal Files and Medical Reports (Northern Ireland) Order 1991.

(3) (1)항에서 "개인 파일에 대한 법령"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대브리튼(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포함)의 경우 『개인 파일에의 접근에 대한 법 1987』
(b) 북아일랜드의 경우, 『개인 파일 및 의학적 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명령 1991』2장

Applications under section 158 of Consumer Credit Act 1974

『소비자 신용법 1974』158조에 따른 적용

20 Section 62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section 158 of the M46Consumer Credit Act 1974 in any case where the request was receiv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62, unless the request is made by reference to this Act.

20 본문 62항은 이의 시행 이전에 본 법령을 원용해서 행해지지 않은 모든 요청의 경우에 『소비자 신용법 1974』158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SCHEDULE 15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Public Records Act 1958 (c. 51)

1 (1) . . . . . .

(2) . . . . . .

(3) . . . . . .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 1967 (c. 13)

2 . . . . . .

3 . . . . . .

Superannuation Act 1972 (c. 11)

4 . . . . . .

SCHEDULE 13
부가적 및 간접적 개정

1958년 공공 기록법 1958 (c. 51)

1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1967년 의회행정관법 (c. 13)

2 삭 제

3 삭 제

1972년 퇴직연금법 (c. 11)

4 삭 제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c.24)

5 (1) . . . . . .

(2) . . . . . .

Northern Ireland Assembly Disqualification Act 1975 (c. 25)

6 (1) . . . . . .

(2) . . . . .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c. 2)

7 In Schedule 2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provisions which may be included in regulations as to registration etc), in paragraph 11A(2)－

(a) for “data user” there is substituted “ data controller”, and

(b) for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there is substituted “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c. 28)

8 In section 2(1) of the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interpretation), in the definition of “health professional”, for “the Data Protection (Subject Access Modification) Order 1987” there is substituted “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Football Spectators Act 1989 (c. 37)

9 . . . . . .

Education (Student Loans) Act 1990 (c. 6)

10 Schedule 2 to the Education (Student Loans) Act 1990 (loans for students) so far as that Schedule continues in force shall have effect as if the reference in paragraph 4(2) to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were a reference to this

1975년 하원 부적격판정 법 (c.24)

5 (1) 삭 제

(2) 삭 제

1975년 북아일랜드 의회 부적격판정 법 (c.25)

6 (1) 삭 제

(2) 삭 제

1983년 국민 대표자법 (c. 2)

7 『국민 대표자 법 1983』Schedule2(등록 및 기타에 대한 법규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 11A의 ⑵항에서

(a) "데이터 사용자"는 "데이터 관리자"로 대체되며,

(b) "『데이터 보호법 1984』"는 "『데이터 보호법 1998』"로 대체된다.

의료 기록의 접근에 관한 법 1988(c, 28)

8 『의학적 기록에 접근에 관한 법 1988』2조 ⑴항(해석)에서 "건강 전문인"의 정의에서, "『데이터 보호령(주체 접근 수정) 1987』"은 "『데이터 보호법 1988』"로 대체된다.

축구 관중법 1989 (c. 37)

9 삭 제

교육(학자금대출)법 1990 (c. 60)

10 『교육 및 학자금융자에 관한 법 1990』 Schedule 2 (학자금)는 이것이 집행되는 한 『데이터 보호법 1984』4조 ⑵항에서 언급된 사항이 본 법령에 언급된 사항인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Act.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c. 23)

11 For section 2 of the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there is substituted—

"**2 Health professionals.**

In this Act "health professional"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12 In section 3(4) of that Act (cases where fee may be required) in paragraph (a), for "the maximum prescribed under section 21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there is substituted " such maximum as may be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y regulations under section 7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13 In section 5(3) of that Act (cases where right of access may be partially excluded) for the words from the beginning to "record" in the first place where it occurs there is substituted " Access shall not be given under section 3(2) to any part of a health record".

Access to Personal Files and Medical Reports (Northern Ireland) Order 1991(1991/1707 (N.I. 14))

14 In Article 4 of the Access to Personal Files and Medical Reports (Northern Ireland) Order 1991 (obligation to give access), in paragraph (2) (exclusion of information to which individual entitled under section 21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for "section 21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there is substituted " section 7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15 In Article 6(1) of that Order (interpretation), in the definition of "health professional", for "the Data Protection (Subject Access Modification) (Health) Order 1987" there is substituted "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Tribunals and Inquiries Act 1992 (c. 53)

16 In Part 1 of Schedule 1 to the Tribunals and

건강 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법 1990(c, 23)

11 『건강기록에 접근에 대한 법 1990』2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2. 보건 전문가**

본 법령에서 "보건 전문가"는 『데이터 보호법 1998』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2 이 법 3조 ⑷항(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서 ⒜항의 "『데이터 보호법 1984』2 1조에 따라 규정된 최고액 은 "『데이터 보호법 1998』7조의 법규에 따라 본장의 목적을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최고액"으로 대체된다.

13 이 법 5조 ⑶항(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에서 "기록"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날 때 문장 시작 부분에서 기록 이라는 단어까지를 "3조 ⑵항에 따른 접근은 건강기록의 어느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대체한다.

북아일랜드의 개인 파일 및 의학적 기록의 접근에 관한 명령

14 북아일랜드의 『개인 파일 및 의학적 기록의 접근에 관한 명령 1991』4조(기록 접근에 대한 의무)에서, ⑵항(『데이터 보호법 1984』2 1조에 따라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의 배제) 의 "『데이터 보호법 1984』"는 " 『데이터 보호법 1998』7조"로 대체된다.

15 이 명령 6조 ⑴항(해석)의 "건강 전문인"의 정의에서, "『데이터 보호나 주요 접근에 대한 수정안 및 건강에 대한 법 1987』"은 " 『데이터 보호법 1998』"로 대체된다.

심판원 및 조사원 법 1992 (c, 53)

16 『심판원 및 조사원 법 1992』 Schedule1의 1

Inquiries Act 1992 (tribunals under direct supervision of Council on Tribunals), for paragraph 14 there is substituted—

부(심사위원회의 통제를 직접 받는 심판원)에서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Data protection 데이터 보호	14. (a)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appointed under section 6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a) 『데이터 보호법 1998』62조에 따라 임명된 데이터 커미셔너 (b) the Data Protection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at section, in respect of its jurisdiction under section 48 of that Act." (b) 이 법 48조에 따른 사법권에 대한 이 조항에 따라 구성된 데이터 보호 심판원

Access to Health Records (Northern Ireland) Order 1993 (1993/1250 (N.I. 4))

17 For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4 of the Access to Health Records (Northern Ireland) Order 1993 there is substituted—

"(1) In this Order "health professional"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18 In Article 5(4) of that Order (cases where fee may be required) in sub-paragraph (a), for "the maximum prescribed under section 21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there is substituted " such maximum as may be prescribed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by regulations under section 7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19 In Article 7 of that Order (cases where right of access may be partially excluded) for the words from the beginning to "record" in the first place where it occurs there is substituted " Access shall not be given under Article 5(2) to any part of a health record".

북아일랜드의 건강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법 1993 (1993/ 1250(N.I.4))

17 『북아일랜드의 건강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명령 1993 』4조 ⑴항과 ⑵항은, "⑴ 본 법령에서 "건강 전문인 이란 『데이터 보호법 1998』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로 대체된다.

18 이 명령 5조 ⑷항에서 ⒜는 "『데이터 보호법 1984』2 1조에 따라 규정된 최고액"은 " 『데이터 보호법 1998』7조에 따른 법규에 의해 2 1조의 목적을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최고액"으로 대체된다.

19 이 명령 7조(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의 ⒜에서 "기록"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날 때 문장 시작 부분에서 기록 이라는 단어까지를 "5조 ⑵항에 따른 접근은 어느 부분의 건강기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로 대체된다.

SCHEDULE 16

REPEALS AND REVOCATIONS

PART I

REPEALS

SCHEDULE 13

폐지 및 취소

제 1 장

폐 지

Chapter	Short title	Extent of repeal
1984 c. 35.	The Data Protection Act 1984.	The whole Act.
1986 c. 60.	The Financial Services Act 1986.	Section 190.
1987 c. 37.	The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The whole Act.
1988 c. 40.	The Education Reform Act 1988.	Section 223.
1988 c. 50.	The Housing Act 1988.	In Schedule 17, paragraph 80.
1990 c. 23.	The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In Schedule 17, paragraph 80. In section 1(1), the words from “but does not” to the end. In section 3, subsection (1)(a) to (e) and, in subsection (6) (a), the words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made otherwise than by the patient”. Section 4(1) and (2). In section 5(1)(a)(i), the words “of the patient or” and he word “other”. In section 10, in subsection (2) the words “or orders” and in subsection (3) the words “or an order under section 2(3) above”. In section 11, the definitions of “child” and “parental responsibility”.
1990 c. 37.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Section 33(8).
1990 c. 41.	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In Schedule 10, paragraph 58.
1992 c. 13.	The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	Section 86.
1992 c. 37.	The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Scotland) Act 1992.	Section 59.
1993 c. 8.	The Judicial Pensions and Retirement Act 1993.	In Schedule 6, paragraph 50.
1993 c. 10.	The Charities Act 1993.	Section 12.
1993 c. 21.	The Osteopaths Act 1993.	Section 38.
1994 c. 17.	The Chiropractors Act 1994.	Section 38.
1994 c. 19.	The Local Government (Wales)	In Schedule 13, paragraph 30.

	Act 1994.	
1994 c. 33.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Section 161.
1994 c. 39.	The Local Government etc. (Scotland) Act 1994.	In Schedule 13, paragraph 154.

PART II
REVOCATIONS

제 2 장
취 소

Number	Title	Extent of revocation
S.I. 1991/1142.	The Data Protection Registration Fee Order 1991.	The whole Order.
S.I. 1991/1707 (N.I. 14).	The Access to Personal Files and Medical Reports (Northern Ireland) Order 1991.	Part II. The Schedule.
S.I. 1992/3218.	The Banking Co-ordination (Second Council Directive) Regulations 1992.	In Schedule 10, paragraphs 15 and 40.
S.I. 1993/1250 (N.I. 4).	The Access to Health Records (Northern Ireland) Order 1993.	In Article 2(2), the definitions of “child” and “parental responsibility”. In Article 3(1), the words from “but does not include” to the end. In Article 5, paragraph (1)(a) to (d) and, in paragraph (6)(a), the words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made otherwise than by the patient”. Article 6(1) and (2). In Article 7(1)(a)(i), the words “of the patient or” and the word “other”.
S.I. 1994/429 (N.I. 2).	The Health and Personal Social Services (Northern Ireland) Order 1994.	In Schedule 1, the entries relating to the Access to Personal Files and Medical Reports (Northern Ireland) Order 1991.
S.I. 1994/1696.	The Insurance Companies (Third Insurance Directives) Regulations 1994.	In Schedule 8, paragraph 8.
S.I. 1995/755 (N.I. 2).	The Children (Northern Ireland) Order 1995.	In Schedule 9, paragraphs 177 and 191.
S.I. 1995/3275.	The Investment Services Regulations 1995.	In Schedule 10, paragraphs 3 and 15.
S.I. 1996/2827.	The Open-Ended Investment	In Schedule 8, paragraphs 3 and 26.

Companies (Investment Companies with Variable Capital) Regulations 1996.